



2009년도

발간등록번호
11-1541000-000020-10



2009년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점검·평가 보고서

2010. 6.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점검·평가 보고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0020-10

2009년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점검·평가 보고서

2010. 6.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 목 차 ||

제 I 장 총괄편

제1절 점검·평가 개요

- 1. 추진배경 3
- 2. 점검·평가 개요 4

제2절 2009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 I. 총 평 7
- II. 평가결과 9
 - 1. 평가요약 9
 - 2. 부문별 주요 평가결과 10
 - 3. 평가단 권고 사항 14
 - 4. 평가소감 18

<참 고 자 료>

- 참고 1. 점검·평가위원 현황 20
- 참고 2. 사업별 평가순위 및 상·하위사업 평가의견 21
- 참고 3. 사업별 성과목표 달성도 34
- 참고 4. 제1차 기본계획 부문별 투융자 계획 대비 실적 40

제Ⅱ장 부문별 평가편

제1절 농산어촌 복지기반 확충

I. 총 평	47
II. 평가결과	48
III. 평가소감	52

〈세부사업별 평가결과〉

1-1-1-0.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54
1-1-2-0. 농어업인 국민연금제도 개선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58
1-1-3-0. 농작업 재해보상 지원	62
1-1-4-0.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	67
1-1-5-0.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73
1-2-1-1. 농산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76
1-2-1-2. 공공보건기관 기반 확충	84
1-2-1-3.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	91
1-2-3-1. 농작업재해 원인구명 및 농작업 환경개선	98
1-2-3-3. 농작업 안전모델 조성사업	104
1-3-1-1. 농산어촌 보육시설 확충	110
1-3-1-2. 농산어촌 만5세아 무상보육지원	117
1-3-1-3. 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지원	122
1-3-2-0. 여성농어업인센터 설치 확대 및 내실화	126
1-3-3-1. 농어가 도우미 지원 확대	132
1-3-3-2.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135
1-3-5-1. 여성농업인 창업 지원	141

1-4-1-1. 농산어촌 재가노인복지센터 확충	146
1-4-2-4. 농촌 건강장수마을 조성	151
1-4-3-0. 경영이양직불제 추진	156

제2절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I. 총 평	165
II. 평가결과	167
III. 평가소감	168

〈세부사업별 평가결과〉

2-1-1-1. 농산어촌 우수교 육성	170
2-1-1-4. 한국농수산대학 개편운영	174
2-1-2-8. 군단위 소규모 학교 통폐합	180
2-1-3-4. 방과 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185
2-1-3-6.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육성	191
2-1-4-2.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195
2-1-4-4. 농어촌지역 사립유치원교사 처우개선	198
2-2-1-0.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202
2-2-2-1. 농산어촌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206
2-2-2-2. 농어업관련 대학생 장학금 지원	211
2-2-3-1. 초·중·고 학생 급식비 지원	216
2-2-3-2. 자영농·수산계고교학생 급식비 지원 사업	222
2-2-4-2.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	232
2-3-2-1. 농산어촌 순회교원수당 및 복식수업수당	237
2-3-3-2. 학교도서관 및 장서 확충	242
2-3-3-3. 기숙형 공립고 지정·추진	247
2-3-3-4.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	251

제3절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

I. 총 평	259
II. 평가결과	262
III. 평가소감	267

〈세부사업별 평가결과〉

3-1-1-0. 지역개발 전문인력 육성 및 저변확대	268
3-2-1-1. 농촌마을종합개발	274
3-2-1-2. 어촌종합개발사업	282
3-2-1-3.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290
3-2-2-1.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297
3-2-2-2. 면소재지 활력증진사업	303
3-3-1-1.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311
3-3-2-1. 면단위 생활용수 개발사업	318
3-3-2-2. 마을단위 생활용수 개발사업	323
3-3-2-3.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면단위 하수도사업)	327
3-3-2-4. 소하천 정비사업	331
3-3-2-5.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338
3-3-2-6. 농촌폐비닐 수거비지원	342
3-3-2-7. 소형어선인양기 설치	346
3-3-2-8. 해양폐기물 정화 및 쓰레기 구매사업	351
3-3-2-9. 양식장 정화 사업	356
3-3-2-10. 해수욕장주변정비 및 시설개선사업	361
3-3-3-1. 농어촌도로 정비	366
3-3-3-2. 교통서비스 강화	369
3-3-3-3. 국고여객선 건조	373

3-3-3-4.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377
3-3-4-1.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382
3-3-4-3. 도서종합개발사업	388
3-3-5-1.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394
3-3-5-5. 지방문화원 프로그램운영	399
3-3-5-6. 지방테마과학관 건립지원	404
3-3-5-7. 수목원 조성 및 산림박물관 건립	409
3-3-5-8.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413
3-3-6-1. 정보화마을 조성	419
3-3-6-3. 농업경영체 정보화 지원	423
3-3-6-4. 디지털어촌 구축사업	429
3-3-7-1. 농업인 정보화교육	434
3-3-7-3. 농어업 관련 정보제공 확대	439

제4절 농산어촌 복합산업활성화

I. 총 평	445
II. 평가결과	447
III. 평가소감	450

〈세부사업별 평가결과〉

4-1-1-1. 향토자원의 조사발굴 및 DB구축	452
4-1-1-2. 농촌활력증진사업	460
4-1-1-3. 향토음식 자원화사업	467
4-1-2-9.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한 농공단지 조성	473
4-1-3-0.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478
4-2-1-1.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482

4-2-1-2.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	487
4-2-1-3. 문화역사마을 조성	492
4-2-1-4. 어촌체험마을 조성	500
4-2-1-5. 어촌관광활성화사업	505
4-2-1-6. 산림휴양공간조성	510
4-2-1-8.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517
4-2-1-11. 해양관광자원개발	522
4-2-2-3. 농촌교육농장	527
4-2-4-0. 향토문화 관광축제 육성	533
4-3-1-0. 경관보전직불제	541
4-3-2-2. 농촌어메니티 계획모델 개발 및 보급	547
4-3-3-0. 농산어촌형 경관주택 발굴·보급	552
4-3-4-0. 자생식물원 및 생태숲 조성	558
4-3-5-0. 농산어촌 경관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563
4-3-6-1.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567
4-4-1-0. 1사1촌 운동	572
4-4-2-1. 도시민 농산어촌주택(전원주택) 갖기 활성화	578
4-4-3-1. 도농교류 활성화	585

제 I 장

총괄편

제 1 절 점검·평가 개요

1. 추진배경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본계획('05~'09)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

○ 농산어촌의 복지·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 개발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기획·조정할 수 있는 추진체계 구축·운영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 실무위원회(위원장: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점검·평가단(단장:실무위원중 위촉)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 삶의 질 향상계획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평가를 통하여 관련 정책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 등을 제시

○ 점검·평가결과를 토대로 개별사업의 효율화 방안 모색 및 사업 간에 통합·연계를 추진

○ 정부의 단기 및 중장기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국가 재원의 합리적 배분 도모

○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자체 점검·평가를 통해 스스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유도

< 점검·평가단의 기능_점검·평가단 운영규정 >

○ 연도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시행계획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대책 점검·평가와 관련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점검·평가 개요

가. 평가근거

- 기본계획에 대한 점검·평가는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이 종료되는 때에 **전문연구기관**에 평가 의뢰
 - ※ **삶의질향상특별법 제9조** : 위원회는 기본계획이 종료되는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등을 통해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실시
 - ※ 제1차 기본계획 추진실적 및 제2차 기본계획 방향 연구용역 완료('09.9월)
- 시행계획에 대한 점검·평가는 **삶의 질 향상 실무위원회**에 점검·평가단을 설치하여 매년 평가 실시
 - ※ **삶의질향상특별법 시행령 제6조** : 실무위원회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평가하는 기능을 수행
 - ※ **삶의질향상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 위원장은 기본계획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점검·평가단을 구성하거나 점검·평가 기관을 선정할 수 있음

나. 평가단 구성

- 농어업인단체, 대학, 연구기관 등의 민간 전문가를 관련부처로부터 추천을 받아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 점검·평가단은 총괄, 복지, 교육, 지역개발, 복합산업의 5개 분과팀 21명(단장포함)으로 구성 (임기 2년, 평가단 명단 : 별첨)

다. 평가대상

- '10년 평가대상 사업은 11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수행한 '09년도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의 96개 사업

라. 평가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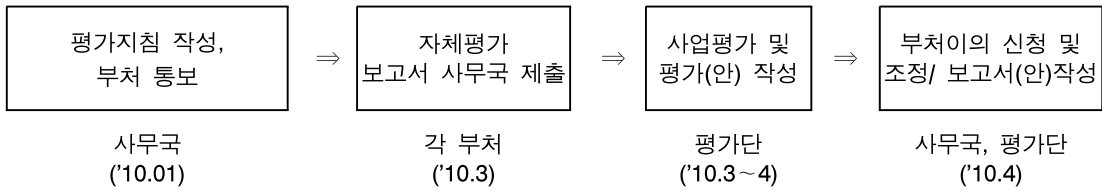
- 점검·평가 지침에 따라 사업추진단계(계획, 집행 및 성과단계)별 점검·평가 항목 및 착안사항을 고려하여 실시
 - 평가위원은 사업담당 부서에서 작성한 자체평가보고서를 토대로 평가지침의 평가항목 등에 따라 평가보고서를 작성
 - 평가위원이 제시한 점수와 평가의견은 4개 팀별 회의와 점검·평가단 총괄팀 및 전체회의에서 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
- 사업추진의 단계별 특성을 감안하여 일반·소규모사업과 연구·시범·비투용자·지방이양 사업으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
 - 계획단계 : 사업필요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절차적 합리성
 - 집행단계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중간점검 결과 반영, 자원조달 등
 - 성과단계 : 삶의 질 향상 기여도, 성과지표 달성도 등
- 일반·소규모사업은 각 분야별로 정량평가(점수) 순서에 따라 상위 10~20%, 중위 60~80%, 하위 10~20% 수준에서 등급 부여
 - 그 외 시범·연구·비투용자·지방이양사업은 정성적 평가만 실시

< '09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대상 사업분류(단위:개)>

구분	일반사업	소규모사업	시범사업	연구사업	지방이양	비투용자	합계
복지부문	10	6	-	1	2	1	20
교육부문	2	2	-	-	13	-	17
지역개발부문	19	11	2	-	2	-	34
복합산업부문	11	9	-	3	-	2	25
합계	42	28	2	4	17	3	96

※ 일반(총사업비 100억 이상), 소규모(100억 미만), 지방이양(지방비 100%)

마. 평가 추진경과



바. 평가결과의 환류

- 목표의 달성도 등 정책의 효과성 및 파급효과를 평가하고, 집행 상황·추진과정상의 문제점 등을 점검하여 정책개선방안 제시
 - 정책개선방안은 보고 후 해당 사업부서에 통보

-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사업의 익년도 예산액 조정을 제안
 -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액 편성이 조정될 수 있도록 평가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실무위원회는 평가단의 평가보고서를 각 기관, 기획재정부에 통보
 - 각 기관에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 기획재정부는 평가결과 반영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조정

- 평가결과 국회 보고
 - 국회의 정책 및 예산심의 활용자료로 제공(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특별법 제42조)

제 2 절 2009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I. 총평

- 2009년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평가대상 사업은 총 96개이며, 일반사업 42개, 소규모사업 28개, 기타 26개임
 - 일반사업과 소규모 사업은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병행하였고, 기타(시범·연구·지방이양·비투융자)사업은 정성적 평가만 실시하였음
 - 평가 대상 중 지역개발 활성화 분야의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개발은 '09년 종료사업이며, 농어촌도로정비사업(지방이양)은 지방으로부터 실적 취합이 지연되어 평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 각 부처별 자체평가보고서를 토대로 평가대상 사업을 분석한 결과 목표 설정, 집행 과정, 성과 관리 측면에서 무난하게 추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지역개발 분야의 사업들은 사업내용 조정·개선, 추진방법 및 추진 체계 개선, 주민의견·지역특성 반영, 목표달성 등에서 많은 개선을 이루었으며, 특히 우수사업들은 계획 수립, 사업추진 과정, 성과 홍보 및 공유 등 사업 전과정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음
 - 복합산업 활성화 분야의 사업들은 대체로 지역활성화를 위해 주민, 전문가, 공무원 등이 협력하여 농산어촌의 자원과 도시의 사람·자본을 유치하는 사업구조가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우수사업들의 경우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큰 성과를 내고 있고, 합리적인 사업추진절차를 보유하고 있음
 - 교육 및 복지분야 평가대상 사업들도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되어 상·하위 사업간 격차가 미미하여 변별력을 부여하기가 곤란하였음

사업들 대부분이 농어촌 주민의 복지증진과 농어촌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므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됨

- 평가가 매년(5년차) 지속되면서 사업 내용, 추진체계 등 많은 발전을 이룬 것은 분명하나 개별사업 뿐만 아니라 평가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며, 합리적인 사업성과 측정을 위해서는 양적인 목표기준과 더불어 질적인 기준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평가결과가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부처(사업 담당) 뿐만 아니라 실질적 사업시행 주체(위탁기관, 지자체)에 대한 평가도 필요
 -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수립한 사업계획을 사후적으로 종합하는 시스템으로는 부문 및 사업간 조정을 통한 삶의 질 계획의 전체적인 합리성 제고를 이루기 곤란하므로 개선이 필요함
 -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방이양사업의 경우에는 중앙차원에서 사업 방향 설정 등을 통하여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음

II. 평가결과

1. 평가요약

- '09년 시행계획에 반영된 96개 사업을 일반·소규모사업과 연구·시범·비투용자·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하여 점검·평가
 - 일반(42개)·소규모(28)사업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순위를 부여하였음
 - 연구(4)·시범(2)·비투용자(3)·지방이양(17)사업은 정성평가만 실시하고 순위는 부여하지 않음
- 일반·소규모사업은 평가결과에 따라 분야별로 상·중·하위로 구분
 - 상위 16개(22.8%), 중위 47개(67.1%), 하위 7개(10.0%)

평가등급	분야별	사업명
상위 (16)	복지기반확충 (3)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영유아 보육지원
	교육여건개선 (1)	농산어촌대학생 학자금 용자지원
	지역개발촉진 (7)	지방소도읍 육성, 수목원 조성 및 산림박물관 지원, 농촌마을종합개발, 어촌종합개발, 소하천정비, 지방문화원프로그램 운영, 산촌생태마을 조성
	복합산업활성화 (5)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경관보전직불제, 농촌활력증진, 향토문화 관광축제 육성
하위 (7)	복지기반확충 (2)	농산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
	교육여건개선 (0)	-
	지역개발촉진 (2)	지역개발 전문인력 육성 및 저변확대, 내향여객선 운임보조
	복합산업활성화 (3)	자생식물원 및 생태숲 조성, 해양관광자원개발, 산림휴양공간조성

※ 교육여건 개선분야(총 17개 사업 중 13개 사업이 지방이양)는 정량적 평가 대상 사업이 4개(대학생 학자금 용자, 농어업 관련 대학생 장학금 지원, 농수산대학 개편운영, 소규모 학교 통폐합) 뿐이고, 모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하위사업 미선정

2. 부문별 주요 평가결과

가. 복지기반 확충 부문(20개 사업_정량평가 16개)

<상위사업>

- 영유아 보육지원 사업은 자격심사를 강화하여 부당수급자 방지 등 제도를 내실화, 지속적인 홍보로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
 - * '12년까지 지원수준(시설이용/미이용)을 90%/60%(현재 70/35)까지 상향하기로 예산담당 부처와 협의를 완료하는 등 안정적 예산확보에도 노력
-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농식품부와 유관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등)의 역할 분담과 긴밀한 협조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일제조사를 통한 부적격자, 신규자 발굴)
 - * 제도의 실질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방안, 협업부부중 여성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등을 모색하는 것도 높게 평가

<하위사업>

-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 사업은 농어촌에 가장 긴급한 양질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방안이 미흡
 - 평가에 의한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지원한다고 하나 평가지표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가 선행될 필요
-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사업은 기본방향 설정과 평가과정에서 지역별 특성(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을 반영할 필요
 - 현재는 병원단계에서의 진료는 담고 있으나 이송과정에서의 진료는 문제제기로 끝나고 있음. 사업내용에 포함할 필요
 - 성과지표로 “응급의료 취약지 해소율”로 하고 있으나, 측정기준을 예산지원 기관수만으로 하는 것은 부적합. 실질적인 응급의료체계가 완비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응급전문인력 확보율 등)

나. 교육여건 개선 부문(17개 사업_정량평가 4개)

- 상위사업인 대학생 학자금융자사업은 사업추진체계가 적절하고 (한국장학재단 및 연구재단과의 협조체계유지), 대학등록금의 인상에 따라 지원금액도 상향조정하는 등 정책대상의 수요를 반영
- 평가 대상이 4개 사업 뿐이고, 상위사업을 제외한 사업들도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하위사업은 미선정
 - 다만, 군단위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경우 농산어촌의 교육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양하게 추진되지 못 하였고,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를 과도하게 폐교시킬 우려가 있다고 평가

다. 지역개발 부문(34개 사업_정량평가 30개)

<상위사업>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주민의 니즈에 기초하여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상향적 지역사회개발로서 지역 및 농촌 분야의 개발 방식의 선진화에 기여
 - '07년 착수한 40개 권역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 인구, 가구, 소득, 교류 인구 등의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양
-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수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 관련 사업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개발함으로써 어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지역소득 증대에 기여
- 지방소도읍육성사업은 『상향식 공모제』 방식과, 자치단체장의 책임과 중앙정부의 지원에 대해서 상호 협약하는 『육성협약제도』 등을 도입·적용함으로써 안정적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
 - 타 부처가 지원하는 관련 사업도 개발거점을 중심으로 집중·연계·복합하여 개발함으로써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

- **소하천정비사업**은 전년도 하반기부터 설계, 보상 등을 미리 준비하여 예산 확보와 동시에 조기 발주하여 자연재해를 예방·경감
- **수목원 조성 및 산림박물관 건립사업**은 지자체의 부지 및 예산 미확보로 인한 사업지연의 어려움을 극복, 국내외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사업진행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그 문제점을 보완·개선
 - 그 결과 계획대비 100% 추진 완료하였고, 수요자 만족도가 90점대로 매우 높음
- **지방문화원 프로그램 운영**은 지방문화원을 실버문화 및 노인복지의 새로운 거점으로 육성하여 실버세대의 지역사회 참여,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하도록 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사업임
 - 권역별, 사업유형별로 현장자문을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업의 체계적 추진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임
- **산촌생태마을조성 사업**은 상향식 공모, 리더십 육성, 지원센터 운영, 문제해결 T/F팀 운영 등 선진화된 기법을 활용 성과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책기조에도 부합

<하위사업>

- **지역개발 전문인력 육성 및 저변 확대사업**은 단기간, 집체식, 주입식 교육 중심이어서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 곤란
 - 또한 교육 프로그램별 대상자의 적격성 문제, 농어촌지역개발 교육 강사 풀이 제한
- **내향여객선 운임보조사업**은 성과지표(운송실적)도 목표치에 미치지 못 하였고, 만족도(69%)도 좀 더 제고 시킬 필요
 - 5년차 사업으로 사업목표인 내륙과 도서의 교류증과 도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중간점검 필요
 - 현재의 지원방식(선주와 지자체간 사후정산)이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점검이 필요함(전년도에도 제안 했던 사안임)

라. 복합산업 부문(25개 사업_정량평가 20개)

<상위사업>

- 농촌전통테마마을 및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저비용 고효율의 대표적인 사업 모델이라고 평가
 - 주민 스스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학습 등의 S/W사업 위주로 사업 추진. 동시에 지역 공무원이나 전문가들의 참여·협조체계 구조화
- 경관보전 직불제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현지조사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의 문제점을 즉시 보완 및 개선
 - 특히 2009년도에는 마을 경관보전 활동비를 신설하는 등 사업이 점차 발전적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평가됨.
- 농촌활력증진사업은 사업 목표와 성격이 유사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통합 관리하였고 지역별로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설정
- 향토문화 관광축제 육성사업 역시 크지 않은 사업비를 가지고 지자체간 긍정적 경쟁 도모, 전문가 상시 참여체계 구축으로 성과제고

<하위사업>

- 해양관광자원개발, 자생식물원 및 생태숲 조성, 산림휴양공간조성 사업은 상대적으로 사업 목표와 절차, 성과 등의 측면에서 개선 필요
 - 이들 사업은 공통적으로 사업 목표와 사업 내용의 정합성이 다소 부족하고, 지역주민이나 전문가 등의 참여가 미흡하며, 사업 성과 지표가 부적절(예산집행률, 예산지원 개소수 등)
 - 이는 전년도 점검·평가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나 별다른 조치나 개선 노력이 없었음

3. 평가단 권고 사항

가. 예산 증액 필요 사업

- **향토문화관광축제** : 시·군 축제담당자 및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사업의 예산투입 대비 경제파급효과(산출)가 56~58배임
 - 지역축제를 여전히 향락산업이라는 보는 시각이 있고,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08년 이후 사업비가 감액
 - 농어촌지역 산업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향토문화관광축제 사업을 장려할 필요
- **농어촌대학생 학자금 융자** : 대학 등록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으나, 농림어업인의 소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 증대
 - '09년 기준으로 지원자 중에서 12% 정도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으므로 수요에 맞게 예산을 증액할 필요
- **농산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 성과지표 개선 및 사업 내용 보완 필요성 등의 이유로 하위사업으로 분류되었지만, 의료 취약지역의 현실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은 매우 중요
 - 응급의료시설이 취약한 42개군에 지원하고 있는 응급의료 지원금이 응급의료 인프라(시설 및 인력)를 구축하기에 적절한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필요
 - 부족하다면 이를 적극지원하기 위한 예산확보와 지원방안 마련이 추가될 필요

나. 심층평가 필요 사업

-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 문화역사마을조성사업 등의 5년간 성과를 종합 평가 후 적극적인 홍보 필요
-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의 경우, 성격이 다른 사업들이 묶여 있고 사업의 성과지표도 모호하게 되어 있어 사업의 체계화를 위한 심층평가 필요
-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 연중 돌봄학교 육성,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농어업인 자녀의 학자금 지원 등은 지방이양 사업이지만
 - 농산어촌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중요한 사업이므로 사업계획과 성과, 현장의 요구 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위원회 차원에서 점검해볼 필요

다. 기타 권고사항

- 기능과 목적이 유사한 사업들이 서로 다른 정부부처 간에 운영되고 있는데, 당초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함
 - 만5세아 무상 보육지원(보건복지부)과 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 지원(농림수산식품부)
- 거점면소재지는 농어촌서비스 중심지, 개발거점, 교통·유통 결절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면소재지 활력증진사업이 당초계획 대로 추진되도록 중앙정부에서 적극적 관심을 가질 필요.
 - 포괄보조 사업(지자체 자율)으로 편성되므로 예산배분을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거점면 기능이 더 이상 이 약화되기 전에 면소재지 활력증진사업이 조기에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필요

- 사업 개소수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더라도, 사업대상 면소재지의 범위는 확대할 필요
- 소단위지역 종합개발사업들은 계획기간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 필요
 - 지방소도읍육성사업, 마을종합개발사업 등의 소단위지역 종합개발 사업지구의 대부분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계획기간 이후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종합개발사업으로 인해 모처럼 얻은 지역활성화 기회 또는 성장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후속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
- 광특회계의 포괄보조금제도 도입에 따라 지자체의 사업계획 추진 체계 개선과 계획수립 세부매뉴얼 제공이 필요
 - 지역 특성, 우선순위, 선도성, 그리고 사업간 연계성, 시너지 효과를 고려하여 사업을 선정하되 지자체 수준의 통합·연계 필요
 - 이를 위해 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효과적으로 종합·조정할 수 있는 기획기능의 강화와 부서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추진체계의 구축이 긴요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포괄보조금제도 하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정·추진 하더라도 공모제가 지니고 있는 경쟁원리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
- 사업이 시작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사업이나 종료되는 사업들의 경우, 사업의 성과 및 추진 방식의 우수성 등을 모델화하여 보급 할 수 있는 사후관리 조치가 필요
 - 특히 2010년부터 광특회계 재편에 따라 복합산업 활성화 분야에 속하는 사업들 중 일부가 통폐합되는 상황에서 마을 사업 등은 정책성과가 중단될 가능성

- 따라서 기존사업 대상지간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나 농촌관광의 국가적 브랜드를 육성하는 사업 등으로 발전적으로 접근할 필요
- 교육 및 복지 분야에 대한 중앙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
 - 기숙형 고교 사업,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사업 등은 비록 지방으로 이양되었지만 중앙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정책을 입안하고 관리할 필요
 - 이들 사업은 농촌의 학교를 발전시키고, 학생이 농촌을 떠나지 않고 머무르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며,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임
 - 급식비 지원은 급식의 단가 등이 적절하지 않으며, 지역에 따라 자부담 비율에 차이가 있는데 지원비율을 유사하게 하여 지역에 따른 격차를 축소할 필요
- 지역내 공공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지역거점병원-도시의 3차 의료기관(대학병원) 간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
 - 농어촌지역은 접근성, 취약한 수익구조로 인해 민간의료기관들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음
 - 지역거점병원들이 3차 진료기관인 대학병원, 지역내 보건소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4. 평가소감(평가체계 개선 방안)

- 광특회계 개편 및 제2차 삶의 질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평가체계 및 방법에 있어 새로운 접근이 필요
 - 자체 평가보고서가 전반적으로 충실해지고 있으나, 아직도 성과보다는 투입 중심의 접근이 많은 편이며, 특히 사업목적 대비 성과지표 타당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
 - 향후 사업내용의 실적 평가의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검증하는 절차나 제도를 도입할 필요
 - 각 부처의 자체 평가보고서만으로는 지역에서 느끼는 사업의 성과·만족도 등을 파악하기 곤란
 - 부문별 또는 사업별로 중앙정부(계획 수립주체)와 지방정부(집행주체)에 대한 교차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평가할 필요
 - 현재와 같은 평가 절차와 방식 하에서는 평가 상위사업과 평가 하위사업의 구분이 사실상 모호
 - 평가 하위사업 구분에 있어서 변별력이 약하므로 일정 비율의 평가 상위사업과 평가 하위사업을 추출하는 방식은 지양
 - 평가 결과가 사업의 내실화를 촉구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평가 시스템 구축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목표에 따라 합리적인 자체 성과지표 설정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농어촌서비스 기준이 좋은 대안)
 - 서면 평가뿐 아니라 몇 개 중점 사업에 대해서는 1년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도입 운영을 검토할 필요
 -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농어촌지역 사립유치원교사 처우개선등 반복적·기계적으로 사업들에 대해서는 실적 파악만 하도록 하여

평가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

- 중점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는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분명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합의가 필요
- 중복된 성격의 사업이 분절되어 있어서 효과적인 평가가 어려운 경우도 있음
 - 주택 시책, 도농교류 시책 등 중분류의 내용별 시책에 따라 사업을 통폐합하여 운영하거나 적어도 평가자료를 통일할 필요
 - 복합산업 분과와 지역개발 분과는 통합해 사업 재분류 및 평가의 체계화가 필요

< 참고 1 >

삶의 질 시행계획 점검·평가 위원

제3기('09.12.23 ~ '11.12.22)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비고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박 성 재	단장
2	한국농업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손 재 범	복지분과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최 경 환	팀장
4	목포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조 혜 정	
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 태 완	
6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위원	이 윤 근	
7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이 승 엽	교육분과
8	공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임 연 기	
9	공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최 준 렬	팀장
10	목포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강 일 국	
11	농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장 병 수	지역개발분과
12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김 정 연	팀장
13	협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이 상 문	
14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이 충 기	
15	국민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손 진 식	
16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윤 상 호	
17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임 정 수	복합산업분과
1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송 미 령	팀장
19	전남대학교 생물산업공학과	교수	최 수 명	
20	향도시건축사사무소	대표	조 상 훈	
21	한국문화관광연구소	소장	오 순 환	

< 참고 2 >

사업별 평가결과 및 상·하위사업 평가의견

(복지부문)

코드번호	사업명	평가점수	순위	등급	비고
1-1-1-0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제도개선	90.4	2/16	상위	
1-1-2-0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제도개선	89.8	3/16	상위	
1-1-3-0	농작업 재해보상 지원	88.0	5/16	중위	
1-1-4-0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	86.4	8/16	중위	
1-2-1-1	농산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83.4	15/16	하위	
1-2-1-2	공공보건기관 기반 확충	84.0	14/16	중위	
1-2-1-3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	82.8	16/16	하위	
1-2-3-3	농작업 안전모델 조성사업	86.8	6/16	중위	
1-3-1-1	농산어촌 보육시설 확충	84.2	13/16	중위	
1-3-1-2	농산어촌 만 5세아 무상보육지원	88.8	4/16	중위	
1-3-1-3	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지원	90.6	1/16	상위	
1-3-3-2	취약농가 인력지원	86.6	7/16	중위	
1-3-5-1	여성농업인 창업지원	84.8	12/16	중위	
1-4-1-1	농산어촌 재가노인복지센터 확충	85.0	11/16	중위	
1-4-2-4	농촌 건강장수마을 조성	85.8	9/16	중위	
1-4-3-0	경영이양 직불제 추진	85.8	9/16	중위	
평 균		86.45			

□ 복지부문 상위사업

사업명	선정사유
농어업인 영유아 보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인의 육아부담 경감,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 유도 및 저출산 문제 해결을 통한 농어촌 공동체 복원에 기여하고 있음 ○ 농어업인의 양육비 부담이 연간 838억원 경감되어 육아 부담이

사업명	선정사유
	<p>경감되었고, 만족도 조사 결과 당초 목표(70%)를 달성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심사를 강화하여 부정수급자 방지 등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고,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였음 ○ 예산의 안정적 확보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지원수준(시설이용/미이용) 70%/35%('09) → 90%/60%('12)을 상향토록 함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의 열악한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함, 삶의 질 계획 취지에 가장 부합되는 사업 중 하나임. ○ 지침을 통해 연간 사업 일정 및 자금배정계획을 명시하여 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일제조사를 통해 신규자 및 부적격자 발굴로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실질적 타당성을 위해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방안을 모색 중임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의 고령화 현실을 고려할 때 매우 시의적절한 사업이며 삶의 질 계획 취지에 가장 부합되는 사업 중 하나임. ○ '07년 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된 후 처음으로 지원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신규자 및 부적격자를 발굴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실질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협업부부농 중 여성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방안을 모색중임

□ 복지부문 하위사업

사업명	선정사유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농간 건강불평등 해소에 도움을 주는 등 지역민에게 필요한 사업이며 삶의 질 계획의 비전에도 적합 ○ 농어촌 의료기관들의 어려운 점의 하나는 충분한 의료인력의 확보가 어렵다는 점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라서 기존의 시설위주 지원과 더불어 지역거점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 의료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강구하고 - 진료과목을 다양화(산부인과 등)하여 양질의 의료인력 확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마련이 동시에 마련될 필요가 있음

사업명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9.12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수립 이전에 평가단 및 지역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는 점, 일률적으로 지원되어 오던 국고지원방식을 '선택과 집중'으로 하겠다는 점도 긍정적인. - 그러나 예산확보를 위해 과도한 병원 간 경쟁, 평가지표 선정 및 평가의 공정성, 무리한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경영 악화 등의 문제 발생을 사전에 탐지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보건복지부·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는 수동적인 홍보라 할 수 있음. 적극적 홍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성과지표로써 지역주민들의 이용자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은 좋지만 성과목표치 설정이 다소 임의적임. 객관성을 확보한 목표치 설정이 이루어졌으면 함
<p>농산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높은 고령화율과 인구감소, 지역적 광의성으로 인해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수익성 악화로 민간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 따라서 응급의료체계의 구축은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농간 보건의료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임 ○ 응급환자에 있어 중요한 점은 질환 발생 직후의 응급치료와 이송이라 할 수 있음. 병원에서의 진료뿐만 아니라 질환발생 단계에서의 치료와 농어촌지역(접근성 어려움)을 고려한 환자 이송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사업내용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 현재 42개 군에 지원하고 있는 응급 의료 지원금을 통해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부족하다면 이를 적극지원하기 위한 예산확보와 지원방안 마련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 현재 성과지표로 “응급의료 취약지 해소율”을 두고 있으나 단순하게 예산지원이 이루어진 기관수를 중심으로 성과달성도를 파악하고 있어 실질적인 응급의료체계가 완비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구체적으로 응급의료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을 위한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예, 별도의 응급실 완비, 응급 의료 전문의 인원 혹은 인구대비 응급의료 전문의 비율 등)

(교육부문)

코드번호	사업명	평가점수	순위	평가등급	비고
2-2-2-1	농산어촌대학생 학자금 용자지원	96	1/4	상위	
2-1-1-4	한국농수산대학개편운영	93	2/4	중위	
2-1-2-8	군단위 소규모 학교 통폐합	92	3/4	중위	
2-2-2-2	농어업관련 대학생 장학금 지원	92	3/4	중위	
평균		93.25			

□ 상위사업

사업명	선정사유
농산어촌 대학생 학자금 용자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갈수록 농림어업인의 경제적 여건이 악화된다는 점, 그리고 대학 등록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 이 사업이 계획한 대로 100% 사업비를 확보하여 집행하고 있다는 점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한국장학재단에서 정부출연금에 대해 별도의 회계를 구성하고, 용자금 신청과 심사, 지급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는 농식품부의 지침에 의거 한국연구재단이 세부신청요강을 별도로 작성·공포하여 시행하도록 한 것은 적절한 것임. ○ 정부출연금 475억 원 등 총 929억 원을 용자금으로 지원하여, 5.8%의 이자를 부과하는 교과부 대출조건과 비교할 때, 그 이자에 해당하는 54억 원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가져왔음. ○ 앞으로 1인당 지원액을 증가시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1년 거치 후 상환하도록 한 것을 최소한 3년 거치로 연장하여 실제로 졸업 후 상환이 가능한 조건을 마련하여야 함.

□ 하위사업(미분류)

- 군단위 소규모 학교 통폐합 사업과 농어업관련 대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이 상위사업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사업 성과도 좋고, 평가 대상이 4개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하위사업으로 분류하지 않았음.

(지역개발)

코드번호	사업명	평가점수	순위	평가등급	비고
3-1-1-0	지역개발 전문인력 육성 및 저변 확대	79	29/30	하위	
3-2-1-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95	3/30	상위	
3-2-1-2	어촌종합개발사업	95	3/30	상위	
3-2-1-3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94	6/30	상위	
3-2-2-1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97	1/30	상위	
3-2-2-2	면소재지 활력증진사업	88	14/30	중위	
3-3-1-1	농산어촌 주거환경 개선	86	18/30	중위	
3-3-2-1	면단위 생활용수 개발	86	18/30	중위	
3-3-2-2	마을단위 생활용수 개발	91	9/30	중위	
3-3-2-3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84	25/30	중위	
3-3-2-4	소하천 정비	95	3/30	상위	
3-3-2-5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지원	80	27/30	중위	
3-3-2-6	농촌폐비닐 수거비 지원	89	11/30	중위	
3-3-2-7	다목적 인양기 설치	86	18/30	중위	
3-3-2-8	해양폐기물 정화 및 쓰레기 수거사업	86	18/30	중위	
3-3-2-9	양식장 정화 사업 지원	87	16/30	중위	
3-3-2-10	해수욕장주변정비 및 시설개선사업	86	18/30	중위	
3-3-3-3	국고여객선 건조	85	23/30	중위	
3-3-3-4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78	30/30	하위	
3-3-4-1	농촌생활환경정비 지원사업	89	10/30	중위	
3-3-4-3	도서개발촉진사업	88	14/30	중위	
3-3-5-1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81	26/30	중위	
3-3-5-5	지방문화원 프로그램 운영	94	6/30	상위	
3-3-5-6	지방테마과학관 건립지원	80	27/30	중위	
3-3-5-7	수목원 조성 및 산림물관 건립	97	1/30	상위	
3-3-6-1	정보화 마을 조성	89	11/30	중위	
3-3-6-3	농업경영체 정보시스템 구축	90	10/30	중위	
3-3-6-4	디지털어촌 구축사업	89	11/30	중위	
3-3-7-1	농어촌정보이용활성화	87	16/30	중위	
3-3-7-3	농어업 관련 정보제공 확대	92	8/30	중위	
평 균		88.10			

□ 지역개발 부문 상위사업

사업명	선정사유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은 주민의 수요에 기초하여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상향적 지역사회개발로서 지역 및 농촌 분야의 개발방식의 선진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월별 모니터링 및 분기별 현지 확인 점검 등 중간 모니터링 실시, 사업방식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추진 실적 점검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숍 개최, 사업추진 실적 평가 후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중간평가)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계획의 수립·추진방식을 개선하고 있으며, ○ '07년 착수한 40개 권역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 인구, 가구, 소득, 교류인구 등의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어촌종합개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이 타당하고 삶의 질 계획 취지에도 적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심 항포구를 축으로 생산, 유통, 가공, 판매 관련 사업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개발함으로써 어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지역소득 증대, 삶의 질 향상 등에 대한 기여도가 높음 ○ 사업추진방식의 개선으로 현실 적합성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7년까지는 35억원씩 균일하게 투자함에 따라 권역별로 과잉투자되거나 예산이 부족하여 제대로 투자되지 못하는 지역이 발생 하기도 하였으나, - 2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2009-2013년)부터는 지역별로 차등적인 재원을 지원함으로써 합리화 하였고, 사업계획을 해당 지자체에서 수립토록 추진체계를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음
지방소도읍 육성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및 농어촌개발사업의 혁신을 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소도읍육성사업은 지역간 건전한 경쟁을 통해 우수한 계획을 공모하는 『상향식 공모제』 방식과, 개발 잠재력이 높은 소도읍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 방식, 자치단체장의 책임과 중앙정부의 지원에 대해서 상호 협약하는 『육성협약제도』를 도입·적용함으로써 안정적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 -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소도읍별·분야별로 분석·평가하는 등 체계적인 평가·환류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타 부처의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도읍육성사업에서는 다른 부처가 지원하는 관련 사업을 일정 장소(개발거점)를 중심으로 집중·연계·복합하여 개발함으로써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역개발방

사업명	선정사유
	<p>식의 도입·적용을 선도하고 있음</p> <p>(사례: 기획재정부의 특화발전특구 지정, 중소기업청의 재래시장구조개선 특별지원금, 농식품부의 산지유통시범 사업, 농어촌도서관사업, 국토해양부의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 환경부의 '아름다운 생태하천 및 전원경관조성사업', 국토해양부의 생태하천 시범지구 선정,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요양시설 조성 및 노인복지 타운 추진 등)</p>
소하천정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9 소하천정비사업은 전년도 하반기부터 설계, 보상 등을 미리 준비하여 예산 확보와 동시에 조기 발주하여 재해의 조기예방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음 ○ '09년에 당초 계획(총 3,144억원) 대비 61% 증가한 총예산 5,081억원(국비1,909, 지방비 3,172)을 투자하여, 목표치(314km)를 133% 초과한 417km의 소하천을 정비하였음 ○ 사후복구 위주에서 예방 위주로 전환하기 위하여 예방사업의 투자를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매년 재해예방사업의 투자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등 재해예방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재해를 예방·경감시키는데 크게 기여함
수목원 조성 및 산림 박물관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별 사업 추진방식 개선이 돋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의 부지 및 예산 미확보로 인한 사업지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강점·기회요인을 잘 분석하여 그 장점 강화와 약점·위협요인을 파악하여 그 단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한 점, 국내외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이를 반영한 점, 사업진행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그 문제점을 보완·개선한 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외국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 점 등 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음. ○ 그 결과 「2009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의거 계획대비 100% 추진 완료하였고, 수요자 만족도가 90점대로 매우 높음
지방문화원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문화원을 실버문화 및 노인복지의 새로운 거점으로 육성하여 실버세대의 지역사회 참여,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하도록 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사업임 - 권역별, 사업유형별로 현장자문을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업의 체계적 추진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임
산촌생태마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향식 공모, 리더십 육성, 지원센터 운영, 문제해결 T/F팀 운영 등 선진화된 기법을 활용 성과목표치를 초과 달성 ○ 최근의 국가정책 기조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여 산촌생태마을을 탄소순환마을로 조성하려는 점도 높게 평가

□ 지역개발 부문 하위사업

사업명	선정사유
지역개발 전문인력 육성 및 저변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표는 적절 - 지역리더, 주민, 지자체 공무원 등 상향식 사업을 주도하는 사업 주체의 능력배양을 통해 지역개발사업을 주도할 전문 인력 육성을 통해 도농교류·농촌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을 추진을 하고자 하는 본 사업의 취지는 적절함하고, ○ 교육방식의 개선 필요 - 교육생수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교육 내용을 다양화 한 것은 바람직하나, 단기간, 집체식, 주입식 교육 중심으로 교육효과를 일정 수준 이상 제고하기 어려우며, 아직은 교육 프로그램별 대상자의 적격성 문제, 농어촌지역개발 교육 강사 풀의 제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
내향여객선 운임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당초에 제시된 여객선 이용객 운임지원 목표 370만명 대비 360만명을 지원하여 목표치의 97%로서 약간 미달하고,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결과는 '08년 64.1%에서 '09년 69.0% 향상되었으나 향후 더욱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2009년 평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객선 운임을 금전적으로 보조해 주는 것이 도시-도서간 교류증진, 주민의 생활의 질 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정책적인 중간점검이 필요하고, 과거에 지적된 운임 정산과정의 투명성 제고가 현장에서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구체적인 점검결과가 제시되지 않았음

(복합산업)

코드번호	사업명	평가점수	순위	등급	비고
4-1-1-2	농촌활력증진사업	88.2	4/20	상위	
4-1-1-3	향토음식자원화사업	87.2	6/20	중위	
4-1-2-0	농공단지조성사업	80.6	16/20	중위	
4-1-3-0	농어업인지역실업자직업훈련	81.8	14/20	중위	
4-2-1-1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90.2	2/20	상위	
4-2-1-2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사업	93.5	1/20	상위	
4-2-1-3	문화역사마을조성사업	84.4	9/20	중위	
4-2-1-4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82.2	13/20	중위	
4-2-1-5	어촌관광활성화사업	81.4	15/20	중위	
4-2-1-6	산림휴양공간조성및수목원조성	76.6	18/20	하위	
4-2-1-8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84	10/20	중위	
4-2-1-11	해양관광자원개발사업	73	20/20	하위	
4-2-2-3	농촌체험교육농장	86.2	8/20	중위	
4-2-4-0	향토문화관광축제	87.4	5/20	상위	
4-3-1-0	경관보전직불제	89.8	3/20	상위	
4-3-3-0	농산어촌경관주택발굴보급	82.6	12/20	중위	
4-3-6-1	조건불리지역직불제	86.8	7/20	중위	
4-4-2-1	도시민농산어촌주택갯기(전원주택)	84	10/20	중위	
4-4-3-1	도농교류활성화	80.6	16/20	중위	
4-3-4-0	자생식물식재및생태숲조성	73.4	19/20	하위	
평 균		83.69			

* 순위는 소규모, 일반사업만 해당됨

□ 복합산업 부문 상위사업

사업명	선정사유
농촌전통테마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의 목표는 농촌전통자원의 발굴 및 활용을 통해 도농 상생의 교류촉진, 농특산물 직거래와 숙식과 체험 등의 소득 사업으로 지역활성화 등이었으며, 이미 사업목표는 성공적으로 달성하였다고 판단됨. ○ 농업기술센터 소속의 지도직 공무원들이 현장을 누비며 농업인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는 등의 적극적 자세로 인해 대성공을 거둘 수 있었음. ○ 효율적 시스템 구축과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진청-도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통해 현장의견수렴부터 대안수립까지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 관계부처, 마을주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 적은 예산이지만 주민들 스스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학습 등의 S/W사업을 위주로 사업을 추진 ○ 개별 성과지표 자체개발과 피드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개발한 농촌관광마을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마을운영, 시설수준, 서비스수준, 이용자만족도 등을 측정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비용 고효율의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은 예산이지만 주민들 스스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학습 등의 S/W사업을 위주로 사업을 추진 ○ 주민 의견 반영을 통한 상향식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단계부터 주민이 직접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주민들의 자율적 의견 반영하려는 노력 -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도록 장려하였으며, 관계공무원과의 대화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과정에 반영 ○ 지속적인 현지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가 분기별로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식품부에서는 3월과 11월 등 반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
경관보전 직불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취지가 매우 적정하며 삶의 질 기본계획 비전에 적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보전 정책과 직불제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경관보전과 형성에 나서도록 유도하여 농촌의 휴양, 산업 활성화에 기여 ○ 마을 공동체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단위로 집단적으로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자원화 하도록 한 점은 매우 바람직함 ○ 문제점의 즉시적, 일관적 보완 및 개선

사업명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준비과정, 대상지 선정, 시행과정 등에서 의견 수렴, 전문가의 자문·현지조사 및 점검·모니터링, 관계자 워크숍 등 다양한 방법 활용 ○ 사업의 발전적 전환 - 2009년도에는 마을 경관 보전 활동비를 신설하는 등 사업이 점차 발전적으로 전환되고 있음
농촌활력 증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간 통합관리 - 유사·중복성 때문에 비판받았던 신활력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및 특화품목육성사업을 농촌활력증진사업으로 통합하여 관리 ○ 성공적인 성과목표 설정 - 성과목표 및 추진시스템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함으로써 지자체의 관심도를 제고 ○ 관계부처·기관간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지침을 마련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 ○ 효과적인 사업홍보 - 농어촌산업박람회 개최, 매스컴을 통한 공동홍보, 시도 네트워크 경비지원 등은 사업홍보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 목표 달성을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유도
향토문화 관광축제 육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축제의 성공적 모델 창출 및 지역 발전에 기여 ○ 크지 않은 사업비로 지자체간 긍정적 경쟁을 도모 - 지역안배 혹은 일률적인 지원방식 대신에 예비축제 신청, 전문가들의 현장평가 및 판정, 선정회의, 본축제 편입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축제간 선의의 경쟁의식 및 도전의식을 고취 - 전문가 등이 사업 추진 과정에 참여하도록 유도 ○ 피드백을 통해 지자체의 개선노력 유도 - 전문가의 현장평가보고서를 축제관계자에게 송부하여 활용토록 함 - 방문객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참관평가를 토대로 축제측이 환류하는 지에 대해 모니터링 ○ 적극적인 홍보활동 -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국내, 국회 홍보를 지원하고 4개 국어로 구성된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온라인 홍보 활용 ○ 주민들의 여가문화 향유 기회 제공 및 자긍심 고취

□ 복합산업 부문 하위사업

사업명	선정사유
해양관광자원 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가 보유한 우수한 해양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국민들의 해양관광 수요를 충족시키고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임 ○ 주민 의견 수렴, 전문가 활용 절차 등이 미흡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 중심으로만 추진 경향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주민과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지를 선정하므로 해당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이 지원된다고 하지만 지역설명회 개최 등의 근거 자료가 없음 ○ 중앙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종합계획 부족 ○ 사업 추진과정의 모니터링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별다른 과정을 찾기 어렵고, 국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등 사업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 ○ 성과지표 보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다른 성과관리 지표 없이 실적 지표가 곧 성과관리 지표 (예산행률)로 되어 있음
자생식물원 및 생태숲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은 국가 식물자원의 서식지내 보전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적으로 특색있는 생태숲을 조성하여 자연학습 및 산림문화를 학습, 체험하기 위한 휴양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임. ○ 자생식물원이나 생태숲은 특정 지역에 입지하는 만큼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고, 지역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평가에서도 제기하였던 사안임 ○ 생태숲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목적과 취지에 적합한 사업 내용인가, 사업집행 시에 적절한 법적 기반과 전문가, 학계, 지역주민, 환경단체들의 의견수렴구조가 마련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가, 사업성과는 목표한 바를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가 등을 점검해야 함. ○ 자생식물을 식재하고 생태학적으로 건강한 숲을 가꾸는 목적은 1차적으로 자연체험과 같은 이용이 아니라 식물종의 보전에 두어야 할 것임. 그러므로 자연체험과 환경교육 등에 사업목적들 경우 본 사업은 '산림휴양공간조성' 사업에 편입시키는 것이 훨씬 타당하리라 판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당기간 큰 사업비를 책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적

사업명	선정사유
	<p>인식이 낮아 국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 보완 필요 - H/W 중심의 실적 위주 성과지표인 지역생태숲 조성개수가 사업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함
산림휴양공간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에게 건전하고 저렴한 산림휴양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농·산촌의 관광개발과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 됨 - 제1차 삶의 질 기본계획뿐만 아니라 제2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이며 '산림문화 휴양 10개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상위 정책 목표에도 부합함 ○ 사업내용 보완 필요 - 자연친화적 휴양시설 보완을 위하여 환경·토목·건축 등 분야별 자문가 그룹의 심의 및 타당성 평가를 통한 목재와 황토 등 친환경 소재를 최대한 사용하여 친환경적 산림휴양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산촌주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산림휴양 잠재 수요를 보다 현실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됨. - 방문객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고려 요소가 됨을 감안하여야 함 - 전년도 평가결과에 대한 미흡한 사항이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다소 부족 - 산림휴양정책 발전방안 토론회를 실시했으나 매우 형식적으로 보임 - H/W 중심의 사업, 하달식 사업의 특성을 견지하고 있으며, 1988년 이후 지속된 사업이라 기여도도 크지만 변화된 시대적 여건에 대응하여 사업의 추진 방식의 변화를 도모할 필요 ○ 성과지표 개선 필요 - 성과지표로 실적 위주 성과지표인 시설 조성개수를 사용하고 있고, 이용 및 만족도 조사 결과 수치는 조사의 시기, 주체, 대상 등에 따라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자료이므로 사업의 특성을 잘 살리면서도 과학적인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

< 참고 3 >

'09시행계획 사업별 성과목표 달성도

사 업 명	성 과 지 표	측 정 기 준	단위	목표 (A)	실적 (B)	B/A (%)
1. 농산어촌 복지기반 확충(20)						
1-1-1-0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제도개선	농가소득중 건강보험료 경감액의 비율	세대당건강보험료 경감액/농가소득	%	0.83	1.11	133.7
1-1-2-0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제도개선	가입자 지원율	실제 지원인원/총지원대상인원	%	85	88	103.5
1-1-3-0 농작업 재해보상 지원	농업인안전공제 보상수준 달성률(%)	산재보험 보상수준 대비 농업인안전공제 보상수준 달성도	%	66	66	100.0
	공제가입률	공제가입자수/당해연도 농림업경제활동인구수	%	47.7	48.4	101.5
1-1-4-0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	어선원보험 가입률	가입어선원 /가입대상어선원	%	12.2	12.2	100.0
1-1-5-0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	-	-	-	-	-
1-2-1-1 농산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응급의료 취약지 해소율	취약지 군지역 중 응급의료기관 설치군	개	43	42	97.7
1-2-1-2 공공보건기관기반 확충	이용자 만족도	전문설문조사 기관 조사결과	%	85	88.4	104.0
1-2-1-3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	지역거점공공병원이용자만족도	설문조사 (전화, 면접 등)	점	78.5	80.3	102.3
1-2-3-1 농작업재해 원인구명 및 농작업 환경개선	논문게재	목표건수	건	8	9	112.5
	영농활용	목표건수	건	5	6	120.0
	특허출원	목표건수	건	3	7	233.3
	농업인 건강안전정보센터 방문자수/년	목표건수	천명	100	840	840.0
1-2-3-3 농작업 안전모델 조성사업	농작업 안전관리 실천율	농작업 안전보건 현황 점검 조사	%	80	80.14	100.2
	농작업 안전사고 감소율	농작업 안전사고 발생 모니터링 시스템	%	20	66.7	333.5
1-3-1-1 농산어촌 보육시설 확충	농산어촌 지역의 보육시설 확충	농산어촌 지역 보육시설 확충 개소수	개소	30	43	143.3
1-3-1-2 농산어촌 만 5세아 무상보육지원	지원아동수	총지원아동수	명	29,918	29,073	97.2
1-3-1-3 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지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비율	농어촌지역 영유아 중 양육비 지원인원 비율	%	62	66	106.5
	양육비 지원 만족도	재지원 신청자 설문조사	%	70	70	100.0

사 업 명	성 과 지 표	측 정 기 준	단위	목표 (A)	실적 (B)	B/A (%)
1-3-2-0 여성농어업인센터 설치 확대 및 내실화	여성농업인센터 계획대비 설치 비율	설치계획 ÷ 추진 실적	%	38	38	100.0
1-3-3-1 농어가 도우미 지원 확대	계획대비 지원율	계획대비 지원 실적	%	100	105.4	105.4
1-3-3-2 취약농가 인력지원	수혜자 만족도	친절도, 도움성, 필요성 등이 포함된 전반적 만족도를 5분위 척도로 조사하여 상위 2분위까지 비율을 산정	%	90.0	89.9	99.9
1-3-5-1 여성농업인 창업지원	지원후 3년차 사업장 매출액 조사결과	전년도 대비 매출액 향상정도	%	5	7.3	146.0
1-4-1-1 농산어촌 재가노인복지센터 확충	농어촌재가노인시설 신축 지원 수	보조금 지원 개소수	개소	13	13	100.0
1-4-2-4 농촌 건강장수마을 조성	생활만족도	개인과 마을의 활력도 및 삶의 질 향상 증가 비율	%	66	69.5	105.3
	건강장수환경만족도	노년문화 자부심 지역사회 활력화	%	81	81.3	100.4
1-4-3-0 경영이양 직불제 추진	경영규모 3ha 이상 농가수 비율(%)	(경영규모 3ha 이상 농가수 /전체 농가수)×100	%	7.46	7.50	100.5
2.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17)						
2-1-1-1 농산어촌 우수고교 집중육성	학교 구성원 만족도	수혜자 만족도 조사	%	65	73.38	112.8
2-1-1-4 한국농업전문학교 개편 운영	졸업생 영농정착률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 보고서	%	95.0	99.6	104.8
	졸업생 농가 평균소득률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 보고서	%	190	242.2	127.5
2-1-2-8 군단위 소규모 학교 통폐합	선정된 대상 군	군 개수	개	2	9	450.0
2-1-3-4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농산어촌 지역 수	시·도교육청이 방과후학교 운영을 지원한 기초자치단체 수	시·군	140	140	100.0
	농산어촌 지역의 방과후학교 만족도	농산어촌 지역 학생 만족도 조사 실시	%	67	68.7	102.5
2-1-3-6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육성	구성원 만족도	설문조사	%	70	72.8	104.0
2-1-4-2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유아학비 수혜율	만5세지원아동수/ 만5세취원아수	%	51.1	53.3	104.3
		만3~4세지원아동수/ 만3~4세취원아수	%	48.1	53.7	111.6
2-1-4-4 농어촌지역 사립유치원교사 처우개선	계획대비 지원율	계획대비 지원 실적	%	100	103	103.0
2-2-1-0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계획대비 지원율	계획대비 지원 실적	%	100	100.7	100.7
2-2-2-1 농산어촌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수혜자 만족도	전문기관의 만족도 조사보고서	%	85.0	86.2	101.4
2-2-2-2 농업 관련 대학생 장학금 지원	지원계획인원대비 지원실적	지원실적인원/계획인원 × 100	%	100.0	98.8	98.8
	지원계획금액대비 지원실적	지원실적금액/계획금액 × 100	%	100.0	99.9	99.9
2-2-3-1 초·중·고학생 급식비 지원	초·중·고 학생 급식비 지원	지원액	억원	992	1,361	137.2

사 업 명	성 과 지 표	측 정 기 준	단위	목표 (A)	실적 (B)	B/A (%)
2-2-3-2 지역농·수산계고 급식비	계획대비 지원율	계획대비 지원실적	%	100	121.7	121.7
2-2-4-2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배치	전담인력 배치 수	명	877	877	100.0
2-3-2-1 농산어촌 순회교원수당 및 복식수업수당	수당지급 교원수	수당지급인원/수당지급 대상인원×100	%	5,351	5,351	100.0
2-3-3-2 학교도서관 및 장서 확충	학교도서관 장서확충	학교도서관 장서 구입비	백만원	72,633	72,633	100.0
2-3-3-3 기숙형 고교 지정·추진	기숙형고교 지정	학교 수	개소	68	68	100.0
2-3-3-4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	구성원 만족도	설문조사결과	%	70	89.9	128.4
3.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34)						
3-1-1-0 지역개발 전문인력 육성 및 처번 확대	교육 인원	교육 이수 인원	명	5,720	8,340	146
3-2-1-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불량주택 정비(%)	(용자지원 대상주택 개량실적 누계치/전체 주택개량 목표치)×100	%	78	78.4	100.5
3-2-1-2 어촌종합개발사업	사업권역내 주민만족도	기준년도대비	%	67	67.9	101.3
	연평균어가소득증가율	기준년도대비	%	3.3	5.3	160.6
3-2-1-3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산촌생태마을 조성수	도의 실적보고서	개소	30	30	100.0
	산촌주민 만족도	외부기관 용역	점	86	88.56	103.0
	산촌마을 소득증가율	"	%	9.5	9.62	101.3
3-2-2-1 소도읍 육성사업	단위사업 공정률	공정률 산정	%	95	97.5	102.6
3-2-2-2 면소재지 활력증진사업	사업착수(누계)	사업착수실적	권역	4(8)	4(8)	100.0
3-3-1-1 농산어촌 주거환경 개선	불량주택 정비(%)	(용자지원 대상주택 개량실적 누계치/전체 주택개량 목표치)×100	%	78	78.4	100.5
3-3-2-1 면단위 생활용수개발	면단위 급수보급률(%)	면단위 급수인구/총인구	%	59.7	59.8	100.2
3-3-2-2 마을단위 생활용수개발	용수공급율	사업추진 마을수/사업대상마을수	%	85.8	85.8	100.0
3-3-2-3 면단위 하수도	농어촌지역하수도 보급률	(하수처리구역내 인구/전체인구) × 100	%	50.1	51	101.8
	농어촌지역 오염 물질삭감량	1일 하수처리장 유입하수량 × 유입하수의 수질(BOD농도) - 1일 하수처리장 배출수량 × 배출수질(BOD농도)	톤/일	78.0	92.0	118.0
3-3-2-4 소하천 정비	소하천정비율	소하천정비 거리	km	314	417	132.8
3-3-2-5 폐기물처리시설 지원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의 폐기물처리량증가율	폐기물처리량 증가율	%	0.2	5.1	2,550
3-3-2-6 농촌폐비닐 수거비 지원	폐비닐 수거율	폐비닐발생량 대비 수거율	%	67.8	68.1	100.4
3-3-2-7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설치대수	인양기 설치대수	%	105	105	100.0

사 업 명	성 과 지 표	측 정 기 준	단 위	목표 (A)	실적 (B)	B/A (%)
3-3-2-8 해양폐기물 정화 및 쓰레기 수거사업						
해양폐기물 정화사업(민간대행)	해양폐기물 수거처리물량	설계량 대비 실제수거물량 비교	%	100	108	108.0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지자체보조)	쓰레기 수매사업 확대실적	전년대비 확대실적	개소	47	50	106.4
3-3-2-9 양식장 정화 사업 지원	어장정화사업 추진 진척도	대상면적 계획대비 실적	ha	5,761	5,924	102.8
3-3-2-10 해수욕장주변정비 및 시설개선사업						
시설개선해수욕장수	사업시행 개소수	사업시행	개소	20	20	100.0
철조망 제거	철조망 길이	목표대비 제거율	%	4.1km	4.1km	100.0
3-3-3-1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추진 공정	계획대비 실적	%	95	파악중	
3-3-3-2 교통서비스 강화	'09년 분권교부세 집행	예산집행실적	억원	65	60	92.3
	'09년 지방비 집행	예산집행실적	억원	473	573	121.0
3-3-3-3 국고여객선 건조	건조공사 공정률	공정률	%	100	100	100.0
3-3-3-4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도서민 수송실적	연안여객 수송실적	천명	3,800	3,700	97.4
3-3-4-1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시행면(구)	목표대비 추진실적	면(구)	550	550	100.0
3-3-4-3 도서종합개발사업	연육·연도교추진실적	종합계획대비 연차별추진실적	%	30	30	100.0
	제3차 도서종합 개발계획추진실적	종합계획대비 연차별추진실적	%	7.7	7.7	100.0
3-3-5-1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건립지원 도서관수	국고보조금 지원 도서관 수 파악	개관	17	17	100.0
3-3-5-5 지방문화원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수	사업실적 보고	개수	150	137	91.3
3-3-5-6 테마과학관 건립지원	건립지원수	지원실적 (계수통계확인)	개소	8	10	125.0
3-3-5-7 수목원 조성 및 산림박물관 건립	식물유전자원 누적 확보량	공립수목원의 식물 유전자원 확보량 평균	종	1,700	1,757	103.4
3-3-5-8 농어촌복합체육시설	지원 개소수	지원 실적	개	7	7	100.0
	지원액	기금집행액 실적	억원	37.5	37.5	100.0
3-3-6-1 정보화 마을 조성	마을당 평균 전자상거래 판매금액(백만원)	온라인 총 판매액/마을수 ※온라인 판매금액 500만원 이상 발생한 마을만 집계	백만원	50	51	102.0
	일반국민·주민 참여도	마을홈페이지 총 게시글수 /마을수	건수	6,500	7,119	109.5
3-3-6-3 농업경영체 정보시스템 구축	고객만족도(점)	7등급 척도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점	70	76.3	109.0
	생산경영정보시스템 사용에 따른 업무효율성 향상도(%)	업무처리시간(도입전·도입후) / 업무처리시간(도입전) × 100	%	29.5	29.6	100.0

사 업 명	성 과 지 표	측 정 기 준	단위	목표 (A)	실적 (B)	B/A (%)
3-3-6-4 디지털어촌 구축사업	어업인정보화교육	교육인원	명	5,000	6,087	121.7
	정보화활성화정도	활성화정도	%	81.1	84.1	103.7
3-3-7-1 농업인 정보화 교육	교육만족도	조사결과의 평균치(5등급 척도)	점	4.15	4.25	102.3
	정보화역량점수	조사결과의 평균치	점	55	60.7	110.4
3-3-7-3 농어업 관련 정보제공 확대	정보서비스 활용 증가율	전년대비 콘텐츠 활용도 증가율	%	10.3	12.66	122.9
	이용자 만족도	이용자 대상의 5점척도 만족도 조사	점	82	78.95	96.3
4. 농산어촌형 복합산업 활성화(25)						
4-1-1-1 향토자원의 조사·발굴 및 DB구축	향토자원 산업화 유망자원 발굴	산업화 유망 향토자원 DB 건수	건	130	528	406.2
	향토자원 산업화 유망자원 DB구축	농촌공익기능정보시스템 상 자료 게시여부	건	130	133	102.3
4-1-1-2 농촌활력증진사업	일자리창출	실태조사	명	2,000	2,546	127.3
	향토자원 산업화 실적	"	건수	49	49	100.0
4-1-1-3 향토음식 자원화	향토음식 상품화 증가율	지원후 2년차 이상되는 사업장의 상품화 증가율	%	10	18.3	183.0
4-1-2-0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한 농공단지 조성	농공단지 조성율	농공단지조성 개수	단지	354	332	93.8
4-1-3-0 농어어업인 고용촉진훈련	취업률	(조기취업+수료후취업)/(수료인원+조기취업)×100	%	43.7	47.0	107.6
4-2-1-1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마을 방문객 수	총 방문객 수	천명	3,232	3,626	112.2
	농촌관광 매출액	총 매출액	억원	460	445	96.7
4-2-1-2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마을당 방문객수	농촌전통테마마을 전체 방문객 수/ 마을 수 (조성기간 마을은 제외)	천명	14	15.7	112.1
	마을당 매출액	농촌전통테마마을 전체 도농교류 매출/ 마을 수 (조성기간 마을은 제외)	백만원	97	103	106.2
4-2-1-3 문화역사마을 조성	주민만족도	리커트 5점 척도 설문조사	%	80	85	106.3
4-2-1-4 어촌체험마을 조성	체험객수	체험마을 체험객수	천명	640	744	116.3
	체험소득	체험마을 체험소득	백만원	12,920	16,759	130.0
4-2-1-5 어촌관광활성화 사업	어업인만족도	기준년도 대비	%	67	67.5	100.7

사 업 명	성 과 지 표	측 정 기 준	단위	목표 (A)	실적 (B)	B/A (%)
4-2-1-6 산림휴양공간 조성 및 수목원 조성	국유림	보완	개소	37	37	100.0
	공유림	설계·조성·보완	개소	48	48	100.0
	산림욕장	설계 및 조성	개소	16	16	100.0
4-2-1-8 농업농촌 테마공원조성	테마공원조성사업 대상주민 만족도	만족도	%	75	88	117.3
4-2-1-11 해양관광자원개발	계획대비 추진실적	계획대비 집행실적	%	13,189	13,189	100.0
4-2-2-3 농촌체험교육농장	농장당 체험프로그램 참가자수	교육농장 시범사업 시행 후 체험학생 수	명	1,880	2,138	113.7
	농장당 매출액	농외소득을 제외하고 교육농장 운영을 통한 농장당 매출액	천원	21,845	35,616	163.0
4-2-4-0 향토문화 관광축제 육성	문화관광축제 총 관광객수	2008년 문화관광축제 참여 관광객	백만명	38	30	78.9
	문화관광축제 총 경제파급효과	2008년 문화관광축제 경제 파급효과	억원	17,000	13,000	76.4
4-3-1-0 경관보전 직불제	지역활성화 프로그램 연계도	시행마을/연계마을 × 100	%	84	80	95.2
4-3-2-1 농촌경관 및 어메니티 자원 관리			-	-	-	-
4-3-2-2 농촌어메니티 계획모델 개발 및 보급	농촌어메니티 자원활용 라이브러리 체계 개발	개발 건수	건	1	1	100
4-3-3-0 농산어촌형 경관주택 발굴·보급	농어촌주택모델 개발 실적	개발 실적	종	12	12	100
	전시 및 홍보	방문객	명	40,000	49,000	122.5
4-3-4-0 자생식물 식재 및 생태숲 조성	지역생태숲 조성개수	지역생태숲 누적 조성개수	개소	38	38	100
4-3-5-0 경관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농어촌경관계획수립 지침(요령) 만족도	설문조사	점	3.5	3.5	100
4-3-6-1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이탈농 지지율 대비 당해년 정주농 비율	시·군에서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Agrix)으로 제출한 연도별 농가수로 산출	%	98.5	100	101.5
4-4-1-0 1사 1촌 운동	1사1촌 마을당 교류횟수	당해연도 교류횟수 / 누계자매 결연 마을수	회	5.6	6.5	116.1
4-4-2-1 도시민 농산어촌 주택갯기 활성화	도시민 유치비율(% , 누계)	도시민 유치가구수 /도시민유치목표 ×100	%	30	30	100.0
4-4-3-1 도농교류활성화	체험마을방문객수 증가율	(당해년도 실적-전년도 실적)/전년도 실적*100	%	15	29.1	193.3
	포털이용자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기관을 통한 설문	%	82	84	102.4

< 참고 4 >

제1차 기본계획 부분별 투융자 계획 대비 실적

사업분류	투융자 실적(2005~2009)								비고
	합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소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총133개 과제 (예산 124개, 비예산 9개)									
기본계획	202,218	116,570	44,309	42,014	21,405	8,597	80,786	5,107	
추진실적	228,900	125,064	33,908	58,625	25,998	6,256	92,789	11,321	
1. 농산어촌 복지기반확충									
기본계획	33,712	25,860	19,723	94	6,043	0	7,437	415	
추진실적	34,551	23,332	18,163	119	4,870	180	7,870	3,349	
1-1. 사회안전망 확충									
기본계획	14,629	14,629	11,229	0	3,400	0	0	0	
추진실적	15,910	12,715	11,375	0	1,160	180	0	3,195	
1-2. 보건·의료기반 확충									
기본계획	9,015	5,606	3,391	94	2,121	0	3,409	0	
추진실적	8,418	5,170	3,223	115	1,832	0	3,247	0	
1-3. 영유아 및 여성복지 지원 강화									
기본계획	7,056	3,100	2,581	0	519	0	3,541	415	
추진실적	8,260	3,960	2,086	0	1,875	0	4,146	154	
1-4. 노인복지 증진									
기본계획	3,012	2,525	2,522	0	3	0	487	0	
추진실적	1,963	1,486	1,480	4	3	0	477	0	
2. 농산어촌 교육여건개선									
기본계획	31,474	9,374	5,914	681	2,129	650	22,059	41	
추진실적	37,862	8,113	3,133	0	4,708	272	28,036	1,714	
2-1. 학생의 교육기회 강화									
기본계획	14,854	4,773	2,644	0	2,129	0	10,081	0	
추진실적	18,704	5,730	1,008	0	4,708	14	12,975	0	
2-2. 학생의 교육부담 경감									
기본계획	14,557	3,538	2,327	561	0	650	10,978	41	
추진실적	10,787	2,266	2,008	0	0	258	8,445	77	
2-3. 교원 근무여건 및 교육환경 개선									
기본계획	2,063	1,063	943	120	0	0	1,000	0	
추진실적	8,371	117	117	0	0	0	6,617	1,637	

사업분류	투융자 실적(2005~2009)								비고
	합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소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특세	기금등			
3. 농산어촌 지역개발촉진									
기본계획	103,927	63,938	12,152	31,994	12,171	7,621	35,355	4,634	
추진실적	125,744	72,129	10,523	41,134	15,076	5,396	47,598	6,013	
3-1. 인적역량강화									
기본계획	118	118	118	0	0	0	0	0	
추진실적	41	41	41	0	0	0	0	0	
3-2. 농산어촌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종합개발									
기본계획	32,115	17,218	506	14,441	2,271	0	10,513	4,384	
추진실적	27,308	13,599	294	9,697	3,608	0	10,221	3,488	
3-3. 기초생활여건 개선									
기본계획	71,694	46,602	11,528	17,553	9,900	7,621	24,842	250	
추진실적	98,395	58,489	10,188	31,437	11,468	5,396	37,377	2,525	
4. 농산어촌형 복합산업 활성화									
기본계획	33,105	17,398	6,520	9,245	1,062	326	15,935	17	
추진실적	30,171	21,491	2,089	17,373	1,344	409	8,712	245	
4-1. 향토산업의 진흥									
기본계획	2,661	2,642	87	2,542	13	0	19	0	
추진실적	17,381	13,374	108	13,259	8	0	3,893	114	
4-2. 체험·휴양기반 구축 및 활성화									
기본계획	18,676	6,205	43	4,813	1,029	320	12,454	17	
추진실적	7,487	4,164	42	2,439	1,274	409	3,201	123	
4-3. 농산어촌의 경관보전 및 어메니티 자원화									
기본계획	9,833	6,956	6,157	528	20	6	3,122	0	
추진실적	3,391	2,418	1,516	562	62	0	1,246	4	
4-4. 도농교류 활성화									
기본계획	1,935	1,595	233	1,362	0	0	340	0	
추진실적	1,912	1,535	422	1,113	0	0	373	4	



제 II 장

부문별 평가편

제1절 농산어촌 복지기반 확충



(복지확충)부문 점검·평가 보고서

(복지팀)

평가팀장 최 경 환 (인)	평가위원 손 재 범 (인)
평가위원 조 혜 정 (인)	평가위원 김 태 완 (인)
평가위원 이 윤 근 (인)	평가위원 (인)

I. 총 평

- 2009년도에 농산어촌 복지확충분야는 총 20개 사업이 추진되었음
 - 2008년도의 22개 사업에 비해 2개 사업이 줄어들었음. 2개의 연구사업(농작업재해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노인봉사원 활동 프로그램 개발)이 종료되었기 때문임
- 총 20개 사업을 사업성격별로 분류하면 일반사업 10개, 소규모사업 6개, 연구사업 1개, 지방이양사업 2개, 비투융자사업 1개임
- 점검·평가보고서는 20개 사업 전체에 대하여 작성하였으나 평점과 순위는 일반사업(10개)과 소규모사업(6개)을 대상으로 하였음
- 복지확충분야 사업은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수행된 것으로 판단됨. 평가가 자체점검평가서에 의존하여 서면평가로 이루어져 평가상 한계가 있으나, 16개 사업의 점수가 모두 80점대로 높은 편이고 상위 사업과 하위 사업 간 편차도 크지 않음
 - 다만, 16개 사업을 상위, 중위, 하위 사업으로 구분·선정하도록 되어 있어 점수 순에 따라 상위 사업 3개, 중위 사업 11개, 하위 사업 2개를 선정함
 - 상위 사업은 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지원 사업과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 사업 및 농어업인 국민연금제도 개선 사업임
 - 하위 사업은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 사업과 농산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사업임

- 농어업인에게 전반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대체로 높은 평점을 받는데 비해, 혜택이 일부 농어업인에게 주어지거나 하드웨어를 확충하는 사업은 평점이 낮은 경향이 있음
-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시행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개별 사업 목표와 기본계획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II. 평가결과

1. 부문별 평가결과표

코드번호	사업명	평가점수	순위	등급	비고
1-1-1-0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제도개선	90.4	2/16	상위	
1-1-2-0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제도개선	89.8	3/16	상위	
1-1-3-0	농작업 재해보상 지원	88.0	5/16	중위	
1-1-4-0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	86.4	8/16	중위	
1-2-1-1	농산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83.4	15/16	하위	
1-2-1-2	공공보건기관 기반 확충	84.0	14/16	중위	
1-2-1-3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	82.8	16/16	하위	
1-2-3-3	농작업 안전모델 조성사업	86.8	6/16	중위	
1-3-1-1	농산어촌 보육시설 확충	84.2	13/16	중위	
1-3-1-2	농산어촌 만 5세아 무상보육지원	88.8	4/16	중위	
1-3-1-3	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지원	90.6	1/16	상위	
1-3-3-2	취약농가 인력지원	86.6	7/16	중위	
1-3-5-1	여성농업인 창업지원	84.8	12/16	중위	
1-4-1-1	농산어촌 재가노인복지센터 확충	85.0	11/16	중위	
1-4-2-4	농촌 건강장수마을 조성	85.8	9/16	중위	
1-4-3-0	경영이양 직불제 추진	85.8	9/16	중위	
평 균		86.45			

* 순위는 일반사업, 소규모사업만 대상으로 함

2. 평가 상위사업

- 상위 사업은 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지원 사업과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 사업 및 농어업인 국민연금제도 개선 사업임
- 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지원 사업은 농어업인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고 농어촌 지역 사회의 활력을 유지함은 물론,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농어촌 저출산 문제 해결로 농어촌 공동체 복원에 기여함으로써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삶의 질 향상 계획비전에 매우 적합함
 -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 자격심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였고,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였음
 -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기본계획에서 지원수준을 확대키로 함
 - * 지원수준(시설이용/미이용) 70%/35%('09) → 90%/60%('12)
 - 자격심사 강화를 통해 부정 수급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함
 - 농어업인의 양육비 부담이 연간 838억원 경감되어 육아 부담이 경감되었고, 만족도 조사 결과 당초 목표(70%)를 달성함
 -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수준의 지속적 확대 필요함
-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 사업은 농어촌의 열악한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개방화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함
 - 지침을 통해 연간 사업 일정 및 자금배정계획을 명시하여 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일체조사를 통해 신규자 및 부적격자 발굴로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함
 -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의 역할 분담과

긴밀한 협조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

- 관계부처 및 국회 등의 협조를 얻어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방안을 조속히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제도 개선 사업은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면서 농어업인의 안정적 노후를 대비하려는 사업목적은 머지않아 도래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함
- 2007년 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된 후 처음으로 지원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신규자 및 부적격자를 발굴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
- 협업부부농 중 여성농업인에 대해 연금보험료 지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농어업인의 안정적 노후 대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2014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3. 평가 하위사업

- 하위 사업은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 사업과 농산어촌 응급 의료 인프라 구축 사업임
-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 사업은 농어촌지역의 취약한 의료 여건을 개선하고 민간의료기관과는 다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거점병원의 육성은 농어촌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농간 건강불평등 해소에 도움을 주는 사업임
- 그러나 지역거점병원의 지역별 분포와 지원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실제적으로 농어촌지역 군에 위치한 지역거점 병원들의 지원들에 대한 파악이 어려움
- 농어촌 의료기관들은 충분한 의료인력의 확보가 어렵음. 그러나 사업이 주로 시설에 대한 개선과 증설, 직원교육 등으로 구성

되어 있어 양질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방안마련이 동시에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과거 일률적으로 지원되어 오던 국고지원방식을 경영평가를 토대로 '선택과 집중'에 의해 지원함으로써 거점병원 간 경쟁과 서비스 향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그러나 예산확보를 위해 과도한 병원 간 경쟁, 평가지표 선정 및 평가의 공정성, 무리한 서비스제공으로 인한 경영악화 등의 문제를 사전에 탐지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농산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사업은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을 고려하여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43개 군 지역에 대해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동 기관에 인력,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것임
 - 그러나 사업 관련계획의 수립시 기본방향 설정과 평가는 전국 단위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농어촌지역의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가능하다면 기본방향 설정과 평가과정에서 지역별 특성(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도농간 응급의료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진료, 병원단계에서의 진료 등이 매우 중요함. 그러나 현재 계획에서는 병원단계에서의 진료는 담고 있으나 이송과 이송과정에서의 진료는 문제제기로 끝나고 있어 향후 계획 수립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모니터링체계는 예산배분 후 적절히 시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고 대안과 피드백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라 하기에 한계가 있어, 향후 제도발전과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체계(의견 수렴 과정 포함)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의 경우 43개 전체지역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그러나 단순히 43개 지역에 대한 예산지원 여부 보다는 실질적으로 예산지원을 통해 응급의료시설이 확보되고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함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성과지표로 “응급의료 취약지 해소율”를 두고 있으나 이는 예산 지원이 이루어진 기관을 중심으로 파악한 것으로 실질적인 응급 의료체계가 완비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따라서 추가적인 성과지표의 설정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Ⅲ. 평가소감

- 삶의 질 향상계획에 대한 점검·평가작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부처별 자체점검·평가보고서 제출, 서면평가, 현장확인 등 각각의 단계별 시기를 정할 필요가 있음
- 부처별 점검·평가보고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측면이 있어 보고서만으로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음
- 제1차 기본계획(05~09)은 범정부적 차원의 접근이었다는데 의미가 있으나, 기존 정책을 재구성한데 머물렀고 중앙부처와 농업인 간의 교류를 통한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되지 못한 것은 한계라고 판단됨
 - 제2차 기본계획의 시행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주도의 상향식 농촌복지 대책과 삶의 질 서비스 기준이 마련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기능과 목적이 유사한 사업들이 서로 다른 정부부처 간에 운영되고 있는데, 당초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함
 - 만5세아 무상 보육지원(보건복지부)과 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 지원(농림수산식품부)
- 평가결과가 사업추진 과정에 반영되지 않아 매년 동일한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는 한계가 있음. 평가 결과와 평가 의견이 사업 내용 및 예산 책정 등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1-1-1-0(계속)	농어업인국민건강보험제도개선(농식품부)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

담당부서	농촌사회과	담당자	박성우(서기관)
전화번호	02-500-1819	이메일	tengrps@korea.kr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추진근거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 의료이용 접근성이 낮고 개방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하여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4년 ~
- 총사업비 : -억원('09년까지 기투자액 : 6,893억원)
- 사업규모 : 당해연도 경감대상 농어업인
('09년까지 완료사업 물량 : 3,175천세대 지원)
- 지원형태 : 민간보조(건강보험공단)
- 지원조건 : 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천 세대)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690	6,360	-	-	-	-	-	6,360
'05	609	666	-	-	-	-	-	666
'06	599	1,359	-	-	-	-	-	1,359
'07	532	1,272	-	-	-	-	-	1,272
'08	451	1,356	-	-	-	-	-	1,356
'09	499	1,707	-	-	-	-	-	1,707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천 세대)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570	6,552	-	-	-	-	-	6,552
'05	604	666	-	-	-	-	-	666
'06	521	1,340	-	-	-	-	-	1,340
'07	504	1,431	-	-	-	-	-	1,431
'08	484	1,559	-	-	-	-	-	1,559
'09	457	1,559	-	-	-	-	-	1,559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성과지표) : 농가소득 중 건강보험료 경감액의 비율(건강보험료 경감액/농가당 소득)
- (목표치) 0.83% → (실적치) 1.11%
- 총경감금액(340,520천원)/농가총소득(30,523백만원)=1.11%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가소득중 건강보험료 경감액의 비율	세대당건강보험료 경감액/농가당 소득	%	0.83	1.11	133

II. 평가결과

1. 총 평

- 농어촌의 열악한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개방화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함
 - 2009년도에 457천 세대가 1,559억원의 지원을 받았음.
 - 건강보험료 1인당 지원액이 2008년 575천원에서 2009년 604천원으로 증가하였음
- 농림수산식품부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 등 관련 부처와 협조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
- 농어업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못한 실정임. 2010년에는 마무리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농어촌의 열악한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개방화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함
- 지침을 통해 연간 사업 일정 및 자금배정계획을 명시하여 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일체조사를 통해 신규자 및 부적격자 발굴로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함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농림수산물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의 역할 분담과 긴밀한 협조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
- 건강보험료 차등지원을 위한 관련 법안을 제출하였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음
- 리플렛 제작 배포 및 포털을 통한 사업 홍보를 추진함
 - 다만, 시기가 하반기인 것은 아쉬운 점이며, 상반기로 당겨 실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임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건강보험료 1인당 지원액이 2008년 575천원에서 2009년 604천원으로 증가하였음
- 성과지표의 재검토가 필요함
 - 농가소득 중 경감액 비율(세대당 건강보험료 경감액/농가소득)을 지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동일한 경감액이더라도 농가소득이 낮아지면 비율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음

3. 개선방안 등

- 홍보 시기를 상반기로 당겨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건강보험료 지원 절차와 서식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법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방안이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국회 등의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음

1-1-2-0(계속)	농어업인 국민연금제도 개선(농식품부)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	---

담당부서	농촌사회과	담당자	박성우(서기관)
전화번호	02-500-1819	이메일	tengrps@korea.kr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추진근거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및 농어업인의 노후소득 보장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5년 ~ 2014년
 - * '07년 1월에 보건복지부에서 농림부로 이관
- 총사업비 : -억원('09년까지 기투자액 : 6,106억원)
- 사업규모 : 국민연금지역가입자 중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지원조건 : 국고 100%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천명)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81	3,839	-	-	-	-	-	3,839
'05	217	605	-	-	-	-	-	605
'06	263	673	-	-	-	-	-	673
'07	275	761	-	-	-	-	-	761
'08	273	884	-	-	-	-	-	884
'09	253	916	-	-	-	-	-	916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천명)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411	3,690	-	-	-	-	-	3,690
'05	317	605	-	-	-	-	-	605
'06	301	673	-	-	-	-	-	673
'07	288	731	-	-	-	-	-	731
'08	275	793	-	-	-	-	-	793
'09	230	888	-	-	-	-	-	888

-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자 중 일부가 연금수급 대상으로 전환(해당 연령 도달) 및 비지원 대상(개인사업자 등록, 농어업 포기 등)으로 분류됨에 따라 지원 인원 감소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성과지표 : 가입자 지원율(실제 지원인원/총 지원대상인원)
 - (목표치) 85% → (실적치) 88%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총납부인원(273,291명) / 총지원대상인원(309,635명)=88%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가입자 지원율	실제 지원인원/ 총지원대상인원	%	85	88	103.5

II. 평가결과

1. 총 평

-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면서 농어업인의 안정적 노후를 대비하려는 사업목적은 머지않아 도래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함
- 2007년 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된 후 처음으로 지원자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신규자 및 부적격자를 발굴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
-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 하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협업부부농 중 여성농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2014년 이후에도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면서 농어업인의 안정적 노후를 대비하려는 사업목적은 머지않아 도래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함
- 2007년 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된 후 처음으로 지원자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신규자 및 부적격자를 발굴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조 하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관련법 및 지침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의 적법성을 확보함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농어업인 및 읍면 공무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함
- 다만, 국민연금공단 제작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포스터 배부 협조 요청이 연말에 실시된 것은 아쉬운 점임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기준소득금액을 67만원에서 73만원으로 인상하여, 연간 최대 지원가능액이 362천원에서 394천원으로 약 9% 증가함
- 성과목표치를 좀더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 2008년 84% → 2009년 85%
-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기준 소득수준을 상향조정한 것은 바람직함

3. 개선방안 등

- 연금보험료 지원기준 소득수준을 중위수(지원자중 50%에 해당하는 지원자수)까지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 협업부부농 중 여성농업인에 대해 연금보험료 지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농어업인의 안정적 노후 대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2014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1-1-3-0(계속)	농작업 재해보상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	--------------------------

담당부서	농업금융정책과	담당자	이두형(주무관)
전화번호	02-500-1743	이메일	dhlee1@mifaff.go.kr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작업과 농기계 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당하는 경우 신체나 농기계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여건 조성
- * 사업추진 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6년 ~ 계속
- 사업비 : 1,848억원('09년 까지 투자액)
- 사업규모('09) : 농업인 791천명, 농기계 28천대
- 추진내용 :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 보장을 위해 농업인재해공제의 공제료 일부 지원
- 지원조건 : 국고 50%, 자부담 50%
- 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농협중앙회
 - 사업추진절차 : 사업시행계획 수립 → 공제상품판매(농협, 연중) → 자금교부 요청·집행 → 정산
- ※ 농업인재해공제는 농업인안전공제와 농기계종합공제로 구분
 - 농업인안전공제 :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만15세~84세)의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신체상해 등 손해를 보상
 - 농기계종합공제 : 농기계 파손 및 고장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

3. 연차별 추진계획

- 농업인 실익증대를 위해 농업인안전공제의 대상 및 보장수준을 연차적으로 산재보험 수준으로 확대
 - '13년까지 보장수준을 산재보험 수준(사망시 90백만원)으로 지속 확대
 - * 사망시 보장수준 한도 : ('06)25 → ('07)35 → ('08)45 → ('09)60 → ('13)90
- 농기계 품목확대 및 보장내용 지속 강화
 - 농기계 : ('08)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이앙기, 승용관리기, 항공방제기, 광역살포기, 베일러 → ('09 추가)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248	1,124	-	-	-	-	1,124	2,248
'05	228 (768천명, 12.5천대)	114	-	-	-	-	114	228
'06	366 (768천명, 12.5천대)	183	-	-	-	-	183	366
'07	454 (818천명, 12.5천대)	227	-	-	-	-	227	454
'08	556 (818천명, 15천대)	278	-	-	-	-	278	556
'09	644 (796천명, 15천대)	322	-	-	-	-	322	644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200	1,100					1,100	2,200
'05	228 (702천명, 8.5천대)	114					114	228
'06	342 (653천명, 10.4천대)	171					171	342
'07	430 (740천명, 12천대)	215					215	430
'08	430 (764천명, 14천대)	278					278	556
'09	644 (791천명, 28천대)	322					322	644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공제가입률은 목표 가입률 47.7% 대비 0.7%p 증가한 48.4% 달성하여 계획대비 101.5% 달성
 - 가입률: (목표) 47.7% →(실적) 48.4%
 - ※ 농림업경제활동인구: '08년 1,633천명(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사망시 보상수준을 계획대비 100% 달성
 - 보상수준(사망시) : (목표) 60백만원 →(실적) 60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업인재해공제	농업인안전공제 보상수준 달성률(%)	산재보험 보상수준 (90백만원)대비 농업인안전공제 보상수준 달성도 측정	%	66	66	100.0
	공제가입률	공제가입자수/ 당해연도 농림업경제활동인구수	%	47.7	48.4	101.5

II. 평가결과

1. 총 평

- 농어업인은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농어업인이 농어작업이나 기계사고로 인한 신체나 재산(농기계)상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수단임
- 보상수준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함
- 정부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농협(NH보험분사)은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보상수준과 대상기종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산재보험에 비해 아직도 보장수준이 낮은 수준임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농어업인은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농어업인이 농어작업이나 기계사고로 인한 신체나 재산(농기계)상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수단임
- 보상수준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함
- 보상수준 확대, 상품개선,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가입률(가입자수 증가)을 높이려는 것은 바람직함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정부는 농업인의 공제료 일부를 지원하고, 사업은 농협NH보험분사에서 전국적인 사업망을 통해 판매·관리하는 것은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일부 도, 시, 군에서는 지자체가 일부를 보조하면서 농업인의 가입을

권장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함

- 농어업인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보상수준을 다양화하고, 대상기종을 추가한 것은 바람직함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보상수준의 확대(45백만원→60백만원), 농기계종합공제의 대상기종 확대(9종→12종) 등으로 보다 많은 농업인의 참여기회를 제공하였음
- 가입률은 당초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보다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는 목표 가입률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 2009년에 혜택을 받은 농업인 현황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임

3. 개선방안 등

- 지속적으로 보상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있으나 산재보험과 비교하여 아직 보상수준이 낮아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
- 상품 개선 및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이 가입하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1-1-4-0(계속)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농림수산식품부)		
-------------	------------------------	--	--

담당부서	수산개발과	담당자	양진문(사무관)
전화번호	02-500-2325	이메일	jinmoon@mifaff.go.kr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을 제고로 어선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어선 소유자의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지원
- 근거법령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78년 ~ 계속
- 사업규모 : 연근해 어선에 승선한 어선원(122천명)중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차등 지원
- 지원조건
 - 순보험료(10톤미만 70%, 30톤미만 60%, 50톤미만 30%, 100톤미만 20%) 및 운영사업비(부가보험료의 70%) 보조
- 시행방법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하는 사회보장 성격의 비영리 정책보험으로 수협중앙회에 위탁·운영하고 회원조합이 업무를 대행
- 추진내용
 -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어업인의 보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가입률 제고 추진 ※ 어선원보험 가입률 : ('08) 12.1% → ('09목표) 12.2%
 - 어업인의 자발적인 보험가입 유도를 위해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한 노력 지속 추진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296	0			2,296
'06	1식			180				180
'07	1식			201				201
'08	1식			265				265
'09	1식			364				364
'10	1식			629				629
'11	1식			657				657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830	180			1,010
'07	1식			201				201
'08	1식			265	100			365
'09	1식			364	80			444

※ 기금 등 : 수산발전기금에서 용자집행 (2년거치 3년상환, 연4%)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
 - 성과지표 : 전국 어선원보험 가입률(목표 12.2%, 실적 12.2%)
 - '09년도 어선원보험 가입율 목표치를 전년 12.1%보다 0.1% 상향 설정하여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어업인정책보험 사업	어선원보험 가입률	수협중앙회의 전국 어선원 보험 가입 집계자료	%	12.2	12.2	100

II. 평가결과

1. 총 평

- 농·어업인의 산업재해율이 타 산업에 비해 높고, 또한 대부분이 영세 어업인(특히 5톤 미만)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이들의 재해 보상 지원을 위한 국가지원 사업은 반드시 필요함
- 이러한 국가 지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보험료의 국고 지원율을 어선규모로 차별화하고, 사업 진행 방식에 있어 매년 현장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수정 보완해 나가는 사업절차의 합리성도 매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사업 성과관리 지표가 매년 목표치로 선정된 보험 가입을만을 단순 비교함으로써 매년 관성화된 사업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즉, 사업의 질적 발전을 위한 심화된 평가방법(예를 들면 사업 심층 면접 조사를 통한 실행도 평가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임
- 또한 보험 가입률 목표를 전체 가입률만으로 단순화하지 말고 선박규모, 지역별, 연령, 수입, 기타 개인별 특성으로 세분화하여 어떤 계층에서 가입률이 저조한지를 정밀 분석하여 취약 계층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문제는 08년 평가에서도 동일한 문제로 지적되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음
- 향후 사업내용을 보험료 지원 사업만이 아닌 재해 예방교육 및 시스템 지원과 같은 사전 예방 사업부분을 추가할 것을 제안함
- 또한 장기적으로는 농업인 재해보상보험과 같은 복지지원 사업과 어떻게 통합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 비전과 전략이 준비되어야 할 것임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2차에 걸친 현지 실사를 통해 문제점 개선을 위한 어업인 의견 수렴을 거친 것은 매우 잘 된 부분임. 특히 어선수리소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휴향으로 인정한 휴향제도 개선은 현장의 문제점을 반영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지 실사라는 사업진행 방식이 단순하게 문제점 및 기타 의견수렴을 위해 매년 반복되는 절차적 행위에 그치는 아쉬움이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현장 실사가 아닌 좀 더 구체적이고 표준화된 심층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FGI) 기법 등이 추가되었으면 하고 그 결과가 실적으로 보고 되었으면 함
- 또한 사업의 목표와 성과 지표 관리가 대부분 보험가입률 제고에 맞추어져 있다는 한계가 있음. 이러한 양적목표 외에 보험 서비스 과정(보상, 재할, 기타 행정 절차 등)에서의 문제점 평가와 보완을 위한 질적목표가 사업 계획에 반영되었으면 함
- 이러한 질적 보완을 통해 가입률 제고를 위한 다각화 된 사업 계획이 추가될 수 있을 것임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정부, 해상노련, 수협 등이 참여한 협의체 운영은 적절한 사업 추진 방법으로 평가됨
- 그러나 피보험자의 주체로 참여하는 해상노련의 경우 대부분이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되는 어선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5톤 미만의 영세 어업인들은 상당 부분 해상노련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추진 주체의 참여폭을 확대하기 위해 해상노련 외에 영세어업인의 대표자를 참여시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가입률 목표치 달성 결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사업성과 지표를 가입률로만 평가하는 것 보다는 하위 목표에 대한 차별화된 목표치가 제시되었으면 함
- 즉, 선박 규모별, 지역별, 연령별, 기타 개인별 특성에 따른 가입률 특성이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된 후 취약 계층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장기적으로는 가입률로 평가하고 있는 양적 평가 외에 보험 서비스 절차와 내용 등을 평가하는 질적 평가지표가 개발되어 수행되어야 함

3. 개선방안 등

- 가입률에 대한 성과 지표를 선박 규모별, 지역별, 연령별, 기타 개인별 특성으로 세분화하여 제시되었으면 함
- 사업평가 지표에서 가입률 평가 외에 서비스 내용 및 절차 등과 관련된 질적 평가지표가 개발되고 시행되었으면 함
- 사업 협의체 운영시 선박노련 외에 영세어업인을 포함하는 방법이 강구되었으면 함
- 사업내용을 보험료 지원 사업만이 아닌 재해 예방교육 및 시스템 지원과 같은 사전 예방 사업부분이 추가되었으면 함
- 장기적으로는 관리 체계 등 농업인재해보상 사업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가 함께 고민되어야 함
- 이러한 모든 내용은 08년 사업 평가에서도 지적된 부분이나 이에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부분임

1-1-5-0(계속)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보건복지부)
-------------	-------------------------------------

담당부서	기초생활보장과	담당자	최신팡(사무관)
전화번호	02-2023-8125	이메일	worldchoi@mw.go.kr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어민가구의 농가소득 감소와 노령인구의 증가 등 농어촌지역의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농어민가구의 삶의 질 향상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4년 ~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규모 : 농어민가구 특례적용 대상자
- 지원형태 :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 적용
- 지원조건 : 농어민 가구
 - 농지를 1ha 미만 소유자가 지급받은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쌀소득 등보전직접지불금 및 농어민가구가 부담한 보육료 중 15만원 이내의 금액 등을 소득평가액 산정시 지출요인으로 추가인정
 - 농지법에 의한 농지가액과 가축·종묘 등 농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동산의 재산가액을 합한 금액 중 5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로 차감하는 등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 사업시행주체 : 보장기관(시·군·구청장)

3. 연차별 추진계획

- 비예산 사업으로 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음

4. 성과목표 달성도

- 농어민가구에 대한 특례조항 계속 적용 여부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시 농어민가구 특례 적용

II. 평가결과

1. 총 평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농어촌지역에 적용함에 있어 농어촌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업인가구의 기초생활보장에 기여함.
 - 수급자 선정 등에서 농어촌특례를 인정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어업인가구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함
- 농어촌지역의 빈곤율이 도시지역에 비해 더 높은 점을 감안하여 농어촌특례 제도의 확대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농어촌 지역특성을 고려한 완화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적용하여 농어업인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사업계획은 적절함
- 경영이양직불금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농어촌특례 적용을 위해 부처 간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조 하에 사업 추진은 원활함
- 사업추진 시 보건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 및 지자체와 연계 및 협조를 통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모니터링 회의를 개최하여 중간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홍보용 리플렛을 제작·배포함(08.11)

- 연말에 실시하여 시기적으로 늦어 효과가 적을 것으로 판단됨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농어업인가구에 대한 농어촌 특례적용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농어업인가구의 기초생활 보장에 기여하고 있음

3. 개선방안 등

- 경제적으로 취약한 농어촌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농어촌특례 제도의 유지·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농림수산식품부 간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함

담당부서	공공의료과	담당자	공인식 사무관
전화번호	02-2023-7337	이메일	hopegene@korea.kr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응급의료기반이 취약한 농산어촌 지역 의료기관에 24시간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인력, 시설확충, 장비지원으로 응급의료 접근성 제고 및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 보장
- 사업추진근거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대국민 응급의료제공 의무 규정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16조(재정지원) : 응급의료기관등에게 필요한 재정지원
 -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12조 및 제14조 : 농어촌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민간의료기관 육성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6년 - '09년(이후 계속 사업으로 추진)
- 사업 추진체계
 - 사업추진절차 : 응급의료 취약 군지역 시·도 통보(보건복지부 → 시·도) → 해당 군 지역 지원 대상 의료기관 선정(시·도) → 예산 지원(복지부 → 시·도→의료기관) → 사업시행(시·도 및 의료기관) → 지원금 교부 및 사후 관리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지원대상 :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43개 군지역 의료기관
- 사업규모 : 43개 응급의료 취약 군지역 소재 의료기관 1개소
- 지원금액 및 형태 : 국고 100% 지원
 - '09년 신규지원(2개소) : 개소당 인건비 68백만원 및 시설·장비 보강비 98.4백만원 지원
 - '09년 기지원(40개소) : 개소당 의료인력 인건비 68백만원 지원
- 시도별 배분내역(응급의료 취약 군지역)

(단위 : 군)

구분	계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대상	43	1	2	6	2	4	5	6	10	5	2
사업실적	42	1	2	6	2	4	5	6	10	5	1

3. 연차별 추진계획

-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43개 군지역 및 도서산간 지역 응급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역당 1개 의료기관 등에 대한 응급 의료 인프라 구축비 지원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96	139			230			369
'05	-	-						-
'06	28	36						36
'07	39	34						34
'08	43	34						34
'09	43	35						35
'10	43				230			230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47	136						136
'05	-	-						-
'06	28	36						36
'07	37	32						32
'08	40	34						34
'09	42	34						34

4. 성과목표 달성도

- 43개 군 지원 대비 42개 군을 지원하여 97.7% 목표 달성
 - 43개 군지역당 1개소 의료기관 등에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지자체(남제주군) 신청 미흡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응급의료 취약지 해소율	취약지 군지역 중 응급의료기관 설치군	개	43	42	97.7

II. 평가결과

1. 총 평

- 농어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높은 고령화율과 인구감소, 지역적 광의성으로 인해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수익성 악화로 민간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할 수 있음
 - 이러한 여건상 정부에 의한 응급의료체계의 구축은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농간 보건의료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임
- 삶의 질 계획하에서 농어촌지역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여기에 인력과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지원은 적절한 사업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실질적인 응급의료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적정수준의 예산지원을 통해 응급의료 시설확충과 인력 확보가 필요함
 - 현재 42개군에 지원하고 있는 응급의료 지원금을 통해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부족하다면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예산확보와 지원방안 마련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 응급환자에 있어 중요한 점은 질환 발생직후의 응급치료와 이송이라 할 수 있음. 현재 삶의 질 계획 하에서는 병원에서의 진료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질환발생단계에서의 치료와 농어촌지역(접근성 어려움)을 고려한 환자이송문제 해결을 위한 고려가 반영될 필요가 있음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을 고려시,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43개 군지역에 대해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동 기관에 인력,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방안은 매우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집행해 나가는 것은 응급의료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보임
- 특히 응급의료기금운영계획을 수립시 기본방향 설정은 물론 시도·중앙평가를 통해 사업이 이루어지고,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은 잘 정리되어 있음
 - 그러나 위와 같은 방향설정과 평가는 전국단위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농어촌지역의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가능하다면 기본방향 설정과 평가과정에서 지역별 특성(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자체보고서에서 지적하였듯이 도농간 응급의료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진료, 병원단계에서의 진료 등이 매우 중요함
 - 현재 계획에서는 병원단계에서의 진료는 담고 있으나 이송과 이송과정에서의 진료는 문제제기로 끝나고 있어 향후 계획 수립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사업추진체계, 자원조달 및 배분 등은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됨

- 사업개선도 측면에서 지자체 건의사항 반영, 사전 수요조사 실시 등을 통해 취약지 해소율을 초과달성한 것으로 보고 되었으나,
- 구체적인 반영내용, 수요조사 내용의 부재로 어떠한 방식으로 취약지가 해소되었는지 파악이 어려움. 향후 평가서 제출시 내용이 구체화 될 필요가 있음
- 사업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파악을 위한 중간모니터링체계는 사업진행 과정상 중요한 부문임
 - 응급의료체계의 중요성을 고려시 현재의 모니터링체계는 예산 배분후 적절히 시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고 대안과 피드백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라 하기에 한계가 있어, 향후 제도발전과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체계(의견수렴과정 포함)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농어촌지역이라는 특성(고령화, 넓은 지역으로 인한 접근성 어려움)을 고려시 응급의료기관 설치와 더불어 응급환자 이송에 대한 문제도 중요함
 - 장기적으로 사업추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응급의료 이송체계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함께 강구되었으면 함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농어촌지역의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어려운 현실에서 응급환자 발생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응급의료시설의 확충과 지원은 농어촌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함
- 성과지표의 경우 43개 전체지역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 그러나 단순히 43개 지역에 대한 예산지원 여부보다는 실질적으로 예산지원을 통해 응급의료시설이 확보되고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함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함

- 단순히 예산 지원만으로, 군지역에 응급의료기관이 있으며, 응급 의료체제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추가적인 성과지표의 설정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3. 개선방안 등

- 농어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보건의료 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특히 응급의료에 대한 지원사업이 도시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은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라 할 수 있음
- 농어촌의 고령화를 고려시 응급환자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응급실 운영에 따른 수익이 높지 않아 민간의료기관을 통한 응급의료체계 지원은 어렵다 할 수 있음
 - 따라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43개군에 대해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에 시설·인력 등을 지원 하는 사업은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사업 이라 할 수 있음
- 장기적인 측면에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고려 되었으면 하는 사항으로는,
 - 첫째, 응급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응급의료 시설은 매우 중요하며, 설비가 완벽히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임. 그러나 현재 개소당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충분한 의료장비를 구비하기에는 매우 부족함
 - 따라서 응급의료 지정기관들이 의료장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둘째, 응급환자 발생시 또한 중요한 점은 응급의료전문의·간호사 들의 확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지원금 역시 응급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금으로는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 응급의료 전문의·간호사들이 농어촌지역에서 의료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인건비 지원이 필요함
- 셋째, 성과지표로 “응급의료 취약지 해소율”을 두고 있으나 이는 예산지원이 이루어진 기관을 중심으로 파악한 것으로 실질적인 응급의료체계가 완비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구체적으로 응급의료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을 위한 성과지표개발이 필요함(예, 별도의 응급실 완비, 응급의료 전문의 인원 혹은 인구대비 응급의료 전문의 비율 등)

담당부서	건강정책과	담당자	김옥수 주무관
전화번호	02-2023-7492	이메일	oskim007@korea.kr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어촌지역 공공보건기관의 시설 및 장비 현대화사업을 통해 농어촌등 의료취약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국민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 추진근거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 지역보건법 제19조(비용의 보조), 농림어업인의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 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14조(농림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및 제15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림어업인에 대한 지원)
 - 도서개발촉진법 제4조(개발대상도서의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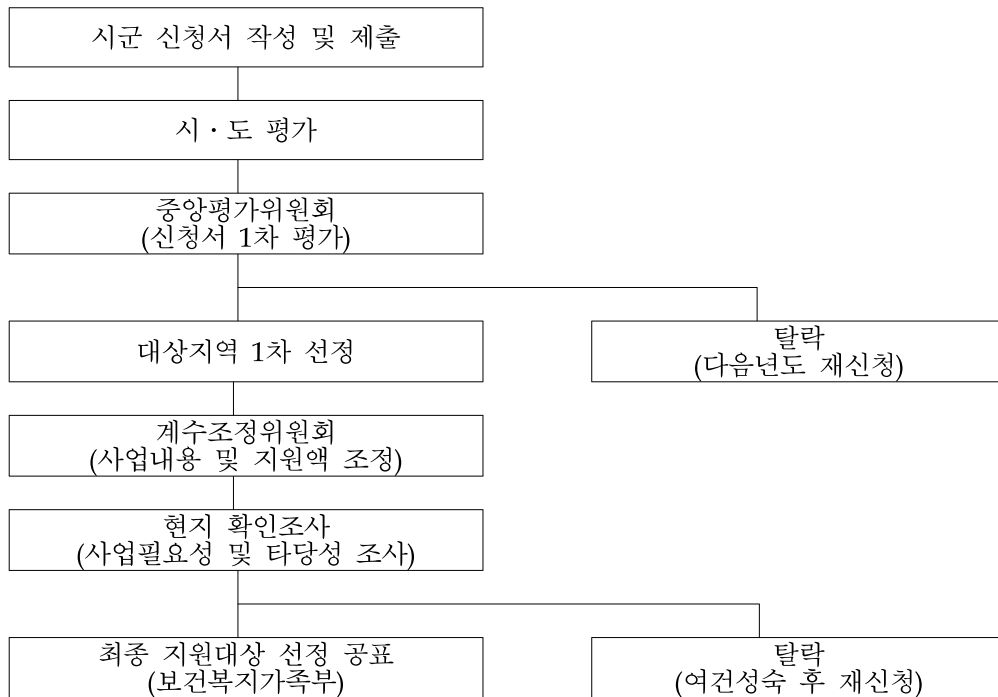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4 ~ '14
- 사업대상 : 농어촌 공공보건기관
- 사업량 : 시설개선 196개소(보건소 15개소, 보건지소 68개소, 보건진료소 113개소), 장비지원 144개소(보건소 40개소, 보건지소 104개소), 차량지원 174개소(방문보건차량 170개소, 구강보건차량 4개소)
- 사업금액 : 62,503백만원(국고 2/3, 지방비 1/3)
- 추진내용 : 농어촌 지역의 지역보건기관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의 신축 및 의료장비 등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도모

○ 사업추진체계

- 추진주체 : 보건복지가족부 → 시·도 → 시·군·구
- 추진절차 : 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시도평가 → 중앙평가위원회 평가(1차 탈락 : 다음년도 재신청) → 1차 선정 → 계수조정위원회 심사 → 중앙평가위원회 현지 실사(탈락 : 여건성숙 후 재신청) → 대상지역 사전예고 통지



3. 연차별 추진계획

- 안정적인 사업예산 확보로 열악한 농어촌지역 보건기관의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 확대 추진('05년 국비 569억 → '09년 625억)
- 재정자립도를 반영한 지자체 차등지원, 지원단가 상향, 의료장비·보건사업차량등 지원확대

- 도서지역 연간 지원한도 폐지, 시설비 지원시 가산을 추가적용 등 의료취약지원 지원강화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759	3,062	-	-	-	1,529	-	4,591
'05	332	569	-	-	-	285	-	854
'06	332	573	-	-	-	286	-	859
'07	690	620	-	-	-	310	-	930
'08	789	675	-	-	-	336	-	1,011
'09	616	625	-	-	-	312	-	937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759	3,062	-	-	-	1,529	-	4,591
'05	332	569	-	-	-	285	-	854
'06	332	573	-	-	-	286	-	859
'07	690	620	-	-	-	310	-	930
'08	789	675	-	-	-	336	-	1,011
'09	616	625	-	-	-	312	-	937

* 전년도에 사업대상기관을 선정·지원하여 목표 대비 전액 집행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촌의료 서비스개선사업	이용자 만족도	전문설문조사 기관 조사결과	%	85	88.4	104
	이용자 증가율	전년대비 이용자 증가율 조사	%	0.3	0.8	226

II. 평가결과

1. 총 평

- 도시와 농어촌간 건강불평등 격차 해소를 위한 농어촌지역의 의료개선 서비스사업은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음
 - 농어촌의 고령화, 저출산현상이 도시지역에 비해 심각하고, 독거노인 증대로 인한 자살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은 중요함
- 실질적으로 농어촌지역에서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는 한계로 민간 의료기관에 의한 서비스제공은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수익성이 아닌 공공성 측면에서 농어촌지역의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과 시설인프라 현대화는 의미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지원실적에서 여전히 시설개선율이 51.6%에 불과하여 안정적 재원확보를 통한 개선을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지원내용이 주로 시설·장비개선 측면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중요한 축인 인력지원(전문의, 간호인력 등),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있어 한계를 지니고 있음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농어촌주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동 사업은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 계획수립과정에서 사업설명회, 평가 등을 통해 사업대상기관과

지원액 등이 결정되어 계획에 의해 사업이 적절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 할 수 있음

- 또한 지자체 차원에서 사업추진 계획서 작성시 주민의견 수렴(반상회, 설명회 등)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사업계획의 대부분이 공공보건의료 기반확충으로 시설 및 장비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어 장기적으로 내실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확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사업추진단계에서 지원결정(중앙평가 포함)까지 주어진 절차에 따라 잘 이루어지고 있음
 - 재원조달도 연초에 확정·지원됨으로써 조기 예산집행을 통한 보건의료기반 시설확충이 적기에 이루어지고 있음
- 사업개선을 위한 노력에서 내·외부 평가자료를 인용하고 있으나, 평가 시기가 오래된 것으로 최근의 자료를 반영한 평가결과들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 공공보건기관 기반확충을 위한 예산지원이 매년 비슷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 필요성에 비해 예산확보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시설개선율이 약 5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 충분한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회 등의 설명회 개최 등에 대한 충분한 자료 제공을 통해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즉 장기적으로 주민동의 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함께 제시되었으면 함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공공보건기반 확충을 위한 성과지표는 “이용자 만족도”와 “이용자 증가율”로 매년 두 지표에 대한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목표치 설정이 2008년과 2009년 비슷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치 설정이 필요함
 - 특히 여론수렴을 통한 만족도 조사의 경우 지속적으로 목표치를 올리는 것은 무리이므로 양적 지표인 “이용자 증가율”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달성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성과지표의 개선이 가능하다면 만족도 조사, 이용자 증가율 이외에 양적 지표(자체보고서에서 제안한 시설개선율, 예산증가,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내용(건강증진 예방을 위한 개선사업, 자살 예방 프로그램 개발 등) 등)가 함께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 다양화가 이루어졌으면 함

3. 개선방안 등

- 농어촌지역은 취약한 수익구조로 인해 민간의료기관들에 의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서
 - 이들 공공보건기관에 대한 기반확충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음
 - 동 사업은 1994년부터 지속된 사업으로 농어촌 보건의료 환경 개선에 큰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농어촌주민들의 만족도 역시 높다 할 수 있음(85% 이상)
 - 그러나 지원실적에서 여전히 시설개선율이 51.6%에 불과하여

- 안정적 재원 확보를 통한 개선을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지원사업의 내용이 주로 시설확충의 양적 투자에 국한되어 있어, 질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방안 마련이 함께 모색되었으면 함
 - 특히 농어촌지역 고령화를 고려, 독거노인을 위한 서비스 및 다문화가족 증가로 인한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산부인과 서비스 등 질적인 측면의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원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음

1-2-1-3(계속)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보건복지부)
-------------	-----------------------

담당부서	공공의료과	담당자	심은혜사무관
전화번호	2023-7369	이메일	ehshim9@korea.kr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노후 의료시설과 장비 현대화 지원, 교육 및 평가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료이용의 형평성 제고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5년부터~
- 사업대상 : 지방의료원 34개소, 적십자사 6개소
- 사업주체 : 보건복지부, 지자체, 대한적십자사,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 추진체계 : 사업계획서 접수(각 병원, 시도 및 대한적십자사 경유)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 예산 교부 및 집행 점검
- 추진내용
 -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기능보강 : 신축·개보수, 의료장비
 - 혁신 및 서비스 교육 : 지역거점공공병원 임직원 교육강화
 -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 운영실태 평가로 바람직한 운영방향 제시

3. 연차별 추진계획

- 2005년
 -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기능보강(421억원)
 - 지역거점공공병원 임직원 교육(3억원)

- 2006년
 -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기능보강(302억원)
 - 지역거점공공병원 임직원 교육(3억원)
 -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3.5억원)
 -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 지원(11억원)
- 2007년
 -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기능보강(221억원)
 - 지역거점공공병원 임직원 교육(3억원)
 -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3.5억원)
 -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 지원(11억원)
- 2008년
 -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기능보강(156.4억원)
 - 지역거점공공병원 신축 및 전문의료서비스센터지원(200억원)
 - 지역거점공공병원 임직원 교육(2억원)
 -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진단(5.2억원)
 -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 지원(6억원)
- 2009년
 -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기능보강(433.5억원)
 - 지역거점공공병원 임직원 교육(3.5억원)
 -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5.2억원)
 -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 지원(6억원)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의료원 34개, 적십자사 6개			1,796		1,579		3,375
'05	의료원 34개, 적십자사 6개			421		391		812
'06	"			319		271		590
'07	"			238		190		428
'08	"			370		319		689
'09	"			448		408		856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의료원 34개, 적십자사 6개			1,796		1,579		3,375
'05	의료원 34개, 적십자사 6개			421		391		812
'06	"			319		271		590
'07	"			238		190		428
'08	"			370		319		689
'09	"			448		408		856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09년 목표치 78.5점, 실적치 80.3점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지역거점공공의료 기관 육성	지역거점공공병 원이용자만족도	설문조사 (전화, 면접 등)	점	78.5	80.3	102

II. 평가결과

1. 총 평

- 농어촌지역의 취약한 의료여건을 개선하고 민간의료기관과는 다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거점병원의 육성은 농어촌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농간 건강불평등 해소에 도움을 주는 사업임
- 지역거점병원 육성을 위해 중장기 방안마련을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졌으나, 그 진행시기가 2009년 12월로 다소 늦게 이루어진 점이 아쉬운 부문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지역거점병원의 지역별 분포와 지원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실제로 농어촌지역 군에 위치한 지역거점병원들의 지원에 대한 파악이 어려움
- 농어촌 의료기관들의 어려운 점의 하나는 충분한 의료인력의 확보가 어렵다는 점임
 - 동 사업의 경우 주로 시설에 대한 개선과 증설, 직원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양질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방안마련이 동시에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지역거점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 의료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강화하는 방안 강구 필요

2.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지역거점병원을 육성하기 위해 사업목적에 맞게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립 이전에 평가단 및 지역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는 점은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음

- 과거 일률적으로 지원되어 오던 국고지원방식을 개선하여, 경영평가를 통해 혁신을 이룬 병원을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에 의해 재정을 지원하는 것도 거점병원간 경쟁과 서비스 향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 그러나 예산확보를 위해 과도한 병원간 경쟁, 평가지표 선정 및 평가의 공정성, 무리한 서비스제공으로 인한 경영악화 등의 문제 발생을 사전에 탐지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문제점 완화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침에 따라 지원방향, 의료지원 목록확대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도록 사업을 진행함
- 중간평가라 할 수 있는 중간 모니터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발견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추진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원이 배분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재원이 배분되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움
- 보건복지부·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는 수동적인 홍보라 할 수 있어, 적극적 홍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
-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수익성을 강조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홍보강화를 통한 내원객의 증가는 궁극적으로 병원 수익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현 사업의 성과지표는 이용자 만족도로 병원의 시설, 서비스 수준을 이용자가 평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음
 - 반면에 목표치 설정이 다소 임의적으로 설정되고 목표치를 넘는 결과가 나왔다고 성과가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즉 서비스 이용자들의 여론수렴을 통한 만족도 조사는 한계가 있으므로(주관적 평가에 의존,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반응 등), 정확한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지표의 개발에 대한 필요함
 - 이를 통해 실질적인 사업평가가 이루어지고 평가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개선방향이 함께 설정될 수 있을 것임

3. 개선방안 등

- 농어촌지역은 접근성, 취약한 수익구조로 인해 민간의료기관들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어 농어촌에서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가 중요하며, 특히 다양하고 집중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거점병원의 육성은 중요한 사업임
 - 노후화되고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거점병원들에 대해 의료 시설과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촌의 부족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사업임
 - 향후 평가자료 제공시 지역거점병원별 실태와 지원 내용 등을 함께 포함함으로써 구체적인 사항들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함
- 장기적인 발전방향으로 먼저 지역거점병원의 역할제고를 위한 다양한 진료과목의 제공(호스피스, 산부인과 진료 등), 전문의 및 간호인력의 확충 등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또한 부족한 농어촌 의료기관 실태를 볼 때 지역거점병원들이 3차진료기관인 대학병원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의료인력 교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협력사업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지원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 지역의료기관으로서 또 다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인 지역내 보건소·보건진료소 등과의 연계사업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로써 지역주민들의 이용자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은 좋지만 성과목표치 설정이 다소 임의적으로 객관성을 확보한 목표치 설정이 이루어졌으면 함

1-2-3-1(계속)	농작업재해 원인 구명 및 농작업 환경개선 (농촌진흥청)
-------------	---

담당부서	농업재해예방과	담당자	이 경 숙
전화번호	031-290-1937	이메일	leeks81@korea.kr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추진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10조, 36조, 40조, 42조 및 55조
 - 지역농업의발전과 농촌주민 복지증진, 농업관련 기술·연구 진흥, 농업인 등 소득 및 경영안정 지원, 농업재해에 대한 시책 등
 - 삶의질향상특별법 제14조(농림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및 15조(업무상재해를 입은 농림 어업인에 대한 지원)
- 농업인 건강수준 평가 및 작업관련성 평가를 통하여 업무상재해 판정 근거 마련
- 농업활동 건강유해요인 증가에 따라 농부증 등 농업인 직업성 질환 발생이 증가하므로 적합한 예방관리 기술을 개발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9. 1 ~ 2009. 12
- 사업비 : 10억원(국비 100%)
- 사업지원대상 : 관련 연구과제 추진을 위한 해당 연구부서
- 사업규모 : 농작업 보조장비·보호구 개발 등
- 사업 시행방법
 - 분야별 사전연구협의회(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 과제계획 심의(해당 과, 외부전문가) → 연구과제 계획보고회(기관장) → 예산편성 → 중간

진도관리 및 현장평가(해당 과) → 연구과제 평가 및 보고회(기관장)
 → 결과활용심의회(연구정책국)

○ 추진내용

- 농작업재해 원인구명 및 작업관련성 조사
 - 유해 작업환경 노출평가 및 작업보조도구 개발
 - 농작업 사고예방/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및 정보 지원
- ※ 의학(산업의학, 예방의학, 재활의학), 환경보건, 산업공학 등 관련 전문가
 자문단 운영 및 공동연구 수행, 연구회 세미나 실시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과제수)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3			28.5				28.5
'06	5			8				8
'07	5			6.5				6.5
'08	7			3				3
'09	6			11				11

- 일반회계 예산으로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당초 계획대로의 예산확보가 어려우며 '10년 이후에는 농특세를 활용하여 중앙 및 지역의 안전 보건 사업 연계를 위한 사업확대 및 실용화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3			29				29
'06	5			8				8
'07	5			7				7
'08	7			3				3
'09	6			11				11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작업재해 원인구명 및 농작업 환경개선	논문게재	목표건수	건	8	9	113
	영농활용	목표건수	건	5	6	120
	특허출원	목표건수	건	3	7	230
	농업인 건강안전정보센터 방문자수/년	목표건수	명	100천명	840천명	840

II. 평가결과

1. 총 평

- 그 동안 농업 생산성 향상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농업인 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원인구명과 개선 사업은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매우 필요한 사업임
-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연구사업으로 국한하지 않고, 사업 결과를 영농활용 및 특허출현으로 연계한 것은 실용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연구의 추진 과정에서 주무부서에 국한하지 않고, 농업인 건강연구회와 같은 전문가 단체를 활용한 점, 그리고 농업인과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워크숍 개최 등은 매우 적절한 추진방법임.
- 그러나 사업 성과지표(논문, 영농활용, 특허출현 등) 외에 정책적 측면에서 사업 결과를 어떻게 반영하고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 목표 혹은 로드맵이 제시되었으면 함(예를 들어, 1단계: 원인구명 --> 2단계:인정기준 마련 -->3단계:농작업 재해보상 및 예방체계 구축 등)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연구사업과 개선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은 재해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방법론일 수 있음
- 그러나 본 사업이 시범사업이 아니고 연구 사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작업개선 부분은 영농활용을 위한 별도 사업 혹은 타부서의 유사 사업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음
- 즉, 유해요인별 혹은 질병별 농작업 재해 원인 구명과 농작업

관련성 평가에 필요한 객관적 기준 마련 등을 목표로 설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하게하면 오히려 사업 집행의 효율성(특히 비용 측면에서)이 좀 더 커질 수 있을 것임.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사업 성공을 위한 전문가 지원 및 관련기관 연계는 매우 효율적인 사업 추진체계로 평가할 수 있음.
- 특히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이들을 공동연구에 참여 시키고, 현장 연구를 위한 일선 공무원(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중간모니터링을 위한 농업인의 유기적인 참여는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임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연구사업으로서 논문 게재(9건), 특허출현(7건) 및 영농 활용(6건) 등의 양적인 성과(목표치 113-230% 달성)도는 매우 높은 편임
- 그러나 재해 원인 구명과 관련된 단계별 목표(유해요인별 혹은 질병에 대한 연차별 목표 등) 가 제시되고 이에 대한 사업성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3. 개선방안

- 질병 및 재해 원인구명과 관련된 연차적 실행목표가 제시되고 이에 대한 사업성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연구 결과를 향후 어떻게 정책과 연계하여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 로드맵이 제시되었으면 함. 예를 들어 재해판정 기준을 표준화하여 농작업재해 판정에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는 등의 실질적 목표가 제시되었으면 함.

- 농업인 재해 원인 구명은 다양한 전문 분야와 전문가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원인 구명이라는 단편적 연구로 끝나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인력, 조직, 시설 및 장비 등에 필요한 하드웨어적 연구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

1-2-3-3(계속)	농작업 안전모델 조성사업(농촌진흥청)
-------------	----------------------

담당부서	농촌자원과	담당자	박찬순
전화번호	031-299-1076	이메일	hipcs@korea.kr

I. 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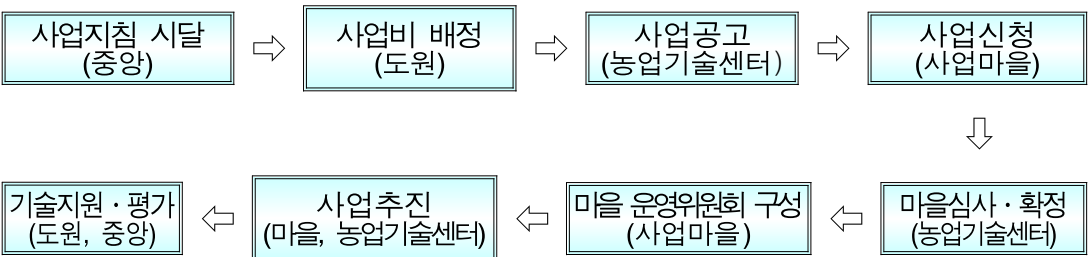
1. 사업목표

- 농작업 관련 재해발생을 줄이고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농업인의 농작업 안전의식과 안전관리 능력 향상
- 농작업재해 예방 관리를 위한 종합 지원 체계 모델 확립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2014(9년간)
- 총사업비 : 660억원(국·지방비 각 50%, 마을당 3년간 총 2억원 지원)
- 사업규모 : 330마을('09년도까지 1년차 기준 추진 물량 45개소)
- '09 사업량 : 36개소(신규 14, 기존 22)
- 지원대상 : 시설원예, 노지채소, 과수, 축산 등 농작업 유해요인이 많은 주산단지 마을
- 사업주체 : 시·군농업기술센터
- 추진체계

< 사업추진 절차 >



< 기관별 역할 분담 >

기 관	역 할 분 담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기본국가정책수립 및 평가, 장기 방향 설정 전문교육, 지도자료 지원, 사업 홍보, 홈페이지 운영, 지역지원 등 전문가 협력체계 구축(*농작업 안전사업 중앙추진단 : 35명)
농업기술원	도내 안전사업 추진 종합지원, 홍보 등 도단위 협력체계 구축(* 지역사업단 8개소, 91명)
농업기술센터	사업 대상마을 선정, 사업 주관, 진단, 마을 사업실행 지원 농업인 교육, 홍보, 평가 등

○ 세부내역

- 농업인의 건강수준 및 농작업유해요인 등 진단 실시 : 농업인의 직업성 질환 현황 파악,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농작업 유해요인 등 진단
- 현황 진단 결과를 기초로 마을 및 작목 특성에 맞는 농작업 개선 방안 도출 및 실행 : 농기계·기구의 안전 사용, 농약 등 유해물질 안전 보관 및 개인 보호구 사용, 마을 및 작목 특성에 맞는 농작업 환경 및 시스템 개선, 운동 프로그램 및 건강요법 실시, 안전관리교육 실시 등



○ 사업의 효과성

- 농업인의 농작업 안전관리 실천 향상으로 농작업 재해 감소
- 근골격계 질환 증상 완화, 작업자세 개선, 근력 향상 및 활력 증진

3. 연차별 추진계획

- 2014년까지 총 330개 마을 지원(마을당 3년간 총 2억원 지원)
 - 사업 초기 도별 1~2개소씩 시범 추진한 후 중기 이후 사업량 확대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5개소	24.6	-	-	-	24.6	-	49.2
'05	-	-	-	-	-	-	-	-
'06	9개소	5.4	-	-	-	5.4	-	10.8
'07	8개소(17)*	6.6	-	-	-	6.6	-	13.2
'08	14개소(31)	6.2	-	-	-	6.2	-	12.4
'09	14개소(36)	6.4	-	-	-	6.4	-	12.8

* ()안은 2년차 및 3년차 지원 마을 포함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5개소	24.6	-	-	-	24.6	-	49.2
'05	-	-	-	-	-	-	-	-
'06	9개소	5.4	-	-	-	5.4	-	10.8
'07	8개소(17)	6.6	-	-	-	6.6	-	13.2
'08	14개소(31)	6.2	-	-	-	6.2	-	12.4
'09	14개소(36)	6.4	-	-	-	6.4	-	12.8

* ()안은 2년차 및 3년차 지원 마을 포함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농기계 안전점검, 농약 방제복 착용 등 농작업 재해 예방 효과가 큰 20개 항목에 대한 농작업 안전관리 실천 현황을 조사한 결과 80.14%가 농작업 안전관리를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목표치 대비 100.2% 달성

- 농작업 안전모델 사업을 통하여 농작업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농작업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참여형 개선활동 등으로 농작업 안전실천을 생활화 함
- 농작업 안전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 사고 감소율이 66.7%로 목표치 대비 333.5% 달성
- 농작업 안전사고 감소율 목표치 설정은 전년도 표본조사 결과를 지표에 반영하여 설정하였지만 '09년도에는 사업마을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큰 편차를 보임에 따라 목표치에 대한 재검토 필요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농작업 안전관리 실천율	농작업 안전보건 현황 점검 조사	%	80	80.14	100.18
	농작업 안전사고 감소율	농작업 안전사고 발생 모니터링 시스템	%	20	66.7	333.5

II. 추진실적

1. 총 평

-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농작업 환경의 위험요인 특성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은 매우 필요한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사업 추진 방법에 있어 그 동안 대부분의 농촌 사업들이 예산지원 중심의 수동적 사업이었다면 농업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능동적 사업 혹은 참여적 사업(PAOT 진행 등)으로 진행한 사업 방식은 매우 적절한 추진 방법임.
- 또한 08년 평가에서 지적된 시범 사업 이후 확대 보급 및 지속가능과 관련된 대책 마련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음(농작업안전관리자 제도 등).
- 그러나 기타 농촌진흥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타 사업 (농작업재해 원인구명 및 농작업 환경개선 등)과 상호 연계할 수 있는 활용방안이 좀 더 구체적으로 강구되어야 함(예를 들어 시범 사업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른 사업과 연계하거나 혹은 별도의 연구사업 진행 등).

2.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전문가와 농업인이 참여하여 시범마을을 선정하고 → 농작업 유해환경을 진단하고 →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한 후 → 농업인의 요구도 조사를 통해 최종 확정하는 사업계획 방식은 참여연구에서의 좋은 사업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진단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 교육과 농업인 개개인의 자율적 참여를 정착하기 위한 참여형 개선활동(PAOT)을 근간으로 하는 사업진행 방법은 매우 효율적인 추진 방법임
- 그러나 매년 새로운 마을이 선정되고 이후 3년 동안 진행되는 시범 사업이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연차별로 차별화된 마을 선정 기준과 특화된 사업방향이 제시되어야 함(08년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구체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음).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농작업 환경에 대한 문제점 진단 → 개선안 도출 및 실행 → 사후관리 등 단계적 추진 방법이 구체적으로 잘 실행되었음
- 또한 각 시도별로 사업 추진단을 구성하고 농촌진흥청 - 도 농업기술원 -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협조체계도 잘 이루어졌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안전사고 감소율, 안전관리 실천현황, 생활습관 변화, 농부증 호소율 변화 등은 적절한 성과관리 지표로 사료됨
- 농작업안전모델 사업을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중장기적 목표 제시와 이에 대한 성과 관리가 이루어졌으면 함

3. 개선방안 등

- 매년 반복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연차별 특성화 전략이 제시되고, 그 전략에 맞는 지역 및 마을 선정이 이루어져야 함
- 이를 위해서는 현재처럼 연차적으로 대상 마을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에서 작목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노력과 예산을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최종적으로는 시범사업 결과를 확대 보급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함

1-3-1-1(계속)	농산어촌 보육시설 확충(보건복지부)
-------------	---------------------

담당부서	보육기반과	담당자	윤정혜(사무관)
전화번호	02-2023-8946	이메일	tengrps@korea.kr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의 보육여건 개선
 - 농산어촌 지역 보육시설 확충을 통해 농림어업인에게 저렴하고 질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6 ~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
- 지원조건 : 국고 50%, 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가족부
- 추진내용
 - 농산어촌 지역에 국공립 및 소규모보육시설 확충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차별 추진 일정

(단위 : 개소)

구분	'06년 계획	'07년 계획	'08년 계획	'09년 계획	'10 계획
보육시설 확충	27	37	22	30	30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16			302		293		595
'05	100			120		120		240
'06	27			48		48		96
'07	37			67		67		134
'08	22			43		43		86
'09	30			24		15		39

※ '09년부터는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 시범사업 포함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69			296		275		571
'05	101			63		63		126
'06	45			77		77		154
'07	51			75		75		150
'08	29			18		18		36
'09	43			63		42		105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소규모보육시설 설치 시범사업 추진 및 추경 예산 확보를 통한 국공립보육시설 추가 확충을 통해 당초 계획 대비 실적을 초과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보육시설 확충	농산어촌 지역의 보육 시설 확충	농산어촌 지역 보육시설 확충 개소수	개소	30	43	143

※ 소규모보육시설 설치 9개소, 국공립 신축 28개소, 추경 6개소

II. 평가결과

1. 총 평

- 농산어촌의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조 하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산어촌의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함
- 농산어촌 지역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지자체 재정부담이 가중한 시설 신축 방식을 지양하고, 열악한 민간시설 매입, 공동주택 의무보육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국공립 전환, 유휴교실 활용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추진함
- 기존 보육시설 설치·운영기준과 차별화된 소규모보육시설 운영 모델 개발로 보육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
- 보육수요가 존재하지만 보육시설이 설치되지 못한 지역을 발굴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를 통해 보육수요 해소 및 접근성을 제고함
- 지자체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신축비용 단가 및 국고보조비율 상향 조정 필요
 - 관련부처(기획재정부) 협의 필요
- 동 사업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도가 높은 사업이나, 사업시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확한 평가가 부족하다는 삶의질향상 점검·평가단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 연구용역('09.5~'10.3)을 통해 보육수요가 존재하나 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발굴하고 지역에 맞는 운영모델을 개발함
 - 보육시설 이용아동 부모 만족도 조사 및 현지 점검을 통해 시범사업 평가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함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적합성

- 보육시설이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에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농산어촌 영유아에 대하여 저렴하고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들에게는 자녀를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으로 안정된 사회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사업목표의 삶의질향상 계획 비전에 대한 적합성을 충족함

○ 사업계획의 구체성, 현실 적합성 등

- 국고보조금 가내시 및 확정내시를 통해 지자체에서 지방비를 확보하고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거 국고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매분기별 사업추진 현황을 파악하여 사업추진 불가·지연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추진 가능한 타 시·도로 내시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함
- 보육시설 확충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설 신축 이외에도, 신축시 부지확보 어려움을 감안 민간시설의 매입, 유휴교실 활용 및 공공기관 리모델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육시설의 확충 추진
- 시범사업을 통해 보육수요가 존재하나 보육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을 발굴하여 지역 여건을 고려한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추진

○ 절차적 합리성 보강

- 전년도 평가보고서에서 지자체와의 연계,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의 과정들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보육시설 확충 예산 편성시 지자체 수요 조사(4월), 지침 마련 및 의견 수렴을 위한 지자체 워크숍 개최(12월, 1월) 및 '소규모

보육시설 운영모델 개발 '연구용역('09.5~'10.3) 등을 통하여
절차적 합리성을 충분히 보장함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사업추진체계와 추진방식의 적절성
 - 중앙행정기관은 사업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교부 및 지역특성에 맞는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 마련(신축, 매입, 유휴교실활용, 공동주택리모델링 등 확충)하고, 지자체(시군구)에서 지역여건에 적합한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직접 사업추진하는 방식은 매우 적절함
 - 보육시설 확충 예산 편성시 지자체 수요 조사(4월), 지침 마련 및 의견 수렴을 위한 지자체 워크숍 개최(12월, 1월) 등 사업추진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가 대체로 잘 이루어짐
 - 삶의질향상 점검·평가단의 평가 결과 반영 및 사업추진의 탁월한 개선 노력
 - 삶의질향상 점검·평가단의 평가 결과 등을 성실히 반영하여 전년도 평가보고서에서 지적된 사업시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확한 평가 부족 및 추진일정의 하반기 편중현상 등에 대하여 다양한 부문에서 탁월한 개선노력을 보였음
- ① 연구용역('09.5~'10.3)을 통해 보육수요가 존재하나 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발굴하고 지역에 맞는 운영모델 개발
 - ② 보육시설 이용아동 부모 만족도 조사 및 현지 점검을 통해 시범사업 평가 및 운영상의 문제점 해결

- ③ 매분기별 사업추진 현황을 파악하여 추진 불가하거나 추가 수요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예산을 조정하여 내시변경(6회)
- ④ 소규모보육시설 설치 시범사업의 경우 연구용역을 함께 추진 하여 시범사업 평가 및 운영상의 문제점 해결
- ⑤ 당해연도에 사업계획서 검토 및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있어 사업시행시기 및 시·도간 사업량·예산 조정 시기 지연문제에 대하여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사업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전년도에 지자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현지 점검 실시 등을 통해 사업대상자를 확정하도록 하는 등 개선 노력을 보였음
- 지자체 수요를 토대로 확정내시 후 지속적인 사업추진현황을 모니터링 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취소가 발생하는 경우 추진 가능한 시·도로 재배정(6회) 하는 등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실시하였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보육시설이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의 국공립보육시설 설치로 저렴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유아 보육을 위한 시설 이용 접근도가 높아지는 등 농산어촌지역 복지기반 확충에 기여함
- 전국 보육시설 3,200개소를 대상으로 2009.4.27~6.20 간에 실시한 부모 만족도 조사에서 직장의 보육시설(20.9%)에 이어 국공립 보육시설이 19.0%(민간 18.7%, 가정 18.0%)로서 두 번째로 나타남
- '09년도 농어촌 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수는 43개소로서 확충 목표(30개소) 대비 143%를 달성함

3. 개선방안 등

- 지자체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신축비용 단가 및 국고보조비율 상향 조정의 필요성 대두
 - 관련부처(기획재정부) 협의 필요
- 농어촌의 경우 보육시설에 대한 이용수준이 도시지역에 비해 낮아지는 시점에서 단순히 시설만을 늘리는 것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부모와 아동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의 구축도 필요할 것임

1-3-1-2(계속)	농산어촌 만5세아무상보육지원(보건복지부)
-------------	------------------------

담당부서	보육사업기획과	담당자	진상인(주무관)
전화번호	02-2023-8937	이메일	-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산어촌지역 취학전 만5세아 아동에 대한 균등한 보육기회 제공을 통해 아동의 학업준비 도모
- 만5세 무상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가 소득경제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반 조성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9년 ~ 계속
- 사업내용 :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취학전 만5세 아동에게 1년간 무상보육기회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부터 단계별 확대
- 지원대상 : 소득하위 70%이하 가구('09년 4인가구 436만원)
- 지원단가 : 172천원
- 추진형태 : 지자체보조
- 사업추진절차 : 보건복지가족부 → 시·도 → 시·군·구 → 보육시설(아동)
- 보조율 : 50%
- 사업비 : 309억원
- 지원인원 : 29,073명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차별 추진내용과 추진일정, 사업비 등)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80,942			1,807		1,807		3,614
'05	29,085			262		262		524
'06	34,029			322		322		644
'07	32,505			311		311		622
'08	30,487			292		292		584
'09	29,918			309		309		618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0,897			1,257		1,257		2,514
'05	29,085			267		267		534
'06	36,037			345		345		690
'07	33,817			321		321		642
'08	31,958			324		324		648
'09	29,073							

※ 만5세아무상보육료 예산은 농산어촌지역만을 대상으로 편성하지 않으며 전국 단위로 집행 및 정산하기 때문에 농산어촌지역에 대한 별도 정산이 곤란하여 공란으로 남김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2009년도 목표치 : 29,487명, 실적치 : 29,487
 - 농산어촌 지역의 보육시설 이용아동수 감소로 목표수치의 97%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산어촌 만5세아 무상보육지원	지원아동수	총지원아동수	명	29,918	29,073	97%

II. 평가결과

1. 총 평

- 소외되고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의 만5세 아동들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 경감을 통하여 농산어촌 가정의 복리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목표에 매우 적합함
- 특히 보육시설은 종일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양육부담 없이 농산어업 등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도 기여함
- '09년에 보육전자바우처 제도 도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보육료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부의 보육료 지원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향상시킴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소외되고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의 만5세 아동의 보육료 지원으로 농산어촌 가정의 복리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목표에 매우 적합함
-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전체 만5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 실시를 목표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며, '09년은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의 농산어촌 지역 만5세아에 지원함으로써 사업계획의 구체성을 확보하였음
-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단가 등 결정과정에 기획재정부 · 교육과학기술부 ·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및 지자체 공무원,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등과 협의 및 의견 수렴 실시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보육료지원 사업은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통해 지방비가 편성되는 사업으로, 각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성격상 자치단체에서 최종 집행이 이루어지는 현재의 추진방식은 적절하며, 교통여건 등을 감안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시·군·구청이 아닌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을 통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군·구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사업추진체계도 합리적임
- 만5세아 무상 보육·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 및 정책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와 유기적 협조를 통한 예산집행으로 현장의 보육수요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있음
- 보육시설 이용아동 부모의 불편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이용불편신고센터를 연중 내내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료 지원대상의 적정한 선정을 위해 적격여부를 연 1회 재점검하였고,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등에 나타난 불합리한 요소 제거를 위해 보육사업 안내 지침 등을 개정하였음
-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과 이를 위한 유인정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삶의 질 향상 점검·평가단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2009.9월에는 보육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9월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에 아이사랑 카드를 통해 정부지원금을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원함으로써 기존의 시·군·구 직접 지급방식보다 투명성을 강화하고, 수요자 체감도를 높이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개선 결과를 시현함
-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와 지방비 지원 비율을 50:50으로 배분하고 있고, '10년도 만5세아 무상보육료 예산은 121,753백만원으로 '09년

도말 예산집행실적 115,886백만원 대비 5.06% 증액하였음

- 국민과 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를 위해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 계획 및 보육료 집중 신청기간 운영에 관한 보도자료('09.4.6일) 및 지자체에 상담매뉴얼을 배포('09.4월)하였고, 그 밖에 홈페이지, 반상회보, 리플렛 배포, 시도 및 시군구 보육정보센터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단가 등 세부내용에 대하여 공지하였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농산어촌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71%('09.12월말 기준)가 무상교육을 받고 있으나, 보육료 지원사업이 삶의 질 향상에의 기여정도를 직접 측정하기는 곤란하지만 보육료 지원에 의한 농산어촌 가정의 복리증진과 경제적·사회적 효용증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임
- 2009년도 실적은 29,073명으로 목표치 29,918명 대비 97%달성에 그쳤으나, 보육료 지원사업은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증감(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가 '08년 46,159명 대비 '09년 40,972명으로 11% 감소)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농산어촌지역 아동의 수가 급감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사업성과 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3. 개선방안 등

- 농산어촌 거주 만5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혜택을 늘리기 위해 농산어촌에 대한 무상보육 조기 실행 등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지속 요구됨

담당부서	농촌사회과	담당자	박성우(서기관)
전화번호	02-500-1819	이메일	tengrps@korea.kr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농림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 및 제22조(농산어촌 유치원 유아 교육·보호)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 사업목표
 - 농어촌의 과소화·노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농어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 젊은층의 농어촌거주 유도 및 농어촌 지역 사회 활력유지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4 - 계속
- 사업비('09) : 838억원(국비 419, 지방비 419)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거주, 농지소유면적 5.0ha 미만 농어가의 농어업인 영유아(0~5세, 취학유예 6세)
 - * 타부처(복지부, 교과부)의 저소득층 지원대상 아동은 제외(중복지원 금지)
- 사업규모 : 농어업인의 만 0-5세 자녀 50천명/월
- 지원형태 : 자치단체 경상보조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88	1,913	-	-	-	1,913	-	3,826
'05	31	224	-	-	-	224	-	448
'06	75	364	-	-	-	364	-	728
'07	78	507	-	-	-	507	-	1,014
'08	54	412	-	-	-	412	-	824
'09	50	406	-	-	-	406	-	812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62	1,851	-	-	-	1,851	-	3,702
'05	30	192	-	-	-	192	-	384
'06	56	316	-	-	-	316	-	632
'07	57	430	-	-	-	430	-	860
'08	66	494	-	-	-	494	-	988
'09	53	419	-	-	-	419	-	838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비율	농어촌지역 영유아 중 양육비 지원인원 비율	%	62	66	106.5
	양육비 지원 만족도	재지원 신청자 설문조사	%	70	70	100

II. 평가결과

1. 총 평

-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 자격심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였고,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였음
-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질 기본계획에서 지원수준을 확대키로 함
* 지원수준(시설이용/미이용) 70%/35%('09) → 90%/60%('12)
- 자격 심사강화를 통해 부정 수급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함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농어업인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고 농어촌 지역 사회의 활력을 유지함은 물론,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농어촌 저출산 문제 해결로 농어촌 공동체 복원에 기여함으로써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삶의질향상 계획 비전에 매우 적합함
- 농어업인 양육비 예산 집행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원자격관리를 강화하여 '09년 양육비 지원사업 지침을 개정(1.20)하여 지원대상 요건을 강화하여 농어촌 거주 농외소득 고소득자(3,500만원 이상)를 지원에서 배제함으로써 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하였음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농식품부에서 지침수립, 유권해석으로 안정성 및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지자체는 사업집행 등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사업추진체계가 적절하고, 사업 지원대상자 자격 확인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부적격자 및 누락자 발굴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추진방식도 매우 적절함

- 수시로 지자체 업무담당자와 간담회를 개최(2.3, 3.24, 11.3, 11.13)하고 지원자격 관련 사항 및 농외소득 평가방법 간소화 등을 요구하여 '10년 지침에 반영하였음
- 지원단가를 연차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삶의질향상 점검·평가단 평가 결과에 따라 농식품부가 지원단가를 상향하여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 조정되어 지원단가 인상이 미반영되고 있음, 다만 제2차 삶의질 기본계획('09.12확정)에서 '12년까지 지원수준을 확대기로 함
- 당해연도 예산 집행 실적은 예산 406억대비 419억(전용 13억)으로 지원인원(월평균)이 당초 48,652명에서 52,888명으로 증가하여 추가예산소요가 발생하여 예산을 전용하였으나, 차기년도('10년) 예산확보(406억원)면에 있어서는 예산 요구액 424억이 반영되지 못하였음
 - 당초 시설 미이용시 지원수준을 35%→40%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미 반영됨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농어업인의 양육비 부담이 연간 838억원 경감되어 육아 부담이 경감되었고, 만족도 조사 결과 당초 목표(70%)를 달성함
-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비율은 목표치 62%에 비해 실적치가 66.3%로서 양호한 결과를 시현함
 - 농림수산식품부의 양육비 지원인원(52,888명)/농어업인의 취학전 자녀 수 추정(79,719명) × 100 = 66.3%

3. 개선방안 등

-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수준의 지속적 확대가 필요함
- 교과부, 복지부의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사업과 정보를 연계하여 부정수급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1-3-2-0(계속)	여성농어업인센터 설치 확대 및 내실화 (지자체/농림수산식품부)
-------------	---------------------------------------

담당부서	농촌사회과	담당자	김춘기(사무관)
전화번호	02-500-1825	이메일	@korea.kr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추진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7조(여성농업인의 육성)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 사업목표 :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및 자녀에 대한 영유아 보육 지원 등으로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 보장 및 농촌정착 유도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2 - 계속
- 사업비('09) : 4,355백만원(지방비 3,722, 자부담 633)
- 지원대상 : 각 도별로 지원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운영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사업규모 : 전국 38개소
- 지원형태 : 민간 경상보조
- 지원조건 : 지방비 85%(분권교부세 포함), 자부담 15%
- 지원내용 :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
- 센터의 주요사업 내용
 - 필수사업 : 여성농업인 고충상담, 영유아 보육 및 방과후 학습지도, 교육·문화활동 등 지역실정에 맞는 자아실현 프로그램
 - 임의사업 : 농업·농촌 체험과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도농 교류사업, 농촌 소득증대 프로그램 등

3. 연차별 추진계획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영유아 보육 및 방과후 자녀 학습지도 등 종합복지기능을 수행하는 여성농업인센터 설치를 연차적으로 확대
-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등 여성농업인의 역할증대에 상응한 운영의 내실화 도모

<'09년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8					3,727	632	4359
경기도	4					392	44	436
강원도	3					287	51	338
충북	3					293	52	345
충남	3					296	52	348
전북	7					651	115	660
전남	4					383	68	451
경북	2					192	34	226
경남	6					668	118	786
제주	6					565	98	663

- '05년부터 사업이 지방이양되어 시행계획 변경

<'09년도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7					3,722	633	4,355
경기도	4					392	44	436
강원도	3					287	51	338
충북	3					293	52	345
충남	3					296	52	348
전북	7					646	116	762
전남	4					383	68	451
경북	2					192	34	226
경남	6					668	118	786
제주	6					565	98	663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지방이양전의 농업·농촌종합대책상의 연차별 계획으로 자치단체별
분권교부세 및 지방비 확보정도에 따라 사업목표 수정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여성농업인센터 지원	여성농업인센터 계획 대비 설치 비율	설치계획 ÷ 추진 실적	%	38	38	100.0

II. 평가결과

I. 총 평

- 농어업·농어촌기본법 제14조(여성농업인의 육성)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운영)를 근거로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및 자녀에 대한 영유아 보육지원 등으로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 보장 및 농촌정착 유도를 사업목표로 하고 있는 이 사업은 2002년부터 시행되어 온 계속사업임
-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및 자녀에 대한 영유아 보육 및 방과 후 자녀 학습 지도 등 종합복지기능을 수행하는 여성농업인센터의 설치를 연차적으로 확대한다는 당초 사업운영의 기본방향은 '05년부터 동사업이 지방이양되어 자치단체별 분권 교부세 및 지방비 확보 정도에 따라 사업목표 수정이 불가피하고, 지역마다 예산과 시설운영방법이 다르고 기준이 강화되어 운영 여건이 악화됨
- 국고보조금 수취 방안의 강구 등 안정적 재원확보를 강구하고, 전국적인 센터 운영개수를 점차 확대함은 물론, 다양한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센터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사업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규정 개정 및 실질 대상자 선정 시 폭넓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하고도 구체적인 운용제도와 시스템이 미흡함.

2. 평가결과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및 자녀에 대한 영유아 보육지원 등으로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 보장 및 농촌 정착 유도를 위해 여성농업인센터의 설치 확대 및 내실화 도모는 바람직함.

- 센터의 주요사업으로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및 자녀에 대한 영유아 보육지원 및 방과 후 학습지도, 교육·문화활동 등 지역실정에 맞는 자아실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필수사업에 추가하여, 농업·농촌 체험과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도농 교류사업, 농촌 소득증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부 수익성 사업을 임의사업으로 허락한 것은 센터 운영자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한정된 경비지원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판단됨
- 2002년부터 계속되어온 사업임에도 기설치 운영되고 있는 기존 여성농업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점검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동 사업에 대한 피드백이나 사업추진계획의 조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05년부터 동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자치단체별 재정여건(분권교부세 및 지방비 확보정도)과 예산 및 시설운영방법이 다르고 기준이 강화되어 운영여건이 악화됨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여성 농업인을 위한 특별 지원사업으로서 여성 농업경영인의 위상제고와 경영효율을 제고함
- '09년 전국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목표 38개소 대비 38개소 운영(100%)으로 지방이양전의 농업·농촌종합대책상의 연차별 계획으로 자치단체별 분권교부세 및 지방비 확보정도에 따라 사업목표를 수정함
- '07년 38 개소, '08년 37개소, '09년 38개소가 설치되어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영유아 보육 및 방과후 자녀 학습지도 등 종합복지기능을

수행하는 여성농업인센터 설치를 연차적으로 확대한다는 원래의 사업운영 기본방향에는 미치지 못함

3. 개선방안 등

-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등 여성농업인의 역할증대에 상응한 운영의 내실화 도모라는 지방이양의 목적이 무색해지고 있고,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아 2008년까지의 운영목표였던 시 군당 1개소 설치는 2010년까지는 어려울 전망이다
- 국고보조금 수취 방안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방안을 강구하고, 전국적인 센터 운영개수를 점차 확대함은 물론,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센터운영의 효율화와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에 대한 피드백이나 사업추진계획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여성농업인센터의 운영에 관한 점검과 평가 및 지역주민의 여론 조사가 필요함
- 여성농업인센터의 필수사업 중 영유아 양육지원 사업은 동일 지역, 동일 대상자를 위한 사업으로 타 부처의 사업과 중복될 경우 효율성이 저하 되고 예산 낭비 우려가 있음
- 전국적인 센터 설치 개소를 목표로 선정하는 동시에 지방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성 가능한 시간을 고려하여 추진 기간을 장기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1-3-3-1	농어가 도우미 지원 확대 (지자체/농림수산식품부)
---------	--

담당부서	농촌사회과	담당자	박성우(서기관)
전화번호	02-500-1819	이메일	tengrps@korea.kr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업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 도우미가 영농업을 대행함으로써, 영농업의 중단을 방지하여 농업 생산성 제고 및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특별법 제18조(농산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0년 ~ 계속('05년부터 지방 이양)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사업비 : 지방분권교부세 및 지방비에서 지원(지자체 사업)

3. 연차별 추진계획

< '09년도 시행계획 >

- 지원인원 : 4,865명
- 지원금액 : 6,873백만원

< '09년도 추진실적 >

	사업규모 (명)	국비(천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378	-	-	-	-	5,902,190	1,341,591	7,243,781
서울	-	-	-	-	-	-	-	
부산	17	-	-	-	-	14,280	3,570	17,850
대구	3	-	-	-	-	3,375	675	4,050
인천	8	-	-	-	-	5,528	1,382	6,910
광주	2	-	-	-	-	1,500	375	1,875
대전	3	-	-	-	-	1,944	216	2,160
울산	16	-	-	-	-	18,720	4,680	23,400
경기	85	-	-	-	-	424,000	106,000	530,000
강원	170	-	-	-	-	148,366	37,092	185,458
충북	300	-	-	-	-	900,000	225,000	1,125,000
충남	550	-	-	-	-	866,250	216,563	1,082,813
전북	460	-	-	-	-	592,906	65,879	658,785
전남	630	-	-	-	-	567,000	141,750	708,750
경북	1,000	-	-	-	-	900,000	225,000	1,125,000
경남	429	-	-	-	-	695,921	122,809	818,730
제주	705	-	-	-	-	762,400	190,600	953,000

- 어려운 경제여건과 농업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해 지자체에서 관련 예산 증액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목표치 및 실적 : 목표치 100%, 실적 105.4%
 -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 예산 일부 증액 반영(계획 6,873억원, 실적 7,244억원, 371억원↑)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가 도우미 지원	계획대비 지원율	계획대비 지원 실적	%	100	105.4	105.4

II. 평가결과

1. 총 평

-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지자체 별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에 1일 노임단가 30천원의 80%(20%는 자부담)을 지원함으로써 농어가 도우미가 영농 및 가사를 대행하여 여성농업인의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건강하게 산후조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지자체 이양사업이지만 사업예산을 일부 증액하여 여성농업인 복지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현장에서 높은 호응도를 보이는 사업임
- 연차별 추진내용은 '06년 지원대상 인원 3,811명에 3,747백만원(20% 자부담 포함)의 지원금액에서 '07년 4,516명에 6,036백만원, '08년 4,953명에 6,768백만원, '09년에는 4,378명에 7,244백만원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어 바람직함
- 다만, 지자체 이양사업이므로 지방비 확보 여부에 따라 지역별 지원 금액 및 일수, 지원 비율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지원 일수는 30~60일, 1일 지원 기준단가는 30천원~38천원, 지원 비율은 지방비 80~85%로 지자체 의지에 따라 지원조건이 상이함

2. 개선방안 등

- 가사도우미 지원 단가 현실화(현재 1만원 → 1만 3천원) 및 영농도우미 지원대상 및 지원가구 확대 필요
- 지자체 이양사업이지만, 출산장려와 산모 건강, 영농 지속 차원에서 지원조건을 상향조정하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권고할 필요가 있으며,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방분권교부세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기간인 90일을 적용하여 지원일수를 최장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1-3-3-2(계속)	취약농가 인력지원(농림수산식품부)
-------------	--------------------

담당부서	농촌사회과	담당자	박성우(서기관)
전화번호	02-500-1819	이메일	tengrps@korea.kr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15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0조 제③항
- 사업목표
 - 사고·질병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고령·취약농가에는 가사도우미 지원을 통해 영농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속시켜 농가소득 증대와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로 농촌활력 증진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년 ~ 계속
- 총사업비 : -억원('09년까지 기 투자액 : 178억원)
- '09 지원실적 : 31천명, 60억원
- 지원형태 : 민간보조(농특회계)
- 지원조건
 - 영농도우미 : 국고보조 70%, 이용농가부담 30%
 - 가사도우미 : 국고보조 70%, 농협부담 30%

- 지원금액
 - 영농도우미 : 52,000원/일(영농작업 대행 임금)
 - 가사도우미 : 10,000원/회(교통비, 식대등 활동비)
- 사업시행주체 : 농협중앙회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천 명)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82,000	157					67	224
'05								
'06	시범사업							
'07	23	39					16	55
'08	28	58					25	83
'09	30	60					26	86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51	97					41	138
'05								
'06	14							
'07	23	39					16	55
'08	28	58					25	83
'09	31	60					26	86

- '09 추진실적
 - 지원인원 : 31,168명(영농도우미 11,802명, 가사도우미 19,366명)
 - 국고지원액 : 5,992백만원(영농도우미 4,732, 가사도우미 1,260)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 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수혜자 만족도	친절도, 도움성, 필요성 등이 포함 된 전반적 만족도를 5분위 척도로 조사하여 상위 2분위까지 비율을 산정	%	90.0%	89.9%	100

II. 평가결과

1. 총 평

-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은 '09년 31,168명(영농도우미 11,802명, 가사도우미 19,366명)에게 5,992백만원(영농도우미 4,732, 가사도우미 1,260)의 국고지원을 하여 일손 부족이 빈번한 농촌지역에서 영농활동을 계속토록 하고, 안정된 가사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음
-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이 확대 개편되었음
 - 가사도우미 연간 방문회수 증가(10일 →12일)
 - 다문화 가정도 가사도우미 지원대상에 포함
 - 가구 업무량을 농협이 판단하여 1명 이상도 파견이 가능하도록 하되, 다수인 경우 파견사유서를 작성하여 보관
-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기본계획에 영농도우미 상한연령 상향 및 지원기간 확대, 농어촌 경로당 지원 등 가사도우미 지원 다양화 등 향후 지원확대 계획이 반영됨
- 농촌 고령화가 급진전되고 최근 농촌가구 특성(독거노인, 조손가정 등)에 따라 지원 대상자 연령, 적용 대상, 지원기간, 지원단가 등을 확대하고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농업인이 질병이나 농작업 사고로 영농을 유지하기가 곤란하고 농촌지역 고령화로 노령·취약가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인력 지원은 매우 중요한 수단임

- 지역농협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농협중앙회와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함
- 지원 수혜자가 매년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농작업 사고 발생율과 농촌지역 고령화 증가율, 가정형태를 고려하여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정부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농협이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합동으로 사업 추진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반영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농업인이 타 부처에서 제공하는 각종 유사 인력지원 사업의 인지 실태에 대해 타 부처와 함께 공동조사가 필요하고 대처 방안을 협의해 볼 필요가 있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은 인력이 부족한 농촌에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 활력 증진에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음
 - '09.12월 시행한 만족도 조사에서 89.9%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과목표치의 경우 이용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것은 적당하지만 '농촌현장 인력지원 수요 조사', '인력지원 서비스 인지도'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3. 개선방안 등

- 농촌 고령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수요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산 증액이 필요함

-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 이외에도 타 부처에서 시행하는 유사 사업이 존재하지만 농업인이 다양한 제도를 인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유사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여, 농촌지역에 지원되는 각종 부처의 도우미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인적 지원과 관련하여 통합 알선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1-3-5-1(계속)	여성농업인 창업지원 (농촌진흥청)
-------------	-----------------------

담당부서	농촌자원과	담당자	윤종탁(농업연구사)
전화번호	031-299-1071	이메일	jongtag@korea.kr

I. 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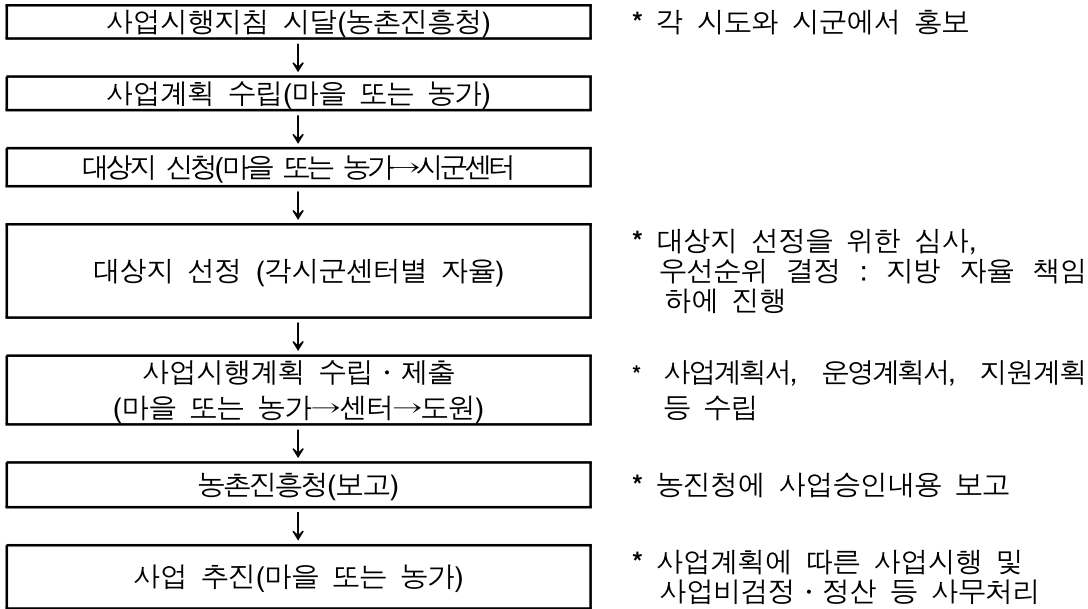
1. 사업목표

- 국내원료를 기반으로 한 여성농업인의 소규모 창업지원으로 지역농산물 부가가치 증진
- 여성농업인 생산제품의 품질향상과 온라인 홍보 시스템 구축으로 농가 소득 증대
- 추진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8조(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농촌진흥법 제2조2항(농촌지도사업은 시험연구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의 보급), 농촌진흥법 제13조(농촌지도사업 실시하는 지자체에 사업비 보조),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농산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년~
- 사업주체 : 농촌진흥청 및 지방농촌진흥기관
- 총사업비 : 142억원('08년까지 기투자액 : 6억원)
- 사업량 및 사업비 : 72개소 36억원(국비 50%)
- 시행방법 : 자치단체자본보조 및 중앙 집행(보조율 50%)
- 추진내용
 - 여성농업인의 지역농산물 소규모 가공 등 신규 창업 지원
 - 유통개선을 위한 품질개선·기술교육·홍보
 - 전자상거래 우먼팜 유지·관리 등

○ 추진체계



3. 연차별 추진계획

- 사업 규모(사업량) : 신규창업 72개소('08년까지 28개소), 우먼팜 유지·관리 1건
- 지원금액 및 형태
 - 창업 : 72개소 3,600백만원(국비50%), 자치단체 자본보조(50%)
 - 우먼팜 유지·관리 : 50백만원, 중앙집행 국고 100%
 - 지원조건 : 사업주체인 농가가 거주하고 있는 마을에 사업장이 있고, 해당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하며 가공·생산·상품화 작업이 해당지역 거주 여성들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장
- 사업 주요내용
 -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유통을 위한 원료확보
 - 전통식품 등의 생산, 가공을 위한 작업장 및 시설설치, 가공장비 구입 및 설치 등
 - 포장개발 및 유통개선에 필요한 자금 지원
 - 기술습득을 위한 교육 및 우수 지역 벤치마킹
 - 전자상거래 우먼팜 유지·관리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72	45.3		9.7	-	51	-	106
'05	24			2.3		2.3		4.6
'06	25	3.0		2.3		4.3		9.6
'07	25	3.0		2.3		4.3		9.6
'08	26	3.3		2.3		4.6		10.2
'09	72	36.0		0.5		35.5		72.0

※ 1개소 지방비(0.5억원) 미확보로 국비만으로 사업추진

※ 2009년 5월 추경예산 27.5억을 확보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71	43.8		9.5	-	49.3	-	102.6
'05	24			2.3		2.3		4.6
'06	25	3.0		2.3		4.3		9.6
'07	24	3.0		2.1		4.1		9.2
'08	26	3.3		2.3		4.6		10.2
'09	72	34.5		0.5		34.0		69.0

※ 3개소 3억원(국비·지방비 각 0.5억원) 2010년으로 사고이월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사업량은 신규창업 72개소 계획에 69개소 추진으로 96%, 전자상거래 우먼팜 유지관리가 1건 계획에 100% 완료 하였음
- 성과지표는 '09년 농촌여성 창업지원사업장(지원 후 3년차)의 매출액 조사결과 7.3%(목표치 : 전년대비 5%) 향상으로 목표대비 146%를 달성하였음

※ 창업 사업장 평균 매출액 : 58.8백만원('08) → 63.2백만원('09)

-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다품목소량의 웰빙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가와 사업장 대표 농가는 물론 농진청과 지자체에서 마케팅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목표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여성농업인 창업지원	지원후 3년차 사업장 매출액 조사결과	전년도 대비 매출액 향상정도	%	5	7.3	146

II. 평가결과

1. 총 평

- 여성농업인이 국내 원료를 기반으로 가공사업 등 창업을 지원하고 유통개선을 위해 품질개선, 기술교육, 홍보시스템 구축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게 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높음
- 여성농업인에게 시설지원에 그치지 않고 창업기술 관련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현장 컨설팅 및 상품 컨설팅과 마케팅을 지원하여 경영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안정적인 조기 정착에 기여하였음
- 그러나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 추경예산 사업장 55개소는 1회만 현장컨설팅을 실시하였고, 목표 300개소 육성을 위해서는 예산 확대가 필요함
- 우먼팜을 통한 실적이 제출되지 않아 전자상거래 활성화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농촌의 중요한 인적자원인 여성농업인의 소규모 가공 창업활동 지원은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농산물 부가가치 증진, 경제적 지위 향상 등으로 볼 때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겠음
- 하위 정책목표를 매출액 증가율로 지표로 설정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또한 현장 밀착형 기술지원체계를 추진하고 지도인력 확충하고 현장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여성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기술적·경영적인 지도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임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농촌진흥청, 지방농촌진흥기관, 사업장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 취지와 성과를 알려내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학습단체 연시총회 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단위 여성 농업인 단체에 적극 알리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사업만족도 조사결과에서 현장 컨설팅 및 기술지도에 87%가 매우 만족한다고 답변하여 여성농업인의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으로 평가됨
- 성과지표의 경우 ‘사업장 매출액 증가율’은 적절한 지표로 판단되며, '09년 7.3%로 목표 대비 146%를 달성하여 창업지원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함

3. 개선방안 등

-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소규모 가공사업 확대를 위해 창업지원 목표 300개소 육성을 위한 예산 확대 필요
- 여성농업인 수요 조사에 따라 추가적 예산 확보
- 시범사업 실시 후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순차적으로 기존 사업장의 경영 평가 필요
- 상시 기술 지원 및 컨설팅 체계 필요
- 전자상거래 우먼팜 활성화 방안 필요

1-4-1-1 (계속)	농산어촌 재가노인복지센터 확충
--------------	------------------

담당부서	요양보험운영과	담당자	변효순
전화번호	02-2023-8575	이메일	-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고령사회로 접어든 농어촌 지역의 노인가구 문제 및 장기요양보호 욕구를 해소하고자 가정 중심으로 노인을 보호함으로써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고 복지혜택의 지역편재를 해소
- 농산어촌 거주 등으로 인해 보건소, 복지회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이 곤란한 재가노인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5년 ~ '09년
- 사업비 : '09년 51억원(국비 25.5억원, 지방비 25.5억원)
- 사업내용
 - 농산어촌 거주 노인들의 복지혜택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이 복합된 다기능시설의 건립 지원
 - '09년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13개소 신축지원
-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시·군·구) → 사업대상 선정(복지부) → 예산신청(시·군·구) → 예산지원(복지부) → 사업시행(시·군·구)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05								
'06	16	27.5				27.5		55
'07	14	25.5				25.5		51
'08	12	25.5				25.5		51
'09	13	25.5				25.5		51

- 신축지원 개소수 기준이며, '10년부터 동 사업을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일반회계)과 통합하여 농어촌지역 재가시설 뿐 아니라 요양시설도 사업 신청이 있는 경우 적극 지원할 예정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05								
'06	16	27.5				27.5		55
'07	14	25.5				25.5		51
'08	12	25.5				25.5		51
'09	13	25.5				25.5		51

4. 성과목표 달성도

- 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 13개소 신축 지원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촌재가노인복지 시설 확충	농어촌재가노인시설 신축 지원 수	보조금 지원 개소수	개소	13	13	100

II. 평가결과

1. 총 평

- 농산어촌의 고령화 현상에 대비하고 2008년 도입된 장기요양 보험과의 연계를 통해 농산어촌 노인들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본 사업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음
- 동 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사업구성의 중요내용이 시설확충 즉 재가노인복지센터를 개설하는 것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농산어촌에 대해 부족한 시설을 완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005년부터 지속된 사업의 성격상 시설확충과 더불어 센터에서 운영하게 될 서비스의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한 연구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외에 인력, 농어촌 지역특성인 접근성의 문제, 도서산간지역 노인들을 위한 지원방안들이 장기적으로 함께 강구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성과목표 달성에 대한 성과지표는 객관적이고 재가노인 복지센터 확충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을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농어촌의 늘어나는 노인인구를 고려하고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기 위한 재가노인복지센터의 확충은 시의적절하고 충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음

- 그러나 동 사업의 목적을 고려 시 현재 사업은 시설확충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시설확충이외에 장기적으로 센터의 안정적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 하위목표에 대한 목표설정이 부족함
- 또한 센터건립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조, 기존 복지시설종사자, 특히 지역주민들과의 논의구조를 통한 센터설립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못하고 있음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사업추진에 있어 사업추진단계와 평가단계 등이 적절하게 구성되고 절차에 따라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업실시 후 중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중간모니터링제도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현 자료를 통해 파악이 어려움
- 예산배분의 경우 심사를 통해 설치가 결정된 지역에 센터건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에 전국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보고됨
- 그러나 구체적 센터건립 지역의 미기재로 인해 전국적으로 적정하게 센터건립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특히 농어촌지역의 신규건립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어렵다 할 수 있음
- 또한 센터건립을 통한 수혜를 지역주민들이 정확히 이해하고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와 지역주민들의 소통을 위한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농어촌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동 사업의 경우 성과목표로 “재가노인복지센터 확충수”를 두고 있음
- 동 목표 하에 2005년이후 전국적으로 55개의 센터가 건립된 것으로 나타나 사업의 기본적인 목적은 달성되고 있다 할 수 있음

- 노인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부족한 센터의 확충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후 추가적으로 센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노인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양적, 질적 지표의 개발과 설정이 함께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양적지표로 현재의 센터 확충수와 기관당 지원액, 접근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등을 들 수 있으며, 질적 지표로 운영프로그램 개발, 인력 및 관리지원 형태, 이용자 만족도 등을 고려할 수 있음

3. 개선방안 등

- 농어촌의 부족한 시설과 이를 통해 노인서비스 개선을 위한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센터 건립사업은 매우 의미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음
 -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져 현재 전국적으로 55개의 센터가 건립되는 등 소기의 성과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사업의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에서 센터건립이외에 센터내 인력에 대한 지원, 노인복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농어촌 특성을 고려한 센터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특히 노인들의 연령과 복지서비스의 질적 확보를 위해서는 센터내 근무직원에게 대한 지원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 연수 과정들을 함께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 단 성과달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에 있어 현재의 지표이외에 양적 및 질적 지표를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사업성과를 좀 더 명확히 분석함으로써 향후 사업의 발전에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4-2-4(계속)	농촌건강장수마을 조성(농촌진흥청)
-------------	--------------------

담당부서	농촌자원과	담당자	김영아
전화번호	031-299-2681	이메일	kya72041@korea.kr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촌 사회의 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응, 자연환경과 소프트웨어 중심 프로그램의 지원으로 건강하고 당당하며 활기찬 노년 생활유도
- 농촌노인과 예비노인에게 건강관리, 학습·사회활동, 환경, 소득·경제 등 4영역을 접목, 실천토록 지원하여 건강하게 장수하는 마을로 육성
- 사업추진 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법률제8749호) 제10조,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법률제9717호) 제1조, 4조, 5조, 19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법률제8868호) 제4조, 14조, 15조, 16조, 19조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5 ~ 2012
- 사업량 및 사업비 : 총 1,177억, 800개소
 - 국비·지방비 각 50%, 개소당 3년간, 총 137~150백만원
- 사업주체 : 시군 농업기술센터
- 사업추진체계

구 분	역 할 분 담
농촌진흥청	▷ 기본국가정책수립 및 평가, 장기 방향 설정 지도자료 지원과 사업 홍보, 홈페이지 운영 마을민, 사업담당자 등 관계관 교육 등 마인드 향상
농업기술원	▷ 사업추진계획 검토 및 보완, 지역 정체성 확립 지역단위 홍보 네트워크 구축
농업기술센터	▷ 사업계획 협의, 점검, 조정, 자문, 마을선정 자발적 참여 유도, 능력 함양 교육
마을	▷ 주민 협의 마을 발전 계획 수립 추진, 운영 위원회 운영

○ 추진내용

- 사업비 지원('07~'09) : 141개소, 35.3억원(국비)
- 사업내용 : 소득활동, 건강생활, 평생학습·사회활동, 환경정비 등 농촌 노인의 생산적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

3. 연차별 추진계획

○ 2005~2012년까지 800개 시범마을 육성

- 마을당 3년간, 개소당 50백만원 지원으로 자율적 마을 운영 기반 조성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회계	군특회계 (광특회계)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800	284.7	587.8			588.8		1,176.6
'05	100	21				21		42
'06	200	75				75		150
'07	50	77.2	2.8			80		82.8
'08	84	80	3.3			83.3		86.6
'09	7	31.5	3.7			35.2		70.5
'10	59		37			38		75
'11이후	300		256.3			256.3		512.6

※ '10년까지는 확정, '11년 이후는 향후 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회계	군특회계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41	284.7	9.8			294.5		589.1
'05	100	21				21		42
'06	200	75				75		150
'07	50	77.2	2.8			80		160
'08	84	80	3.3			83.3		166.6
'09	7	31.5	3.7			35.2		70.5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의 객관적인 평가를 목적으로 사업참여 어르신 대상으로 건강관리, 학습·사회활동 정도, 주거환경 등 부문별 생활만족도 조사한 결과 목표치의 105.3% 달성
 - ※ 본 사업을 보다 객관적인 성과 측정을 위해 사업 비대상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대상마을과 공통된 생활실태, 생활만족도조사 결과 62.1%로 사업대상마을과 비교결과 7% 다소 높은 차이가 나타남
 - 본 사업 건강장수환경만족도 설문조사는 이 사업이 도입되기 전과 비교했을 때 마을 제반 환경변화, 마을 노인들의 자부심 등 설문조사('07~'08년 마을 134개소 700명 대상)한 결과 목표치의 100.4%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촌건강장수마을	생활만족도	개인과 마을의 활력도 및 삶의 질 향상 증가 비율	%	66	69.5	105.3
	건강장수환경만족도	노년문화 자부심 지역사회 활력화	%	81	81.3	100.4

II. 평가결과

1. 총 평

- 농촌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현실을 고려할 때 경제, 건강, 환경, 사회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은 농업인 특히 고령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임
- 그러나 사업 종료 후에도 일회성 활동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유지하기 위한 후속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또한 사업성과 지표를 만족도 중심에서 건강행위 변화 척도(사업 전후 흡연, 음주, 운동 습관, 스트레스 척도 변화 등) 등을 평가하는 다양한 지표가 적용되어야만 객관적 사업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해당 마을의 요구도 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을 좀 더 현실화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절차가 있었으면 함.
- 중앙 단위(농촌진흥청)에 전체 사업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는 자문단이 필요함.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로 연결되는 유기적 행정 체계와 역할 분담, 그리고 마을 운영위원회 구성 등은 적절한 사업 추진체제로 평가됨
- 그러나 지역 내 보건소 혹은 기타 행정 관청에서 현재 진행 중인 유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사업 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함.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성과지표의 경우 단순 생활만족도 외에 건강행위 변화 척도(사업 전후 흡연, 음주, 운동 습관 등) 및 스트레스 척도 변화 등을 평가하는 다양한 지표가 적용되어야만 객관적 성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음

3. 개선방안 등

- 사업 종료 후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유지될 수 있는 후속 대책이 필요함
- 건강행위 변화 척도(사업 전후 흡연, 음주, 운동 습관 등) 및 스트레스 척도 변화 등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척도 개발이 필요함
- 지역 내 보건소 혹은 기타 행정 관청에서 진행 중인 유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사업 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함

1-4-3-0(계속)	경영이양직불제 추진
-------------	------------

담당부서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담당자	이창일(주무관)
전화번호	02-500-1763	이메일	ci006@mifaff.go.kr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목 적
 -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지원으로 소득안정
 - 전업농 영농규모 확대 지원으로 전업농 중심의 영농규모화 촉진
- 사업추진 근거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제5호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및 「시행규칙」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7년~계속
- 총사업비 : 9,951억원 ('09년까지 기투자액 : 1,980억원)
- 사업규모 : 82천ha ('09년까지 완료사업 물량 : 62천ha)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내용
 - 신청연령 : 65세 이상 70세 이하 농업인으로 보조금 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는 자
 - 지급단가 : 연 3,000천원/ha(6년 ~ 최대 10년)

- 지급기간 : 신청연령에 따라 6년 ~ 최대 10년(매월 분할지급)
- 지급요건 : 지급약정 체결 전날까지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보조금 지급대상 전·답·과수원을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60세 이하의 전업농업인 등에게 매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지급기간 이상 임대 또는 임대위탁해야 함
- 추진절차
 - 사업시행계획 공고 및 홍보(공사) → 대상자 선정 신청(농업인→공사)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공사) → 대상자 선정 통보(공사→농업인)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체결(공사↔농업인)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공사→농업인) → 사후관리(공사)

3. 연차별 추진계획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정('97.2.1)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정('97.2.25)
 - 고령 농업인(65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논을 전업농업인 등에게 매도 또는 임대할 경우 경영이양보조금(258만원/ha) 지급
- 물가 및 수매가격을 반영하여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단가 인상
 - ('98) 268만원/ha → ('00) 281만원/ha → ('03) 289만원/ha
- 매도이양에 대한 분할 지급형 직불제도 도입('04)
 - 매도이양시 ha당 연령에 따라 2~8년간 월 241천원씩 연금식으로 지급(임대이양시는 ha당 2,977천원 일시불 지급)
- 한미 FTA 보완대책으로 경영이양직불사업 확대 개편('09.1.6)
 - 신청대상 연령을 65~70세로 변경('09년도는 74세까지 포함)
 - 지급 대상농지를 농업진흥지역의 전·답·과수원, 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된 전·답·과수원까지 확대
 - 지급단가를 매도, 임대(임대수탁 포함) 구분 없이 ha당 월 250천원으로 하고, 지급기간은 이양연령에 따라 6~10년간 매월 지급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대통령령) 개정('09.1.6) 및 「시행규칙」(부령) 개정('09.1.9)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ha, 억원)

	사업규모 (ha)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 등			
합계	45,096	1,719						1,719
'05	8,278	286						286
'06	4,818	175						175
'07	2,000	113						113
'08	20,000	300						300
'09	10,000	845						845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ha, 억원)

	사업규모 (ha)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 등			
합계	23,496	933						933
'05	7,267	221						221
'06	3,709	144						144
'07	2,345	113						113
'08	1,885	131						131
'09	8,290	324						324

※ 2009년도 시행계획과 실적 차이 사유

- '09년의 경우 제도개선을 하였으나, 재약정 실익이 없는 자의 재약정 포기, 고령농업인의 농지 소유의지 및 영농기계화 위탁영농 등 벼농사의 편리성 등으로 자경의지가 강하여 사업 참여 저조하였고, '08년도 제도개선 지연에 따른 경영이양 부진으로 '09분할지급 면적 감소하여 '09년 실적이 부진함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

- '09년도 성과지표(경영규모 3ha 이상 농가수 비율) 목표치인 7.46%를 100% 달성(실적 7.50%)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경영규모 3ha 이상 농가수 비율(%)	(경영규모 3ha 이상 농가수 /전체 농가수)×100	%	7.46	7.50	100.5

※ 89,603농가(경영규모 3ha 이상)/1,194,715농가(전체 농가수) : 2009년 농업조사 결과(통계청)

II. 평가결과

1. 총 평

- 경영이양직불금 단가 인상과 제도의 종합적인 개선으로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에 따른 소득안정 및 전업농의 영농규모화 촉진에 기여
- 제도개선 지연 및 기 이양분 재약정 목표 달성 미달로 '09사업비 일부 미집행
- 고령농업인의 정서 상 농지소유와 자경의지가 강하고, 영농편리성이 증대되어 고령농업인 수 대비 경영이양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고령 은퇴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경영이양 되는 농지를 전업농의 영농규모화에 활용하는 계획은 적절함
- 한미 FTA 타결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보조금 지급단가를 인상하고 지급대상 농지를 확대하며, 지급기간을 75세까지 최장 10년으로 연장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신청대상 연령을 65~70세로 변경('09년도는 74세까지 신청 가능)
 - 지급 대상농지를 농업진흥지역의 전·답·과수원, 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 된 전·답·과수원으로 확대
 - 지급단가를 매도, 임대(임대수탁) 구분 없이 ha당 월 250천원으로 하고, 지급기간은 이양연령에 따라 6~10년간 매월 지급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및 지사 등이 역할 분담을 하고 사업의 취지에 대한 홍보도 다양하게 실시하여 사업 추진은 효율적

이라고 할 수 있음

- 홍보 강화로 '08년 면적기준 대비 439.7%가 증대하였으나, '09년 사업비가 미집행 되었으므로 향후 예산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 필요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09년에 고령농업인 10,530명에게 10,553백만원을 지급하여 영농은퇴 후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소득 지원함 (1인당 평균 100만원)
 - '97~'09년까지 고령농업인 88천명에게 1,837억 원을 지원(1인당 연간 200만원)
- '09년에 전업농 8,011명에게 8,290ha를 이양하여 1인당 1.03ha 영농 규모 확대에 기여함
 - '97~'09년 전업농 59,1천명에게 61.6ha를 경영이양(1인당 1.04ha 영농 규모 확대)
- 고령농업인 400명을 대상으로 경영이양직불제 만족도 조사 결과 88%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3. 개선방안 등

- 확대 개편된 내용에 대하여 농업인에게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영농규모화 및 고령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은퇴농 생활안정자금 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이의 결합을 통한 제도보완이 필요함

제2절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교육)부문 점검·평가 보고서

평가팀장 최준렬(공주대학교)	평가위원 강일국(목포대학교)
평가위원 이승엽(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평가위원 임연기(공주대학교)

I. 총 평

-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17개 사업이 추진되었음. 이중 일반 사업이 2개, 소규모 사업이 2개이고 나머지 13개 사업은 지방이양 사업임. 일반사업은 군단위 소규모 학교 통폐합 사업과 농산어촌 대학생 학자금 용자지원 사업임. 군단위 소규모 학교 통폐합 사업은 1년의 단기 사업으로 추진되었고, 농산어촌 대학생 학자금 용자지원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소규모 사업은 한국농수산대학 개편운용 사업과 농어업관련 대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으로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나머지 13개 사업이 지방에 이양되어 중앙에서 계획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를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음
- 농산어촌의 교육사업이 지방사업이기 때문에 농산어촌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농산어촌의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생활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국이 함께 노력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중앙 차원의 방향설정, 계획수립, 지역과 공동으로 연계한 사업추진 등이 필요함
- 추진된 사업의 주요 특징은 보면 농산어촌 우수고 집중 육성사업은 농산어촌 학생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효과를 가져왔음. 사업은 6년동안 사업이 추진되었

으며, 2009년부터는 기숙형고교 사업으로 연계되어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음.

- 한국농수산대학 개편 운영은 농산어촌에 정착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으며, 군단위 소규모 학교 통폐합 사업은 소규모 학교 문제를 군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을 받아 지역의 여건에 부합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 연중 돌봄학교 육성,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농어업인 자녀의 학자금 지원, 학자금 융자 지원 등의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산어촌을 지원하고 있으나 사업계획과 성과, 현장의 요구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급식비 지원은 급식의 단가 등이 적절하지 않으며, 지역에 따라 자부담 비율에 차이가 커 동일한 자영농과계열, 수산계열에 재학하는 경우에는 지원비율이 다름. 지원비율을 유사하게 하여 지역에 따른 격차를 축소할 필요가 있음.
-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농산어촌 순회교원 수당, 학교도서관 장서 확충 등의 사업은 평가 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크지 않음. 기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고, 중앙에서도 지방이양 사업이라는 이유로 전혀 관리하지 않기 때문임
- 기숙형고교 지정 추진이나 전원학교 사업은 지방예산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추진되지만 중앙사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중 특별교부금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책을 입안하여 예산을 배분하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에 따라 사업이 관리 운영됨. 이와 같이 지방에서 지방비로 집행하는 예산이지만 중앙의 정책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이 아닌 중앙사업(일반사업)으로 분류하여 사업을 관리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음.

II. 평가결과

1. 부문별 평가결과표

코드번호	사업명	평가점수	순위	평가등급	비고
2-2-2-1	농산어촌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96	1	상위	
2-1-1-4	한국농수산대학개편운영	93	2	중위	
2-1-2-8	군단위 소규모 학교 통폐합	92	3	중위	
2-2-2-2	농어업관련 대학생 장학금 지원	92	3	중위	
평 균		93.25			

* 순위는 일반사업, 소규모사업만 매김

2. 평가 상위사업

- 농산어촌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산어촌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무이자로 지원해주며 졸업 후 1년 후부터 상환하도록 하고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융자하는 대학생 학자금 융자의 이자율이 5.8%임을 고려한다면 파격적으로 융자를 하고 있으며, 지원자의 88%가 융자를 받고 있음. 1인당 지원액이 2008년도에는 159만원이었으나 2009년도에는 164만원으로 증액되어 현실적 수요를 반영하였으나 지원자 중에서 12% 정도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함
- 농산어촌 대학생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대학생들의 취업난을 고려하여 융자금에 대한 상환도 졸업후 1년 후에서 3년 후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함.

3. 평가 하위사업

- 군단위 소규모 학교 통폐합 사업과 농어업관련 대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이 하위사업으로 분류되었지만 사업이 4개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하위사업으로 분류하기 어려움.

- 이들 사업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점이 된 것은 군단위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단기사업으로 추진되어 농산어촌의 교육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양하게 추진되지 못하였고 자칫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를 과도하게 폐교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이고, 농어업관련 대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이 장학금을 늘이는 대신 지원규모를 줄여 혜택이 적게 돌아갔기 때문임.
- 농산어촌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위의 사업들도 지역의 여건에 맞게 신중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음.

Ⅲ. 평가소감

-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사업을 평가하면서 부딪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지방사업에 대한 평가가 어렵다는 점임. 지방에서 계획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사업을 중앙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평가를 수행하는 일이 대단히 어려움. 이런 어려움 때문에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농어촌 지역 사립유치원교사 처우개선, 농어업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학교도서관 및 장서 확충 사업 등은 사업 집행 내역이나 성과 등의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평가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음.
-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사업 중에 반복적이고 기계적으로 편성되는 사업은 사업관리도 되지 않을뿐더러 사업의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삶의 질 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짐. 이런 사업들에 제외되어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이 제대로 계획되고 집행될 수 있으며 성과를 파악하고 차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이런 사업으로는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농어촌 지역 사립유치원교사 처우개선, 농산어촌 순회교원수당 및 복식수업

수당, 학교도서관 및 장서 확충 사업임.

- 기숙형 고교, 농산어촌 전원학교,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장학금지원, 급식비 지원 등은 지방이양 사업이지만 중앙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방향을 설정하고 지원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들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농산어촌의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으며 안정된 농산어촌, 돌아오는 농산어촌이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할 것으로 여겨짐
- 중앙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비록 지방사업 일지라도 사업의 집행 내역, 성과, 만족도 등을 파악하여 사업의 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특히 금년의 경우 자료가 부실하여 평가를 어렵게 하고 있음.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부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제도 필요함.
- 기숙형고교 지정 추진이나 전원학교 사업은 지방예산인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추진되지만 중앙사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중 특별교부금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책을 입안하여 예산을 배분하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에 따라 사업이 관리 운영됨. 이와 같이 지방에서 지방비로 집행하는 예산이지만 중앙의 정책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사업은 중앙사업으로 분류하여 사업을 관리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음. 이런 노력이 이루어져야 중앙차원에서 농산어촌 교육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며 이를 평가하여 농산어촌 교육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2-1-1-1(지방이양/계속)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 (지자체/교육과학기술부)
------------------	------------------------------

담당부서	교육복지정책과	담당자	조홍선(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521	이메일	caohao@mest.go.kr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산어촌에 우수 고등학교를 집중 육성하여 고등학교 단계에서 우수 인재의 도시유출 방지
-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농산어촌에서도 안심하고 자녀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반 조성 및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4~2009년
- 총사업비 : 62억원(09년도 사업비)
- 사업규모 : 41개 시군(郡) 지역 42교
- 지원형태 : 특별교부금
- 지원조건 : 특별교부금 지원액 이상의 자체 대응투자
- 사업시행주체 :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학교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교)	국비(억원)				지방비 (억원)	자부담 (억원)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69				233		1,347
'04	7					24		24
'05	14	61						61
'06	37	168				71		239
'07	73	240						240
'08	69					76		76
'09	72					62		62

※ 사업규모는 사업비 교부대상 학교와 성과우수학교의 수를 합산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교)	국비(억원)				지방비 (억원)	자부담 (억원)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69				233		1,347
'04	7					24		24
'05	14	61						61
'06	37	168				71		239
'07	73	240						240
'08	69					76		76
'09	72					62		62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산어촌 우수교 육성	학교 구성원 만족도	수혜자 만족도 조사	%	65%	73.38%	112.8%

II. 평가결과

1. 총 평

- 농산어촌 우수고 집중 육성 사업은 2004년도에 착수하여 2009년까지 6개년 동안 전반적으로 계획대로 추진해온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음. 교육환경 개선, 우수 입학생 유치, 교육프로그램의 질 향상, 졸업생의 대학진학 실적에 있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음
- 다만 우수고로 선정된 학교에 대한 지속적 재정 지원이 담보되지 않았고, 우수고 사업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초기에 우수고로 선정된 일부 학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못하였음
- 농산어촌 우수고 사업은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숙형 공립고 사업 추진의 기반이 되었음.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 가운데 기숙형 고교 지원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 우수고 사업의 안정적 추진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음. 농산어촌 우수고 사업이 금년 사업을 마지막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기숙형 공립고 지원 사업과의 차별성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소될 것임. 2009년까지 6년간의 사업성과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목표

- 본 사업은 농산어촌에 소재하는 우수 고등학교를 집중 육성하여 고등학교 단계에서 우수 인재의 도시유출을 방지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농산어촌에서도 안심하고 자녀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며,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음
- 본 사업 지원 대상은 '07년까지 선정된 농산어촌 우수고 86교이며,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장학금, 원어민 강사, 교육시설 현대화 등 지원 및 자율학교 지정·교장공모제 도입 등을 시도함

□ 추진 계획 및 실적

- 지방비 62억원을 계획대로 집행함
- 2007년도에 선정된 42개교의 우수교에 대한 3년차 재정지원과 총 86개교에 대한 컨설팅 및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였음

□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를 보면 농산어촌 우수교 학생·학부모·교사 만족도는 73.38%로 계획 대비 12.8% 상승하였음. 농산어촌 우수교에 대한 지속적 지원·컨설팅 및 성과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만족도가 목표치·전년도 대비하여 대폭 상승하였음

2-1-1-4(계속)	한국농수산대학 개편 운영(농림수산식품부)
-------------	------------------------

담당부서	한국농수산대학(기획실)	담당자	김영환
전화번호	031-229-5161	이메일	kim2006@korea.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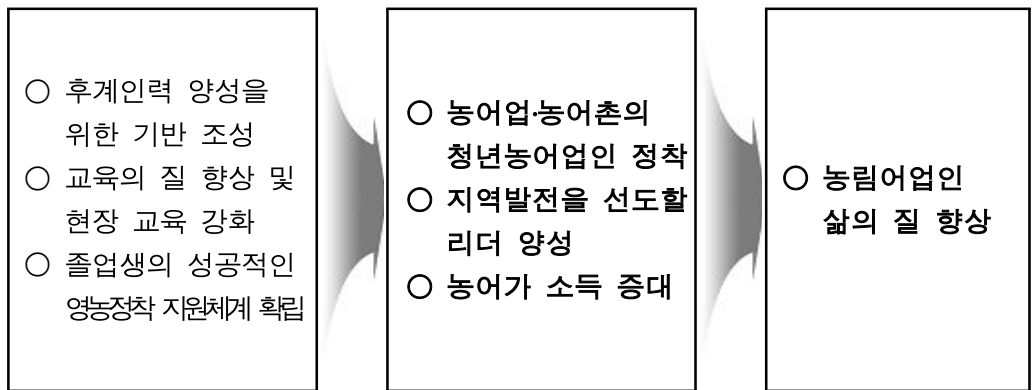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어업인구의 급감과 초고령화, 농수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우리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을 이끌어갈 후계농어업인력 양성
- 추진근거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법률 제9624호)」 및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757호)」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5년 ~ 2009년
- 사업량·사업비 : 840명 (240명×1학년, 300×2학년), 7,954백만원
- 사업주체 :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직접 수행)
- 추진내용



○ 사업추진체계

- 발전방안 마련 및 보완(T/F팀 운영) → 의견수렴(세미나, 공청회)
→ 발전방안 보완 및 확정 → 추진 → 평가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차별 추진내용

- 1단계('05년) : 개편방안 마련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 2단계('06~'08년) : 학제·정규과정 개편, 직업훈련과정 시범 교육 실시, 학교 명칭변경, 시설 확충 등 개편 추진
- 3단계('09년) :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재설정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일반회계	기금등			
합계	3,600명	351			18			369
'05	720	62			6			68
'06	720	66			6			72
'07	720	68			6			74
'08	780			76	-			76
'09	840			79	-			79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일반회계	기금등			
합계	2,160명	196			14			210
'06	720	66			6			72
'07	720	68			2			70
'08	840			76				76
'09	840			79				79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한국농수산 대학 개편운영	졸업생 영농정착률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 보고서	%	95.0	99.6	104.8
-	졸업생 농가 평균소득률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 보고서	%	190	242.2	127.5

* 졸업생 농가 평균소득률 = (졸업생 농가 평균소득/농가평균소득)×100

<한농대 졸업생 영농현황 분석>

- 조사대상 1,577명 중 영농유예자 129명을 제외한 **1,442명(99.6%)**이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며, 2008년 대비 5.4% 높아짐
 - 졸업생 2,066명 중 학비상환자(예정자 포함) 113명, 학비지원조건 이행 면제자 24명이며 358명(1기~4기)이 학비지원조건 이행기간이 종료됨. 이행기간 종료자 중 294명(82.1%)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

<한농대 졸업생 농가소득 분석>

- 조사대상 졸업생 농가 1인당 평균 영농규모는 32,560㎡이며, 농가소득은 7,392만원으로 전년 7,085만원 보다 4.3% 증가
 - 졸업생의 소득 분포는 30백만원 이상이 전체의 71.7%이며 100백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졸업생도 전체의 23.5%
 - 전년대비 50백만원미만이 54.3%에서 48.0%로 낮아진 반면 50백만원이상 고소득 졸업생은 45.7%에서 52.0% 6.3% 늘어남
 - ※ 1억원이상 졸업생은 전년도 220명(17.%)에서 292명(23.5%)로 5.9% 늘어남

<졸업생 소득분포 비교(2007, 2008)>

구분	50백만원미만	50백만원이상	100백만원이상
2008	48.0	52.0	23.5
2007	54.3	45.7	17.6
차이	-6.3	6.3	5.9

II. 평가결과

1. 총 평

- 한국농수산대학 개편운영사업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농어업, 농어촌의 발전을 이끌어 갈 후계 농어업인력을 양성하려는 한국농수산대학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시행되는 사업임.
- 2009년에 이 대학 졸업생의 99.6%가 영농에 종사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으나, 국가 농업을 이끌어갈 핵심 인력을 양성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판단 하에, 졸업생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하고, 평생교육에 부응하는 교육을 운영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
- 2006년도 재원은 농특세 196억원과 기금 등 14억원을 포함하여 합계 210억원, 2007년도 재원은 농특세 68억원과 기금 6억원 등 합계 74억원을 국고로 확보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76억원을 지원하였고, 2009년에는 79억원을 지원함
- 2009년도 졸업생의 영농 정착률은 목표치 95.0%를 초과하여 99.6%를 달성함. 다만, 졸업생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급감하고 있는 농어업인구를 유지할 뿐 아니라 농어촌지역의 발전을 이끌고 갈 후계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각종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 목표는 매우 적절한 것임.
- 한국농수산대학이 우수한 전문농어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및 교원여건을 개선하고 졸업생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는 세부 사업목표는 상위목표에 부합됨

- 한국농수산대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제개편 및 전공심화과정 운영, 입시제도 개선 및 홍보강화, 학과 계열화 및 계열 증설, 장기현장실습 개선, 졸업생 영농정착 지원강화 등의 세부목표는 구체적이고 적절함.
- 세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교과개편, 전공심화과정, 장기현장 실습, 기숙사 운영에 관한 T/F팀을 운영하고, 한국농수산대학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 등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함.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한국농수산대학의 교육운영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시험연구기관, 도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와의 연계성, 실험·실습시설 활용의 용이성, 장기현장 실습농장 선정 등이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필요 있음.
- 졸업생의 교육만족도를 조사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 ‘학비지원조건 이행 상황보고서’를 통하여 영농정착률을 파악한 것은 객관성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적절한 조치였음. 다만, 졸업생의 교육만족도의 경우, 졸업이후 대학지원 요구사항에 대한 설문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우수인력확보를 위하여 입시제도를 개선하고, 교육의 질 향상 및 현장교육을 강화하며, 졸업생의 성공적인 영농정착 지원체계 확립 등에 관한 일정을 준수하여 시행한 것은 적절한 것임. 졸업생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하여 졸업생들 자체적인 모임을 활성화 할 뿐 아니라 졸업후 3년차까지 대학에서 학과 교수진이 지도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의무 영농이행대상자 99.6%가 영농에 정착, 농촌의 유지에 기여함. 졸업생의 89.3%가 지역 리더로 활동하고 있으며, 졸업생 농가의 평균소득은 일반농가보다 2.4배나 높게 조사되었음
- 사업만족도는 재학생 및 졸업생 평균 78.5점으로 전년도 77.1점 대비 1.4점 향상됨.
- 영농종사의무가 해제되어 영농 정착률이 급격히 낮아질 것으로 우려되었으나 적극적인 추수지도를 통해서 당초 성과목표치를 초과 달성 시킴

3. 개선방안 등

-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에 따라 학과개설(수산양식학과), 학생 교육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함. 대학의 비대화보다는 내실화가 우선적 과제임
- 한국농수산대학 개편 운영 사업이 농어업 후계인을 양성하는 데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위하여 추가적인 성과목표의 설정과 관리가 필요함
-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한국농수산대학도 포함되어 있어 적정 시설비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

2-1-2-8(신규)	군단위 소규모학교 통폐합 (교육과학기술부)
-------------	----------------------------

담당부서	교육복지정책과	담당자	조홍선(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521	이메일	caohao@mest.go.kr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군(郡) 지역 장기발전 계획과 연계된 학교 통폐합을 통해 소규모 학교를 적정규모로 재배치하고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력 강화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9년 ~2011
- 총사업비 : 619억원(국고 250억원, 특교 369억원)
- 사업규모 : 9개군
- 지원형태 : 국고 및 특별교부금
- 지원조건 : 100% 국고 및 특교 지원
- 사업시행주체 :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군)	국비(억원)				지방비 (억원)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일반회계	기금등			
합계	2		-	250	-	250	-	500
'09	2		-	250	-	250	-	500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군)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일반회계	기금등			
합계	9			250		353		603
'09	9			250		353		603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군단위 소규모학교 통폐합	선정된 대상 군	군 개수	개	2	9	450%

II. 평가결과

1. 총 평

- 군단위 소규모학교 통폐합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여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적정규모화하고,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교육여건과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임.
- 사업 추진은 2009년에 시행되었으며 최초 2개 군만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9개 군이 선정되어 당초 목표치 보다 4.5 배가 더 많이 달성되었음.
- 사업추진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정책 방향과 사업내용을 제시하고 해당 시·군이 응모하여 우수한 응모자를 사업자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음. 이런 과정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지역의 여건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음.
- 군단위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기존의 소규모학교 통폐합과는 다르게 군을 단위로 하여 소규모 학교를 재배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자칫 많은 소규모 학교들이 폐교되어 교육을 열악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음. 학교를 폐교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이 폐쇄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고려를 할 필요가 있음.
- 2009년도에는 신청한 군 지역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과와 만족도를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소규모 학교는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과제임.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과 같이 미시적인 접근으로는 지역의 소규모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움. 이런 필요성에 따라 지역 단위에서 소규모학교 문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획이 적절하고 지역의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사업을 계획하였다는 점에서 적절성이 높다할 수 있음.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교육적 수요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음.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를 선정하여 배정하지 않고 지역의 여건에 따라 응모하도록 하여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였다는 점에서 사업추진이 적절하게 수행되었다고 할 수 있음. 당초 2개 군에 한해 시범운영하려고 하였으나 9개 군까지 확대 시행된 점은 정책이 현장에 부합되고, 실효성있게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사업의 성과를 계획된 사업을 100% 달성한 점으로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 예산이 집행되어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아직 이런

과정을 밟지 않았기 때문에 성과를 충분히 알 수 없음. 차기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3. 개선방안

- 군단위에서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는 일은 지역에 따라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임. 이런 필요성을 파악하여 국가가 지원해 줌으로써 지역의 여건에 부합되게 학교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은 필요하다고 여겨짐.
- 그러나 사업예산이 2009년에만 한정되어 있고 2010년 예산은 반영되어 있지 않아 단기성 사업에 그치고 마는 사업임. 사업의 필요성이 있고, 교육적으로 바람직할 경우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교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2-1-3-4(계속)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	--------------------------------------

담당부서	학교선진화과	담당자	곽재규(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416	이메일	jaekyou@mest.go.kr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산어촌 지역의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하여 농산어촌 학생의 교육 기회 확대 및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 다양한 양질의 방과후 교육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만족도 제고 및 농산어촌 정주 여건 개선

2. 사업내용

- 사업 지원 대상 : 군 및 읍·면이 있는 도·농복합시 전체
- 사업 규모(사업량) : 140개 시·군 (86개 군 및 54개 도·농복합시)
 - * 사업 연차별 지역수 : 3년차('06~)19개, 2년차('07~)70개, 신규('08~)51개
- 지원금액 및 형태 : 지방비 707억원*
 - *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제외 금액 (제주특별자치도는 별도기준에 의해 일괄 교부)
- 사업 주요내용
 - 농산어촌 지역은 지리적 여건, 학생 수 부족 등으로 수익자 부담에 의존한 방과후학교 운영에 한계가 있으므로, 강사비 또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컴퓨터, 문화·예술 등 특기·적성 교육을 위한 각종 기자재 및 학교 간 연계 프로그램을 위한 시설비·운영비 지원
 - 방과후 학교 업무 전담 계약직 인건비 지원 등

3. 연차별 추진계획

<'09년도 시행계획>

	사업규모 (개 군(郡))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40	-	-	-	-	70,708,852	-	70,708,852
부산	1	-	-	-	-	835,861	-	835,861
대구	1	-	-	-	-	489,055	-	489,055
인천	2	-	-	-	-	271,016	-	271,016
울산	1	-	-	-	-	549,250	-	549,250
경기	15	-	-	-	-	4,168,436	-	4,168,436
강원	15	-	-	-	-	8,156,842	-	8,156,842
충북	11	-	-	-	-	6,969,810	-	6,969,810
충남	16	-	-	-	-	7,958,600	-	7,958,600
전북	13	-	-	-	-	6,961,959	-	6,961,959
전남	21	-	-	-	-	12,000,000	-	12,000,000
경북	23	-	-	-	-	13,378,123	-	13,378,123
경남	19	-	-	-	-	7,309,000	-	7,309,000
제주	2	-	-	-	-	1,660,900	-	1,660,900

<'09년도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40	-	-	-	-	70,708,852	-	70,708,852
부산	1	-	-	-	-	835,861	-	835,861
대구	1	-	-	-	-	489,055	-	489,055
인천	2	-	-	-	-	271,016	-	271,016
울산	1	-	-	-	-	549,250	-	549,250
경기	15	-	-	-	-	4,168,436	-	4,168,436
강원	15	-	-	-	-	8,156,842	-	8,156,842
충북	11	-	-	-	-	6,969,810	-	6,969,810
충남	16	-	-	-	-	7,958,600	-	7,958,600
전북	13	-	-	-	-	6,961,959	-	6,961,959
전남	21	-	-	-	-	12,000,000	-	12,000,000
경북	23	-	-	-	-	11,148,436	-	11,148,436
경남	19	-	-	-	-	6,900,250	-	6,900,250
제주	2	-	-	-	-	1,656,900	-	1,656,900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읍면이 있는 모든 시군(140개) 지원
- 농산어촌 학생들의 68.7%가 방과후학교 만족 (목표치 67%)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농산어촌 지역 수	시·도교육청이 방과후학교 운영을 지원한 기초자치단체 수	시·군	140	140	100
	농산어촌 지역의 방과후학교 만족도	농산어촌 지역 학생 만족도 조사 실시	%	67	68.7	102.5

II. 평가결과

1. 총 평

-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은 2006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음. 농산어촌 지역의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하여 농산어촌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 및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방과후 교육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만족도 제고 및 농산어촌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 사업의 취지와 사업 목표가 분명함. 2009년에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는 읍면이 있는 모든 시군 140개를 지원하여 100% 달성했으며, 농산어촌 학생들의 69.7%가 방과후 학교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목표치 67%를 상회하여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하였음
- 이 사업은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농산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그 동안 학교 현장에서 전개되어 온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학습, 방과 후 교실 등 모든 방과후 교육활동을 포괄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그 필요성이 매우 높음
- 사교육비 경감, 교육복지 실현, 학교의 지역 사회화를 위한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은 우수한 인적 자원을 농산어촌에서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일선 교사들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 방과후 수업이 부실화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업무 분담 등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또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보다 다양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접근의 필요가 있으며, 우수사례가 전파될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사업목표가 분명하고, 농산어촌 지역의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하여 교육 기회 확대 및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등 삶의 질 향상의 상위 목표와도 잘 부합되는 사업임
- 지리적 여건 학생 수 부족 등 수익자 부담에 의존한 방과후 학교에 한계가 있어 강사비 또는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학생과 학부모의 프로그램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한 대책과 지원이 더욱 필요함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사업추진은 군 및 읍면이 있는 도농복합시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청 시군 모두 지방비를 확보하고 확보된 예산을 지원하는 과정을 밟고 있음. 추진과정에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음
- 지방이양사업 전환 후 2008년보다 지방비 부담이 줄었으나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의 경우 여전히 부담이 큼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 농산어촌 지역수와 시·도 교육청이 방과후 학교 운영을 지원한 기초자치 단체수를 조사하여 측정한 결과 목표치 100%를 달성하였음
- 농산어촌 지역의 방과후학교 만족도는 학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목표치 대비 102.5%를 달성하였음
- 만족도 조사뿐만이 아닌 수요자가 필요로하는 프로그램 수요조사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3. 개선방안 등

- 방과후교육활동 활성화 지원으로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 여건이 개선되고 다양한 교육 수요의 학교내 흡수로 사교육비가 경감되고, 소외계층 지원과 청소년 보호 및 선도의 교육복지 실현, 학교간 연계, 지역사회 성인까지 참여할 수 있는 학교의 지역 사회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은 매우 바람직함
-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활성화된 학교는 사교육비가 초등 37.6%, 중학교 19.7%, 고교 25.4%가 줄었다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자료에도 발표되었듯이 사교육비 절감의 효과가 입증된 만큼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질 제고가 필요함
- 지역간 방과후 학교 수준차 해소,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수요조사 실시를 통한 프로그램 다양화, 인근학교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설활용 극대화, 평생학습 등 학교의 지역 사회화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대한 연구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일부 호응이 있는 프로그램의 경우 대외적으로 홍보되어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도입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호응이 좋은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지역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이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음
- 지역의 산촌유학센터, 생태귀농, 산촌 유학 등 지역의 우수한 강사 자원을 개발하여 방과후 학교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할 필요가 있음

2-1-3-6(신규)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육성 (교육과학기술부)
-------------	-----------------------------

담당부서	교육복지정책과	담당자	조홍선(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521	이메일	caohao@mest.go.kr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산어촌 학교 학생에 대해 학기중·방학중·주말 등에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교육복지 지원 강화 및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9년 ~2011년
- 총사업비 : 298억원(2009년 사업비)
- 사업규모 : 12개 시도(道)교육청 소속 85개 군지역 면소재 378교
- 지원형태 : 특별교부금
- 지원조건 : 특교 100% ('10년부터 시도교육청 대응투자 30%)
- 사업시행주체 : 교육과학기술부, 12개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교)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78		-	-	-	298	-	298
'09	378		-	-	-	298	-	298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교)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78		-	-	-	298	-	298
'09	378		-	-	-	298	-	298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구성원 만족도	설문조사	%	70	72.8	104

II. 평가결과

1. 총평

-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육성 사업은 최초의 농산어촌 지역 교육복지 사업임. 농산어촌 학교·학생에 대한 학습·문화·복지 등 통합적 교육 복지 지원을 통하여 도·농간 교육격차의 해소를 도모하고자 함
- 특히, 면 소재 학교 교육력 강화 및 학생에 대한 365일 교육복지 지원을 통하여 농촌학생의 도시로의 이탈을 방지하고 도·농간 교육 격차를 완화시키는 데 초점을 둠
- '08년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378교를 선정하고, 농산어촌 학생에게 학기 중·주말·방학 중 학습·사회성 함양·문화·정서 지원 프로그램 및 보육·복지 등 기초 안전망 사업을 추진함

2. 부문별 평가결과

□ 추진 계획 및 실적

- 2009년도에 12개 시도교육청 소속 85개 군지역 면소재 378개교를 대상으로 지방비 29,800백만원을 투자함
- 사업시행주체는 교육과학기술부, 12개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단위 학교 임

□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구성원 만족도가 목표치 70%를 4% 초과 달성한 72.8%를 나타냄

3. 개선방안

-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이지만 소규모 시범 사업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전국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었음. 또한 중간에 농산어촌 전원학교 사업을 추진하여 일부 돌봄학교는 전원 학교로 2중 선정, 운영이 불가피하였음. 지방비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전국 수준에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의체 운영, 컨설팅 및 성과관리 등이 시도됨. 농산어촌 학교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 사업의 통합화를 시도해야 할 필요가 있음

2-1-4-2(계속)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지자체/교육과학기술부)
-------------	-------------------------------

담당부서	유아교육지원과	담당자	황종미(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444	이메일	mjh3339@mest.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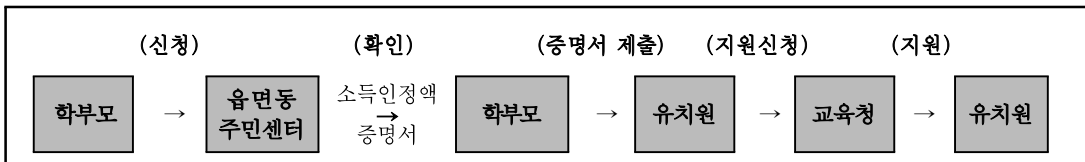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서민 및 중산층, 다자녀 가정의 유아학비 부담 완화
- 저소득층 · 소외계층의 유아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교육복지 실현

2. 사업내용

- 사업주체 :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 사업추진절차



- 사업내용
 - 지원기간 : 2009. 3 ~ 2010. 2(1년간)
 - 대상기관 : 전국 국·공·사립유치원, 유아교육위탁기관
 - 지원사업 : 만5세아 무상교육비, 만3·4세아 차등교육비, 두자녀 이상 교육비
 - 지원단가 : 국·공립 월 57천원 이내, 사립 월 191천원 이내

3. 연차별 추진계획

- 만5세아 무상교육은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도서·벽지 또는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유아 등을 우선 실시
- 만3·4세아는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이하까지 지원 대상 확대

<'09년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국비(억원)				지방비(억원)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93,436			0.26		5,350		5,350.26
서울	29,254					584		584
부산	22,697					455		455
대구	17,095					348		348
인천	17,599					342		342
광주	9,177					177		177
대전	10,723					213		213
울산	7,828					150		150
경기	72,285					1291		1291
강원	8,942			0.03		130		130.03
충북	10,107			0.03		157		157.03
충남	11,454			0.2		180		180.2
전북	12,574					219		219
전남	13,485					200		200
경북	20,966					378		378
경남	29,250					518		518

<'09년도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국비(억원)				지방비(억원)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87,721			0.17		4,631		4631.17
서울	27,284					506		506
부산	21,614					437		437
대구	16,254					318		318
인천	17,231					307		307
광주	9,132					177		177
대전	12,451					208		208
울산	7,196					137		137
경기	79,551					1040		1040
강원	10,017			0.02		122		122.02
충북	8,558			0.01		116		116.01
충남	9,063			0.14		146		146.14
전북	8,680					190		190
전남	12,683					148		148
경북	17,977					316		316
경남	27,339					423		423

4. 성과목표 달성도 : 추후 보완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유치원 유아학비지원	유아학비 수혜율	만5세지원아동수/ 만5세취원아수	%	51.1	53.3	104.3
		만3~4세지원아동수/만3~4세 취원아수	%	48.1	53.7	111.6

※ 시도교육청 사업으로 '10. 2월에 '09년 사업이 완료되므로 '09년 실적은 추후 보완

II. 평가결과

- 교육이 출발하는 시점인 유아교육의 평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소외계층에게 유치원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대단히 필요한 사업임.
- 2009년에는 계획 최대액이 5,350억원으로 전년도에 계획한 최대치인 3,932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음. 사업예산 총액을 증액하여 이 사업을 확대하려는 목표를 가진 것은 적절한 것임.
- 2009년도 유치원 취원아수 대비 유아학비 수혜율은 목표치인 만5세 51.1%와 만3·4세 48.1% 대비 **53.3%**와 **53.7%**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유아교육 기회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2-1-4-4(계속)	농어촌지역 사립유치원교사 처우개선 (지자체/교육과학기술부)
-------------	-------------------------------------

담당부서	유아교육지원과	담당자	박병현(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444	이메일	stbbh@mest.go.kr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목적
 -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지역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통한 지역간 양극화 해소
 - 농어촌 지역 교육의 제도적, 질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농림어업인의 자녀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아교육 구현
 - 교사의 질적 수준제고를 통한 유아교육의 학부모 만족도 제고
- 근거 : 「유아교육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32조

2. 사업내용

- 내용
 - 사업기간 : '07년 ~ 계속
 - 사업비 : 51억(지방비)
 - 사업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 및 30만 미만 도농복합도시지역
사립유치원 학급담임교사
 - 사업 규모(사업량) : 약 3,887명('08. 12월 기준)
 - 지원금액 및 형태 : 학급담임수당 월 11만원
 - 지원조건 : 사립유치원 학급담임교사에게 지원
 - 사업 주요내용
 - 농어촌 지역·30만 미만의 도농복합지역에 소재하는 사립유치원 학급담임교사에게 담임수당 월 11만원 지원

- 사업추진주체 :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 사업추진절차 : 사업지원 기본계획 수립(시도교육청) → 세부추진 계획 수립 및 시행(지역교육청)

3. 연차별 추진계획

- 사업추진방향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충에 따라 '08년도부터 동 사업의 예산을 전액 지방비에서 충당

<'09년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				지방비 (천원)	자부담	합계 (천원)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887					5,130,840		5,130,840
부산	57					75,240		75,240
대구	73					96,360		96,360
인천	19					25,080		25,080
울산	125					165,000		165,000
경기	912					1,203,840		1,203,840
강원	359					473,880		473,880
충북	155					204,600		204,600
충남	307					405,240		405,240
전북	189					249,480		249,480
전남	355					468,600		468,600
경북	606					799,920		799,920

<'09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천원)	자부담	합계 (천원)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021					5,190,468		5,190,468
부산								
대구	57					75,240		75,240
인천	73					96,360		96,360
울산	18					23,760		23,760
경기	0					0		0
강원								
충북	133					172,928		172,928
충남	912					1,203,840		1,203,840
전북	361					476,520		476,520
전남	152					167,200		167,200
경북	369					405,900		405,900

※ 시도교육청 사업으로 '10. 2월에 '09년 사업이 완료되어 현재 결산중으로 세부인원 및 금액은 변동예정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목표치 및 실적 : 목표치 100%, 실적 103%
 - 교육청에서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 일부 증액 반영(약 6천만원)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사립유치원교사 처우개선	계획대비 지원율	계획대비 지원 실적	%	100	103	103

II. 평가결과

-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유아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립유치원의 학급담임 수당 11만원을 지원하여 지방비 100%로 총 52원의 예산을 집행함.
- 사업계획은 2008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는 유지를 목표로 함.
- 사립유치원을 보낼 경제적 형편이 안 되는 농림어업인들이 많은 상태에서 사립유치원 교사 중 일부에게 매월 수당 11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단기적인 방안임
- 따라서 농어촌지역에서는 모든 유치원 교육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반을 재구성해야 함.

2-2-1-0(계속)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지자체/농림수산식품부)
-------------	---

담당부서	농촌사회과	담당자	박성우(서기관)
전화번호	02-500-1819	이메일	tengrps@korea.kr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도시에 비해 교육여건이 불리하고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게 고교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가부담 경감 도모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특별법 제23조(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86년 ~
- 지원대상 : 전국 농업계열 고등학교 자영농과 재학생
- 사업비 : 지방분권교부세 및 지방비에서 지원(지자체 사업)

3. 연차별 추진계획

< '09년도 시행계획 >

- 지원인원 : 81,705명
- 지원금액 : 80,051백만원(지방비 100%)

< '09년도 추진실적 >

-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규모 및 예산 증액

	사업규모 (명)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86,364	-	-	-	-	805.8	-	805.8
서울	42	-	-	-	-	0.6	-	0.6
부산	860	-	-	-	-	1.2	-	1.2
대구	672	-	-	-	-	10	-	10
인천	882	-	-	-	-	9	-	9
광주	223	-	-	-	-	3	-	3
대전	81	-	-	-	-	1	-	1
울산	756	-	-	-	-	9	-	9
경기	8,448	-	-	-	-	103	-	103
강원	5,750	-	-	-	-	46	-	46
충북	6,120	-	-	-	-	66	-	66
충남	13,119	-	-	-	-	112	-	112
전북	8,719	-	-	-	-	89	-	89
전남	14,031	-	-	-	-	126	-	126
경북	13,605	-	-	-	-	113	-	113
경남	9,500	-	-	-	-	81	-	81
제주	3,556	-	-	-	-	36	-	36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목표치 및 실적 : 목표치 100%, 실적 100.7%
 -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 예산 일부 증액 반영(계획 801억원, 실적 806억원, 5억원↑)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계획대비 지원율	계획대비 지원 실적	%	100	100.7	100.7

II. 평가결과

1. 총 평

- 교육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농어가에 대하여 고교생 자녀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도농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 사업의 취지와 사업 목표가 분명함. 2009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규모 및 예산을 증액하여 목표치를 초과 달성 하였음
- 이 사업은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를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 사업으로 그 필요성이 매우 높음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사업목표가 분명하고,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으로 농어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 전문 인력의 농촌정착의 유도는 삶의 질 향상의 상위 목표와도 잘 부합되는 사업임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사업추진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고교생 자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사업규모 및 예산을 증액하여 반영함으로써 추진과정에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 규모 및 예산을 증액하여 집행함으로써 성과 목표 대비 100.7%의 실적을 달성하였음

3. 개선방안

- 일선 농어촌 현장에서 연간 소득이 월등히 높은 농어가의 자녀나 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서비스업을 함께 하거나 펜션이나 전원주택을 지어놓고 실제 농업은 소규모로 경작하는 이주 주민들에게도 지원되어 당초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 만큼 불합리한 내용을 파악하여 당초 취지에 부합되도록 개선하여야 함
- 농어업인의 고교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은 지방이양사업으로 2009년도의 경우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예산을 증액하여 추진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무리가 없었지만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하여 세수 확보가 줄고 각종 사업비 규모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교육 투자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모색이 필요함
- 동 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서는 지원한도를 따로 두지 말고 당해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여야 할 것임. 농어업인의 자녀 중에서도 특목고, 외고, 자립형사립고 등에 진학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이들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수업료 및 입학금이 지원되어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것임

2-2-2-1(계속)	농산어촌 대학생 학자금 용자지원 (농림수산식품부)
-------------	--------------------------------

담당부서	농촌사회과	담당자	박성우(서기관)
전화번호	02-500-1819	이메일	tengrps@korea.kr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게 학자금 무이자 용자 지원을 통해 농어촌 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 및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추진근거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5조,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4년 ~ 계속
- 총사업비 : -억원('09년까지 기투자액 : 3,583억원)
- 사업규모 : 농어촌 출신 대학생
('09까지 용자실적 : 333천명, 6,504억원)
-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농특회계)
- 지원조건 : 국고 100%
- 상환조건 : 졸업 후 1년 거치, 1학기 용자금을 1년 이내에 상환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장학재단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천 명)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9	1,939	-	-	-	-	-	1,939
'05	25	127	-	-	-	-	-	127
'06	25	483	-	-	-	-	-	483
'07	26	441	-	-	-	-	-	441
'08	26	413	-	-	-	-	-	413
'09	27	475	-	-	-	-	-	475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천 명)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2	1,939	-	-	-	-	-	1,939
'05	25	127	-	-	-	-	-	127
'06	25	483	-	-	-	-	-	483
'07	26	441	-	-	-	-	-	441
'08	27	413	-	-	-	-	-	413
'09	29	475	-	-	-	-	-	475

○ '09 추진실적

- 지원인원 : 당초 지원계획 27,000명보다 1,966명 많은 28,966명(7.3%증)
- 용자규모 : 당초 용자계획 900억원보다 29억원 많은 929억원(3.2% 증)
용자 지원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산어촌 대학생 학자금 용자지원	수혜자 만족도	전문기관의 만족도 조사보고서	%	85.0	86.2	101.4

II. 평가결과

1. 총 평

-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갈수록 농림어업인의 경제적 여건이 악화된다는 점, 그리고 대학 등록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 이 사업이 계획한 대로 100% 사업비를 확보하여 집행하고 있다는 점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교과부에서 시행하는 융자의 이자가 5.8%에 달하는 데 비해 무이자의 조건으로 융자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음.
- 1인당 지원액이 증가하였음에도 애초 계획에 비해 지원 학생수가 증가하여 목표만큼 증액되지 않아 늘어나는 수요를 채우기가 쉽지 않음. 이를 위하여 1인당 지원액을 증가시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융자신청인원이 33,079명인데 비해 88%수준인 28,966명만이 지원을 받았으며,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워져서, 여전히 이 사업의 규모가 충분치 않으며 예산을 더욱 확대시켜야 함을 알 수 있음.
- 융자금 반환 조건이 졸업 후 1년이어서 여전히 비현실적임. 이 기간을 최소한 3년 이상 늘려서 실제로 학생들이 반영할 수 있는 조건이 되도록 개선해야 함.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연차적으로 예산을 증액하여 지원을 확대하도록 계획한 것은 적절함.
- 농산어촌 대학생들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융자한 것은 본래 취지와 적합하며 현재 양극화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함.
- 다만, 전체 농산어촌 대학생들의 수요가 어느 정도 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융자신청자 수와 대비하여 목표 달성도를 따지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면서도 다른 제약 때문에 신청하지 못한 잠재적 수요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면까지 조사하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한국장학재단에서 정부출연금에 대해 별도의 회계를 구성하고, 융자금 신청과 심사, 지급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는 농식품부의 지침에 의거 한국연구재단이 세부신청요강을 별도로 작성·공포하여 시행하도록 한 것은 적절한 것임.
- 중간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청서류를 간소화 하는 등 절차상의 효율성을 기함.
- 2010년 예산을 30억원 증액하여 부족한 지원을 보완하고자 함.
- 융자 상환기간이 졸업 후 1년 거치로 되어 있어 여전히 비현실적임. 이 기간을 3년 이상으로 늘리고, 상환율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정부출연금 475억 원 등 총 929억 원을 융자금으로 지원하여, 5.8%의 이자를 부과하는 교과부 대출조건과 비교할 때, 그 이자에 해당하는

54억 원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가져왔음.

- 2008년도에는 2만7천명에게 정부출연금(농특세) 413억 원을 지원하여 1인당 약 159만원을 지급하였으나 2009년에는 2만9천명에게 475억 원을 지원하여 1인당 약 164만원을 지급하여, 1인당 지원액이 증가하였음. 하지만, 2009년 원래 계획보다 지원자수가 2천명이 증가하여 당초 계획 176만원에 미치지 못하였음.
- 용자 신청인원 33,079명 가운데 88% 수준인 28,966명에게만 지원하여 여전히 용자받지 못하는 학생비율이 여전히 10% 이상임(2007년 82%).
- 용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6개월 이상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대학생 자녀로 하고 있으나 우선순위를 지정하여 1순위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대학생 자녀 농어업인 대학생,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다문화, 다자녀 가정의 자녀 등으로 한정하고, 2순위로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대학생 자녀로 한 것은 원래 지원하려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의 예산 규모를 확대시켜야 함.

3. 개선방안

- 계획 수립 시, 전체 농산어촌 대학생의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 후에 이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사업비는 여전히 수요에 못 미치고 있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정도임. 어려워지고 있는 농산어촌 대학생들의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대폭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1년 거치 후 상환하도록 한 것을 최소한 3년 거치로 연장하여 실제로 졸업 후 상환이 가능한 조건을 마련하여야 함. 이와 함께 상환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2-2-2-2(계속)	농어업 관련 대학생 장학금 지원(농림수산식품부)
-------------	----------------------------

담당부서	농촌사회과	담당자	이태용(사무관)
전화번호	02-500-1813	이메일	llty@mifaff.go.kr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미래의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젊고 우수한 후계 농어업인 양성과 농어업인의 교육비 경감
- 사업추진 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
 - 한국마사회법 제42조 4항(특별적립금은 농어업인 자녀 및 농어업 후계인력 장학사업 등에 대한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5 ~ 계속
- 사업비 : 5,993백만원('09년 집행기준)
- 사업규모 : 대학생 2,568명
- 지원재원 :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 사업시행주체 : KRA와 함께하는 농촌희망재단
- 추진내용
 - 지원대상
 - 후계인력양성장학금 : 농림수산계열 대학(교) 2학년 이상 재학생 중 농림수산업인의 자녀
 - 전문인력양성장학금 : 농림수산계열 대학(교) 2학년 이상 재학생 중 농림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생

- 농어업인자녀장학금 : 전계열대학 2학년이상 재학생 중, 농림수산업인의 자녀
- 농어촌특별전형장학금 : 전문계(농수산계열) 고교출신자 특별전형,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으로 농림수산계열학과 신입생
- 지원체계 : 재단(사업홍보 및 홈페이지 공고) → 대학생(대학에 장학금 신청서 제출) → 대학(장학금 지원 대상자 추천) → 재단(장학생 확정) → 재단(학교 통장에 장학금 입금) → 학교(학생 통장에 장학금 개별입금)
- 지원금액
 - 후계인력양성장학금 : 학기당 200만원
 - 전문인력양성장학금 : 학기당 150만원
 - 농어업인자녀장학금 : 년 300만원
 - 농어촌특별전형장학금 : 년 300만원

3. 연차별 추진계획

- 장학금 재원은 연차적으로 확대·인상
 - 장학금 재원 확대 : ('08) 53억원 → ('09) 60억원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 등			
합계	25,132				291			291
'05	4,232				32			32
'06	7,000				76			76
'07	6,500				70			70
'08	4,800				53			53
'09	2,600				60			60

* 2005년은 하반기 기준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3,512				258			258
'05	4,259				31			31
'06	5,705				55			55
'07	6,167				61			61
'08	4,813				52			52
'09	2,568				59			59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지원인원은 98.8%, 지원금액은 99.9%로 계획에 다소 미달
 - 지원인원 : 계획 2,600명, 실적 2,568명
 - 지원금액 : 계획 6,000백만원, 실적 5,993백만원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업관련 대학생 장학금 지원	지원계획인원대비 지원실적	지원실적인원/계획인원 × 100	%	100.0	98.8	98.8
	지원계획금액대비 지원실적	지원실적금액/계획금액 × 100	%	100.0	99.9	99.9

※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전문인력양성 장학생」 대상자 미달에 따른 미집행 일부 발생

II. 평가결과

1. 총 평

- 이촌향도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농어촌의 공동화가 우려되는 현실에서 후계 농어업인을 양성하려고 하는 사업은 매우 적절한 것임.
- 2008년에 줄었던 예산을 증액하여 2007년 수준으로 회복하였고, 2010년에는 더욱 확대할 예정임.
- 1인당 지원액이 평균 233만원으로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나, 지원자수가 2007년 6,167명에서 2009년 2,568명으로 급격하게 줄었음. 이는 예산액을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1인당 지원액만 증액하였기 때문으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함.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영농희망학생과 농림수산업인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던 장학금 지원을 농림수산업인 자녀 및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생에게 지원함. 즉, 2008년까지 지원 대상은 농수산계열대학교 2학년(전문대는 1학년 2학기) 중 영농(어)희망자와 농어업인의 자녀 중 전국대학 2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였으나, 2009년부터 농림수산계열 대학(교) 2학년 이상 재학생 중 농림수산업인의 자녀와 농림수산계열 대학(교) 2학년 이상 재학생 중 농림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음.
- 대상에는 영농을 희망하는 학생은 제외 되어있으며, 영농종사자인 대학생만이 포함되어 있음. 이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학기당 150만원으로 다른 대상자들보다 적음.
- 이런 점에서 볼 때, 2009년 사업은, 농어촌을 이끌어갈 젊고 우수한

후계 농어업인의 양성이라는 본래의 목표 보다는 농어업인의 자녀에 대한 지원에 더 중점을 두고 있음.

- 이전처럼 졸업 후 영농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지원 대상학생들이 졸업 후 농림어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없음.
- 2009년 사업의 취지가 이전과는 달라진 것이라면, 후계 농어업인 양성이라는 본래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다시 설정되어야 할 것임.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지원 금액은 이전에 비해 상향 조정되어 수혜자인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음.
- 2008년 1인당 평균 108만원이던 것을 2009년에는 1인당 평균 233만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하지만, 지원자 수가 현격히 줄어 '07년에 6,167명, '08년에 4,813명, '09년에는 2,568명이 되었음. 1인당 평균 지원액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지원자도 증원할 필요가 있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1인당 평균 장학금을 상향 조정하여 대상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되었음.
- 지원인원 및 지원예산을 목표한 대로 달성하였음.

3. 개선방안

- 본래 취지였던 영농후계자 양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을 다시 수립할 필요가 있음.
- 1인당 지원액을 늘리기 위해 지원 학생 수를 축소할 것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2-2-3-1(계속)	초·중·고학생 급식비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	-------------------------------------

담당부서	학생건강안전과	담당자	박진욱(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543	이메일	park3412@mest.go.kr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산어촌지역 학생들에게 학교급식비 지원확대로 학부모 부담경감
-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
- 사업추진 근거
 - 학교급식법 제8조 및 제9조, 동법시행령 제10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81년~계속
- 사업주체 : 시·도교육감
- 추진체계
 - 농산어촌 학생수 및 소요액 파악(시·도교육청) → 예산확보 및 사업시행 준비(시·도교육청) → 예산지원(시·도교육청 → 지역교육청 → 학교) → 사업시행(학교)
- 추진내용
 - 사업 지원대상 : 농산어촌지역 초·중·고등학생
 - 사업 규모(사업량) : 821천명
 - 지원금액 및 형태 : 연간 1,361억원, 지방교육비 100%
 - 사업 주요내용 : 급식비 전부 또는 일부 지원(연간 180일)

3. 연차별 추진계획

- '12년까지 농산어촌학생 전원에게 학부모가 부담하는 급식비를 단계적으로 전액(1식당 2,100원) 지원 추진

<'09년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807,992					992		992
서울	-					-		-
부산	6,087					7		7
대구	2,364					1		1
인천	14,754					34		34
광주	1,116					1		1
대전	603					2		2
울산	27,303					16		16
경기	179,377					318		318
강원	44,328					27		27
충북	39,706					62		62
충남	86,519					148		148
전북	106,897					225		225
전남	66,061					69		69
경북	117,298					43		43
경남	104,769					33		33
제주	10,810					6		6

<'09년도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821,056					1,361		1,361
서울	-					-		-
부산	5,488					6		6
대구	13,452					7		7
인천	14,906					53		53
광주	-					-		-
대전	585					2		2
울산	25,809					1,6		1,6
경기	244,790					398		398
강원	48,145					48		48
충북	37,991					66		66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충남	88,122					153		153
전북	56,757					213		213
전남	61,850					109		109
경북	134,473					51		51
경남	78,559					233		233
제주	10,129					6		6

4. 성과목표 달성도

- 농산어촌지역 학생에게 급식비 지원 확대(목표 : 992억, 실적 : 1,361억원)
- 생활환경이 열악한 농산어촌지역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 및 학부모 부담경감을 위해 노력한 결과 당초 목표(992억원) 대비 137%(1,361억원)초과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초·중·고 학생 급식비 지원	초·중·고 학생 급식비 지원	지원액	억원	992	1,361	137

II. 평가결과

1. 총 평

- 초·중·고학생 급식비 지원사업은 198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음. 농산어촌지역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교육복지 증진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농산어촌 지역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 사업의 취지와 사업 목표가 분명함. 2009년에 성과지표 992억원 대비 1,361억원(821천명)을 지원하여 목표대비 137%로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하였음
- '09년 기준 시·도별 급식비 지원은 지방재정 및 교육청 여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2012년까지 점진적으로 농산어촌지역 학생 모두에게 급식비 전액으로 확대하여 지원하는 점은 바람직함
- 또한, 2006년 7월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우수한 식자재 공급을 위한 자치단체장 소속하에 급식지원센터 운영 및 식품비 등 급식경비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우수농산물 급식비 지원은 확대해 나가고 있으나,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은 미미하므로 지자체가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설치근거 마련 및 예산확보 등으로 센터운영을 활성화 할 필요성이 있음
- 농어촌의 발전과 학생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 확대되어야 할 사업으로 평가됨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사업목표가 분명하고, 국가에서 추진하는 농어촌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의 상위 목표와도 잘 부합되는 사업임

- 급식비 지원이 교육청 여건에 따라 급식비 전액지원 또는 일부 지원 등 차등적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를 2012년까지 농산어촌지역 학생 모두에게 균등한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함
- 우수하고 안전한 친환경 우리농산물의 사용으로 급식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좀더 적극적으로 실천하여야 하고 ,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는지 성과지표에 반영해야 함.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사업추진은 대상 학생을 파악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확보된 예산을 지원하는 과정을 밟고 있음. 추진과정에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음
- 교육행정 조직을 통해 사업추진이 체계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도 행정조직 내에서 충분히 소화하고 해결하고 있음
- 예산조달과 배분은 국가의 지침에 따라 교육청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교육청별 여건이 달라 차등적으로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는 실정임
- 급식비 단가의 경직성에 따른 급식의 질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교육청의 사업추진 노력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로 지원금액 차원에서 목표대비 137% 초과 달성하였음
- 농산어촌지역 학생의 급식비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학부모와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2012년까지 농산어촌지역 학생 모두에게 급식비 지원을 확대하는 점은 바람직함

- 또한, 우수 농산물 사용 확대에 따른 농산어촌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이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의 설치·운영이 필요함

3. 개선방안

- 초·중·고 학생의 급식비 지원은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 학생의 건강과 학습능률을 향상시키고,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으로 신체 발달에 기여하는 적절한 사업으로 평가됨
- 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해 급식비의 현실화와 친환경 우리농산물의 확대, 더불어 우수한 농산물을 사용하기 위해선 체계적인 물류시스템 및 위생관리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급식시 사용되는 농산물을 지역 농산물을 우선 공급하는 등 농가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연계성에 대한 조사 및 지원이 필요함
- 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 친환경 우수농산물 사용 비율 등 사업 점검 및 모니터링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2009년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제정된만큼 이를 연계로 한 종합적이고 총괄적인 추진 및 관리, 성과, 평가방안 등이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2-2-3-2	자영농업계고 급식비 지원 (지자체 /농림수산식품부)
---------	---

담당부서	농촌사회과	담당자	박성우(서기관)
전화번호	02-500-1819	이메일	tengrps@korea.kr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자영농과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젊고 유능한 농업 전문 인력의 농촌정착을 유도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특별법 제23조(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86년 ~
- 지원대상 : 전국 농업계열 고등학교 자영농과 재학생
- 사 업 비 : 지방분권교부세 및 지방비에서 지원(지자체 사업)

3. 연차별 추진계획

< '09년도 시행계획 >

- 지원인원 : 2,707명
- 지원금액 : 2,292백만원

< '09년도 추진실적 >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696	-	-	-	-	20	7.9	27.9
서울	-	-	-	-	-			
부산	-	-	-	-	-			
대구	-	-	-	-	-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인천	-	-	-	-	-			
광주	-	-	-	-	-			
대전	-	-	-	-	-			
울산	-	-	-	-	-			
경기	420	-	-	-	-	5	5	10
강원	370	-	-	-	-	3	-	3
충북	294	-	-	-	-	1	1	2
충남	250	-	-	-	-	1	0.2	1.2
전북	277	-	-	-	-	2	-	2
전남	420	-	-	-	-	2	0.4	2.4
경북	225	-	-	-	-	2	0.4	2.4
경남	220	-	-	-	-	3	0.7	3.7
제주	220	-	-	-	-	1	0.2	1.2

- 어려운 경제여건과 농업계 고등학생들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지자체에서 관련 예산 증액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목표치 및 실적 : 목표치 100%, 실적 121.7%
 -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 예산 일부 증액 반영(계획 2,292억원, 실적 2,790억원, 498억원↑)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자영농업계고 급식비	계획대비 지원율	계획대비 지원 실적	%	100	121.7	121.7

II. 부문별 평가결과

1. 총 평

-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은 1986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을 합리적, 과학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젊고 유능한 농업 전문 인력의 농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된 사업임
- 지원대상은 전국의 농업계열 고등학교에 설치된 자영농업계고 재학생이며, 2009년도 사업규모는 2,790백만원을 확보하여 2,696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였음
- 이는 목표치 22억, 2,707명에 비해 성과달성도는 예산 121.7%, 인원 99.6%를 달성하여 비교적 양호한 상황임
- 다만, 매년 성과지표의 목표치와 지원실적이 자부담이 합산된 액수를 기준으로 하여 보고됨으로써 실제 지원액보다 부풀려진 경향이 있으므로 이후에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자료가 생산돼야 보다 현실적인 지원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성과목표 달성도에서 지원학생수에서 목표치에 대해 실적은 11명이 감소하였으나, 지원금액은 목표치 대비 실적 차이가 498백만원이나 남에도 불구하고, 사유를 제공하지 않아, 사업비 집행에 있어 적절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 농림어업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그리고 학생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 확대되어야 할 사업임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사업목표, 지원대상이 분명하고 구체적임.
- 지방이양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따라 수요 판단 등 자체계획에 따라 추진하므로 사업추진 상 어려움은 없음. 행정기관과 교육청과의 사전협의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사업 추진은 대상자가 선정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교육행정 조직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원활하게 집행하고 있음
- 급식의 질 개선을 위한 급식대상자의 의견 수렴 및 요구 반영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예산조달과 배분은 국가의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하고 있음. 지자체의 예산상황에 따라 배분되고 있음
- 지방이양사업 전환 후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은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음. 대체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는 있다고 판단됨
- 특히 지방비와 자부담율이 2008년 1:1이었던 반면 2009년 2.53:1로 어려운 경제여건과 농업계 고등학생들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지자체에서 관련 예산을 증액하여 자부담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부분은 긍정적임
- 지원액 차원에서 자영농과 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 사업은 성과 목표를 달성하였음. 급식의 질 차원에서 성과지표가 개발되고, 점검되어야 함

3. 개선방안

- 자영농과생의 급식비 지원은 영세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의 건강한 신체발달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평가됨
- 급식비 단가 현실화, 급식 만족도 및 개선 요구 조사 등을 실시하여 급식의 질을 개선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또한 지방이양 이후 지자체별 교육청 재정에 따라 급식단가의 차이가 최대 4배까지 발생하고 자부담이 지역별로 최대 5배가 차이나는 것은 적절치 않음. 교부세의 탄력 운용으로 균등한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함
- 2008년에 이어 다시 성과지표의 목표치와 지원 실적이 자부담과 합산된 액수를 기준으로 하여 보고됨으로써 실제 지원액보다 부풀려진 경향이 있으므로 이후에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자료가 생산돼야 보다 현실적인 지원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임
- 일부 지자체에서는 성과목표 달성도에서 지원학생수와 지원금액에 있어 목표치 대비 실적에 대해 차이나는 이유를 명시하지 않아, 사업비 집행에 있어 적절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 삶의질 점검·질 점검 평가 성과지표에 지원금액, 대상학생 수 등 정량적인 지표는 물론 급식 만족도 조사, 급식비 균등 지원 및 증액 노력, 우수농산물 사용비율 등 다양한 정성적인 측면의 지표개발이 중요함

2-2-3-2(계속)	수산계고교(자영수산과) 급식비 지원 (지자체/농림수산식품부)
-------------	--------------------------------------

담당부서	수산개발과	담당자	정동기(사무관)
전화번호	02-500-2331	이메일	tengrps@korea.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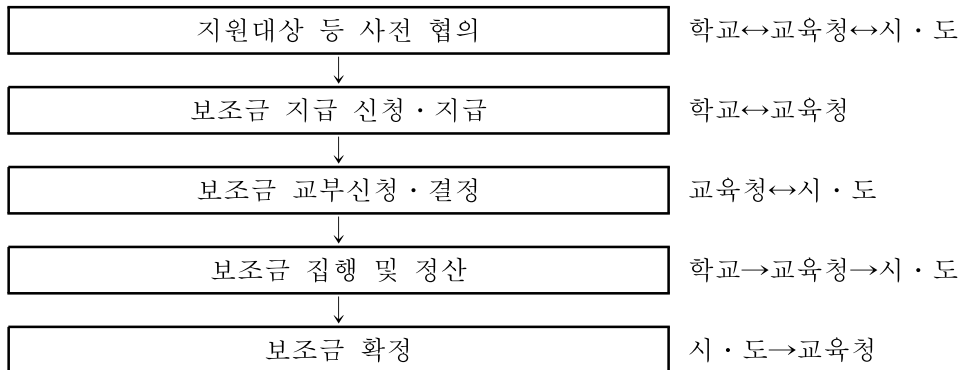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어촌에 정착하여 수산업과 어촌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 나갈 우수한 수산인력의 조기양성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87년~계속
- 사업주체 : 시·도
- 추진체계



- 추진내용
 - 사업지원대상 : 자영수산과가 설치된 수산계고교 재학생
 - 사업규모(사업량) : 4개고교(재학생)
 - 지원금액 및 형태 : 360백만원(지방비50%, 교육부 30%, 자담20%)

3. 연차별 추진계획

- 수산업을 합리적으로 자영할 수 있는 우수한 어업후계인력을 육성하고, 이들의 어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수산계고등학교 자영수산학과 학생의 식비 일부를 보조

<'09년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개교/582명					168	168	336
충남도	1개교/69명					27.5	27.5	55
전남도	2개교/408명					98.5	98.5	197
경북도	1개교/105명					42	42	84

<'09년도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개교/713명					180	180	360
충남도	1개교/77명					27.5	27.5	55
전남도	2개교/531명					110.5	110.5	221
경북도	1개교/105명					42	42	84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목표(582명)/실적(713명)
 - 전남도의 신입생 증가로 목표대비 122.4%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자영수산계고 급식비 지원	급식비지원 인원 수	지원계획 대비 실적	%	582명	713명	122

II. 평가결과

1. 총 평

- 자영수산과생 급식비 지원은 1987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영세 어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젊고 유능한 인력이 농어촌에 정착하여 수산업과 어촌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 나갈 우수한 수산인력의 육성을 위해 시행된 사업임
- 2009년도에는 자영수산과가 설치된 수산계 고등학교 4개교 자영수산과 재학생 713명에게 360백만원을 지원하였음. 이는 2008년 582명, 336백만원에 비해 122%(학생수 기준) 증가한 수치로서 충남과 특히 전남도의 신입생이 증가에서 비롯됐음
- 성과지표의 목표치와 지원실적이 자부담이 합산된 액수를 기준으로 하여 보고됨으로써 실제 지원액보다 부풀려진 경향이 있으므로 이후에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자료가 생산돼야 보다 현실적인 지원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임
-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사업과 달리 자부담율이 높아 형평성에 어긋나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음
- 어촌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학생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 확대되어야 할 사업으로 평가됨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사업목표는 분명하고, 국가균형발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등 상위목표와 부합됨
- 시·도에서 사업계획 수립 시 교육청과 해당학교,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 단가 협의 등 절차적 합리성을 도모하고 있음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지원 대상자가 선정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교육행정 조직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추진과정에서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예산조달과 배분은 국가의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하고 있음. 교육청별로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지원단가가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지방재정 여건과 사업의지에 따라 급식비 지원단가가 차이가 나는데 이는 적절치 않음.
- 사업추진시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교육청, 학교에 시행 협조를 구하고 있음. 추진과정에서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있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자영수산과생 급식비 지원은 어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학생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으나 삶의 만족도 증진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를 판단하기는 곤란함. 자영수산과 자원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 어촌에 정착하려는 요구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이나 급식비 자부담율이 높음
- 충남도와 전남도의 학생 수 증가로 582명 목표치 대비 713명, 학생수 대비 122%의 성과를 이뤘음.

3. 개선방안

- 자영수산과생의 급식비 지원사업은 어업인의 교육비 경감, 학생의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지속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평가됨

- 사업대상자가 충분한 양질의 영양섭취가 필요한 성장기의 청소년 이니만큼 급식비 지원액을 현실화하여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함
-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사업과 달리 자부담율이 높아 형평성에 어긋나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며 교부세의 탄력 운용으로 균등한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함
- 급식 만족도 조사, 급식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을 통한 급식의 질 개선 노력이 필요함
- 삶의질 점검·질 점검 평가 성과지표에 정량적인 지표는 물론 급식 만족도 조사, 급식비 균등 지원 및 증액 노력, 우수농산물 사용비율 등 다양한 정성적인 측면의 지표개발이 중요함

2-2-4-2(계속)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 (교육과학기술부)
-------------	------------------------------------

담당부서	특수교육지원과	담당자	박성우
전화번호	02-2100-6562	이메일	dream24@mest.go.kr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특수교육 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 가정·시설 및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되어 있는 장애학생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확대
- 지역 중심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시범운영으로 향후 순회교육 및 일반 유치원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지원 확대

2. 사업내용

- 순회교육 대상자 및 특수학급 학생 추가 교육지원(학교 수업시간 이외 별도 시간을 편성하여 특수교육 지원)
- 지역사회 장애인 및 특수교육 대상 학생 가족 상담
-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진단·평가 지원
- 미취학 특수교육대상학생 발견 정보 관리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449명					299		299
'08	572명					111		111
'09	877명					188		188
'10	-	-	-	-	-	-	-	-

※ 사업기간 종료에 의해 '10년도 추진계획 해당 없음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교수·학습활동 지원 전담인력 배치 확대

※ 전담인력 : '05년 48명→'06년 161명→'07년 272명→'08년 572명→'09년 877명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배치	전담인력 배치 수	명	877	877	100

II. 평가결과

1. 총 평

-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수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전담강사를 배치하여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한 것은 우리나라의 열악한 특수교육환경을 비추어 볼 때 대단히 적절한 것임.
- '08년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8.5.26)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전담인력이 급증하고, 순회교육대상자가 3,435명으로 크게 증가하는 성과를 보임.
- 전담인력이 늘어나고, 순회교육대상자도 크게 증가하였으나 재정 지원이 이에 미치지 못해 센터의 운영, 전담인력의 활동여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 교육 및 상담의 내용도 대체로 대상학생들이 문의전화가 오면 간단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이어서 심층적인 상담을 위한 방안이 필요함.
- 센터의 전담인력을 증원하기 보다는 기존의 인력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급여를 인상하고, 충분한 활동비를 지급하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함.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08년부터는 100% 지방비로 이양되었고, 농특회계 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이었으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8.5.26 시행)에서 지역교육청별 특수교육지원센터설치·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별도의 수요조사 없이 모든 지역교육청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센터가 급증함.

-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예산, 전담인력에 대한 예산 계획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 각 지역 센터의 운영 계획·운영·평가의 단계에서 실제로 중앙 정부와 시·도 간의 연계방안이 분명하지 않음.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수가 '07년 60개소, '08년 182개소, '09년 187개소로 증가하였고, 예산은 '07년 66억, '08년 111억, '09년 188억으로 증가하였음. 전담인력의 경우 '07년 272명, '08년 572명, '09년 877명으로 늘어났으며, 순회교육대상자도 3,435명으로 크게 증가하는 성과를 보임.
- 하지만, 1개 센터 당 평균예산이 '07년 1억1천만원, '08년 6천1백만원, '09년 1억으로, '09년 예산은 '07년 수준을 만회하는 수준임. 또한, 전담인력에 대한 지원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1개 센터 당 배치되어 있는 전담인력이 4.7명이고, 1개 센터당 1년 예산이 평균 1억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전담인력에게 지급할 수 있는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함.
- 지역 교육청에서 계획을 수립, 시도교육청이 지원하도록 한 것은 지역의 필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을 바람직한 것임. 하지만 해당 학부모들의 요구조사를 통하여 실제 혜택을 받을 대상들의 요구조사를 하고,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연계·협력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기관들은 있으나 이들과의 체계적 연계·협력 방안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교육지원이나 상담은 대체로 전화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임. 상담내용은 대부분 다른 관련 기관에서의 상담권유, 다른 기관 안내 등, 직접적인 상담·지원보다는 간접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임.
-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이용한 학부모의 만족도가 84.1점으로 양호하게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음. 센터 이용 학부모가 소수인 점을 감안하면, 센터를 이용하지 않은 대다수 학부모들의 요구와 평가를 반영하도록 보완하여야 함.

3. 개선방안

- 관련 기관 안내 등과 같은 단순한 정보의 제공이 아닌 심층적인 상담을 하기 위한 보완대책이 필요함.
- 각 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액을 늘리되, 현재의 전담인력을 더 늘리기 보다는, 기존 전담인력이 실제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봉급을 인상하고, 충분한 활동비를 지급하는 등의 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전담인력의 상담활동, 교육지원활동이 양질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필요한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센터를 이용하는 소수의 학부모 뿐 아니라 특수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다른 많은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어떤 요구를 갖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

2-3-2-1(계속)	농산어촌 순회교원수당 및 복식수업수당 (교육과학기술부)
-------------	-----------------------------------

담당부서	교직원발전기획과	담당자	정근목(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461	이메일	samgadaj@mest.go.kr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산어촌학교 소속 교원 중 업무가 가중되는 순회교원 및 복식수업담당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농산어촌 근무기피 문제 완화도모

2. 사업내용

- 재원형태 : '06 ~ '07년(국고 100%), '08년부터(지방비 100%)
- 사업주체 : 시·도교육청
- 수혜자 : 농산어촌의 순회교원 및 복식수업 담당 교원
- 사업추진 절차 : 순회교원 및 복식수업수당 담당교원 파악(시·도교육청) → 세부추진계획 수립(시·도교육청) → 예산배정 및 수당 지급(시·도교육청)
- 사업내용(기존사업)
 - 사업지원대상 : 농산어촌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순회교사 및 복식수업 담당교사
 - 지급금액 및 시기 : 교사 1인당 월 50,000원을 보수지급일에 지급
 -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2조에 의하여 도서벽지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의 경우에는 월 30,000원 지급
 - 지원조건
 - 순회교원 수당 : 농산어촌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겸임

근무를 받아 2개 이상의 학교를 순회 근무하는 교원

- 복식수업 수당 : 농산어촌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중 소규모 학교에서 학년별 학급편성이 곤란하여 2개 학년 이상의 학생들을 1개 학급으로 편성하여 수업하는 복식학급 담당교원 또는 근무처 구분없이 겸임근무를 명받아 농산어촌에서 실제로 복식수업을 하는 교원

3. 연차별 추진계획

〈'09년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5,291					2,757		2,757
부산	12					5		5
대구	30					18		18
인천	57					21		21
광주	33					18		18
울산	22					11		11
경기	613					352		352
강원	582					275		275
충북	444					264		264
충남	509					352		352
전북	580					334		334
전남	1,273					631		631
경북	311					187		187
경남	612					167		167
제주	213					122		122

※ 농산어촌 순회교사수당 및 복식수업수당은 '07년도까지는 국고(농특회계)에서 지원되었으나, 농특회계 지원 중단으로 '08년부터는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자율적으로 추진

- 수용계획에 의거 매년 학급편성에 따라 순회교사 및 복식수업 담당교사 수요 변경

〈'09년도 추진실적〉

(단위 : 천원)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5,291					2,757,835		2,757,835
부산	12					5,280		5,280
대구	30					17,800		17,800
인천	57					21,460		21,460
광주	33					18,500		18,500
울산	22					11,000		11,000
경기	613					351,990		351,990
강원	582					274,978		274,978
충북	444					263,643		263,643
충남	509					351,940		351,940
전북	580					334,350		334,350
전남	1,273					631,100		631,100
경북	311					186,614		186,614
경남	612					166,900		166,900
제주	213					122,280		122,280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산어촌 순회교원수당 및 복식수업수당	수당지급 교원수	수당지급인원/수당 지급대상인원×100	%	5,351	5,351	100

II. 평가결과

1. 총 평

- 농산어촌 교원 중 순회교원과 복식수업 담당 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농산어촌 근무기피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수행되는 사업임
- 사업초기에는 농특세 재원을 활용하여 순회교원과 복식수업 담당 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하였으나 농특세가 폐지됨에 따라 지방교육비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수당 규모는 월 50,000원씩이며,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30,000원을 지급함.
- 제도화가 되었기 때문에 해당되는 교원에게 수당을 모두 지급하고 있으나, 지급한 효과가 얼마나 농산어촌 근무기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였는지는 알 수 없음.
- 수당에 대한 교원들의 만족도나 반응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한 성과를 알 수 없음.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조사를 하여 현실성 있게 수당을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함.

2. 부문별 평가결과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사업계획이 농특세를 이용하여 추진하던 내용과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여 수행하고 있음. 수행하는 사업의 의미,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전년도 사업을 답습하고 있음.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농산어촌에 근무하는 순회교사와 복식담당 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업은 기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사업의 성과는 100%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사업의 목적, 추진 과정의 문제, 사업을 수행한 뒤의 만족도 등을 파악하지 않고 있음.

3. 개선방안

- 농산어촌에서 순회교사와 복식수업담당 교사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현실에 부합하고, 농산어촌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수당의 의미, 만족도,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이 필요함.

2-3-3-2(계속)	학교도서관 및 장서 확충 (교육과학기술부)
-------------	------------------------------------

담당부서	학교선진화과	담당자	정일형(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309	이메일	ihjeong@mest.go.kr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교육 및 문화 시설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학교도서관 기본 장서를 개선함으로써
- 자료·탐구 중심의 교수/학습 활동이 가능케하여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함양

2. 사업내용

- 사업 지원대상
 - 학생수 200명 이하를 기준으로 하되, 100명 이하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대상학교 제외
 - 농산어촌 학교도서관 사업은 군지역, 도·농 복합시의 읍·면 이하 지역
- 사업 규모(사업량) : 각 시·도교육청이 결정
- 지원조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비) 100%,
 - ※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하여 총액으로 교부하며 교과부에서 별도 조건 설정 불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
- 사업 주요내용
 - 농산어촌 학교도서관 기본 장서 확충 지원

3. 연차별 추진계획

총사업비 (억원)	'07년까지	'08년	'09년	'10년	'11년	'12이후
498	126	2.5	-	-	-	-

<'09년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72,633					72,633		72,633
부 산	5,567					5,567		
대 구	4,335					4,335		
인 천	5,859					5,859		
광 주	2,624					2,624		
대 전	1,670					1,670		
울 산	1,751					1,751		
경 기	16,602					16,602		
강 원	2,779					2,779		
충 북	2,866					2,866		
충 남	4,106					4,106		
전 북	3,300					3,300		
전 남	6,323					6,323		
경 북	7,486					7,486		
경 남	5,781					5,781		
제주	1,584					1,584		

<'09년도 추진실적>

- 시·도 교육청은 광역자치단체의 학교도서관 지원비에 대응하여 당해 연도 사업예산에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경비를 편성·지원하고 있음

※ 매년 학교기본운영비의 3%이상을 자료구입비로 반영토록 교육청에 권고

- 따라서 현재 농산어촌 학교도서관 및 장서확충 사업에 대한 지원 학교는 파악할 수 없으며 대신 시·도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학교기본운영비 중 학교도서관 장서 구입비에 대한 현황을 추진실적으로 대신함

(단위:백만원)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72,633					72,633		72,633
부 산	5,567					5,567		
대 구	4,335					4,335		
인 천	5,859					5,859		
광 주	2,624					2,624		
대 전	1,670					1,670		
울 산	1,751					1,751		
경 기	16,602					16,602		
강 원	2,779					2,779		
충 북	2,866					2,866		
충 남	4,106					4,106		
전 북	3,300					3,300		
전 남	6,323					6,323		
경 북	7,486					7,486		
경 남	5,781					5,781		
제주	1,584					1,584		

※ 농산어촌 학교도서관 및 장서확충 사업은 농특회계 지원 중단으로 '08년부터는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자율적으로 추진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학교도서관 장서확충	학교도서관 장서확충	학교도서관 장서 구입비	백만원	72,633	72,633	100

II. 평가결과

1. 총 평

- 학교도서관 및 장서 확충 사업은 학생수 200명 이하의 농산어촌 학교에 학교도서관을 신축하여 학생과 지역사회 주민들로 하여금 정보를 얻고, 지식과 교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임.
- 초기에는 도서관 확충에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을 관리하였으나 도서관 확충이 모두 이루어진 후부터는 장서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런데 도서관 장서 확충 사업은 예산을 별도로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학교에 배정된 학교운영비 중에서 일정 부분을 도서구입비로 확보하도록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지방에 이양된 사업이기는 하지만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과 성과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사업의 의미가 크지 않음. 이런 사업은 교육과 학기기술부에서 관리하기보다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여겨짐.

2. 부문별 평가결과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사업계획이 없음. 학교도서관 장서 확충이 학교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배정하여 추진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사업임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3. 개선방안

- 사업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수행할 의미가 적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혀 사업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성과를 점검하는 노력이 없고, 이럴 필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폐지하고 교육청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여겨짐.

2-3-3-3(계속)	기숙형고교 지정·추진 (교육과학기술부)
-------------	--------------------------

담당부서	학교제도기획과	담당자	김상규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6456	이메일	ksk9420@mest.go.kr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국정과제 ‘다양하고 좋은 학교 더 만들기’의 세부과제로 추진
- 농산어촌, 도농복합도시 등 교육 낙후지역에 2011년까지 기숙형 고교 150개교*를 선정하여 기숙사 시설 지원
- * ('08년)82교 → ('09년)68교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8년 ~ 2011년
- 총사업비 : ('08년)3,173억원, ('09년)2,400억원
- 사업규모 : 기숙형고교 150개교 선정
- 지원형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지원조건 : 시·도교육청 대응투자 50%
 - ※ 사립의 경우 학교법인의 대응투자 포함
- 사업시행주체 : 교육과학기술부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50					5,573		5,573
'05								
'06								
'07								
'08	82					3,173		3,173
'09	68					2,400		2,400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173		3,173
'05								
'06								
'07								
'08	82					3,173		3,173
'09	68							'10년 지원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기숙형고교 지정·육성	기숙형고교 지정	학교 수	개소	68	68	100

II. 평가결과

1. 총 평

-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다양하고 좋은 학교 더 만들기’ 세부과제로 추진. 농산어촌, 도농복합도시 등 교육 낙후지역에 2011년까지 기숙형 고교를 150개를 선정하여 기숙사 시설 지원. 연도별 목표는 ('08) 82교 → ('09) 68교임
- 2009년에 지방비 2,400억원을 투입하여 68개의 기숙형 고교를 추가 지정·운영함. 기숙형고교 선정학교에 기숙사 시설비를 지원하여 교육여건 개선을 도모하고, 특색있는 학교운영 프로그램 지원으로 학교교육력을 제고하고 학교운영의 자율성 확대시키고자 함

2. 부문별 평가결과

□ 추진계획 및 실적

- '09년에 68개교의 기숙형 고교를 선정하고 기숙사 시설비로 2,400억원(시도교육청 대응투자 50%, 사립의 경우 학교법인의 대응투자 포함) 지원.
- '09년에는 학교운영 프로그램 개발·보급('09.4~), 기숙형 고교 모델 학교 운영('09.4~11)을 통하여 기숙형 고교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도서·벽지지역 1교, 면지역 1교, 읍지역 6교 등 8교 시범 운영).
 - '09년 기숙형고교는 정책연구,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실시한 후 도농복합도시 및 사립고까지 확대

□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68개교중에서 68개교를 선정하였음. 이에 따라 국정과제 목표 150개교를 조기에 달성하였음

3. 개선방안

- 농산어촌 기숙형 고교 지원 사업은 농산어촌 학교의 특성을 감안한 체계적인 연구, 표준적인 매뉴얼의 개발 및 보급, 연구학교 및 모델학교 시범 운영 등을 통한 선도학교 육성,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과는 기숙형고교가 찾아오는 학교로 변모하여 농산어촌의 실질적 교육력을 향상시킬 수 토대마련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됨
- 향후 기숙형고교가 현대화된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강점을 활용하여 학력중시 등 입시중심의 교육에 치우칠 수 있으므로 학력향상과 인성함양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인성교육 프로그램도 충분히 개발·지원하여 기숙형고교가 전인교육 중심학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임

2-3-3-4(신규)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 (교육과학기술부)
-------------	---------------------------

담당부서	교육복지정책과	담당자	조홍선(주무관)
전화번호	02-2100-6521	이메일	caohao@mest.go.kr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산어촌 지역의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자연과 침단이 조화된 교육환경 조성, 우수인력 배치,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학교 교육력 제고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9년 ~ 2011년
- 총사업비 : 790억원(2009년 사업비)
- 사업규모 : 9개 도(道)교육청 소속 도농복합시 및 군 지역 면소재 초 77교, 중 33교
- 지원형태 : 특별교부금
- 지원조건 : 특별교부금 100%
- 사업시행주체 : 교육과학기술부, 9개 도(道)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교)	국비(억원)				지방비 (억원)	자부담	합계 (억원)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10		-	-	-	790	-	790
'09	110		-	-	-	790	-	790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억원)	자부담	합계 (억원)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10		-	-	-	790	-	790
'09	110		-	-	-	790	-	790

- 공모를 통해 농산어촌 전원학교 110교 선정(초 77, 중 33), 790억원 교부('09.7)

※ 학교 여건에 따라 시설비 지원, 프로그램비 지원 등 유형별로 3년간 차등 지원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	구성원 만족도	설문조사결과	%	70	89.9	128.4

II. 평가결과

1. 총 평

-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사업은 농산어촌 지역에서 학생수 감소로 낙후되어 가는 농산어촌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자연과 첨단이 조화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우수인력을 배치하여 교육과정을 특색 있게 운영함으로써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려는 사업임.
- 2009년도에 처음 실시하였으며 전국의 초중등학교 110개를 선정하여 특별교부금 790억원을 지원하였음.
- 2009년도에 790억원 전액이 지원되었고 2010년도에 513억원이 지원 될 예정임. 당초 예상했던 570억원보다 적은 금액이지만 비교적 많은 예산이 확보되었음.
- 예산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학교의 지원, 도교육청의 심사 등을 거쳐 합리적으로 선정하였으며, 학교의 의견, 담당자의 의견,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였음
- 사업을 적절히 추진하고, 학부모와 교원, 지역사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언론, 학부모 홍보 등의 다양한 노력을 수행하였음.
- 농산어촌 지역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구비해 주는 것은 대단히 필요함. 특히 교육 때문에 농산어촌을 떠나지 않고,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이런 정책적 사업을 필요함. 이런 차원에서 전원학교 육성 사업을 필요하다고 여겨짐.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전원학교 육성사업은 농산어촌 교육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농산어촌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임.

농산어촌의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농산어촌교육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이농을 억제하고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추진한 사업임. 농산어촌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고려한다면 절실히 필요한 사업임

- 학교의 여건에 따라 사업의 유형은 A, B, C형으로 구분하여 지원 방법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여건에 따라 각기 다른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음
- 사업은 교육환경 조성 뿐만아니라 우수인력 배치, 교육과정 특색화를 추진하여 다양하게 사업이 운영되도록 하고 있음. 학교의 자율적인 운영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역과 학교가 하나 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사업관리지원센터, 지자체가 유기적 관계를 맺고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체계적인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추진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메뉴얼 만들어 보급하고 있으며, 컨설팅단을 운영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와 사업관리지원센터, 교육청, 학교가 연수회, 협의회를 가져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재원도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있으며, 확보된 재원이 100% 집행되고 있음
- 언론매체, 교육홍보 브로슈어 등을 제작하여 전원학교의 목적과 사업내용을 알리고 있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전원학교는 이제 기반을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농산어촌의 교육발전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사업임.
- 2009년 12월 30일에서 2010년 1월 6일 사이에 조사한 교사와 학생의 만족도가 89.9%로 나와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3. 개선방안 등

- 전원학교 육성은 농산어촌 교육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사업임. 농산어촌 교육을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원학교의 대상학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현재 110개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 추가되지만 이런 노력을 확대하여 많은 학교들이 전원학교와 같은 수준의 학교여건을 만들고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농산어촌 교육의 질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제3절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



(지역개발)부문 점검·평가보고서

(지역개발 팀)

평 가 팀 장 김 정 연 (인)	평 가 위 원 장 병 수 (인)
평 가 위 원 손 진 식 (인)	평 가 위 원 이 충 기 (인)
평 가 위 원 이 상 문 (인)	평 가 위 원 윤 상 호 (인)

I. 총 평

- '09년도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 분야 평가대상 사업수는 총 34개이며, 일반사업 19개, 소규모 사업 11개, 지방이양사업 2개, 시범사업 2개를 포함하고 있음
 - 이 중에서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개발·보급사업은 '09년 종료 사업으로서 평가에서 제외하였으며,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은 '10년 6월 이후에 지자체로부터 추진실적 취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이들 사업을 제외한 32개 사업 중에서 교통서비스 강화사업은 지방이양사업이고, 농어촌복합체육시설지원은 시범사업으로 순위를 부여하지 않았음
- 2009년도 자체평가보고서에서 나타난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 분야의 사업들 대부분이 사업내용 조정·개선, 사업추진방법 개선, 추진체계 개선, 주민 의견 또는 지역특성 반영, 목표 달성 등의 면에서 많은 개선을 이루었음
 - 특히,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산촌생태마을사업, 면소재지활력증진사업 등의 소단위지역 종합개발사업들은 '08년에

이어 '09년에도 계획수립 절차 및 계획수립기법의 개선, 주민 참여, 전문가 진원, 주민역량 증진을 위한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모니터링·평가 및 개선노력, 사업홍보, 모범사례 전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

-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 분야의 사업들 대부분이 내용적인 발전을 이루고는 있으나 여전히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과제를 안고 있음
 - 소프트웨어 사업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대부분의 사업이 시설 투자에 치중함으로써 여전히 소프트웨어 사업은 부족한 편임
 - 농어촌주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개발이 미진함
 -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사업별 계획 수립·추진 방식이 정교화되고 있으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들 사업을 일정 장소를 중심으로 연계·복합화하여 개발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은 미비함
 - 특히,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실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있어서 부문 및 사업간 종합 조정을 통한 전체적인 합리성 제고가 중요하나, 실제로는 각 기관이 수립한 사업계획을 사후적으로 종합하고 있음
- 소단위지역 종합개발사업 계획기간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 또는 후속사업 추진을 통해서 지속가능할 발전을 도모해야 함
 - 지방소도읍육성사업, 마을종합개발사업 등의 소단위지역 종합개발사업지구의 대부분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계획기간 이후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여 종합개발사업으로 인해 모처럼 얻은 지역활성화 기회 또는 성장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후속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광특회계의 포괄보조금제도 도입에 따라 지자체의 사업계획 추진 체계 개선과 계획수립 매뉴얼 제공이 필요함

- 광특회계의 포괄보조금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지자체 수준에서의 통합적 접근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으며, 지역 특성, 우선순위, 선도성, 그리고 사업간 연계성 또는 시너지 효과를 고려하여 사업을 선정하되, 가급적 연계·복합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제고하여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효과적으로 종합·조정할 수 있는 기획기능의 강화와 부서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추진체계의 구축이 긴요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포괄보조금제도 하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정·추진 하더라도 공모제가 지니고 있는 경쟁원리의 장점을 살려서, 사업의 적정한 선정, 중간평가(모니터링) 결과의 반영, 계획수립 및 추진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주민역량 증진, 전문가 참여, 학습 등의 계획수립 요건 충족이 이루어지도록 사업 선정단계에서부터 완료할 때까지 심사·평가의 강화, 패널티 또는 인센티브 부여 등의 조치가 계속될 필요가 있음
-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효과를 보다 실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업성과를 양적인 목표수치로만 표현하는 것보다는 내용과 질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적용하는 방법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II. 평가결과

1. 부문별 평가결과표

코드번호	사 업 명	평가점수	순위	평가등급	비 고
3-1-1-0	지역개발 전문인력 육성 및 저변 확대	79	29/30	하위	
3-2-1-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95	3/30	상위	
3-2-1-2	어촌종합개발사업	95	3/30	상위	
3-2-1-3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94	6/30	상위	
3-2-2-1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97	1/30	상위	
3-2-2-2	면소재지 활력증진사업	88	14/30	중위	
3-3-1-1	농산어촌 주거환경 개선	86	18/30	중위	
3-3-2-1	면단위 생활용수 개발	86	18/30	중위	
3-3-2-2	마을단위 생활용수 개발	91	9/30	중위	
3-3-2-3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84	25/30	중위	
3-3-2-4	소하천 정비	95	3/30	상위	
3-3-2-5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지원	80	27/30	중위	
3-3-2-6	농촌폐비닐 수거비 지원	89	11/30	중위	
3-3-2-7	다목적 인양기 설치	86	18/30	중위	
3-3-2-8	해양폐기물 정화 및 쓰레기 수거사업	86	18/30	중위	
3-3-2-9	양식장 정화 사업 지원	87	16/30	중위	
3-3-2-10	해수욕장주변정비 및 시설개선사업	86	18/30	중위	
3-3-3-3	국고여객선 건조	85	23/30	중위	
3-3-3-4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78	30/30	하위	
3-3-4-1	농촌생활환경정비 지원사업	89	10/30	중위	
3-3-4-3	도서개발촉진사업	88	14/30	중위	
3-3-5-1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81	26/30	중위	
3-3-5-5	지방문화원 프로그램 운영	94	6/30	상위	
3-3-5-6	지방테마과학관 건립지원	80	27/30	중위	
3-3-5-7	수목원 조성 및 산림물관 건립	97	1/30	상위	
3-3-6-1	정보화 마을 조성	89	11/30	중위	
3-3-6-3	농업경영체 정보시스템 구축	90	10/30	중위	
3-3-6-4	디지털어촌 구축사업	89	11/30	중위	
3-3-7-1	농어촌정보이용활성화	87	16/30	중위	
3-3-7-3	농어업 관련 정보제공 확대	92	8/30	중위	
평 균		88.10			

2. 평가 상위사업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 본 사업은 주민의 니즈에 기초하여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상향적 지역 사회개발로서 지역 및 농촌 분야의 개발방식의 선진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월별 모니터링 및 분기별 현지 확인 점검 등 중간 모니터링 실시, 사업방식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추진 실적 점검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숍 개최, 사업추진 실적 평가 후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중간평가)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본 사업계획의 수립·추진방식을 개선하고 있으며,
- '07년 착수한 40개 권역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 인구, 가구, 소득, 교류 인구 등의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어촌종합개발사업

- '94~'08년까지 1단계사업이 완료되고, 현재는 '09~'13년까지 2단계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낮으나 개발 잠재력을 구비하고 있는 권역을 선정하여 중심 항포구를 축으로 생산, 유통, 가공, 판매 관련 사업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개발함으로써 어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지역소득 증대, 삶의 질 향상 등에 대한 기여도가 높음

○ 지방소도읍육성사업

- 지방소도읍육성사업은 지역간 건전한 경쟁을 통해 우수한 계획을 공모하는 『상향식 공모제』 방식과, 개발 잠재력이 높은 소도읍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 방식, 자치단체장의 책임과 중앙정부의 지원에 대해서 상호 협약하는 『육성협약제도』를 도입·적용함으로써 안정적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04년 이후 지역 및 농어촌개발사업의 혁신을 선도하여 왔음

- 소도읍육성사업에서는 다른 부처가 지원하는 관련 사업을 일정 장소 (개발거점)를 중심으로 집중·연계·복합하여 개발함으로써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역개발방식의 도입·적용을 선도하고 있음(사례: 기획재정부의 특화발전특구 지정, 중소기업청의 재래시장구조개선 특별지원금, 농식품부의 산지유통시범 사업, 농어촌도서관사업, 국토해양부의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 환경부의 ‘아름다운 생태하천 및 전원경관조성사업’, 국토해양부의 생태하천 시범지구 선정,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요양시설 조성 및 노인복지 타운 추진 등)
- 12개 시·도의 84개 소도읍('08 완료 29개, '09 완료 23개, 계속 32개)에 대해서 '09년 6월 16일~6월 22일 사이에 사업 추진상황(예산 집행 적정성, 지방비 확보, 이해관계자 참여, 사업성과, 사업효과 등)에 대해서 4개 팀 12명(민간인 8명, 행안부 4명)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완료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해 4개 평가팀 12명(심사위원 8명, 행안부 4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09년 10월 30일~11월 6일 사이에 팀별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소도읍별·분야별로 분석·평가하는 등 체계적인 평가·환류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소하천정비사업

- '09 소하천정비사업은 전년도 하반기부터 설계, 보상 등을 미리 준비하여 예산 확보와 동시에 조기 발주하여 재해의 조기예방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음
- '09년에 당초 계획(총 3,144억원) 대비 61% 증가한 총예산 5,081억원(국비1,909, 지방비 3,172)을 투자하여, 목표치(314km)를 133% 초과한 417km의 소하천을 정비하였음
- 사후복구 위주에서 예방 위주로 전환하기 위하여 예방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매년 재해예방사업의 투자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등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재해를 예방·경감시키는데 크게 기여함

○ **수목원 조성 및 산림박물관 건립**

- 지자체의 부지 및 예산 미확보로 인한 사업지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강점·기회요인을 잘 분석하여 그 장점을 강화하고 약점·위협요인을 파악하여 그 단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한 점, 국내외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이를 반영한 점, 사업진행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그 문제점을 보완·개선한 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외국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 점 등 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음. 그 결과 「2009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의거 계획대비 100% 추진 완료하였고, 수요자 만족도가 90점대로 매우 높음

○ **지방문화원 프로그램 운영**

- 본 사업은 실버세대의 문화역량을 발굴·개발하여 실버세대의 교류, 지역사회 참여,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하는 저비용 프로그램으로서 지방문화원을 실버문화 및 노인복지의 새로운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인 사업임

○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 정주환경이 열악한 산촌에 생활환경을 개선하면서 소득증대를 꾀하는 종합적 성격의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상향식 공모, 리더십 육성, 산촌지원센터 운영, 문제해결형 T/F운영, 예비활동마을 선정 등 선진화된 기법을 현장중심으로 운영하여 다양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
- 특히, 최근의 국가정책 기조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여 산촌마을을 탄소순환마을로 조성하려는 것은 우수한 착안점으로 판단됨

3. 평가 하위사업

○ 지역개발 전문인력 육성 및 저변 확대

- 본 사업의 취지가 적절하고, 교육생수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교육 내용을 다양화 한 것은 바람직하나, 단기간, 집체식, 주입식 교육 중심으로 교육효과를 일정 수준 이상 제고하기 어려우며, 아직은 교육 프로그램별 대상자의 적격성 문제, 농어촌 지역개발 교육 강사 풀의 제한 등의 과제를 극복할 필요가 있음

○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 2009년 당초에 제시된 여객선 이용객 운임지원 목표 370만명 대비 360만명을 지원하여 목표치의 97%로서 약간 미달하고,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결과는 '08년 64.1%에서 '09년 69.0%로 향상되었으나 향후 더욱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2009년 평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객선 운임을 금전적으로 보조해주는 것이 도시-도서간 교류증진, 주민의 생활의 질 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인 중간점검이 필요하고, 과거에 지적된 운임 정산과정의 투명성 제고가 현장에서 어떻게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결과가 제시가 필요함

Ⅲ. 평가소감

- 자체 평가보고서가 전반적으로 충실해지고 있으나, 아직도 성과보다는 투입 중심의 접근이 많은 편이며, 특히 사업목적 대비 성과지표 타당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
- 자체평가 보고서의 작성에 있어 목표에 대비 추진실적을 지나치게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므로, 향후 사업내용의 질적 평가의 내용을 포함 시키도록 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검증하는 절차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각 부처의 자체 평가보고서만으로는 지자체의 지역특성과 수요에 맞는 사업이 선정되는가, 합리적인 계획의 수립·집행·평가·환류가 이루어지는가 등의 문제와 함께, 당해 사업과 관련된 주민참여의 정도와 지역에서 느끼는 사업의 성과·만족도 등을 파악하기 어려웠음. 따라서 부문별 또는 사업별로 중앙정부 차원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교차평가를 실시하여 사업계획 수립·추진의 실체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함
- 평가기간이 짧아질수록 주요 내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므로 가급적 충분한 평가기간 확보가 필요하며, 여건상 평가기간이 짧아지더라도 일련의 확인·점검·평가 절차가 지켜져서 본 점검·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이 달성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됨
- 현재와 같은 평가 절차와 방식 하에서는 평가 상위사업과 평가 하위사업의 구분이 사실상 모호함. 다시 말해서, 사업간 질적인 차이는 적으나 양적인 점수의 차이가 다소 있는 편임. 특히, 평가 하위사업 구분에 있어서 변별력이 약하므로 일정 비율의 평가 상위사업과 평가 하위사업을 추출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 분야의 대부분의 사업이 포괄보조금사업으로 전환되는 만큼, 사업계획의 수립과 추진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며, 이에 대비한 점검·평가 방안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3-1-1-0(계속)	지역개발 전문인력 육성 및 저변 확대(농림수산식품부)
-------------	-------------------------------

담당부서	농촌사회과	담당자	하지은(사무관)
전화번호	02-500-1821	이메일	jeeha@korea.kr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지역리더, 주민, 지자체 공무원 등 상향식 사업을 주도하는 사업 주체의 능력배양을 통해 지역개발사업을 주도할 전문인력 육성
 - 농촌지역개발 주체의 인적역량 강화를 통해 도농교류·농촌지역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도모
- 추진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및 제38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내지 제20조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5부터 계속
- 사업추진방향
 -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리더, 주민, 지자체 공무원 등 교육대상자별로 수준에 맞는 교육 시행
 - '09년 시행된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모니터링을 통해 시행 결과를 검토하여 향후 사업 발전방향 도모

- 사업추진주체 : 한국농어촌공사(도농교류센터)
- 사업추진절차
 - 기본계획 수립(농식품부) → 시행계획 수립(한국농촌공사) 및 승인(농식품부) → 세부사업 추진 및 결과보고(한국농촌공사) → 사업비 정산(농식품부)
- 사업 주요내용
 - 지역리더, 주민, 지자체 공무원 등 농촌지역개발사업 주체를 대상으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교육 시행
 - 도농교류·농촌지역개발 리더십육성과정, 동기화과정, 사업 주체별 특화과정 등 총 3개 과정, 14개 모듈 운영
 - 교육과정별 결과정리 및 토론발표를 통한 모니터링, 전문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문가 특강 및 과정설계 자문 실시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차별 추진 내용
 - 1단계('05~'08) : 기반구축
 -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교육지원(학적관리·인재뱅크) 시스템 구축·운영
 - 표준교재 I·II 개발·보급
 - 농촌지역개발 컨설팅 업체 DB 구축
 - 2단계('09~'11) : 성장기
 - 도농교류촉진법 시행으로 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 도입
 - 교육 수요자의 니즈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세분화
 - 3단계('12이후) : 안정기
 - 인증교육기관 등을 활용한 교육의 다양화·활성화 지원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0,017	51.32						51.32
'05	1,322	2.57						2.57
'06	2,000	8.10						8.10
'07	3,452	8.50						8.50
'08	4,323	9.55						9.55
'09	5,720	12.30						12.30
'10	3,200	10.30						10.30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6,864	40.88						40.88
'05	1,322	2.57						2.57
'06	2,258	8.10						8.10
'07	7,618	8.50						8.50
'08	7,326	9.55						9.55
'09	8,340	12.16						12.16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

- '09년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 교육은 교육 이수 인원으로 달성도 측정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촌지역개발 인력양성	교육 인원	교육 이수 인원	명	5,720	8,340	146

II. 평가결과

1. 총 평

- 동 사업은 상향식 농촌지역개발 사업의 추진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실시하여 인적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상향식 농촌지역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의의가 큰 사업임
- '09년은 교육목표 대비 146%에 해당하는 8,340명이 교육을 이수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고, 마을현장을 찾아가는 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교육 참여의 편의성과 보편성을 확대하였음
- 학적관리시스템, 전문가 DB인 인재뱅크시스템 보완, 농어촌 체험지도사·마을해설가 교육과정 신청기관에 대한 농식품부 공식 인증 실시, 농어촌 체험지도사·마을해설가 표준 교육교재 제작 및 보급 등의 성과를 얻었음
- 농촌지역개발사업의 핵심 주체인 부녀회 등 여성들의 교육 참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저조(전체 교육인원의 30% 수준)하므로 여성들의 교육 참여를 활성화할 방안마련이 필요함
- 교육과정을 보다 세분화하고 수준별 맞춤형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고, 특히 지역에서 핵심적인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룹을 대상으로 포커싱하여 집중 교육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마을종합개발, 거점면소재지개발 등 상향식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리더, 주민, 지자체 공무원 등 상향식 농촌지역개발 사업주체의 능력배양을 위해 관련 교육과정을 개발·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추진 동기 및 필요성이 적절함

- 상향식 농촌지역개발을 주도할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2009 인적역량 강화 세부시행계획('09.1)」의 수립·추진 및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여 반영함으로써 교육효과를 높이고자 하였음
- 그러나 전반적으로 교육기간이 짧아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심층적인 교육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민간 등 각 기관별 기능에 맞추어 역할을 분담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는 잘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교육과정별로 적합한 대상자 모집에 있어서의 여전한 어려움, 강사 선정의 애로, 강사에 따른 강의 내용·질의 편차, 강사들의 역량 강화와 강사간 정보교류 필요성 등의 문제가 있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상향식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추진주체인 지역리더, 주민, 지자체 공무원의 인적역량을 강화시켜 상향식 도농교류·농촌지역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지원하고 있음
- 교육과정별로 교육참가자를 대상으로 교육수준, 교육 필요성, 교육방식, 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모든 과정에서 80점 이상의 만족도를 보임
- 그러나 성과지표와 성과목표로 교육생수가 목표대비 초과달성한 것은 바람직하나, 교육생수만으로는 성과목표 달성도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충분하지는 않음. 오히려 교육이수자들의 만족 또는 불만족 요인, 참여도, 교육생 추적관리, 교육을 이수한 피교육생들의 농촌지역개발과정에서의 역할 등 사업추진에 따른 모니터링이 필요함

3. 개선방안 등

- 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평가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다각적인 수요조사, 워크숍, 토론회 등을 실시하여 농촌지역 개발과정을 효과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인력양성을 도모하는 교과과정 및 교육 내용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 현재와 같이 단기교육으로는 전문인력 육성이 어려우므로, 6개월, 1년, 2년 과정 등 장기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모든 교육영역에 있어서 가급적 강의식 교육보다는 현장의 소리(애로사항, 갈등 해결, 현장기술, 성공사례와 요인 등)를 직접 듣고 느끼는 현장 교육의 비중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음
- 전문인력 육성교육의 전체 또는 일정 영역을 지자체에 이양할 경우, 지방비를 매칭함으로써 예산규모가 확대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데 유리해질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3-2-1-1(계속)	농촌마을종합개발(농림수산식품부)
-------------	-------------------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이승한(주무관)
전화번호	02-500-1806	이메일	rooki719@korea.kr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해 쾌적한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 유지 및 도·농균형발전 도모
- 사업추진 기본방향
 - 동일한 생활권·영농권이 같은 1개 법정리 이상의 발전 잠재력이 있는 마을들을 상호 연계하여 소권역 단위로 개발
 - 지역주민과 지역내 관련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개발
 - 농촌지역을 전원생활·여가휴양·자연환경보전공간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원적 기능을 확충
 - 지역의 잠재자원을 특성화하여 소득증대를 통한 자립기반 구축
 - 지역별 특성을 살려 여건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특성화 개발
 -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농촌다움을 유지·보전하는 친환경적인 개발
 - 권역별로 권역발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계획적 개발
 - 평가체계를 도입하여 인센티브와 페널티제도 도입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4 ~ 2017
- 총사업비 : 64,828억원 (국고 45,912, 지방비 18,916)
 - 농촌지역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1,000개 권역 추진
 - 권역당 5년간 40~70억원 범위내 지원(국고 70%, 지방비 30%)
- ※ 권역의 크기, 가구수 등 권역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추진현황 : '09까지 221개 권역 선정 및 기본계획 완료
'05년 착수권역 36개 권역 준공 완료
- 사업근거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에관한특별법 제 38조에 의해서 계획, 농어촌정비법 제 52조내지 제 71조를 준용하여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 · 군수
- 사업추진절차 : 예비계획설작성(주민)→사업신청(주민, 시·군, 시·도)
→타당성조사(농식품부)→기본계획안 작성(시·군, 농어촌공사)→기본계획수립(시·군, 시·도)→시행 계획수립(시·군, 시·도)→사업시행(시·군)→준공 (시·도)
- 사업내용 : 지역의 잠재자원을 발굴·활용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소득기반확충, 지역사회유지를 위한 인구유치 및 지역혁신을 위한 지역역량강화 등 종합정비
 - 마을경관개선 : 마을소공원, 담장정비, 마을숲 정비, 빈집 철거 등
 - 기초생활시설 : 마을내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교량 등
 - 소득기반시설 : 농산물가공시설, 공동집하시설, 공동판매장 등
 - 지역역량강화 : 컨설팅, 마케팅, 주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3. 연차별 추진계획

- '09년까지는 신규 사업량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05년 36개, '06년 20개, '07년 40개, '08년 40개, '09년 40개)하여 176개 권역을 착수할 계획
- '10년도 확대 추진('10년도 45권역 착수, 80권역 선정)
- '10년부터 지자체에 업무 대폭 이양(포괄보조)
 - 농식품부 : 예산확보, 대상지역 선정, 모니터링, 성과평가, 제도개선
 - 지자체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사업시행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21	306	6,205	-	-	2,161	-	8,672
'05	36	61	428	-	-	107	-	596
'06	20	33	434	-	-	109	-	576
'07	40	62	669	-	-	167	-	898
'08	40	60	1,263	-	-	316	-	1,639
'09	40	68	1,672	-	-	717	-	2,457
'10	45	22	1,739	-	-	745	-	2,506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76	284	4466	-	-	1,416	-	6,166
'05	36	61	428	-	-	107	-	596
'06	20	33	434	-	-	109	-	576
'07	40	62	669	-	-	167	-	898
'08	40	60	1,263	-	-	316	-	1,639
'09	40	68	1,672	-	-	717	-	2,457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09년까지 176개 권역('05년 36개소, '06년 20, '07년40, '08년 40, '09년 40)을 착수하여 목표를 100% 달성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1단계평가('09.11)를 실시하여 '07년도 착수 권역(40개) 주민(2,085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6.2%가 사업추진에 대한 만족을 나타내어 목표치 초과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착수율	{누계 착수권역수 /1,000(목표권역수)}	%	17.6	17.6	100
	주민 만족도	만족도 조사	%	80	96.2	120

II. 평가결과

1. 총 평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생활권·영농권이 동일한 복수의 마을을 하나의 개발권역으로 하여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단위마을 개발 방식이 갖는 영세성을 극복하고, 투자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음. 또한 계획수립과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학습을 통하여 경영역량을 갖춘 확대된 새로운 마을공동체로 전환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촌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큰 사업임
- 주민참여를 중시하는 지역사회개발(community planning) 방식으로서, 주민 수요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전문가의 자문·평가·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관성 있는 계획수립·집행·평가·환류과정을 가능하게 하며, 사업의 지속 가능성 제고하고 있음
- '09년까지 지역주민, 지자체,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수립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수립과정을 거쳐 176개 권역('05년 36개소, '06년 20, '07년40, '08년 40, '09년 40)이 모두 사업을 착수하여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갈등·분쟁이 발생하여 계획수립 또는 사업 추진이 지체될 경우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해법(코디네이터, 다양한 상황을 상정해서 만든 매뉴얼, 전문지원팀 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적시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임
- 지역주민과 지자체에서 수립한 예비계획서를 기초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수립시부터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수립과 평가과정에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계획의 수준과 적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음

- '10년부터 종전의 균특회계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되고 자자체에 포괄적으로 재정지원(포괄보조금 제도 도입)하게 되어,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 등 15개 관련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군으로 통합되어, 시·군에서는 예산한도내에서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음
- 따라서 지자체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이 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모델 개발과 행정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소득기반 확충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여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 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사업목표가 명확함
- 특히, 사업추진의 기본방향을 농업·농촌의 다원적기능을 확충하여 농촌다움을 유지·보전하고, 주민참여형 상향식 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등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현지조사를 통한 지역진단과 타 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 방향을 구상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부문별 계획 및 사업별 투자계획을 수립하되, 각 단계별로 주민, 마을개발협의회,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수시 협의하여 계획(안)을 작성하고 있음
- 계획 수립·조정시 주민의견 수렴 및 이해관계자간 다양한 협의 과정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가 평가의견을 계획내용에 검토 반영(feed back)하고 있음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사업추진체계는 사업준비단계와 사업시행단계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 사업이 착수되도록 하고 있음. 사업준비단계는 예비계획서 작성, 사업신청, 예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사업시행단계는 시행계획수립, 사업시행, 준공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 실적을 월별 모니터링 및 분기별 현지 확인 점검 등 중간 모니터링 실시, 사업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추진 실적 점검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숍 등 개최, 사업추진 실적 평가한 후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중간평가), 사업추진시 나타난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였음
- 사업시행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권역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09년도 예산 전액 집행을 완료하여 재원조달·배분·집행이 잘 되었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07년에 착수한 40개 권역에 대한 중간평가('09.10~12) 결과, 기본계획 수립 권역('05년, '06년)에서 중간평가('09년)동안 2.62%의 감소를 보여 같은 기간 우리나라 농촌인구 감소율인 7.18%보다 현저히 낮아 농촌 지역의 인구증대 및 유지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고, 가구수 3.76% 증가, 방문객수 98.35% 증가, 소득 28.14% 증가 등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마을리더 증가율은 332.33%가 증가하여 자생력 있는 농촌공간을 만드는 데 기여함
- '07년 착수한 40개 권역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수혜당사자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6.2%가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음.

3. 개선방안 등

- 시·군에 이양된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업무의 원활화를 위하여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계획 수립 핸드북(또는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현장에서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계획수립이 종료된 권역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지속 가능한 마을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사후관리 또는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10년부터는 포괄보조금제도 도입으로 시·군에서는 예산 한도내에서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소요예산 규모가 일반적인 단위사업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본 사업을 선택할 경우 다른 소규모 사업 기회가 다수 줄어들게 되어 선호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큼. 따라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포괄보조금 대상사업 이외의 사업도 포함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2-1-2(계속)	어촌종합개발사업(농림수산식품부)
-------------	-------------------

담당부서	수산개발과	담당자	송경석(주무관)
전화번호	02-500-2330	이메일	kssong@mifaff.go.kr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낙후어촌의 정주생활환경 개선 및 수산업 생산기반시설 지원 등으로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 사업추진 근거 : 어촌어항법 제9조(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4년 ~ '13년
- 총사업비 : 8,795억원 ('08년까지 기 투자액 6,008억원)
- 사업규모 : 230개 권역('08년까지 160권역 완료, 14개 권역 계속)
[1단계('94~'07) : 160권역, 2단계('07~'13) : 70권역]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
- 지원조건 : 국비70%, 지방비25%, 자담5%
※ '08년까지 국고보조 80%, 지방비 20%<자담포함>
- 사업시행주체 : 시·도지사(시·군·구)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권역)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6(16)		1,340			345	32	1,717
'05	1(17)		254			71	3	328
'06	17		309			73	4	386
'07	(24)		286			67	4	357
'08	8(12)		310			69	9	388
'09	10(13)		181			65	12	258

* ()내는 계속사업 권역수임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권역)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6(16)		1,330			341	32	1,703
'05	1(17)		254			71	3	328
'06	17		309			73	4	386
'07	(24)		286			67	4	357
'08	8(12)		310			69	9	388
'09	10(13)		171			61	12	244

* ()내는 계속사업 권역수입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성과지표 : 연평균어가소득증가율, 사업권역내 주민만족도

* '09사업계획 : 23개 권역(계속사업 13개 포함), 181억원 지원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어촌종합개발	사업권역내 주민만족도	기준년도대비	%	67	67.9	101
	연평균어가소득증가율	기준년도대비	%	3.3	5.3	161

* 어촌·어항 개발사업 만족도 조사용역(한국어촌어항협회, 2009.12.29일 완료)

II. 평가결과

1. 총 평

- 낙후어촌의 정주생활환경개선 및 수산업 생산기반시설 지원을 목적으로 '94년부터 추진해온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촌지역의 소득증대와 어촌사회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함.
-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초기단계에서는 생산기반시설이나 소득지원 시설사업에도 지원이 되었으나 현재는 생산기반시설 위주의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음
- '07년까지는 35억원씩 균일하게 투자함에 따라 권역별로 과잉 투자되거나 예산이 부족하여 제대로 투자되지 못하는 지역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 그러나 2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2009-2013년)부터는 지역별로 차등적으로 재원을 지원함으로써 합리화 되었으나, 2단계 사업에서도 완료되지 못한 권역 및 기존 재정비 사업권역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 2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에서는 관련법규에 의거 사업계획을 해당 지자체에서 수립토록 추진체계를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어 지역의 자율성과 지역특성을 제고 할 수 있게 되었음
- 파급효과 분석결과, 소득증대 측면, 어업인 만족도 측면, 인구유인 측면 등 전반적으로 어촌지역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선택과 집중의 투자방식이 효율적이었으며, 이에 따라 권역당 투자금액도 증액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정성(계획)

- 기존의 생산·소득기반시설 지원과 함께 지역별·해역별 특성에 맞는 어촌관광개발사업을 지원함
- 기본계획수립시 공유수면 매립·환경성 검토 대상이 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차후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시 환경성 검토를 병행 실시토록 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 '08년부터는 중앙정부는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만 수립하고 그 이후단계인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와 사업집행은 지자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음.
- 사업계획수립 과정에서 지역여건 및 지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어촌계,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한 협의체를 구성하며,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거쳐 사업계획 수립 및 시·군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집행시 여건변화에 따라 우선순위가 신축성 있게 조정되고 있음
- '08사업(2단계)부터는 예산의 집중투자 및 적기집행을 위해 사업추진 체계를 변경(지자체에서 사업계획 수립, 중심어촌계 선정·테마형 집중투자, 권역별 투자규모 개편 등) 시행함으로써 투자효율성 증대
- 선정된 권역중 중심(거점)어촌계를 중심으로 하여 생산기반시설, 환경개선 및 복지시설 위주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지역별 개발 잠재력에 따라 대(50억 이하), 중(40억 이하), 소(30억 이하) 권역으로 분류, 개발규모에 맞춰 투자재원의 적정 배분
- 특히, 2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에서는 어촌 어항법 제7조제1항에 의거 사업계획을 해당 지자체에서 수립토록 추진체계를 개편하여, 지자체의 자율권 확대 및 사업비 집행률을 제고시키고 있음
- 어촌종합개발사업이 낙후어촌에 대한 생산·소득기반시설 및 생활환경개선 사업 지원임을 고려하면 사업목적인 어업인의 생활수준 향상 및 소득 증대라는 원래의 취지와도 부합되고 있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지금까지는 권역별로 중심어촌계 없이 분산 투자함으로서 지역별 차별화가 나타나지 않음
- 어촌종합개발사업의 경우 예산이 대부분 국비와 지방비로 구성이 되고 자담부분이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어촌계원들의 어촌개발 사업시설에 대한 관리의 소홀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횃집 등의 소득지원시설사업의 경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어촌계 자체에서 그 시설을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는 바, 장차 소득지원시설사업의 경우 운영관리권만 어촌계에 이관시키고 지상물에 대한 지상권 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기존의 횃집 등 소득지원시설사업의 경우 일방적으로 어촌계에서 판매, 매각처리한 시설의 경우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시 당해 시설에 투자되었던 국비를 전액환수토록 하여야 할 것임
- 어촌개발사업의 사업별 타당성 및 사업효과 분석 등 종합적인 평가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사업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어촌종합개발사업의 현지점검을 '09년에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함

- 어촌인구의 고령화에 대비 소규모 항포구에 소형선박 인양기를 설치하여 평상시에는 어획물을 양육하고, 여름철 태·폭풍기에는 선박을 인양 대피시킴으로서 국민의 재산보호 및 어업인 소득 향상

3. 개선방안 등

-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도서종합개발사업과 중복되어 집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권역 설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 동해안의 경우 수심 때문에 선착장, 물양장 등의 생산기반시설 설치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바, 어항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
- 어촌종합개발사업 재원이 대부분 국비와 지방비로 구성되기 때문에 시설의 관리소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부담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볼 수가 있을 것임
- 어촌종합개발사업은 기존의 생산기반 등 Hardware 위주의 시설 사업에서 탈피하여 사업수를 줄이더라도 비즈니스 모델화를 통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어촌종합개발계획사업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제 2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부터는 지자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므로 중앙정부에서 기본계획 협의시 구체적인 설계도면 등의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해당지역의 설치되는 구조물의 규모, 사업비 등의 타당성·합리성 여부 정도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어촌종합개발기본계획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의 지침이 되는 기본계획으로서, 어업생산기반시설을 제외한 소득기반시설,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시설들에 대한 건축물 도면 등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관광개념을 도입하여 중심어촌계를 개발하려는 의도는 바람직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소지도 있으므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에서 분류한 제2차 어촌종합개발대상지의 개발 테마 유형에 대한 유연한 입장이 필요함. 그것은 대상지의 여건이 변동되기도 하며, 어업인들의 요구사항과 행정간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임
- 제2차 어촌종합개발기본계획시 권역별 해당 어촌계수 등을 참조하여 권역 조정 및 사업비 배정 등을 하였으나 실제 기본계획 수립시 현실여건과 부합하지 않거나 어촌계가 나뉘어져 예상했던 어촌계수보다 많은 경우도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당초의 취지를 살려서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조정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사업시행 주체인 지자체의 실시설계용역 및 사업부지 확보, 관계기관협의 등의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기본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예산을 미리 확보하여 연초에 기본계획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부지 확보가 필요한 사업(어업인 복지회관, 해안친수공원, 직판장 등)은 사업목록에서 제외하거나, 기본계획 수립 착수 이전에 어촌계 또는 마을소유의 부지로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중심어촌계를 중심으로 특화·테마형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사업계획 수립시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낙후어촌의 생산기반시설 위주의 투자로부터 정주생활환경개선 사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어업외 소득증대사업 확대 및 도시민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어촌지역의 복합생활공간 조성을 도모

- '10년부터 광특회계(지역개발계정)-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여야 하나 어촌개발사업의 특성상 투자 후순위로 밀려나 계획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어촌개발사업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예: 어항건설예산 추가 지원 등) 제공 필요.
- 시·군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에 관하여 광역시·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현 상황이 절차만 복잡하게 하는 상황을 낳을 수 있으므로, 광역시·도의 협의는 상황에 따라서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봄

3-2-1-3(계속)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산림청)
-------------	------------------

담당부서	산림휴양등산과	담당자	송영림
전화번호	042-481-4122	이메일	kny1209@forest.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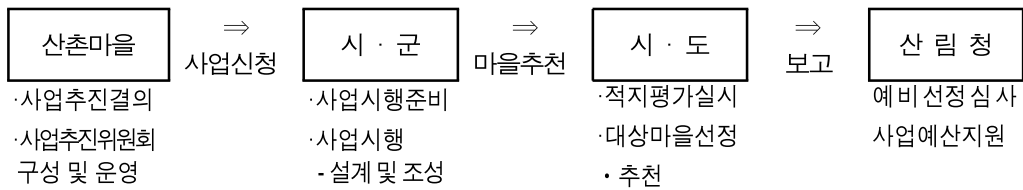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사업목표
 -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휴양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개선을 통해 산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
- 사업추진 근거
 - 「산림기본법」 제8조, 제29조 및 제30조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7조 및 제29조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5년 ~ 계속
- 지원형태 : 국비 70%, 지방비 30%(※ 설계비는 전액 국비 지원)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추진절차



- 사업 내용
 - 사업지원대상 : 산촌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산촌마을

- 사업규모 : 99개 산촌생태마을 조성('09년까지 204개소)
- 지원금액 : 마을당 10~16억원
- 지원조건
 - 소득 수준이 낮고 생산기반 및 생활환경정비가 시급한 산촌마을
 - 선정마을의 대표자 및 주민들의 사업추진의욕과 참여도가 높은 마을
 - ※ 타 개발계획 개발예정지, 지가가 높아 수년 내 개발예상 지역 등은 제외
- 사업 주요내용 : 주민역량강화 사업, 산림자원을 활용한 생산소득 및 산촌 체험사업, 생활환경개선사업 등 지원
- 시도별 배분내역('09년 산촌생태마을 개소수)

(단위 : 개소수)

구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99	4	24	12	12	11	12	16	8
사전설계	30	1	9	4	3	-	6	5	2
마을조성(1년차)	36	3	8	4	5	4	4	5	3
마을조성(2년차)	33	-	7	4	4	7	2	6	3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회계	군특회계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50	-	102,152			39,737	-	141,889
'05	45	-	14,539	-	-	5,825	-	20,364
'06	53	-	18,306	-	-	7,377	-	25,683
'07	66	-	21,097	-	-	8,294	-	29,391
'08	87	-	22,790	-	-	8,602	-	31,392
'09	99	-	25,420	-	-	9,639	-	35,059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50	-	102,152			39,737	-	141,889
'05	45	-	14,539	-	-	5,825	-	20,364
'06	53	-	18,306	-	-	7,377	-	25,683
'07	66	-	21,097	-	-	8,294	-	29,391
'08	87	-	21,424	-	-	8,602	-	30,026
'09	99	-	26,786	-	-	9,639	-	36,425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산촌생태마을 조성수 : '09년 성과지표 목표치 30개소 조성 완료
- 산촌주민 만족도 : 외부기관 용역결과 목표치(86점) 초과 달성(88.56)
- 산촌마을 소득증가율 : 외부기관 용역결과 목표치(9.5) 초과 달성(9.62)
 - 산촌주민 만족도 : 계획 대비 3.0% 증, 전년 대비 3.3% 증
 - 산촌마을 소득증가율 : 계획 대비 1.3% 증, 전년 대비 4.6% 증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산촌생태마을 조성	산촌생태마을 조성수	도의 실적보고서	개소	30	30	100
	산촌주민 만족도	외부기관 용역	점	86	88.56	103
	산촌마을 소득증가율	"	%	9.5	9.62	101

II. 평가결과

1. 총 평

- 산촌은 풍부한 산림자원과 생태문화자원을 보유하고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국토공간이지만, 인구가 과소하고 정주 및 소득기반이 낙후된 지역임. EU 등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산촌진흥 관련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간 충분한 재정투입이 이루어지지 못했음. 산촌의 자연환경 및 문화공동체 특성을 살려 마을환경을 조성하고, 최근 전국적인 녹색관광붐을 활용하여 산림휴양자원을 일반국민에게 서비스함으로써, 산촌의 경제와 공동체를 활성화하려는 사업의 방향과 추진내용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주민역량에 기초하여 산촌의 자연 및 역사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마을공동사업에 활용함으로써 산촌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산촌경관과 어울리는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거둬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의 정책목표에도 부합함
- 그러나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정책에 부응하여 제시된 탄소순환 산촌 마을로서의 정책비전과 추진성과가 불분명하고, 생태산촌으로서의 녹색환경을 보전하고 복원하려는 노력이 일부에서만 나타나는 아쉬움이 있음. 아울러 인적자원의 역량 강화, 사업으로 인한 고용창출 및 인구유입효과 측정, 사업의 기획과 운영을 위한 전문적인 산촌비즈니스 방식의 도입, 소프트사업의 비중의 강화 등이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할 수 있음.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산촌의 환경여건과 지역공동체 특성을 살린 휴양공간을 일반국민에게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산촌을 진흥하려는 사업의 계획방향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산촌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생태자원, 역사문화자원을 발굴하여, 이를 경제사업에 활용함으로써 산촌 주민에게 소득과 함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효과를 거둬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의 정책 목표에도 부합함
- 그러나 계획초기 단계에서부터 계획내용 작성에 있어 마을별로 차별화된 자연 및 문화환경을 적극적으로 보전·활용하고, 지역에 특화된 물리적, 사회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이를 소프트사업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음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잘된 점은 산촌생태마을 현장에서 컨설팅을 지원하는 산촌지원센터 상시 운영으로 주민갈등 해소 및 주민 현지교육을 강화한 점, 그리고 운영매니저 지원을 통해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이해를 높이고, 주민간 협의, 의견수렴, 갈등 해소 등을 추진할 수 있는 현장시스템을 구축한 점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사업대상지 선정 전·후 일정기간 사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예비활동 및 예비선정 기간을 부여하여 사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한 점도 높게 평가됨
- 미흡한 점으로는 사업을 마을공동체 사업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책임의 한계가 불분명하며, 주민의 경영마인드가 확고히 갖추어졌는지에 대한 평가가 불확실하고, 운영매니저, 산촌지원센터 등이 산촌의

구체적 현장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는지에 대한 검증이 불확실한 점임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산촌생태마을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하고, 우수 산촌생태마을을 발굴하여 홍보를 수행하여 사업의 성과를 높이려 한 점은 잘된 것으로 평가됨
-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여 사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려고 노력한 점은 잘된 것으로 평가됨.
- 사업이 완료된 산촌주민의 소득증가율이 8.3%('07년 실적) → 9.2%('08년 실적) → 9.62%('09년 실적)로 계속 향상되었고, 수혜 산촌주민의 만족도도 외부 전문기관이 평가한 결과 85.7점으로 목표(85점)를 달성하였음.
- 그러나 제시된 성과지표는 사업이 이루어진 마을에 국한된 주민 만족도 평가로서 산촌생태마을의 취지인 인구과소화 방지 목표에는 잘 부합하지 않으므로, 고용창출이나 인구유입 효과 등에 자체평가가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09년 평가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하드웨어사업과 소프트사업의 긴밀한 연계를 강화하고(물리적 환경조성과 지역자원 활용사업의 연계책 마련), 이를 위해선 소프트사업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물리적 시설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3. 개선방안 등

- '09년 평가에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사업의 책임과 권한의 강화를 위하여 경영마인드에 기초한 산촌비즈니스 방식(책임있는 주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인구유입과 일자리 창출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확고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산촌의 풍부한 생태자원 및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주민역량에 기초하여 사업프로그램으로 연결시키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시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 아울러 '09년 도입된 탄소순환 산촌마을 개념이 사업 전반으로 확산 되도록 에너지자립, 자원순환, 생태녹화, 생태건축 등 저탄소 프로그램을 사업의 핵심요소로 채택하고, 이를 위한 사업 가이드라인의 제정이 요구되며, 특히 탄소흡수립 조성, 도농 탄소배출권 거래 등과 연계될 수 있는 새로운 사업과제 발굴이 요구됨

3-2-2-1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
---------	-------------------------------

담당부서	지역발전과	담당자	노형수
전화번호	02-2100-3798	이메일	sh2988@korea.kr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사업추진 근거 :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11조(예산에의 계상)
- 사업목표 : 누구나 살고 싶은 정주공간, 농산어촌 활성화 거점, 도시와 농촌의 가교로서 지역균형발전 선도지역으로 육성
 - 읍을 경제·사회·문화적 거점기능을 갖춘 중추소도시로 육성
 - 특성화·전문화를 통한 읍지역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농산어촌지역 활성화거점으로 육성,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2. 사업내용

- 개요
 - 사업기간 : 2003 ~ 2012년(10년간)
 - 총사업비 : 12조원 (국비 2조, 지방비 2조, 타부처 국비·민자 등 8조)
 - 대상지역 : 전국 194개 읍지역('01. 11. 9 지정·고시)

계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4	1	2	1	4	23	24	13	22	14	30	34	19	7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지원조건 : 정액지원(지방비부담 50%)
- 지원형태 : 지자체 자본보조(1개읍당 4년간 100억원 지원)
 - ※ 1개읍에 4년간 균특 50억원(5억, 10억, 15억, 20억), 보통교부세 50억원 분할 지원

- 추진절차 : 전국 194개 소도읍중 매년 상향식공모제로 선정 추진

사업계획수립 지침시달(행안부)→사업계획 수립(시·군)→1차심사후
추천(시·도)→추천지역 심사·사업대상지 최종 확정(행안부 중앙
소도읍선정심의위원회)→협약체결(행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사업추진(시·군)→성과평가 실시(매년, 사업종료후)→feedback 🏹

3. 연차별 추진계획 - 92개읍 1조 7,688억원 투자

- '03년도 : 14개소도읍, 962억원 투자
 - 재원 : 증액교부금 150, 특별교부세 150, 지방비 453, 기타209
- '04년도 : 36개 소도읍, 2,976억원 투자('03.14개+'04.22개)
 - 재원 : 증액교부금 300, 특별교부세 300, 지방비 1,237, 기타1,139
- '05년도 : 43개 소도읍, 3,245억원 투자('03.14개+'04.22개+'05.7개)
 - 재원 : 균특회계 437, 보통교부세 437, 지방비 1,303, 기타1,068
- '06년도 : 66개 소도읍, 4,012억원 투자('03.14개+'04.22개+'05.7개+'06.23개)
 - 재원 : 균특회계 617, 보통교부세 617, 지방비 1,709, 기타1,069
- '07년도 : 58개 소도읍, 3,932억원 투자('04.22개+'05.7개+'06.23개+'07.6개)
 - 재원 : 균특회계 677, 보통교부세 907, 지방비 1,791, 기타 557
- '08년도 : 56개 소도읍, 2,561억원 투자('05.7개+'06.23개+'07.6개+'08.20개)
 - 재원 : 균특회계 464, 보통교부세 694, 지방비 1,220, 기타 183
- '09년도 : 55개 소도읍, 4,078억원 투자('06.23개+'07.6개+'08.20개+'09.6개)
 - 재원 : 균특회계 551, 보통교부세 953, 지방비 1,995, 기타 579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35개소		3,351	3,728		9,228	3,516	19,823
'05	43		437	437		1,303	1,068	3,245
'06	66		617	617		1,709	1,069	4,012
'07	58		677	907		1,791	557	3,932
'08	56		464	694		1,220	183	2,561
'09	55		551	953		1,995	579	4,078
'10	57		605	120		1,210	60	1,995

※ '09까지는 확정된 계획, '10년 이후는 향후 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23개소		2,195	2,655		6,023	2,877	13,750
'05	43		437	437		1,303	1,068	3,245
'06	66		617	617		1,709	1,069	4,012
'07	58		677	907		1,791	557	3,932
'08	56		464	694		1,220	183	2,561
'09	55		551	953		1,995	579	1,995

4. 성과목표 달성도

○ 지표정의

- 지방소도읍육성사업에 대한 목표대비 집행실적(개별사업별 공정률)
※55개 소도읍, 163개 사업

○ 사업현황/목표치 : 55개 소도읍, 1,995억원/공정률 95% 이상('09년95%)

○ 추진실적 분석

- 행정절차이행으로 착공이 늦은 6개사업을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완료되어 **9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음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A)	실적(B)	B/A(%)
소도읍육성사업	단위사업 공정률	공정률 산정	%	95	97.5	102.6

〈 근거자료 〉

(단위 : 건, %)

시도별	계	미착수	설계		착공	공사중	완공	공정률(%)
			설계중	완료				
계	163					6	156	97.5
부산	5						5	
대구	4						4	
경기	19						19	
강원	30					5	26	
충북	10						10	
충남	12					1	11	
전북	12						12	
전남	23						23	
경북	29					2	27	
경남	16						16	
제주	3						3	

※ 실적산식 : (설계중×10%)+(설계완료×20%)+(착공×30%)+(공사중×50%)+(준공×100%) / 사업건수

II. 평가결과

1. 총 평

- 소도읍육성사업이 전국 최초로 지역간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우수한 계획을 공모하는 『상향식 공모제』 방식을 채택하고, 개발 잠재력이 높은 거점 읍지역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추진하며, 자치단체장의 책임성과 중앙지원을 연계한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육성협약제도』 도입하여 많은 성과를 얻었으며, 2003년 이후에 도입된 각종 지역개발사업 및 농어촌개발사업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
- 사업을 완료한 여러 소도읍에서 매우 창의적이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들을 다양하게 추진하였으며, 이는 당해 소도읍의 지명도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다른 소도읍과 농어촌지역 개발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였으며, 소도읍육성사업이 전반적으로 소도읍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하였음
- 그러나 2008년 이후 국비 지원이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축소됨에 따라 투자규모가 크게 축소되었고, 많은 소도읍육성사업이 하드웨어 중심의 가시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함으로써 사업효과가 저감되었음

2.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농어촌지역에 있어서 인구, 경제활동, 각종 도시 서비스 비중이 높은 소도읍을 전략적으로 개발하여 경제·사회·문화적 거점기능을 갖춘 중추소도시로 육성하고, 특성화·전문화를 통한 읍지역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하려는 사업목표는 매우 적절함

- 특히,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선택적 집중방식에 의한 개발 즉, 소도읍에 잠재된 지역특성을 자원으로 하는 핵심 테마 중심의 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소도읍육성사업이 추진효과를 거양하고 있음
- 소도읍육성사업계획 수립시 주민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시·군의회 의결, 지역주민 공청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고 있음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지방소도읍육성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많은 시·군이 「소도읍육성사업 전담팀」과 민간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제도적 기반으로 '소도읍육성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음
- 소도읍육성사업과 함께 다른 부처의 연관사업을 연계, 복합하여 추진함으로써 다양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역 개발방식의 도입·적용을 선도하고 있음
 - 기재부의 특화발전특구 지정(진안, 장흥, 영동)
 - 중소기업청의 재래시장구조개선 특별지원금(홍성, 장흥, 봉화)
 - 농식품부의 산지유통시범사업(장흥)과 농어촌도서관사업(함평)
 - 국해부의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홍성)
 - 환경부의 '아름다운 생태하천 및 전원경관조성사업', 국해부의 생태하천 시범지구 선정(함평)
 -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요양시설 조성 및 노인복지타운 추진(진안)
- 매년 사업추진 실태 전반에 관한 평가를 통하여 문제점, 수범사례, 제도 개선사항 등을 발굴하여 사업추진 방법 등을 보완·개선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 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완료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해 4개 평가팀 12명(심사위원8, 행안부 4)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09. 10. 30 ~ 11. 6 기간 중에 팀별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소도읍별·분야별로 분석·평가하였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소도읍육성사업 결과, 소도읍별로 사업기간 단축에 따른 집중투자 및 지원액 증액으로 가시적 사업효과 발생, 민자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고용인구 증대 및 매출증가), 중앙부처 관련사업 연계추진에 의한 일자리 창출 등 시너지효과 거양 등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나, 전체적인 성과 측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소도읍육성사업의 성과가 다양하고 질적인 성과도 많은 관계로 측정이 곤란하여, 현재까지는 공정률을 성과지표로 사용하고 있음. '09년도 공정률 목표 95%보다 높은 9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음

3. 개선방안 등

- '09년말 현재 52개 소도읍이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사실상 4개년 동안 소도읍 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부분에 선택적으로 집중 투자한 것이며, 이것만으로는 소도읍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하기 어려운 곳이 다수 이므로, 소프트웨어 중심의 2단계 사업 추진방안 모색이 요구됨
- '09년말 현재 소도읍육성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는 29개 소도읍은 보다 적극적으로 지방비를 확보하고, 용지보상, 행정절차 이행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완료 소도읍의 우수사례를 충분히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포괄보조금제 도입으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소도읍육성사업을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투자비 규모가 큰 소도읍육성사업을 기피할 가능성이 크므로, 시·군의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소도읍육성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3-2-2-2(시범)	거점면소재지마을종합개발(농림수산식품부)
-------------	-----------------------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이승한(주무관)
전화번호	02-500-1807	이메일	rooki719@korea.kr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면소재지의 생활편의·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함으로써 농어촌주민들의 정주서비스기능의 충족과 농어촌지역의 중심공간으로 육성 도모
- 사업추진 기본방향
 -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지역특색을 살린 발전 추구
 - 지역특성을 살린 핵심 테마 발굴로 명소화 추진
 - 면소재지 발전계획(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지원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효과 조기 구현
 - 타 부문에서 지원되는 관련 연관사업을 발굴하여 연계추진
 - 지자체의 능동적 조정을 통해 분산 추진되는 각 부처 사업·시책을 종합적·유기적 연계체계 구축
 - 중앙정부, 지자체, 주민, 전문가 등의 협력적 파트너십 중시
 - 지역이 주체가 되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개발
 - 공모를 통하여 성공모델을 창출·확산할 수 있는 지역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7~2017
- 총사업비 : 14,240억원(국고 10,042, 지방비 4,198)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거점면소재지 중심마을을 대상으로 200개 권역 우선 추진(투자계획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포함)
 - 권역당 3년간 70억원 범위내 지원(국고70%, 지방비30%)
- 추진현황 : '09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총 8개 권역 선정, 기본계획 완료 및 착수
- 사업근거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에관한특별법 제38조에 의해서 계획, 농어촌정비법 제52조내지 제 71조를 준용하여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추진절차 : 예비계획서작성→사업신청신청(시·군, 시·도)→타당성 조사(농식품부)→사업대상지 선정(농식품부)→기본계획안 작성(시·군, 농어촌공사)→기본계획수립(시·군, 시·도)→시행계획수립(시·군, 시·도)→사업시행(시·군)→ 준공(시·도)
- 사업내용
 - 생활편익, 문화·복지, 경관개선, 상권활성화 등 거점지역으로 면소재지의 서비스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시설위주로 지원
 - 생활편익시설 : 가로정비, 공동주차시설, 승강장시설, 공공화장실정비 등
 - 문화·복지시설 : 다목적 복지회관, 건강관리시설, 보육시설, 운동·휴양시설 등

- 경관개선시설 : 마을숲 및 녹지정비, 가로경관정비, 경관저해시설정비, 불량간판정비, 경관조형물 등
 - 지역상권시설 : 재래시장정비, 특산품홍보, 지역축제활성화 등
 - 기획운영S/W : 주민문화활동, 지역홍보, 시설물운영프로그램개발, 추진위원회 및 마을개발협의회 활성화지원 등
- 신규시설의 설치보다는 기존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리모델링 등 주민 편의증진에 역점

3. 연차별 추진계획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계획의 일환으로 거점면소재지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07년~'17년까지 200개소 착수 계획
- 우선 사업의 모델을 정립하기 위하여 '07년~'11년까지 시범사업(8개권역)을 실시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사업량을 확대

〈연도별 시행계획〉

	권역수(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8	10	304			128	-	442
'05	-	-	-	-	-	-	-	
'06	-	-	-	-	-	-	-	
'07	-(4)	5	-	-	-	-	-	5
'08	4(4)	5	12		-	3	-	20
'09	8	-	108	-	-	46	-	154
'10	8(16)	-	197	-	-	85	-	282

※ 권역수는 누계치이며, ()는 기본계획수립 권역수임

※ 동 투자계획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기 반영된 사항임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권역수(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8(8)	10	120	-	-	49	-	179
'05	-	-	-	-	-	-	-	-
'06	-	-	-	-	-	-	-	-
'07	-(4)	5	-	-	-	-	-	5
'08	4(4)	5	12	-	-	3	-	20
'09	8	-	108	-	-	46	-	154

※ '07년, '08년도 사업량은 누계치이며, ()는 기본계획수립 권역수임

※ 동 투자계획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기 반영된 사항임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09년도 추진목표는 '08년 착수 4개권역 2년차 사업시행과 '09년 4개권역 1년차 사업을 시행하여 목표달성 하였음

* 시범사업대상지선정 : 여주군 당우, 강릉시 옥계, 괴산군 청천, 서천군 한산, 임실군 사선, 곡성군 옥과, 영천시 신녕, 하동군 진교권역 등 8개 권역

* '07기본계획수립 : 여주군 당우, 괴산군 청천, 곡성군 옥과, 하동군 진교 등 4개 권역

* '08기본계획수립 : 강릉시 옥계, 서천군 한산, 임실군 사선, 영천시 신녕 등 4개 권역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거점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	사업착수(누계)	사업착수실적	권역	4(8)	4(8)	100

II. 평가결과

1. 총 평

- 이 사업은 일정 수준 이상의 면소재지를 대상으로 생활편의·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여 농어촌생활권의 서비스 중심지이자 농촌개발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해당 면소재지와 배후 농촌지역의 정주수요를 동시에 충족하는 파급효과가 큰 도농통합적 개발사업이므로 지속적·적극적 사업추진이 필요함
- 사업의 본격 추진에 앞서 우선 '07~'11년까지 시범사업(8개 권역)을 추진하고, 시범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보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본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됨
- 지자체의 충분한 역량이 요구되는 사업인 만큼, 공모를 통하여 대상지를 선정하고, 지역주민·지자체·전문가가 파트너가 되어 추진하는 주민참여형 상향식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개발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 매우 바람직한 사업추진방식으로 평가됨
- '09년까지는 거점면소재지마을종합개발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거점면소재지마을종합개발에 적합한 시행지침이 없는 상태임. 따라서, 자체평가서에서 밝힌대로 '08년 착수(4개 권역) 시범사업이 완료되는 '10년 하반기에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선진사례(영국의 market town regeneration, 일본의 정·촌 수준의 중심시가지 활성화사업, 미국의 main street program 등)를 벤치마킹하여 거점면소재지마을종합개발 시행지침을 작성하여 시·군에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거점면소재지마을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배후농어촌지역의 기초생활중심지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면소재지를 종합적으로 개발할 경우 해당 면소재지뿐만 아니라 배후 농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활성화를 폭넓게 도모할 수 있으므로 지원 필요성이 매우 크며, 농어촌지역의 과소화가 진행될수록 도시·소도읍과 농어촌마을을 연계할 수 있는 중간 거점공간으로서의 면소재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거점면소재지마을종합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큼
- 면지역 중에서 인근지역의 거점이 될 수 있는 거점면소재지의 생활편익 서비스기능 제고, 문화·복지 시설 및 프로그램 정비, 경관개선, 상권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지역주민의 편익을 향상시킴으로써 “다원적 기능을 갖춘 자립형 정주공간 창출”하려는 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 부문의 목표에 부합됨
- 본 사업은 상향식 지역개발사업으로서 기획단계부터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되, 지역개발 전문가와 지자체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자문회의 등을 거쳐 예비계획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절차적 합리성을 충족함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사업준비단계(예비계획서 작성, 사업신청,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와 사업시행단계(시행계획수립, 사업시행, 준공)로 나누어 추진함으로써 사업추진을 위한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 사업을 착수하고 있으므로 추진체계가 적정함
- 거점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은 주민참여형 상향식 개발사업으로서

지역주민, 시·군, 시·도, 전문기관, 농식품부가 파트너로서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어 관련기관간 연계 및 협조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연관 사업을 발굴하여 거점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계획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고 있음

- 기본계획수립과정에 사업관련자 및 전문가 워크숍 실시 및 현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실시하고 주민공청회를 거쳐 기본계획안을 확정하였음
- '07년도에 시범사업 대상권역으로 선정된 8개 권역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따라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등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09년도 시행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을 추진하는 동안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초기단계부터 전 과정을 관찰·분석함으로써 개선과제를 도출·보완하여 새로운 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였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07년부터 추진하는 시범사업이 끝나는 '11년도에는 거점면 소재지로서 복지, 문화, 생활환경, 지역상권 등이 개선되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시범사업에 대한 기본계획만을 수립한 단계에서 사업시행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바는 없으나, 동 사업은 주민 제안서를 근거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함으로써 수혜자인 지역주민, 행정기관의 만족도는 높을 것으로 판단됨
 - 성과지표를 전국의 1,205개 면지역 중에서 중심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상설시장 및 5일장, 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이 있어 주민간에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하고, 과소지역과 도시화지역을 제외한 200개 면소재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목표를 설정한 것은 적절함
- 다만, 인구기준에 있어서 그 하한치를 현재의 3,000명에서 선진국과 같이

2,000~2,500명으로 하향 조정하되, 실질적인 중심기능이 강하거나 지역적 특성이 강한 면소재지가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07~'08년도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대상지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09년도에 '07년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한 4개 권역에 대한 2년차 사업, '08년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한 4개 권역에 대한 1년차 사업을 완료하여 계획대로 사업 착수를 한 것은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3. 개선방안 등

- '08년 착수한 4개 권역의 시범사업이 완료되는 '10년 하반기에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추진 방식을 개선하고, 시·군이 효과적으로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지침 또는 매뉴얼을 작성·보급하여야 할 것임
- '10년부터 종전의 균특회계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되고 지자체에 포괄적으로 재정지원(포괄보조금 제도 도입)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거점면 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군 시군구자율 편성사업에 편입되었음. 그러나 거점면소재지마을종합개발사업은 그 내부에 다양한 세부사업을 포함하고 있고 다른 농어촌개발사업에 비해 많은 사업비를 집중 투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이 사업의 채택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홍보, 행정지원, 기술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김학조(사무관)
전화번호	02-500-1811	이메일	h0225@mifaff.go.kr

I. 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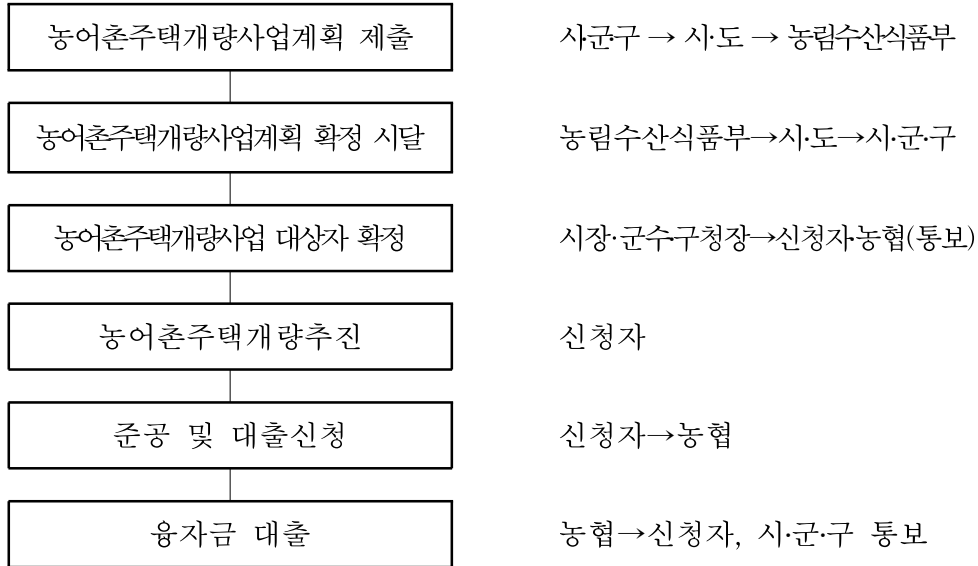
1. 사업목표

-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개량사업을 지원하여 농어촌의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키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정주의욕 고취
- 사업추진 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제55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제67조(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 제108조(자금지원)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76년~2014년
- 사업주체 : 시·군·구
- 추진내용
 -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노후·불량주택 정비를 촉진
 - 지원조건 : 3.0%
 - 상환조건 : 5년 거치 15년 상환
 - 대출한도
 - 신(개)축 : 세대당 4,000만원 이내
 - 부분개량·증축 : 세대당 2,000만원 이내
- 추진체계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시·도
-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구청장
- 자금관리 및 대출 : 농협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동)	국비(억원)				지방비	농협자금 (이차보전)	합계
		농특세	군특세	채특	국민주택 기금			
합계	28,100	900	-	1,080	4,320	2,700	1,640	10,640
'05	6,000	180	-	360	720	540		1,800
'06	4,500	180	-	360	720	540		1,800
'07	5,600	180	-	360	720	540	440	2,240
'08	6,000	180	-	-	1,080	540	600	2,400
'09	6,000	180	-	-	1,080	540	600	2,400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동)	국비(억원)				지방비	농협자금 (이차보전)	합계
		농특세	균특세	채특	국민주택 기금			
합계	29,179	900	-	1,080	4,320	2,700	2,040	11,040
'05	6,000	180	-	360	720	540		1,800
'06	4,519	180	-	360	720	540		1,800
'07	5,660	180	-	360	720	540	440	2,240
'08	6,000	180	-	-	1,080	540	600	2,400
'09	7,000	180	-	-	1,080	540	1,000	2,800

- 경기활성화와 주택개량 수요 충족을 위한 「'09년 농어촌주택개량 지원물량 확대방안」에 따라 당초 계획(6,000동, 2,400억원)보다 1,000동 증가한 7,000동 2,800억원 지원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성과지표 : 불량주택 정비(목표 78%, 실적 78.4%)
 - 농어촌주택개량 물량 조기배정 및 사업추진 독려 등을 통하여 목표대비 실적이 100.5%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촌주택개량	불량주택 정비(%)	(읍지지원 대상주택 개량실적 누계치/전체 주택개량 목표치)×100	%	78	78.4	100.5

II. 평가결과

1. 총 평

- 노후화된 농산어촌 주택을 개량하고 주거문화를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농촌주민의 정주의욕을 고취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정책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이 과거 1970년대 새마을운동에서부터 시작하여 노후한 불량주택을 개량한다는 사업내용이 농산어촌 주민에게 확고하게 각인되어, 그간 정책적 관성과 추진동력을 형성해 온 점은 사업성과의 우열을 떠나 정책적 아이덴티티로서 인정되어야 할 것임.
- 단순히 농촌의 단위주택을 물리적으로 개선한다는 차원을 넘어 주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하고 또한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사업과 연계되도록 추진한 점은 높게 평가됨.
- 그러나 과거 행안부의 사업을 농식품부로 이관('08년도)하면서 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에 의거하여 새로운 정책전환을 시도했음에도 기존 정책관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고, '09년 평가에서도 지적인 바와 같이 농촌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정책적 기획역량과 추진의지가 잘 드러나지 않은 점이 한계로 평가됨
- 농촌주택 개량이 최근의 정책동향인 저탄소 녹색마을 만들기 차원에서 저탄소 농촌주택 개념에 입각한 사업으로 전환하기에는 비록 새로운 비용요인이 발생할지라도 이를 위한 정책적 시도는 시범적으로라도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또한 최근 농어촌 주택개량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예산으로 이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급증하는 주택 신개축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사업방식의 도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경관주택, 어메니티 향상, 녹색관광, 친환경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정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35년 이상된 주택비율('05)이 농어촌지역 15.4%, 도시지역 2.8%이며,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비율('05)도 군지역이 71.1%, 일반시지역이 27.9%인 점을 감안하면, 열악한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농어민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도시민의 농촌이주 환경을 조성하려는 사업목표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이를 통해 삶의 질 향상 계획의 목표인 농산어촌 인구 20% 유지에 기여하려는 점은 적합한 정책방향으로 평가됨
- 또한 최근 주택개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하여 5,600동('07) → 6,000동('08) → 7,000동('09)으로 지원물량을 계속 확대한 것도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됨
- 다만, 농산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소관이 농림수산식품부로 일원화된 현 단계에서 농촌주택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정책발전과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지 못한 것은 미흡한 점으로 평가됨
 - '09년 평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행 농촌주택 재고량 대비 자연 발생 멸실 및 신개축량, 주택신축과 주민유형, 정책수요 및 민간건축 수요, 수요해소방안, 민간건설업의 참여, 정부지원의 다변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함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당초 성과지표로 내세운 불량주택 정비 목표 78%는 0.4% 포인트 초과하여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사업추진체계, 중간평가, 자원조달 및 배분, 홍보, 일정관리 등은 본 사업이 1976년부터 추진되어온 농촌개발의 대표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체로 큰 문제없이 잘 추진되는 것으로 평가됨

- '09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운영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과 농촌주택정비자금을 분리 운영 중) 농어촌주택개량사업 통합운용 방안을 수립하여 '10년부터는 단일사업으로 예산을 편성·운용한 점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농촌주민의 주거복지 향상 차원에서 열악한 주택을 산발적으로 개량하는 데만 머물러, 주택정비가 농촌관광 등 도농교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사업과 연계되도록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한 점은 미흡한 한 것으로 평가됨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과 농촌주택정비자금별로 상이한 대출금리를 '09년부터 단일화하여 추진(3%)한 점은 정책관리의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됨.
- 농어촌 주민의 주거수준 향상,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증가 등으로 인해 주택개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원물량 및 금액인상 계획은 현실 적합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최근 농어촌 주택개선 정책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다양한 농촌주택의 유형 개발과 새로운 농촌주택 개선안 마련이 요구되는 바임(귀농인구, 현지주민, 관광농가 등의 주택 신개축 수요를 차별화하여 충족시킬 수 있는 주택정책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3. 개선방안 등

-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농촌주택의 부분개량 혹은 신축 시 농촌관광, 마을정비, 저탄소 녹색마을 등의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간 시너지효과가 창출되도록 해야 할 것임
- 농어촌공사 등이 개발한 농촌주택설계모델을 현장 주택 신축 시 효과

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주택개량 수요가 급증하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물량을 확대하고 이를 지원할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동시에 주민자율의 역량과 자금투입(자부담)을 유인하는 방법, 체계적인 농촌주택시장의 조직화와 규모화를 통한 건축비용 절감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것임
- '09년 평가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 예산을 통해 막대한 물량의 농촌주택을 개량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새로운 사업방식, 재원 조달, 추진체계를 통해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농촌주택 신축수요의 일관 집중화를 통한 대량주택 공급 및 단위가격 인하 가능성 모색, 일본 농협의 주택사업 참조 요망)

3-3-2-1(계속)	면단위 생활용수개발 (환경부)
--------------------	-------------------------

담당부서	수도정책과	담당자	행정사무관 이창규
전화번호	02-2110-6878	이메일	partisan72@me.go.kr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사업추진 근거 : 수도법 제56조, “농어촌특별세사업 통합지침”
- 사업목표 :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 '05년 37.2%에서 2014년 75.0%로 향상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4 ~ '14
- 사업비 : 25,834억원 (국고 22,008억원)
- 사업규모 : 면단위 농어촌지방상수도 553개소
- 시행방법 : 국고 80% 지원 ('10년부터 국고 70%로 조정)
- 추진내용 : 197개 시·군 면단위에 지방상수도 공급

3. 연차별 추진계획

- '05~'09년 기간 동안 총사업비 1조122억원 투입(당초 계획(9,682억원)대비 104.5% 투자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신규 : 180개 지역 계속 : 415개 지역		7,745			1,937		9,682
'05	신규 30개 지역 계속 55개 지역	-	969	-	-	242	-	1,211
'06	신규 29개 지역 계속 84개 지역	-	1,335	-	-	335	-	1,670
'07	신규 22개 지역 계속 89개 지역	-	1,380	-	-	345	-	1,725
'08	신규 50개 지역 계속 85개 지역	-	2,038	-	-	509	-	2,547
'09	신규 49개 지역 계속 102개 지역	-	2,023	-	-	506	-	2,529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신규 193개 지역 계속 415개 지역		8,096			2,026		10,122
'05	신규 30개 지역 계속 55개 지역	-	969	-	-	242	-	1,211
'06	신규 29개 지역 계속 84개 지역	-	1,335	-	-	335	-	1,670
'07	신규 22개 지역 계속 89개 지역	-	1,380	-	-	345	-	1,725
'08	신규 63개 지역 계속 85개 지역		2,389			598		2,987
'09	신규 49개 지역 계속 102개 지역	-	2,023	-	-	506	-	2,529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09년 면단위 상수도보급률 목표는 59.7%, 실적은 59.8%로 100.2% 달성
 - 농어촌 지역(면단위)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으로 상수도 보급률 제고 등 농어촌지역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에 기여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면단위 생활용수개발사업	면단위 급수보급률(%)	면단위 급수인구/총인구	%	59.7	59.8	100.2

II. 평가결과

1. 총평

- 본 사업은 농어민의 생활여건 개선 및 복리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94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음. 본 사업 시행으로 '94년 16.1%에 불과한 농어촌 면단위 상수도 보급률을 '09년 59.8%로 획기적으로 제고하였으며, '14년까지 보급률을 75%로 향상시킴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09년 현재 60% 수준의 보급률을 '14년에 75%로 향상하기 위해서는 현 수준의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것임. 또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함께 중앙정부에 사업조정 기능을 부여하는 등 지자체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마련이 필요함
- 사업관련 홍보와 사업만족도 조사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으며,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평가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 (계획)

- 사업목표는 면단위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을 '14년 75%로 제고하여 도시와 농어촌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업목표가 명확하고 년차별 사업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어 적절함
- 개별 사업에 대한 계획을 지자체인 수도사업자가 주민여론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수립하고, 지역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행함으로써 사업계획 수립의 구체성 및 절차의 합리성이 있음

□ 사업추진의 효율성 (집행)

- 광특사업으로서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중앙관서의 역할이 제한되어 있어 전국을 통괄하는 적절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매월 지자체의 집행실적을 분석·파악하고, 반기별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사업관련 홍보와 사업 만족도 조사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으며,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평가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
- '09년도 국고 230,761백만원 전액을 교부하였으며, 전년도 이월액 34,718백만원을 포함한 총예산현액 265,641백만원중 252,516백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5.1%로 예년에 비해 집행률이 크게 개선되었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 (성과)

- 상수도보급으로 인해 위생적 생활환경과 생활의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게 되어 농어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 성과지표는 거주인구 대비 상수도급수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상수도 보급률을 지표로 선정하고 있으며, 성과목표치도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어 적절함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는 '09년 면단위 상수도보급률 59.8%로 목표치(59.7%)를 달성하였음

3. 개선방안 등

- 2009년 현재 60% 수준의 보급률을 2014년에 75%로 향상하기 위해서는 현 수준의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것임. 또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함께 중앙정부에 사업조정 기능을 부여하는 등 지자체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사업관련 홍보와 사업만족도 조사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으며,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평가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이승한(주무관)
전화번호	02-500-1807	이메일	rooki719@korea.kr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인구가 적고 분산되어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낙후지역에 수원공(암반관정)을 개발하고 이용시설(물탱크, 송·배수관로 등)을 설치하여 생활·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

→ 낙후지역 주민의 삶의질 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7호 라목 및 아목에 근거하여 '94부터 시행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4~'12(19년간)
- 사업비 : 총 12,258억원(국고 7,672, 지방비 4,586)
- 사업규모 : 전국 7,060개소('09까지 6,061개소 추진)
- 시행방법
 - 지원대상 : 면지역 자연마을중 자연수에 식수를 의존하거나, 간이(마을)상수도 시설지역으로 수질이 오염되어 식수원으로 부적정하거나 식수가 부족한 마을
 - 지원조건 : 1개소당 170백만원(균특, 국고 80, 지방비 20)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대상지 선정절차 : 희망마을 → 면 → 시·군 → 시·도(확정)
 - 주요사업내용 : 수원공(암반관정)개발 및 이용시설(정수시설, 물탱크, 송·배수관로, 계량기, 소화전 등)설치

3. 연차별 추진계획

- 사업추진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추진
 - 제1차('93~'04) : 수혜가구 50호 이상의 자연마을 4,751개소 완료
 - 제2차('05~'12) : 수혜가구 20호 이상의 자연마을 2,309개소 추진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640	-	2,350	-	-	590	-	2,940
'05	346	-	471	-	-	118	-	589
'06	267	-	353	-	-	88	-	441
'07	252	-	342	-	-	86	-	428
'08	226	-	309	-	-	79	-	388
'09	219	-	294	-	-	74	-	368
'10	330	-	581	-	-	145	-	726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10	-	1,769	-	-	445	-	2,214
'05	346	-	471	-	-	118	-	589
'06	267	-	353	-	-	88	-	441
'07	252	-	342	-	-	86	-	428
'08	226	-	309	-	-	79	-	388
'09	219	-	294	-	-	74	-	368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목표 : 용수공급율 85.8%('09목표 : 219개소)
 - 실적 : 용수공급율 85.8%('09실적 : 219개소, 100% 달성)
 - * 사업추진 마을수 : 6,061개소
 - * 사업대상 마을수 : 7,060개소
 - * 용수공급율 = 사업추진 마을수/사업대상 마을수
 = 6,061(개소)/7,060(개소)×100(%) = 85.8%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촌농업·생활 용수개발	용수공급율	사업추진 마을수/ 사업대상마을수	%	85.8	85.8	100

II. 평가결과

1. 총평

- 본 사업은 수도공급이 어려운 면지역 농촌마을에 수원공(암반관정)을 개발하고, 이용시설(물탱크, 송배수관로 등)을 설치하여, 생활·농업 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임
- 환경부와 합동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통합운영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광역·지방상수도 등 관련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용수공급계획이 중복되는 지역을 사전에 제외하는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점은 잘한 점임

2.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 (계획)

- 본 사업은 면단위 생활용수개발사업과 사업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었으나, 면단위 미급수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광역·지방상수도 계획이 있는 지역은 제외하는 등 사업계획의 적절성을 제고하였음
- '94년부터 1, 2차에 걸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보완하여 계획적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있음
- 농촌용수개발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지역을 선정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음

□ 사업추진의 효율성 (집행)

-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광역·지방상수도와 중복지역을 제외하고 있으며, 관련부처와

연계 및 협조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등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음

- '08년 소규모 수도시설 통합운영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신규 시설 설치는 농식품부가, 시설개량 및 관리는 환경부가 담당하도록 하는 등 설치와 관리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있음
- '09년도 총 사업비 36,739백만원(국고 29,391백만원) 예산으로 219개소(22천명)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전액 집행 및 사업시행을 완료하였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 (성과)

- 상수원의 수질이 오염되었거나 수량이 부족한 농촌지역 마을에 청정한 용수를 공급함으로써 농촌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축산, 농업, 농산물가공용수 등을 추가 공급하여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 농촌 용수개발 10개년 계획에 따라 대책마을을 조사하여 선정(7,060개소)하고, 이들에 대한 용수공급률을 성과지표로 하여 추진하고 있어 성과지표와 목표치가 적절함
- '09년도 대책마을에 대한 용수공급률을 85.8%로 설정하였으며, 사업 추진결과 목표치를 달성하였음

3. 개선방안 등

- 환경부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자체에 독려하고,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한 지자체에 사업비 우선배정 등을 검토
- 기후변화로 가뭄피해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므로 관정개발시 안정적 유량확보가 가능토록 조사 철저

담당부서	생활하수과	담당자	이광수(주무관)
전화번호	02-2110-6894	이메일	ld613@korea.kr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어촌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하수도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어촌 생활환경개선과 수질오염방지를 통해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
- 사업추진 근거
 - 「하수도법」 제 11조 및 제63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5년 ~ 계속
- 사업비 : '09년까지 9,503억원(국고기준)
- 사업규모 : '09년까지 895개 처리장 건설지원
- 시행방법 : 지자체 국고보조사업(국고 70%, 지방비 30%)
 - '95년부터 농특세의 일부를 지방양여금으로 전입시켜 사업 추진
 - 지방양여금 폐지에 따라 '05년부터 농특세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 '07년부터 구 행자부에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였던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우리부에서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추진(환경개선특별회계)
- 추진내용 :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설치

3. 연차별 추진계획

- 농어촌하수도정비종합계획에 의한 사업추진
 - '15년까지 3,707개소 신설 등 4,710억원 투자 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029	76	3,409		3,223		10,737
'05	신규 4 계속 43	645		-		276		921
'06	신규 11 계속 41	667		-		286		953
'07	신규 329 계속 40	795	25	1,129		841		2,790
'08	신규 203 계속 214	897	25	903		779		2,604
'09	신규 142 계속 218	1,025	26	1,377		1,041		3,469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029	76	3,409		3,223		10,737
'05	신규 4 계속 43	645		-		276		921
'06	신규 11 계속 41	667		-		286		953
'07	신규 329 계속 40	795	25	1,129		841		2,790
'08	신규 203 계속 214	897	25	903		779		2,604
'09	신규 142 계속 218	1,025	26	1,377		1,041		3,469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농어촌지역 하수도보급률 : 목표 50.1%, 달성51%
 - 농어촌지역 오염물질삭감량(BOD, 톤/일) : 목표 78.0, 달성 92.0

사업명	성과지표	추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면단위하수 처리장설치	농어촌지역하수도 보급률	(하수처리구역내 인구/전체인구) × 100	%	50.1	51	101.8
	농어촌지역 오염 물질삭감량	1일 하수처리장 유입하수량 × 유입하수의 수질(BOD농도) - 1일 하수처리장 배출수량 × 배출수질(BOD농도)	톤/일	78.0	92.0	118

II. 평가결과

1. 총 평

- 농어촌 지역의 하수도보급률('08년말 49.2%)은 전국평균(88.6%)에 비하여 매우 낮은 실정으로 생활환경개선과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하수도시설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임
- 2009년 예산 242,808백만원을 확보하여 농어촌지역 하수도보급률을 전년대비 5%가 증가한 51%(목표치 50.1%)를 달성함
- 2012년 하수도보급률 목표치 64%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며, 사업추진과정에서 중간 모니터링과 사업만족도 조사등을 통하여 추진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 (계획)

-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하수도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목표가 적합함
- 성과지표를 종전까지 사용하던 농어촌 지역의 하수도보급률과 함께 농어촌지역 오염물질 삭감량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정량화된 성과 지표를 개발·적용코자 노력하고 있음.

□ 사업추진의 효율성 (집행)

- 하수도법 추진절차에 따라 계획단계에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계과정에서는 설계자문 및 설치 인가 시 기술적 검토를 하고 있음.
-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방환경청에서 매월/분기별 예산집행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한 지역의 예산을 감액하고 집행이 원활한 지역에 대하여는 증액하는 등 사업집행을 독려 하고 있음

- '08년도 신규 203개소, 계속사업 214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였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 (성과)

- 하수도보급으로 인해 생활환경 개선과 쾌적한 정주기반 조성을 도모 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3. 개선방안 등

- 2012년 하수도보급률 목표치 64%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며, 사업추진과정에서 중간 모니터링과 사업만족도 조사 등을 통하여 추진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담당부서	재해경감과	담당자	정희돈
전화번호	2100-5462	이메일	grj1004@korea.kr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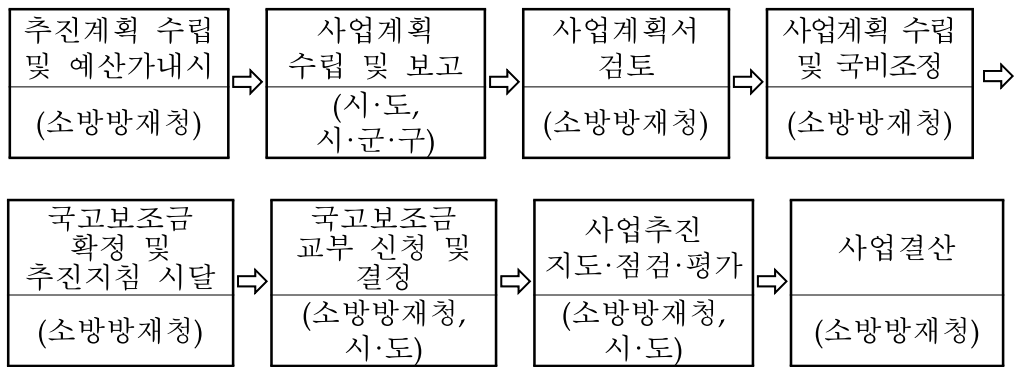
- 수해위험 소하천의 지속적인 정비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소득기반 조성과 생활환경개선
- 치수·이수(治水·利水)와 자연환경이 조화된 다목적 소하천정비로 친수 환경조성

○ 사업추진 근거

- 소하천정비법 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 시장·군수·구청장이 소하천에 대한 정비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
- 소하천정비법 제7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 시장·군수·구청장이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소하천정비 중기계획 수립
- 소하천정비법 제8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 시장·군수·구청장이 중기계획에 의거 매년 다음 연도의 소하천정비 시행계획 수립
- 소하천정비법 제13조(비용보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소하천의 정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관리청에 보조할 수 있음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 11조(재정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 계획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함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5조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기본계획의 수립)

○ 사업추진 체계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5년 ~
- 총 사업비 : 11조 7,001억원('09년까지 기 투자액 : 25,387억원)
- 사업규모 : 35,815km('09년까지 정비연장 : 14,355km)
-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Matching Fund)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이 완료된 소하천 대상
 - 소하천의 미정비 연장 비율에 따라 군지역과 도농복합시 읍·면 지역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 주요 추진내용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경제성(B/C) 및 재해위험도 분석 등에 의한 투자 우선 순위를 정하여,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이 완료된 소하천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추진
- 호안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낮은 산과 접한 구간은 호안 미시공
- 소하천정비 구간내 수해원인이 되는 단경간 교량, 암거 등 시설물 정비
- 국가 정책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증·감액 조치 등의 인센티브제도 추진
- 원활한 사업추진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소하천 담당공무원 교육 실시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432	5,396	10	0	0	5,406	0	10,812
'06	198	497				497		994
'07	237	593				593		1,186
'08	269	669	3			672		1,344
'09	314	1,565	7			1,572		3,144
'10	414	2,072				2,072		4,144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400	3,665	6	0	0	8,507	0	12,178
'06	311	497				1,580		2,077
'07	382	590	3			1,958		2,551
'08	290	669	3			1,797		2,469
'09	417	1909				3,172		5,081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정부의 재해예방사업의 증액 및 집중투자로 추경예산확보를 통하여, 총 5,081억원(국비1,909, 지방비3,172)을 투자, 당초 계획 총 3,144억원(국비1,572, 지방비1,572) 대비 62% 증가한 1,937억원을 증액 투자하였음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소하천정비사업	소하천정비율	2009년	km	314	417	133

II. 평가결과

1. 총 평

- 소하천은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에 비하여 정비율이 낮고, 소하천에서 수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업의 필요성이 큼
- '09 소하천정비사업은 전년도 하반기부터 설계, 보상 등을 미리 준비, 예산확보와 동시에 조기 발주 추진으로 재해 조기예방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음
- 2006년부터 국립방재교육연구원이 재난안전 분야의 하천방재,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과정을 신설하고, 일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를 실시함으로써 다양한 호안공법 적용 등 자연친화적인 소하천정비사업이 정착되어 가고 있음
- 국가정책을 사후복구 위주에서 예방위주로 전환하기 위하여, 예방사업의 투자를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매년 재해예방사업의 투자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등 재해예방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재해를 예방·경감시키는데 크게 기여함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 (계획)

- 최근 발생한 하천 피해액 중 소하천에서의 피해 비중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에 비하여 정비율이 낮아 수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하천정비사업의 필요성이 큼
- 소하천정비사업 투자 재원의 확대를 위해, 농특세 국고 보조금의 지방비 부담액과 자체 사업분의 지방비 예산을 '09년도 본 예산에 반영하도록 가내시('08.10.15)하고,

- 정부의 재해예방사업의 증액 및 집중투자로 추경예산확보를 통하여, 총 5,081억원(국비1,909, 지방비3,172)을 투자, 당초 계획 총 3,144억원(국비1,572, 지방비1,572) 대비 61% 증가한 1,937억원을 증액 투자하였음
- 소하천정비사업 시행지침('08.12.24)과 『아름다운 소하천가꾸기』 추진계획을 통보('09. 9.28)하여 소하천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소하천을 자율적으로 아름답게 가꾸도록 유도함
- 실시설계 단계부터 전문가 참여, 지역주민 설명회 개최, 환경단체와 사전간담회 개최 등 적극적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현지 실정을 반영하는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진절차도 합리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사업추진의 효율성 (집행)

- 사업추진과정에서 소하천 담당자 교육 및 업무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추진현황 및 사업 지도를 통하여 사업추진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음
- 분기별 추진실적을 분석하여 사업 추진계획의 재조정과 사업독려 조치하는 등 사업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음
- 사업시행후 지역주민을 상대로 설문을 실시하여 익년 사업기초 자료로 활용토록 조치하고,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 (성과)

- 소하천정비로 인해 재해 사전예방과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으로 농어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 '09년도에 5,081억원(국비 1,909, 지방비 3,172)을 투자하여 목표치 (314km)를 133% 초과한 417km의 소하천을 정비하였음

3. 개선방안 등

- 국가·지방하천에 비하여 소하천의 정비율이 낮아 매년 막대한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재해예방 및 국가예산 절감 차원에서 소하천 정비사업 등 재해예방사업에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자연재해 피해를 사전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국고보조금 증액지원 등 투자사업비 확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에 비추어 현행 국고보조율 50%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담당부서	폐자원에너지팀	담당자	남궁선(주무관)
전화번호	02-2110-7722	이메일	sunny@me.go.kr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어촌 지역에 매립, 재활용 등 폐기물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보호 및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기반 확보
 -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군지역에 1개소 이상 설치
- 지원근거 :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제3조) 및 폐기물관리법(제56조)
 - ※ '94. 2 농림부 '농업정책심의회 농어촌생활여건개선분과위'에서 농어촌의 공업화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구 등으로 '95년부터 사업추진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5~'14
- 사업비 : 총사업비 2,716억원('09년까지 투자액 2,712억원)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
- 지원조건 : 정액(15억원/개소)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장

3. 연차별 추진계획

- 매년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매립여유 용량 등을 감안하여 사업추진 지역을 선정·결정하고 국고지원하여 추진
 - '09년 104억원 투자하여 17개소에 지원(신규사업8, 계속사업 9개소)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69개소	534	22					556
'05	11개소	105						105
'06	14개소	109						109
'07	14개소	102	7					109
'08	15개소	109	15					124
'09	15개소	109						109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59	424	7					431
'05								
'06	14개소	109						105
'07	14개소	102	7					109
'08	14개소	109						109
'09	17개소	104						104

- '07년부터 제주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750백만원)는 농어촌 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제주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목표대비 2,550%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의 폐기물처리량증가율	폐기물처리량 증가율	%	0.2	5.1	2,550

※ '09년부터 시설개소수에서 폐기물처리량 증가율로 성과지표 변경

II. 평가결과

1. 총 평

- 본 사업은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군단위의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를 보조하여 처리시설의 원활한 추진으로 쾌적하고 위생적 환경을 확보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임
-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입지선정, 토지매입 등 주민반대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으나, 사업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삭감, 사업취소, 국고환수 등의 조치를 통하여 독려함으로써 2009년 예산(104억원) 전액을 집행하였음
- '08년까지 시설 개소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였으나 성과지표의 부적절성을 이유로 '09년부터 폐기물처리량 증가율로 성과지표를 변경하였음. 그러나 목표치(0.2%)에 비하여 실적이 5.1%로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성과목표치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인 목표치도 제시되어야 할 것임. 또한 변경한 성과지표인 폐기물 처리량 증가율은 폐기물 발생대비 처리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움으로 성과지표를 “전체 발생량 대비 처리량” 등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 (계획)

-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은 적절하나,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사업추진상의 애로점이 있음
- 매년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사업 추진 지역을 선정·결정하고, 지자체 사업추진시 환경영향조사, 주민여론 수렴 등 합리적으로 절차를 진행하였음

□ 사업추진의 효율성 (집행)

- 생활폐기물의 처리책무가 있는 지자체에 대하여 자본보조 사업으로 사업집행의 효율성이 지자체 의지에 의존하고 있음
- 분기별로 사업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사업추진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삭감, 사업취소, 국고환수 등의 조치를 통하여 사업을 독려하고 있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 (성과)

- 농어촌쓰레기의 위생적 처리로 생활환경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나, 사업만족도 조사 실적은 없음

3. 개선방안 등

- '08년까지 시설 개소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였으나 성과지표의 부적 절성을 이유로 '09년부터 폐기물처리량 증가율로 성과지표를 변경 하였음. 그러나 목표치(0.2%)에 비하여 실적이 5.1%로 큰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성과목표치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인 목표치도 제시되어야 할 것임. 또한 변경한 성과지표인 폐기물 처리량 증가율은 폐기물 발생대비 처리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성과 지표를 “전체 발생량 대비 처리량” 등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3-2-6(계속)	농촌폐비닐 수거비 지원(농림수산식품부)
-------------	-----------------------

담당부서	친환경농업과	담당자	임기창(사무관)
전화번호	02-500-2131	이메일	limkc@mifaff.go.kr

I. 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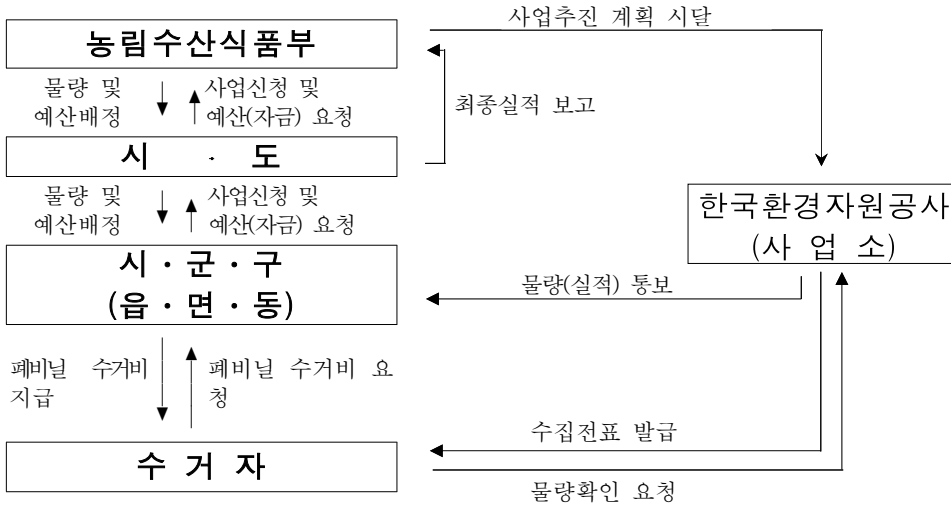
1. 사업목표

- 목표 :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의 수거활성화를 통한 환경오염방지 및 농촌환경 개선
 - 폐비닐 발생량을 줄이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수거를 유도하기 위하여 '04년부터 폐비닐수거비 지원
- 지원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8조 및 제39조
 - 제8조: 국가 및 지자체는 농촌을 도시와 연계된 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농촌의 쾌적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 제39조 : 토양 등 환경의 보전을 위한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 주요내용 :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의 수거 활성화를 위해 폐비닐수거비 지원
 - 지자체의 폐비닐 수거 활성화 및 책임 강화 유도하기위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폐비닐 수거보상비』에 kg당 30원씩 인센티브 지원
- 사업기간 : 2004년 ~ 계속(1년 단위사업)
- 총사업비 : '09년까지 기투자액 183억원(576천톤)
 - '09 사업규모 : 103천톤, 3,595백만원(30원/kg 정액지원, 국고 100%)

○ 수행체계



3. 연차별 추진계획

- 폐비닐수거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농업인의 자발적 수거 유도를 통한 농경지 오염방지 및 농촌지역 환경개선 효과 제고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천톤)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05	85	26	-	-				26
'06	100	30						30
'07	100	30						30
'08	103	30	6					36
'09	73	20	6					26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천톤)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05	85	26	-	-				26
'06	100	30						30
'07	100	30						30
'08	103	30	6					36
'09	73	20	6					26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09년도 폐비닐수거율 목표 67.8대비 100.3%인 68.1% 달성
 - 폐비닐 발생량('08년) 345천톤 중 235천톤 수거('09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폐비닐수거비지원	폐비닐수거율	폐비닐발생량 대비 수거율	%	67.8	68.1	100.4

II. 평가결과

1. 총 평

- 본 사업은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의 수거활성화를 통한 환경 오염방지 및 농어촌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임
- 3월과 11월을 폐비닐집중 수거의 달로 운영하고, 현장지도 점검 및 현지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 (계획)

-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지자체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음

□ 사업추진의 효율성 (집행)

- 수거자는 한국환경자원공사(사업소)에서 수거물량 확인을 요청하고,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는 수거물량을 확인 후 수집전표를 발급, 지자체에서 수거비를 지급하는 체계로 운영되어, 실적 확인 및 점검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음
- 3월과 11월을 폐비닐집중 수거의 달로 운영하고, 현장지도 점검 및 현지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 (성과)

- 폐비닐수거비 지원사업으로 수거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폐비닐의 원활한 수거로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있음. 사업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지속적 지원을 바라고 있음
- 성과지표는 폐비닐 수거율을 지표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09년 국고 2,679백만원으로 수거율 68.1%를 달성

담당부서	수산개발과	담당자	변민준(주무관)
전화번호	02-500-2328	이메일	pw4344@korea.kr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사업추진 근거
 - 어촌어항법제49조(사업비 지원), 수산업법 제84조(보조 등)
- 목표
 - 기상악화 시 소형어선을 육지로 인양하여 어업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평시 어획물 및 어구 인양 등 어업편의 제고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6 ~ 계속
- 사업주체 : 시·도지사(시장·군수)
- 지원규모 : 3톤 이상 소형어선 인양기(대당 5천만원)
- 지원방식 : 지자체 보조(국비50%+지방비50%)
- 추진체계 : ① 사업신청(어촌계, 수협 등)
 - ② 대상선정(시·군, 시·도)
 - ③ 예산지원(농림수산식품부→시·도, 시·군)
 - ④ 사업시행(시·도, 시·군)
- 추진내용 : 다목적어선인양기설치(인양하중 3톤이상, 인양기 높이 6m, 회전반경 360° 또는 동등 이상 형식)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차별 추진내용과 추진일정, 사업비 등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36		59			59		118
'05	-							
'06	14		4			3		7
'07	29		7			8		15
'08	88		22			22		44
'09	105		26			26		52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36		59			59		118
'05	-							
'06	14		4			3		7
'07	29		7			8		15
'08	88		22			22		44
'09	105		26			26		52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성과지표 : 계획 대비 설치대수

* '09사업계획 : 8개시·도에 26.25억원 투자 105대 설치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소형어선인양기 설치	설치대수	인양기 설치대수	%	105	105	100

II. 평가결과

1. 총 평

- 2006년부터 고령화된 어촌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태풍 등 기상 이변시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소형어선 인양기설치 사업을 추진함
- 재산피해방지와 노동력 해결은 어촌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을 제고시키고 근로효율성·환경을 개선하여 소득증대 및 젊은 층의 근로자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정주공간으로서의 어촌 구현 가능

2.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정성(계획)

- 전국 2,290개 항포구중 25%인 573대의 소형어선인양기 설치 중기 계획을 수립 중임
- 낙후된 어촌·어항을 대상으로 인양기 설치에 관한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 등을 실시하여 결정된 규모 및 우선순위에 따라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
- 기상이변시 소형어선의 육지인양으로 재산피해를 사전예방하고 미역등 수산물 인양으로 부족한 어촌 노동력해소에 기여함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2008년에는 2007년에 비해 300% 이상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인양기 설치 사업 후보지역도 확대하려는 계획을 지니고 있는 바, 장차 일정기간동안 매년 계속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됨
- 인양기 설치 대수를 살펴보면 2006년 14대, 2007년 29대, 2008년 88대, 2009년 105대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며, 시·도를 사업집행 주체로 하여 현지실정 및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 수요증대로 인하여 적지 조사 및 적지 선정을 위해서 지자체, 어촌계, 수협, 유관기관과의 협의 및 현장조사가 철저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낙후된 어촌에 인양기를 설치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및 근로여건 개선을 통한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 지자체의 설치요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바, 소형어선(다목적) 인양기사업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3. 개선방안 등

- 5톤 미만의 소형어선을 중심으로 본 사업이 이루어지므로 전국적으로 어선 감척사업 등으로 수요가 일정기간은 증가하겠으나 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국 항포구의 25%에 해당되는 570여대 까지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2009년에는 105대로 많은 지역에서 설치가 되었으나, 전남지역이 전체의 58%인 61대를 차지하고 있어, 가급적 지역 안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는 사업비가 25백만원으로 제한되다 보니 지역여건상 신축적으로 운영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업비를 증감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지침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소형어선인양기시설은 어선 및 어획물, 어구 등의 인양으로 사회 공공기반시설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사업비의 신축적 운용이 가능하다면 기준사업비(현재 5000만원)보다 증가되는 사업비의 일정 부분에 대하여 국비 보조율을 약간 상향 조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기존 어촌종합개발계획시 소형어선 인양기설치를 위한 사업부지 조성계획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항개발계획시 인양기

설치를 위한 에이프런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소형어선 인양기 사업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어선세력, 어업인수, 부지의 적합성 등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적지선정을 하여 지속적으로 낙후된 어촌지역에 설치를 하여야 할 것임

3-3-2-8(계속)	해양폐기물 정화 및 쓰레기 수매사업 (국토해양부)
-------------	--

담당부서	해양보전과	담당자	기호영(사무관)
전화번호	02-504-5436	이메일	-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연근해 주요해역·항만 및 어항 등의 해양폐기물 수거·처리로 해양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
- 사업추진 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18조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9 ~ 계속
- 총사업비 : - 억원('09년까지 기 투자액 1,198억원)
- 사업규모
 - 단계별 해양쓰레기 수거 【국가어항 및 항만('99~'03), 연근해 주요 어장(41개 해역, '04~'09), 항만, 습지보호구역 및 32개 연근해 주요어장('10~'15)】
 - 해양쓰레기 분포 및 실태조사
 - 전국 50개 시·군·구 해안가 쓰레기 수거·처리
 -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전국 11개 지자체)
- 지원형태 : 민간·지자체 보조
- 지원조건 : 국고 100%(단, 수매사업은 국고 60%, 지방비 40%)
- 사업시행주체 : 국토해양부, 시·도지사(시·군·구)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	-	-	201	665	96	-	962
'05	30개 시·군·구	-	-	110	-	10	-	120
'06	30개 시·군·구	-	-	91	25	16	-	132
'07	35개 시·군·구	-	-	-	122	16	-	138
'08	35개 시·군·구	-	-	-	122	16	-	138
'09	38개 시·군·구	-	-	-	260	16	-	276
'10	35개 시·군·구	-	-	-	136	22	-	158

- '10년 예산편성(예결위)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삭감 으로 당초 계획보다 56억원 감액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	-	-	91	529	60	-	680
'06	30개 시·군·구	-	-	91	25	12	-	128
'07	35개 시·군·구	-	-	-	122	16	-	138
'08	35개 시·군·구	-	-	-	122	16	-	138
'09	50개 시·군·구	-	-	-	260	16	-	276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성과지표 :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물량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민간대행)	해양폐기물 수거처리물량	설계량 대비 실제수거물량 비교	%	100	108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지자체보조)	쓰레기 수매사업 확대실적	전년대비 확대실적	개소	47	50	-

II. 평가결과

1. 총 평

- 1999년부터 어족자원을 회복하고 어업인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연근해 주요해역, 항만 및 어항 등의 해양폐기물 정화 및 쓰레기 수거사업이 운영되고 있음
- 연근해 침적쓰레기 수거처리, 조업중 인양된 쓰레기 수매, 도서쓰레기 수거, 습지보호구역 수거처리 등 어민의 생활터전을 친환경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D/B를 구축하여 장기적인 해양쓰레기관리 정책 수립
- 1999년부터 2009까지 1198억원이 기투자되어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여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정성(계획)

- 2009년부터 해양폐기물 분포 및 실태조사 2단계 사업으로 12개 조사대상 해역에 대한 현장표본조사를 통해 폐기물량 추정, 개략적 분포도 작성, 수거처리비 산출 등을 계획중임
- 획득한 제반정보를 기반으로 수거처리 실적 D/B화 및 시스템 운영관리, 수거·처리사업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조업중 인양된 쓰레기 수매사업은 지자체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어업인들의 인식변화, 홍보 등 사업효과가 뛰어나므로 사업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추진할 계획
- 해양쓰레기 분포 조사시 현지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샘플링 조사 실시 등 어업인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도록 함
- 사업대상지역 선정에 있어 사전에 D/B를 통해 침적 쓰레기량이 많고 인근 어장 등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지역 위주로 사업지역 선정 지원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1999년부터 정부예산을 확보하여 1999~2003년까지 전국 116개 항만·어항에 375억원을 투입하여 46천톤의 수중침적폐기물을 수거함
- 해양폐기물 수거사업은 2001년부터 해양환경관리공단·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 위탁하여 시행(국비 100%)하고 있음
- 동 사업은 해양환경관리법에 의거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재원의 한계등으로 인하여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사전의 철저한 입지선정을 하고 있음
- 2009년에는 50개 시군에 총 276억(국비 260억, 지방비 16억)원이 지원되었으나 2010년에는 예산이 삭감되어 규모가 35개 시군으로 축소 조정된 상황임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으로 각 지역마다 어획량 증가효과가 차이가 나는 바, 적게는 1배에서 많게는 18배까지 증대효과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어업인들은 해양폐기물정화사업에 대한 호감도보다는 사업 기여도, 사업 유지 필요성, 향후 이용의향 측면에서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어업인의 생활수준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음

3. 개선방안 등

- 해양폐기물 및 쓰레기는 대부분 육상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육상기인 해양유입쓰레기의 사전차단을 위한 유역관리 책임제도를 전국 4대강으로 확대·강화하여 해양오염원의 근원적 해결이 필요함
- 해양폐기물수거는 해양환경관리공단, 어촌어항협회 뿐만 아니라 기타 해양수산관련 유관기관에서도 수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임

- 동 사업은 해양환경관리법에 의거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재원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예산배분시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바, 단기적으로는 예산의 증대가 필요함
- 2009년에는 2008년보다 100% 이상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으나, 장차 해양폐기물의 주 원인인 육상기인 쓰레기 사전차단을 위한 근본대책이 없는 한 계속 사업비의 증액이 필요할 것임
- 2010년에는 예산의 규모가 오히려 축소되었으므로 경제적으로 수거·처리할 수 있는 장비의 개발 및 개선이 필요할 것임
- 해양폐기물 수거처리물량이 원래 예상치보다 많이 수거·처리되어서 목표를 상회 달성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쓰레기 처리물량이 예상 이외로 많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해양쓰레기 저감방안도 동시에 강구되어야 할 것임

3-3-2-9(계속)	양식장 정화사업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	--------------------------

담당부서	자원환경과	담당자	강거영(사무관)
전화번호	02-500-2386	이메일	kilkil@mltm.go.kr.kr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연안 양식어장 환경을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과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깨끗한 해양환경 보존을 위함

※ 사업추진 근거 : 어장관리법 제15조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86년~계속
- 총사업비 : - ('09년까지 기 투자액 2,521억원)
- 사업규모 : 면허어장 및 인근 수면 682천ha('09까지 495천ha 완료)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
- 지원조건 : 국비 80%, 지방비 10%, 자담 10%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ha)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05	11,766		76			10	9	95
'06	14,080		59			7	7	73
'07	11,531		76			10	10	96
'08	6,000		52			6	6	64
'09	5,761		49			11	1	61
'10	5,747		49			12	1	62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ha)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05	11,766		76			10	9	95
'06	14,080		59			7	7	73
'07	11,531		76			10	10	96
'08	6,000		52			11	1	64
'09	5,924		49			11	1	61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성과지표 : 어장정화사업 추진 진척도

※ '09사업계획 : 5,761ha, 49억원 예산지원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양식어장정화사업	어장정화사업 추진 진척도	대상면적 계획대비 실적	ha	5,761	5,924	103

II. 평가결과

1. 총 평

-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1986년부터 시작하여 2009년까지 2521억원 정도가 투자되었으며 사업규모는 면허어장과 인근수면 682천ha로서 2009년까지 전체의 73%인 495천ha 규모의 어장정화사업을 실시하였음
- 양식어장사업의 지원은 국비가 80% 지원되므로 어업인의 도덕적 해이뿐만 아니라 육지개발에 따른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인식됨
- 또한 2009년 사업비가 2008년에 비하여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현재 국가가 사업비의 80%를 지원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지자체와 어업인측의 부담을 기존의 10%에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책임자 부담의 원칙에 부합하다고 봄

2.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정성(계획)

- 어장관리법 개정에 따른 어장관리기본계획에 의거 금후 기본 환경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과학적 근거에 의한 체계적인 어정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어장정화·정비등록업체 등록기준 강화로 효율적이고 성과있는 정화사업 추진을 도모
- 가두리양식장 바닥환경개선 시범사업 확대를 통한 어정정화사업의 실질적인 사업효과 제고
- 어장관리기본계획 수립 등으로 해양의 여건변화에 대하여 어촌계, 수협,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 홍보를 통한 공감대 형성하여 능동적 대처의 조치를 취하기 위한 사업임

- 육상오염물질의 유입, 유해성 적조, 수산물 생산기반시설 조성 등으로 해양오염으로 부터의 안전한 수산물 공급에 기여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2009년도 어장정화사업 및 굴폐각자원화사업 시행지침 수립시 굴수협, 지자체, 농림수산식품부 등 유관기관 및 어업인들과의 유기적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
- 지자체에서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어장정화사업 보다는 지역개발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사업 위주로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지방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어장관리법 시행에 따른 당해 초기년도 사업실시후 주요 품종별 생산량이 관련연구기관 연구결과에 의하면 7~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어장관리해역지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하여 전국의 관계기관 협조를 통한 의견수렴, 설문조사 및 공청회 개최
- 1986년 어장정화사업실시 이후 현재까지 연안어장 495천ha에 대하여 2500여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오폐물수거 또는 재활용 등의 적정처리를 통한 어장단위면적당 어획량증가로 어업인 소득증대와 연안어장 환경조성에 기여

3. 개선방안 등

- 어장정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방안으로서 광특예산에서 농특회계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양식어장 등의 오폐물 쓰레기 등의 오염원이 주로 육지기인형 오염원이기 때문에 육지의 정화시설사업이 선결되도록 지자체에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현재의 재원 형태가 국비 80%, 지방비 10%, 자부담 10%로 구성되어 있으나 책임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 지방비와 어업인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2011년까지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 본 사업이 향후에도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어민 만족도 등을 조사한 결과 72%가 만족, 28%가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본 사업의 원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불만스러운 이유 등을 심층 분석하여 차기 사업에 반영하여야 할 것임
- 어장관리기본계획수립시 년차별로 어장관리해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어장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어장 수질상태를 사전에 점검하여 수질상태가 개선의 여지가 없는 어장을 중심으로 지원 필요
- 어정정화에 효율적인 신개념의 정화방법인 퇴적물흡입 원리분리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3-3-2-10(계속)	해수욕장주변정비 및 시설개선사업 (국토해양부)
--------------	--------------------------------------

담당부서	연안계획과	담당자	길인환(사무관)
전화번호	02-2110-8460	이메일	kilkil@mltm.go.kr.kr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해수욕장을 쾌적한 4계절 휴양지로 조성하여 국민편익을 증진시키고 이용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근거 : 「연안관리법」 제20조 및 「해·강안 군경제철책 개선지침」(’07.6)

2. 사업내용

- 사업내용 및 기간
 - 해수욕장 편의시설 개보수 및 주변환경 정화(’05년부터 계속)
 - 동해안 해수욕장주변 군경제 철조망 철거 및 대체시설 설치(’06~’09)
- 지원대상 : 해수욕장 소재 시·도(10개)
- 지원형태 : 지자체 정액보조

3. 연차별 추진계획

- 해수욕장 주변시설 및 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6억원의 예산 편성
 - 사업실적에 따라 예산 증액 검토
- 동해안 철책제거 및 대체시설 설치를 위해 매년 20억원씩 4년간 총 80억원을 투입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10				110
'05	해수욕장지원			6				6
'06	"			26				26
'07	"			26				26
'08	"			26				26
'09	"			26				26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58				184
'05	해수욕장지원			6				6
'06	"			26				26
'07	"			26				26
'08	"			100				100
'09	" (20개소)			26				26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우수해수욕장 20개소 시설개선 사업 시행(100%)
 - 강원도 철책제거 길이의 계획량 대비 실적량(100%)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시설개선해수욕장수	사업시행 개소수	사업시행	개소	20	20	100
철조망 제거	철조망 길이	목표대비 제거율	%	4.1km	4.1km	100

II. 평가결과

1. 총 평

- 전국 330여개의 해수욕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쾌적한 4계절 휴양지로 조성하여 연안관리 차원에서 국민편익을 증대시키고 이용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특히, 동해의 연안지역의 철책선을 철거하여 어업인과 관광객들의 해수욕장 및 백사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관광객의 해양경관권 확보 및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정성(계획)

- 시설과 환경이 열악한 지자체를 중심의 사업비 배정을 원칙으로 계획중임
- 매년 6억원씩 예산을 투입하여 20개 우수해수욕장 주변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으나 전국의 해수욕장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기간이 필요한 상황임
- 지구온난화, 인공구조물 설치 등으로 인하여 해수욕장 침식이 해마다 발생하여 모래 유실이 심각한 상황임
- 해수욕장에 일시 가건물 설치 후 철거시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므로 해수욕장 시설물을 개보수하고, 부족한 시설물은 신설하는 등 해수욕장 주변 환경을 정화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처를 제공
- 동해안 해수욕장 주변 철조망을 철거하여 관광객 및 주민들에게 조망권과 접근권 및 해안경관을 제공하고 그 파생수요로 관광수입증대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해수욕장 시설 정비사업의 핵심은 예산의 규모이나 정부 재정의 한계로 예산증액이 잘 되지 않고 있어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음
- 2006년부터 4년동안 동해안해수욕장 주변 군경계철조망 철거 및 대체시설 설치를 위해 매년 20억원씩 총 80억원을 4년간 투입 하였음
- 동해안 철책제거사업은 2007년 부분적으로 철거되어서 미관상 다른 대체시설인 경관펜스로 보완이 되고 있는 상황임
- 해수욕장의 체계적 관리와 이용객의 안전·위생·환경관리를 위해 해수욕장관리법을 조기에 제정할 것을 요구(지자체 등)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해수욕장 주변 정비사업으로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특히 동해안 해수욕장 주변 철책제거사업은 해안선 접근을 용이 하게 하고, 지역 주민들의 오랜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등 해양관광 활성화에 기여하였음
- 총 61.7km의 강원도 해수욕장 주변 해안선 철책선 중 2007년까지 21.1km가 철거되고, 2008년 4km, 2009년 4.1km가 추가로 철거 되어 총 47%인 29.2km가 철거되었음

3. 개선방안 등

- 해수욕장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해수욕장 주변 구조물의 높이, 색채, 형태, 규모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해수욕장 정비를 위한 예방차원에서 침식방재시설 설치가 필요한 것임
- 해안경관형성계획, 해수욕장 경관계획 등을 수립하여 동해안 철책을 대체할 수 있는 경관펜스 등의 경관구조물의 설치가 바람직함

- 해수욕장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칭)해수욕장 관리법 제정이 시급함
- 해안경관계획, 해수욕장경관계획, 모래유실 방지를 위한 구조물 설치 등 연안친수공간조성을 위한 많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임
- 2차 어촌종합개발사업에서는 관광부업시설로서 해변친수공원시설, 기타관광시설로 인정되는 시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광부업시설을 해수욕장 주변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해수욕장 주변 관광지의 경우 관광지지정 및 개발에 따른 기존 산림청 소유부지에 대한 대체공간 조성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이 시급한 실정임
- 군부대 철책 제거를 위한 부대사업으로서 측량사업 등의 행정절차가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비용 등에 대한 국고보조도 병행하거나 본 사업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 해수욕장 평가시 보다 많은 소규모 해수욕장이 발굴되고 시설개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임

3-3-3-1(계속)	농어촌도로 정비(행정안전부, 지자체)
-------------	----------------------

담당부서	지역발전과	담당자	윤종한
전화번호	02-2100-3842	이메일	-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농수산물의 생산·유통을 향상시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과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
- 사업추진근거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5조~제8조(도로의 정비, 기본계획·정비계획·사업계획의 수립)
 - 지방교부세법(부칙 제7126호)

2. 사업내용

- 사업 내용(기존사업)
 - 사업지원대상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도로
 - 사업규모 : 농어촌도로 74.29km 정비계획
 - 지원금액 및 형태 : 보통교부세 538억원 지원
 - ※ '05~'08까지 지방도로정비사업에 매년 보통교부세 8,500억원 지원계획
(농어촌도로 '05~'07년 실적 : 9,485억원 1,514.4km 정비)
 - 지원조건 : 지방양여금 폐지('04.1.29)후 지원되는 보통교부세(8,500억원)는 '04.12.8 공표된 지방도로정비사업에 적용
 - 사업 주요내용
 -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 사업추진방향

지원사업

- 지방도로정비사업의 재원을 보통교부세와 지방비로 추진
 - 지방양여금 폐지('04.1.29)후 지원되는 보통교부세(8,500억원)는 '04.12.8 공표된 지방도로정비사업에 적용

자체사업

- 지역간 연결 등 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지방도로 중장기 계획에 맞추어 지속적 사업 추진
- 지방도로정비사업 계획수립시 광역계획 등 국가시책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국가기반시설 및 혁신도시·행정복합도시·대운하사업·새만금사업 등 국책사업으로 인한 교통수요 증가 대비한 계획수립 추진
 - 고속철도, 고속 및 일반국도, 항만, 공항 등과 연계되는 지방도로망 확충
- 포장도로의 구조보전 및 포장수명을 위하여 도로유지보수사업 추진
- 지방도로상 노후 및 위험교량 재가설사업 추진
 - 정기점검시 D,E급으로 분류된 노후 및 위험교량에 대해 보수·보강, 재가설하여 교량의 안전성 확보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추진절차 : 도로기본계획(변경)의 수립(시·군)→도로정비계획(변경)의 수립(시·군)→연도별 도로사업계획 지침시달→연도별 도로사업계획 수립(시·군)→도로의 노선지정(시·군)→검토·취합·보고(시·도) → 사업계획확정(행자부) → 예산지원(행자부 → 시·군) → 시행(시·군) → 결산(지자체)

3. 연차별 추진계획

- '09 시도별 사업계획

(단위 : 억원)

구분 사업비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7,351	112	262	1,242	782	2,582	4,152	550	860	2,520	3,921	368

※ 단, 사업비는 지방비가 포함되지 않은 지방교부세 내역임.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사업 성과목표 달성도(잠정)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방법	단위	'09년도 목표치	'09년도 목표치	비고
농어촌도로정비	사업추진 공정	계획대비 실적	%	95	파악중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김주식(사무관)
전화번호	02-2110-8670	이메일	kjs0219@mltm.go.kr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대부분의 농어촌 지역은 인구감소로 버스이용객이 감소하여 버스 운행으로 인한 손실금액 증가중
- 따라서, 농어촌 지역의 기초교통권 보장을 위해 손실금 보상, 공영 버스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교통서비스 제공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5~2009
- 사업주체 : 시·도지사
- 추진체계 : 시·도 수요조사 및 소요액 통보(국토부→행안부) → 분권교부세 버스재정지원(행안부→시·도)→사업시행(시·도)
- 지원형태 : 분권교부세 버스재정지원
- 사업규모 : 벽지노선(2999.2km) 운행손실 및 공영버스 구입 지원
- 사업대상
 - 벽지노선 손실보상 : 벽지노선으로 지정된 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업체에 대해 손실금의 일정액 지원
 -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비용 지원 : 시·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버스(공영버스)의 구입비용의 일부금액을 국비지원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분권교부세)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05						340(49)		
'06						376(53)		
'07						459(54)		
'08						504(61)		
'09						473(65)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분권교부세)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297(280)		1,175
'05						340(49)		340
'06						376(53)		376
'07						459(54)		459
'08						583(64)		583
'09						573(60)		573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09년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08년 분권교부세 재원 13,784억원→'09년 12,305억원)에 따라 분권교부세 버스재정지원 감소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교통서비스 강화	'09년 분권교부세 집행	예산집행실적	억원	65	60	92
	'09년 지방비 집행	예산집행실적	억원	473	573	121

II. 평가결과

1. 총 평

- 인구감소 등으로 안정적인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농어촌 지역의 버스운행 손실을 보전하거나 공영버스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 '09년으로 종료되는 분권교부세를 '14년까지 5년 연장하여 안정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함('09.12 지방교부세법 개정)
- 분권교부세(행안부에서 149개 지방이양사업 지원) 중 벽지노선 운행손실 및 공영버스 구입 지원 등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여 농어촌의 안정적 교통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대부분의 농어촌 지역은 인구감소로 버스이용객이 감소하여 버스운행으로 인한 손실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기초교통권 보장을 위해 손실금 보상, 공영버스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따라서, 본 사업은 농어촌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손실금을 보상하고, 공영버스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교통서비스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업목적이 적절함
- 농어촌 등 수요부족으로 안정적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지역의 벽지노선 운행 및 공영버스 운영을 분권교부세로 지원하고, 당초 '09년 종료에서 '14년까지 5년 연장됨에 따라 재원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하위 정책목표 및 세부추진계획 등을 구비하였음
- 분권교부세 지원시 시도로부터 당해연도 수요를 파악하고 있으며, 시도에서 벽지노선 등 선정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세부추진계획 수립·조정 시 의견 수렴 및 협의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지역의 현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자체가 벽지노선 운행 및 공영버스 등 운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수요를 파악하여 예산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체계가 적절함
- 지자체의 벽지노선 운행거리(90%), 전년도 집행실적(10%), 당해연도 예산 확보 노력(10%)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있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농어촌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운행감축 및 중단 등의 상황을 예방하여 농어촌에 거주하는 국민의 기초교통권 보장하고 있음. '09년에는 2,999.2km의 벽지노선 운행 및 공영버스 운행 지원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고하였음
- 안정적 재정지원 문제를 중시하여 재정 집행률을 성과지표로 하였으나, 벽지노선 연장(km), 공영버스 필요 대수 등 수요 측면의 성과지표의 보완이 필요함

3. 개선방안 등

- 분권교부세 중 벽지노선 운행손실 및 공영버스 구입 지원 등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여 농어촌의 안정적 교통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담당부서	연안해운과	담당자	안재구(주무관)
전화번호	2110-8569	이메일	ajuno@mltm.go.kr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사업추진근거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5조(농어촌특별세 대상사업)
- 사업목표
 - 낙도 보조항로에 운항중인 국고여객선 중 노후하거나 항로에 부적합한 여객선을 신조 여객선을 대체건조하여 항로에 투입함으로써 도서민의 안정적인 해상교통수단을 확보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5 ~ 계속사업
- 사업주체 : 국가(지방해양항만청)
- 사업비 : '09년까지 32척 대체, 373억원(국고 100%)
- 사업규모 : 매년 낙도보조항로에 취항중인 국고여객선 1-2척 대체
- 추진체계 : 국고건조(지방청 수행)후 낙도보조항로 운영선사에 위탁관리
- 추진내용 : 전국 26개의 낙도 보조항로에 26척의 여객선이 운항 중이며, 매년 1~2척의 노후선 또는 항로에 부적합한 여객선 대체·건조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차별 추진내용
 - '78 ~ '85(새마을시리즈) : 총 21척 건조

- '86 ~ '94(수요발생시 수시건조) : 총 4척 건조
- '95 ~ 현재(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총 32척 건조
- 사업비 : 150톤급 차도선형여객선 건조비용 약 16억-18억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5	67						83
'05	1	17						17
'06	1	16						16
'07	1	16						16
'08	1	18						18
'09	1	16						16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5	83						83
'05	1	17						17
'06	1	16						16
'07	1	16						16
'08	1	18						18
'09	1	16						16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목표치 및 실적 : 차도선 1척 건조 / 차도선 1척 건조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국고여객선 건조	건조공사 공정률	공정률	%	100	100	100

II. 평가결과

1. 총 평

- 국고여객선 건조사업은 낙도 보조항로에 여객선을 적기에 대체 투입하여 도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해상교통수단을 제공하여 지역주민들의 기초생활 여건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임
 - '95년 이후 총 373억원의 예산 투입으로 32척의 국고여객선을 건조하여 낙도보조항로에 취항시킴으로써 도서민의 안정적 해상교통수단 증진에 기여하고 있음
- 도서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성과지표를 건조 공정률로 하고 있어 지나치게 '건조'라는 양적지표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를 질적 내용의 성과 지표도 같이 평가할 필요가 있음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본 사업은 선령만료(20년) 도래, 항로 부적합 여객선 대체, 도서주민의 교통수요 욕구충족을 위하여 매년 1~2척의 낙도보조항로 취항여객선을 대체하는 사업으로서, 낙도 도서민의 안정된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였음
- 보조항로에 취항 중인 선령노후 여객선, 수송수요 및 주민요구사항 등 항로 특성에 맞는 여객선의 건조
- 매년 단년도 사업으로 국고여객선을 건조하여 낙도보조항로 취항 여객선 1-2척을 대체 계획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국가(지방해양수산청)가 여객선을 국고 건조후 낙도보조항로 운영선사에 여객선 관리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추진절차가 비교적 합리적임

- 2009년에는 16억원의 국비를 지원하여 차도선 1척 건조하여서 도서민 및 일반인의 여객편의를 제공
- 2008년에는 완도지역 이목/어룡항로, 2009년에는 목포지역 목포/율목항로의 일반여객선을 차량운송겸용 여객선으로 대체하였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목표인 도서민 기초생활여건 및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함
- 국고여객선 건조 계획 1척 대비 신조 여객선 취항 1척으로 성과지표의 목표치 100% 달성
- 2009년도에 실시된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서비스 평가결과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의 만족도가 일반항로 만족도 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됨
- 2009년도에는 국고여객선 수송실적이 2008년 대비 약 10만명 증가하여 여객선의 편의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음

3. 개선방안 등

- 국고여객선 건조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소요예산 요구액 반영 필요
- 성과지표의 평가를 건조율이라는 양적지표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편의성, 안전성 등의 질적 평가로 함께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여객선 건조계획시 지역주민들의 의견, 접안시설, 기항지역의 도로여건, 여객선 선종, 여객선 규모(톤수, 여객정원) 등을 종합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할 것임
- 최근에는 차도선형 여객선 건조를 연내준공을 목적으로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있으나, 이는 공기부족으로 잘못하면 부실선박건조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감리와 공사진척 상황을 점검하여야 할 것임

담당부서	연안해운과	담당자	안재구(주무관)
전화번호	2110-8569	이메일	ajuno@mltm.go.kr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사업추진근거
 - 「해운법」 제44조(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지원)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지원)
- 사업목표
 - 육지에 비해 열악한 생활여건과 교통환경을 가진 도서지역 주민의 과중한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여 도시와 도서간의 교류증진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 ~ 계속사업
- 사업주체 : 시·도(시·군·구)
- 사업비 : 매년도 예산('09년 까지 국비 249억원)
- 사업규모 : 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 연 370만명에 운임지원
- 추진체계 : 선사가 도서민에 선 할인된 운임을 적용하고 사후 지자체와 정산하는 방식(간접지원방식)
- 추진내용 : 정규운임의 20%와 최고운임(5,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전액지원

3. 연차별 추진계획

- '05.8 : 여객선 운임지원에 관한 법률 근거 마련

-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
- '05.11 : 해양부, 광역자치단체 및 여객선사간 도서민에 대한 여객선 운임지원을 위한 협약(MOU) 체결
- '06.1~2 : 투명한 운임지원을 위한 전산매표시스템 확대 및 도서민 인증시스템 구축 완료
- '06.3 : 도서민에 대한 여객선 운임지원 실시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80		9	230		239		478
'05	-							
'06	280			50		50		100
'07	350		3	54		57		114
'08	370		3	63		66		132
'09	380		3	63		66		132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450		9	239		248		496
'05								
'06	340			50		50		100
'07	366		3	54		57		114
'08	374		3	68		71		142
'09	370		3	67		70		140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목표치 및 실적 : 3,800천명 / 3,700천명(도서민 수송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도서민 수송실적	연안여객 수송실적	천명	3,800	3,700	97.4

II. 평가결과

1. 총 평

- 본 사업은 선사가 도서민에 선 할인된 운임을 적용하고 사후 지자체와 정산하는 간접지원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정규운임의 20%와 최고 운임(5,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전액을 지원하고 있음
- 육지에 비해 열악한 생활여건과 교통환경을 가진 도서지역 주민에게 과중한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여 내륙과 도서간의 교류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주민의 정주의욕을 고취하려는 사업취지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부합한 한 것으로 평가됨
- 다만, 지역개발의 관점에서 볼 때 여객선을 이용하는 370여만명의 도서주민에게 여객선 운임을 금전적으로 보조해 주었을 때, 도서-도시간 교류가 실질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여타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음
- 아울러 과거에 지적되었던 선사 정산과정의 투명성이 과연 정책목표대로 실제로 제고되었는지 현장에서 재점검해 보고, 구축된 전산 시스템도 투명성 제고에 제대로 기여하고 있는지 실제 현장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음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여객선의 경우 선박 자체의 가격이 매우 비싸고 운영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육상의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운임이 고액인 점을 감안하면, 도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여객운임을 지원하는 점은 농촌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판단됨

- 그러나 과거 선사가 도서민에 할인된 운임을 적용하고 사후 지자체와 정산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부작용이 발생한 경험이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정비하였던 바, 이후 정산과정의 투명도가 높아졌는지를 현장에서 점검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음
- 운임지원 대상 도서지역의 선정기준이 다소 불확실하게 나타난 점은 개선되어야 할 요소로 평가됨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사업추진체계, 추진방식 등이 적절하고, 사업과정에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도 원활히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며, 일정관리 등도 큰 문제 없이 집행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여객선 운임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업경비 공동분담 및 최고운임제 도입 등 세부추진계획 수립시 지자체와 MOU를 체결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임
- 2008년도에 구축된 전산매표 시스템 및 도서민 인증시스템을 정착시킨 점은 그간 문제로 지적된 정산과정 투명성을 높인 행정조치로 평가됨
- 다만 사업자가 여객선 이용객에 대하여 할인 매표한 실적을 첨부하여 지원액을 청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심사)후 사업자에게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자치단체의 확인 방법이 아직 체계적이지 못한 점은 개선과제로 지적할 수 있겠음
- '09년 기본운임 지원률을 한시적으로 20%에서 30%로 확대한 점, 이와 관련하여 '09년 유가의 인상 등에 따른 여객선 운임상승으로 운임부족예산 약 4억원의 예산을 전용하여 추가 집행한 점은 정책적 성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이로 인한 지역발전의 효과, 예를 들어 도농교류 촉진에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한 체계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됨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09년도 성과지표상의 목표치는 도서민 수송실적 3,800천명으로 설정되었으나, 이의 달성수준은 3,700천명으로 당초 목표에 다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남
- 성과지표를 단순히 수송실적만으로 설정한 것은 정책적 파급효과, 즉 지역발전 효과를 측정하기에는 다소 안일한 지표로 판단되며, 여객선 운임지원을 통한 도시-도서간 교류증가, 주민 삶의 질 개선 정도를 측정할 수 합리적 성과지표가 제시되어야 할 것임.
- 아울러 도서민 교통비 지원이 도시와의 교류증진은 물론 생필품 구매용이, 소비활동 촉진 등의 기대 효과를 얼마나 충족하는지에 대한 근거 있는 중간점검이 필요한 상황임

3. 개선방안 등

- 여객선운임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도서주민들의 지속적인 삶의 질 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교통비 지원이 도시-도서간 교류확대, 도서민의 생활편익 증진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인 중간평가가 필요하며, 이에 기초하여 사업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앞서 언급한 바대로 본 사업의 성과를 양적, 질적으로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정책지표가 재설정되어야 할 것임
- 본 사업의 소관부처에 의한 자체평가에 의하면 여객선 운임인상 및 이용객 증가, 운임지원 범위 및 대상 확대에 따라 소요예산 증액을 건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건의 이전에 먼저 지금까지의 정책적 성과와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중간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의 대국민 홍보가 부족하며, 특히 본 사업을 다른 지역개발 사업과 연계시키려는 노력이 잘 드러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는 바임

3-3-4-1(계속)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농림수산식품부)
-------------	---------------------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김동권 서기관
전화번호	02-500-1804	이메일	greens@korea.kr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어촌 지역의 도로, 상·하수도, 문화·복지시설 등 기초생활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여 국토의 균형발전 및 농어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5 ~ '13
- 사업주체 : 시장·군수, 구청장
- 사업지원대상 : 155개 시·군·구, 1,157개면(15개 자치구 포함)
- 사업규모(사업량)
 - '13까지 정주면을 대상으로 796개면을 정비, ('08) 307개면
 - '09까지 오지면을 대상으로 361개면을 정비, ('08) 244개면
- 지원내용 : 마을기반정비, 농촌경관개선, 문화·복지시설, 환경보전 시설 등 지원
- 지원조건 : 면당 2~5년간 30억원 보조(오지면은 제3차 오지종합 개발 5개년계획에 따라 면당 평균 25억원 보조)
- 재 원 : 균형발전특별회계(국고 70%, 지방비 30%)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777		15,058			5,477		20,535
'05	650		2,739			880		3,619
'06	507		2,983			939		3,922
'07	519		3,055			966		4,021
'08	551		3,132			1,342		4,474
'09	550		3,149			1,350		4,499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개면)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777		15,058			5,477		20,535
'05	650		2,739			880		3,619
'06	507		2,983			939		3,922
'07	519		3,055			966		4,021
'08	551		3,132			1,342		4,474
'09	550		3,149			1,350		4,499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성과지표 목표/실적 : 550면/550면
 - 성과목표치 100%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시행면(구)	목표대비 추진실적	면(구)	550	550	100

II. 평가결과

1. 총 평

- 본 사업은 농어촌지역의 도로, 상·하수도, 문화·복지시설, 환경보전 시설 등 기초생활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농어촌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려는 사업으로써, 삶의 질 개선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평가됨
- 정주환경 개선을 통해 도시민의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촌의 지역사회 유지 및 활력을 증진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생활·휴양·산업이 조화된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의 목적과도 일치하는 사업으로 평가됨
- 그러나 적은 사업비로 정주기반 이외에 소득원 및 생산기반 등 다양한 사업에 투입한 결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입각한 사업계획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 그리고 오지면과 정주면에 대한 사업추진 방향과 목표의 차별화, 지역자원의 특성에 따른 사업내용의 특성화, 사업추진 주민역량의 강화, 타 사업과의 체계적 연계 등은 개선해야 할 과제라 하겠음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사업추진동기, 계획비전, 계획의 구체성 등 전반적으로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된 것으로 판단됨

- 세부추진계획 수립시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협의 등도 실시하여 절차적 민주성과 합리성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특성에 따라 기초생활환경 개선 및 교통인프라, 소득 및 생산기반 시설, 문화·복지시설 등 장기발전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지역 종합개발계획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고, 면개발계획 및 5개년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사업비가 면당 8억원 정도로서 대형 혹은 다양한 기반조성 사업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면지역 전체에 사업항목을 나열적으로 분산하고 있는 점은 계획성과 측면에서 문제로 지적할 수 있음
- 또한, 기존의 평가에서 계속 지적한 바대로, 나열식 사업항목(즉 선택과 집중 전략의 부재) 등은 올해에도 나타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음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사업추진체계, 추진방식 등도 적절하였고, 사업과정에서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도 원활히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며, 자원조달 및 배분, 일정관리 등도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지역주민 공청회, 지역개발전문가 자문회의, 시·군·구 농정심의회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하여, 면개발 계획수립 및 5개년계획수립 → 시행계획수립 → 사업시행 → 사후관리 등 지자체의 지역발전 역량 및 지역주민의 지역공동체 형성에 의한 상향식 사업추진 체계를 갖춘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시 자연마을의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과 공동체유지, 중심마을을 종합 개발하여 선도거점으로 육성하려는 정책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이 불명확 하며, 거점면소재지 개발사업과의 연계에

대한 구체적 성과제시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음

- 기존 오지면과 정주면의 사업추진 방식과 내용의 차별화를 기하는 동시에 지역의 자연 및 문화자원의 특성과 지역사회의 역량 및 인적 네트워크 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검토해야 할 것임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09도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550개 사업지구(면)이고 달성수준은 550개 사업지구(면)으로 100% 달성도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성과지표를 단순히 사업지구 면수를 기준으로 정한 것은 다소 안일한 접근으로 평가되며, 환경개선의 수준,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활성화 수준 등을 측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표가 제시되어야 할 것임

3. 개선방안 등

- 특히 본 사업이 물리적 환경개선에 주안점을 둔 사업임을 감안하면, 소프트 자원개발, 경제사업 등 비물리적 사업내용도 일부 포함하여 사업목표가 다소 불명확한 점이 있으므로,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히 재설정해야 할 것임
- '10년부터 시·군단위 포괄보조금 사업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도 기초생활권계획에 포함하여 추진되므로 이에 대한 자치단체의 적극적 대처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포괄보조방식으로의 전환에 따른 사업방향, 사업내용 및 사업단위, 추진방식 등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요구되는 바임
- 면단위 사업이 점차 완료되면서 시군단위(최근 기초생활권 단위 사업 계획 수립 등)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의 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농촌정비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탐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현행 면단위 사업구역의 적정성 평가와 사업의 공간적 범역 재설정 (기초생활권의 하위이면서, 과소화되는 면단위보다는 큰 구역의 사업 단위의 설정 필요), 사업 아이템 재조정(시대흐름에 맞는 저탄소 녹색정주환경 항목 설정), 주민참여형 추진방식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09년 평가서에서 지적한 바대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사업 방향 설정이 요구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프로그램 개발(모든 항목을 나열한 종합계획이 아닌 전략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요구됨
- 본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시기가 되었으므로, 이제 향후 농촌공간의 정주체계를 예상하여 마을종합개발, 거점면소재지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농어촌뉴타운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등 다양한 농촌개발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심도 있는 대책이 요구되는 바임

3-3-4-3	도서개발촉진사업(행정안전부)
---------	-----------------

담당부서	지역발전과	담당자	노형수
전화번호	02-2100-3798	이메일	sh2988@korea.kr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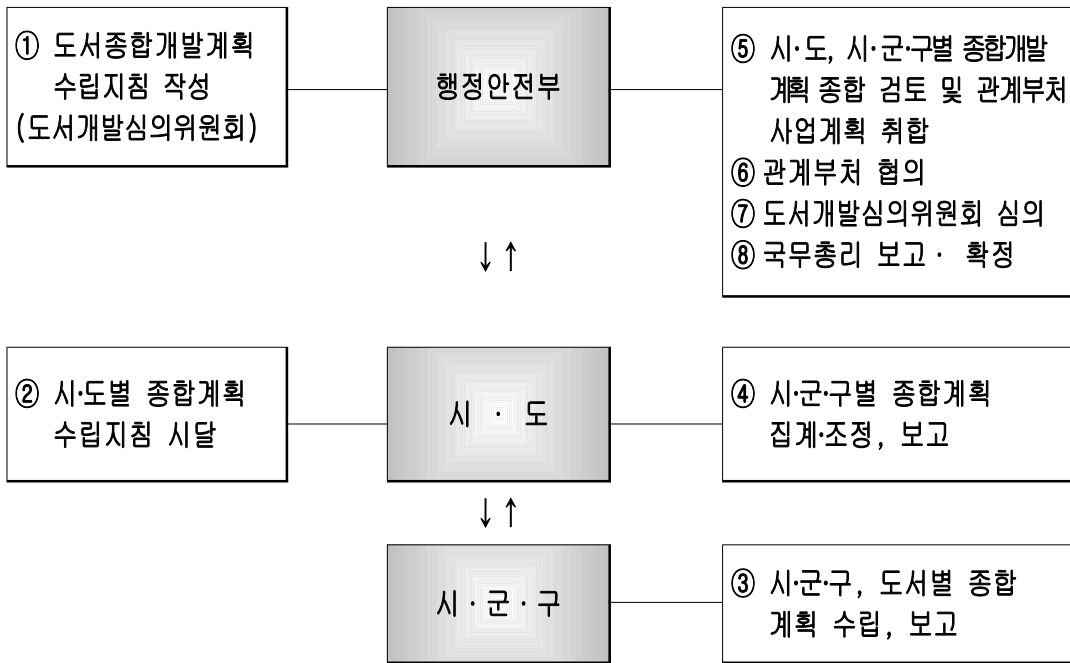
- 추진근거 : 도서개발촉진법('86. 12. 31 제정)
- 사업목표
 - 지리적 여건으로 낙후된 도서지역에 대하여 주민 편의시설 및 소득증대 시설확충을 통한 도서민 정주여건 개선으로 「매력있고 살기좋은 섬」 창출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8 ~ 2017(제3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
 - ※ 제2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98~'07) 계획 완료
- 사업주체 : 지자체(37개 시군구)
- 사업비 : 17,874억원(국비12,346, 지방비5,291, 민용자237)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국비 70%, 지방비 30%)
- 사업내용 : 1,407건
 - 연육·연도교 사업 : 10개소(신규 2, 계속8)
 - 유형화·특성화 종합계획 : 260건
 - 관광자원형 166건, 문화유적형 3건, 농업자원형 14건, 수산자원형 63건, 체험관광형 14건
 - 기타 일반시설(생활·생산·문화·환경위생·생활안전시설 등) : 839건

○ 시행방법

<그림-1> 도서개발계획 수립절차



- 계획수립지침 및 기준의 시달(행정안전부 장관)
- 계획의 수립(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개발대상도서에 대한 시·군계획(안)을 집계·조정, 시도계획(안)을 수립하고, 그 계획(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 계획의 확정(행정안전부장관)
 - 계획(안)에 대한 부처협의
 -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
 - 국무총리 보고후 확정
- 사업계획의 통지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 통보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79		4,926			2,151		7,076
'06	299		900			386		1,286
'07	270		1,001			429		1,430
'08	243		954			409		1,363
'09	226		1,007			432		1,439
'10	241		1,064			495		1,558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801			1,201		4,002
'06	299		900			386		1,286
'07	270		1,001			429		1,430
'08	243		954			409		1,363
'09	226		1,007			432		1,439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연육·연도교사업 추진실적 : 30%(실적)/30%(계획) = 100%
 - 제3차 도서종합개발계획 추진실적 : 7.7%(실적)/7.7%(계획) = 100%
 - 연육·연도교 및 제3차 도서종합개발계획이 차질없이 완료됨에 따라 계획대비 100%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도서종합개발 사업	연육·연도교추진실적	종합계획대비 연차별추진실적	%	30	30	100
	제3차도서종합개발 계획추진실적	종합계획대비 연차별추진실적	%	7.7	7.7	100

II. 평가결과

1. 총 평

- '88년도 제1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으로 시작되어 '09년 현재 제3차 10개년 계획 2년차로서, 그동안 도서지역의 SOC 확충 및 생산기반시설 확대로 도서지역의 낙후성이 상당히 해소되었다고 판단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5일제 확대 및 도시민들의 여가 패턴 변화 등으로 도서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수요 증대와 청정수산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SOC의 지속적인 확충과 더불어, 이제는 도서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발굴을 위한 각종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도서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유도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직접적인 기여도를 높여야 할 것임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해 도서지역의 생산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으로 생활환경 개선이 상당히 진행되어 도서지역의 지속적인 소득 증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살기 좋은 삶터로 만들어지고 있음.
- 제2차 10개년 계획에서는 소규모 분산투자로 추진되던 종래 사업 방식에서 도서 여건과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유형화 특성화 종합계획”으로 전환하여 선택과 집중에 의한 개발효과 제고를 도모하고 있으며,

- 특히 관계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도서지역에 투자되는 사업간 연계 강화 및 유사 중복사업 방지 등 사업추진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판단됨.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지방자치 정신을 충분하게 반영하여 중앙 부처에서는 사업계획 및 추진시 필요한 지침 및 기준을 제시하고, 지자체에서 해당 도서지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가고 있음.
- 도서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농림수산물부와 사업의 중복성 및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09년도 사업에서는 소규모어항 시설 사업은 농식품부의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일원화 해 나아가는 등 중복 투자 방지 및 사업의 시너지 효과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판단됨.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도로 등 기초 인프라시설 확충 계획에 따라서 정주여건이 상당히 개선되었으며, 농수산물 가공시설 등 생산기반시설 9건에 8,967백만원이 투자되어 도서주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고 봄.
- '09년 사업 만족도를 살펴 볼 때, 사업인지도 87%, 추진성과 만족도 92%, 생활여건 개선 정도 91% 그리고 지역발전 기여 정도 86%로 비교적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소득증대 기여 정도는 81%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여 주고 있다는 것은 도서종합개발에 있어서 주민들의 바램은 소득사업 발굴 및 육성 지원에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할 것임.

3. 개선방안 등

- 도서지역이라는 특성상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10년도 사업비(44,100백만원)가 전년도('09년도 사업비 100,734백만원)에 비해 50%이상 감소되었다는 점은 도서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국토부 예산 54,398백만원)
- 또한 3차 계획의 중심이 연육교 및 연도교 사업 확대에 치중하면서 도서지역의 기초생활 인프라 및 도서주민 소득증대 사업이 다소 소홀히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
- 사업비가 1천억원 대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도서진단체도 및 평가관리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바,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되어야 할 것임

3-3-5-1(계속)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문화체육관광부)
-------------	--------------------------

담당부서	도서관진흥팀	담당자	임혜은
전화번호	02-3704-2739	이메일	helim20@korea.kr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사업목적
 - 종합정보센터로서의 공공도서관을 육성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국민 문화향수권을 신장하고 농어촌의 공공도서관 건립을 특별 지원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도모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사업목표
 - 2013년까지 농어촌공공도서관 총 260관 건립 목표
 - 추진근거 및 배경
 - 도서관법 제27조 (공공도서관 설치 등) 및 도서관법시행령 제17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특별법 제34조(농산어촌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 '새문화관광정책사업'('98), 농어촌발전종합대책('94)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5조(지역문화·관광의 육성), 제16조(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
 -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 일반회계('91 ~ '94)→특별교부세('95 ~'04)→균특회계('05 ~)→광특회계('10 ~)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4 ~ 계속
- 총사업비 : 억원('09년까지 지원예산액 : 144관 853억원)
- 사업규모 : 2013년까지 260관 확충
-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균특회계)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총 건립비의 80%, 최대 16억원)
- 지원조건 : 부지 및 지방비 확보
-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3. 연차별 추진계획

- 기본방향 : 2013년까지 260관 확충('09년말 현재 243개관 운영중)
- 매년 6개관, 96억원씩 국고 지원 계획
(※ 2005년도부터 균특회계로 편성됨에 따라, 지자체 실링내에서 자율편성에 의해 대상사업 및 사업비 확정)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72		465			589		1,054
'05	17		99			120		219
'06	13		99			137		236
'07	11		56			86		142
'08	14		97			144		241
'09	17		114			102		216

- 당초 매년 국고 96억원(80%), 지방비 24억원(20%)을 투자하여 6개관씩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균형발전특별회계('10년부터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로 사업비가 편성됨에 따라 국가에서 인위적으로 사업을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음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72		465			589		1,054
'05	17		99			120		219
'06	13		99			137		236
'07	11		56			86		142
'08	14		97			144		241
'09	17		114			102		216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7개도에 17개관 11,417백만원의 건립비를 지원할 계획이었고,
 - 계획에 따라 17개관 11,417백만원 건립비 지원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촌공공 도서관 건립지원	건립지원 도서관수	국고보조금 지원 도서관 수 파악	개관	17	17	100

II. 평가결과

1. 총 평

- 농어촌에 공공도서관 건립을 특별 지원함으로써 정보제공과 문화적 향유권을 제공하여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긍정적 사업임.
- 도서관이라는 물리적공간의 제공과 아울러 도서보급의 예산확보와 운영 및 관리계획 수립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되풀이 하여 지적되는 보조사업자인 지자체의 사업추진의 지연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 대책 마련이 요구됨.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사업추진 동기, 필요성, 사업목적 등은 매우 적절함.
- 광특회계예산에 따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상향식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지 소관 지자체에서 세부추진계획 및 하위 정책목표를 세우는 것은 매우 바람직함.
- 도서관이라는 물리적공간의 제공과 아울러 도서보급의 예산확보와 운영 및 관리계획 수립이 중요하므로 이에 점검이 필요함.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사업추진절차는 지자체-문화부-기획재정부-국회- 문화부-지자체로 이어지는 체계이므로 비교적 적절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률이 낮고 중앙부서의 관리 감독이 어려워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되고 있지 못함.

- 중간점검을 통해 이 사업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의 국고 보조금 이월 및 공사 지연을 해결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도서관 건립으로 인한 농촌 주민의 삶의 기여도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2013년까지 농어촌 공공도서관을 260개의 도서관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숫자의 양적 팽창보다는 숫자 목표를 줄이더라도 균형과 내실 있는 지원이 필요함.

3. 개선방안 등

- 지자체의 국고 보조금 이월과 공사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방비와 부지확보가 된 지자체에 우선적으로 교부하거나 사업 착공 후에 국고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3-5-5(계속)	지방문화원 프로그램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	----------------------------

담당부서	지역문화과	담당자	김효진
전화번호	02-3704-9553	이메일	hyojin21@korea.kr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목적 : 실버세대의 문화 역량 발굴·개발 및 문화를 매개로 다른 세대와 교류하고 지역과 연계하여 사회참여 및 봉사활동 등 적극적인 문화실천 프로젝트
- 추진방향
 - 실버문화세대에게 지역의 문화리더, 아마추어 아티스트의 역할부여
 - 지방문화원 역량강화를 통해 실버문화거점센터로 정착
⇒ 지방문화원을 통해 어르신 대상 다양한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137개소) /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 업무보고
- 사업추진 근거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4 ~ 계속
- 사업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원연합회
- 사업추진체계
 -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신청(한국문화원연합회 → 문화부)
 - 사업지원 공모 신청(지방문화원 → 한국문화원연합회)
 - 선정·지원 및 컨설팅(한국문화원연합회 → 지방문화원)
 - 사업시행 및 결과보고(지방문화원 → 한국문화원연합회)
 - 사업 최종보고 및 정산(한국문화원연합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주요 프로그램 :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학교 운영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61			61
'05	10개 프로그램				2			2
'06	50개 프로그램				10			10
'07	76개 프로그램				15			15
'08	100개 프로그램				15			15
'09	137개 프로그램				19			19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9	42			61
'05	10개 프로그램				2			2
'06	50개 프로그램				10			10
'07	76개 프로그램				15			15
'08	100개 프로그램				15			15
'09	137개 프로그램			19				19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전략 프로그램 운영 및 육성 지원 : 20개

(일자리연계형 5, 여가활용형 9, 세대소통형 5, 지혜활용형 1)

○ 일반 프로그램 운영 지원 : 117개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지방문화원 실버문화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수	사업실적 보고	개수	150	137	92

II. 평가결과

1. 총 평

- 본 사업은 실버세대의 문화역량을 발굴·개발하여, 문화를 매개로 세대교류, 지역사회참여, 봉사활동 등을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실버세대에게 지역의 문화리더, 아마추어 아티스트의 역할을 부여하는 사업으로 평가됨
- 지방문화원의 역량강화를 통해 이를 실버문화의 거점센터로 정착시키려는 창의적 사업으로 인식됨
- 그러나 본 사업이 이에 참여하는 일부 지역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는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이를 통한 지역발전 효과와 전체 실버세대의 삶의 질 개선에 대한 효과는 미약한 것으로 판단됨
- 무엇보다 본 사업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지방문화원에서 운영되는 여러 프로그램 중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아 본 사업이 지향하는 지방문화원 전체가 실버문화의 거점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바임. 또한 지방문화원이 그간 젊은 세대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원 전체를 과연 실버문화의 거점으로 하는 것이 지역문화 창달의 올바른 방향인지에 심사숙고가 필요함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자체평가서에서 제시된 사업추진 동기, 계획비전, 계획의 구체성 등의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된 것으로 판단됨
- 지방문화원을 실버문화 거점기관으로 특화하려는 정책방향 하에 '09년 문화체육관광부 생활문화공감정책 주요과제, '09년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업무보고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특히 생산적 실버문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노인일자리 창출과 연계 추진한 점과 컨설팅 및 모니터링 요원을 배치하여 각 권역별, 사업유형별 현장자문 및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됨.
- 프로그램별로 매분기 워크숍을 개최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려고 노력한 점은 긍정적이나, 현장 문제해결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환류체계가 불분명하고, 워크숍에 대한 구체적 성과가 제시되지 않아 형식적 워크숍이 되지 않았는지 우려되는 바임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전국 227개 문화원 대상 공모를 통해 사업추진 역량 및 기초기반 구축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 총 137개(전략20, 특성117)의 문화원을 선정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컨설팅 및 추진과정 보고 등을 추진한 점, 그리고 전략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성과 및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매뉴얼을 제작 보급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문화원 협력자 및 협력기관을 대상으로 참여활동의 회수를 지표로 설정하여 사업집행 수준을 평가한 점은 긍정적이나, 참여활동의 회수가 본 사업의 궁극적 목표에 부합하는 지표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는 바임. 노인일자리 창출, 세대교류 효과(프로그램 참여 젊은 세대 참여인원 등), 참여자 및 수혜자의 질적 만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보건복지부 '09년 노인일자리사업'에 많은 지방문화원이 수행 기관으로 선정되어 예산지원을 받은 점도 고무적인 성과로 평가되는 바임. 그러나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의 효과와 일자리의 질적 수준에 대한 세부적인 점검과 향후 확대방안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평가됨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당초 제시한 계획(150 프로그램)대비 달성(137개)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실버문화 프로그램의 경우 총 137개 프로그램에 약5,000명, 전체적으로는 연인원 273,200명의 인원이 참여한 점은 소기의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본 사업의 성과지표로서 지방문화원 프로그램 수를 제시한 것은 형식적 성과에 불과하고 참여인원 증가율, 일자리 창출효과, 삶의 질 개선 효과, 참여자 만족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지표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평가서에는 한 개만을 제시할 지라도 자체적으로 여러 지표를 사용하여 사업은 진단하는 것이 필요함)

3. 개선방안 등

-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양적, 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개발이 요구되며, 공모방식의 사업특성을 활용하여 초기부터 다양한 아이디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창의적인 정책기획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특히 본 사업은 물리적 지역개발사업이 아닌 창의적 소프트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문화원, 문화원협회의 창의를 최우선으로 유인할 수 있는 정책적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형식적인 프로그램에서 탈피하여 대상층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며, 기획 단계부터 수요자 중심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타 지역문화 프로그램에 비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이 요구됨
- 자체평가에서 제시한대로 프로그램 수행 지방문화원과 연계된 문화전문가를 양성하여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역내 문화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
- 무엇보다 지역내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특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접근(예시: 찾아가는 프로그램 등)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3-3-5-6(계속)	지방테마과학관 건립지원 (교육과학기술부)
-------------	---------------------------

담당부서	과학기술문화과	담당자	이병수(사무관)
전화번호	2100-6634	이메일	bslee@mest.go.kr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과학관의 확충을 통해 과학문화를 확산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과학 생활화·대중화에 기여
- 지방과학문화시설의 확충을 통한 지역주민의 과학기술 체험기회를 확대하여 지역간 과학문화 격차해소 및 과학기술 균형발전을 촉진
- 지역 자연환경 및 문화시설과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4년부터 계속
 - 추진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과학기술진흥기금)
 - 과학관육성법 제17조(경비의 보조등)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 보조
 -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조건 : 건립비 50%이내(최대 10억원) 보조
 - 사업내용
 - 과학관당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건립비의 50%(최대 10억원)을 단계적(2~3년)으로 지원
- ※ 지자체 수요조사 및 평가를 통해 지원(선정심의위 구성·운영)

3. 연차별 추진계획

- '04년부터 '09년까지 총271억원을 34개 지방테마과학관에 지원
- '09년 이후 매년 8개(계속, 신규)내외의 지방테마과학관에 40억원 지원 예정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 등			
합계					238	381		629
'05	10개소 (신규 4, 계속 6)				44	45		99
'06	10개소 (신규 3, 계속 7)				60	110		170
'07	12개소 (신규 6, 계속 6)				54	106		160
'08	12개소 (신규 6, 계속 6)				40	60		100
'09	10개소 (신규 3, 계속 7)				40	60		100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38	825		1,063
'05	10개소 (신규 4, 계속 6)				44	180		224
'06	10개소 (신규 3, 계속 7)				60	197		257
'07	12개소 (신규 6, 계속 6)				54	188		242
'08	12개소 (신규 6, 계속 6)				40	136		176
'09	10개소 (신규 3, 계속 7)				40	124		164

※ 테마과학관 건립지원은 2~3년 소요되는 건설사업으로 총건립비로 관리되어, 연도별 지방비는 연도별 국비 투입 비율로 산출함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09년 8개(신규 3, 계속 5)를 목표로 추진하여 10개(신규 3, 계속 7)를 달성
 - 전년대비 지원 수요가 크게 증가('08년 17개 125억 → '09년 25개 144억)
 - 현장 점검·평가를 통해 사업 집행실적이 저조한 계속사업에 대하여 실제 집행이 가능한 규모의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건립지원 수 증가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지방테마과학관 건립지원	건립지원수	지원실적 (계수통계확인)	개소	8개	10개	125

II. 평가결과

1. 총 평

-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생활친화적 과학문화환경을 조성하고 자연환경과 문화시설을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민에게 과학문화의 체험기회를 확산하기위한 사업목표는 긍정적임.
-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지원 사업비는 과학관 설립예산으로는 매우 영세하므로 지원의 효율성과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움.
- 지원사업에 대한 콘텐츠와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필요함. 만족도 조사도 없이 삶의 질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체평가를 하는 것은 지나쳐 보임.

2.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사업추진동기와 과학관의 필요성 그리고 사업목표는 긍정적이나 사업지연의 문제가 되는 부지확보에 대한 지자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과학관 건물 못지않게 전시할 전시물의 종류와 내용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 마련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과제선정이나 사업자문, 사업관리 등의 사업추진체제에 부지확보나 전시콘텐츠, 관리운영 예산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나 절차를 비교적 잘 수행하고 있음.

- 사업지원 후 진행중인 과학관의 진행율과 완성된 과학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필요함.
- 지자체의 사업변경, 부지예산 미확보 등으로 사업 일정이 지연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나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함.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삶의 질에 대한 기여도를 알아보기 위한 만족도 조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현재 이 사업지원으로 운영 중인 과학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진행할 대상에 반영할 수 있어야함.
- 아울러 건립지원한 테마과학관의 중앙, 지방의 사업진행관련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상의 문제나 성과관리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3. 개선방안 등

- 사업대상 선정시 지자체의 관리운영 예산, 부지확보, 전시 콘텐츠 확보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할 것임.
-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사업의 경우와 건립중인 사업대상도 반드시 사업의 진척도, 예산의 집행실적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담당부서	산림환경보호과	담당자	김관중(주무관)
전화번호	042-481-4249	이메일	pj6736@forest.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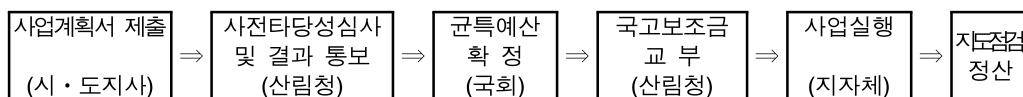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사업 목적
 - 수목유전자원의 현지 외 보전기능을 강화하고 국가식물자원의 수집·증식·보전·관리 및 자원화를 위한 연구와 국민의 자연학습장 제공
 - 산림사료·생물표본의 영구 보존·전시와 홍보로 산림에 대한 인식제고
- 추진 근거
 - 「산림기본법」 제19조(수목원의 보호 및 육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산림생물 다양성의 보전)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사업비 등의 보조)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2년 ~ 계속
-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 추진체계



- 지원형태 및 조건 : 지자체보조, 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비 및 조성기간
 - 지방수목원 : 60억원, 4년(1년 설계, 3년 시공)
 - 산림박물관 : 40억원, 3년(1년 설계, 2년 시공)

- 추진내용 : 국가식물자원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수집·증식 및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수목원·박물관 조성

3. 연차별 추진계획

- 총사업비 : 1,918억원('09년까지 투자액 : 1,527억원)
- '09년 사업규모
 - 지방수목원 조성 : 22개소, 130억원
 - 산림박물관 건립 : 7개소, 31억원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0		795			795		1,590
'05	23	-	126	-	-	126	-	252
'06	26	-	155	-	-	155	-	310
'07	25	-	165	-	-	165	-	330
'08	27	-	188	-	-	188	-	376
'09	29	-	161	-	-	161	-	322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0		795			795		1,590
'05	23	-	126	-	-	126	-	252
'06	26	-	155	-	-	155	-	310
'07	25	-	165	-	-	165	-	330
'08	27	-	188	-	-	188	-	376
'09	29	-	161	-	-	161	-	322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수목원 조성 및 산림박물관 건립	식물유전자원 누적 확보량	공립수목원의 식물유전자원 확보량 평균	종	1,700	1,757	103

II. 평가결과

1. 총 평

- 수목유전자원의 현지 외 보전기능과 국가 식물자원의 수집, 증식, 보전, 관리 및 자원화를 위한 연구와 국민의 자원학습장 제공, 산림사료 및 산림생물표본의 영구적인 보존/전시/홍보를 통해 산림자원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사업의 목적은 매우 긍정적임.
- 사업의 강점과 기회요인 그리고 약점과 위협요인을 분석하여 강점과 기회요인은 강화하고 약점과 위협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과 각종 의견을 수렴하고 수목원 정책수립 시 다양한 조사 및 통계를 활용하고 각종 정책을 반영한 것은 매우 합리적임.
- 수목원 코디네이터, 생태숲 네트워크등의 제도 운영은 매우 효과적으로 판단됨.
-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해 자체 평가한 내용대로 수목원의 자원 확보는 지속적으로 노력해야할 것임.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사업추진동기 및 필요성, 사업목적 등은 바람직하고 타당함.
-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추진계획의 현실성, 문제해결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사업내용에 방문객을 고려한 교육, 체험, 휴게 등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사업추진체계와 방식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중간모니터링과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임.
- 산림청,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되는 사업추진 절차에 있어 국비와 지방비로 진행되는 대부분의 사업이 그렇듯이 이 사업 또한 지자체의 행정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축박과 예산이월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사업추진계획과 사업추진실적이 각 사업별로 잘 추진되고 있고 그 내용이 잘 정리 되어 있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수목유전자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 증식, 보전, 및 자원화와 연구 등에 대한 성과와 산림사료, 산림생물 표본의 영구보존, 전시, 홍보를 통한 인식제고 등에 대한 성과가 있었음.
-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과 휴식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농촌이나 산촌의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
- 수목자원 확보에 대한 방법 수립과 노력이 필요함.

3. 개선방안 등

- 지자체의 사업지연과 예산이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담당자	김 훈
전화번호	3704-9857	이메일	kh4086@korea.kr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사업목적

- 공공 체육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자체의 읍·면 단위에,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균형있는 체육 인프라 확충
- 상대적으로 체육시설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생활체육 및 주민 화합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농간 격차 완화 등 농어촌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추진방향

- 2006~2010년까지 시·군 지자체 읍·면지역에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총 33개소 지원
- 지역 균형발전(도·농간 격차 완화)을 위해 공공 체육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지역적 특성, 수요자의 선택권 등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복합체육시설 지원

○ 사업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제1항 2호
※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에 사용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5조(지역문화·관광의 육성), 제16조(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
-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국민건강증진 방안(대통령 지시사항)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년 ~ 2010년 까지 시범사업
 - ※ 2010년까지 시범사업 후 계속 시행여부 결정 예정
- 총사업비 : 3,750백만원('08년도까지 기투자액 : 11,250백만원)
- 추진내용 : '06~'09년까지 28개소 지원(17개소 준공, 11개소 추진중)
- 지원형태 : 자치단체 자본보조(국민체육진흥기금)
-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시·군)
- 추진체계

①	지원계획 안내, 공고	○ 지원계획 공고 / 1월초 (문화체육관광부⇒시·도⇒시·군·구)
②	신청서 접수 및 정량평가	○ 시·군·구 기초지자체 지원신청서 접수 / 1월말 (시·군·구⇒시·도⇒문화체육관광부)
③	선정위원회 평가 실시	○ 정성 평가 및 최종평가 결과 정리 / 2월초
④	지원대상 확정·통보	○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대상 확정 및 통보 / 2월중 (문화체육관광부⇒시·도, 공단)
⑤	협약 체결 및 기금 교부	○ 선정 확정된 기초자치단체와 협약체결 / 3월~ (기초지.자.체⇔공단) ○ 기금 교부 및 사업 수행

- 사업비 규모 : 개소당(기준사업비 : 7.5억원) 기본 지원 내역
 - 국민체육진흥기금 및 지방비(매칭펀드)로 구성
 - 지방재정자립도에 따른 기금 차등 보조율 적용

전년재정자립도 (해당 시·군)	국민체육 진흥기금	지 방 비	기금보조율	비고
70% 이상	2억원	5.5억원	26%	부지매입 및 추가사업비 지자체 부담
50% ~ 70%	3억원	4.5억원	40%	
30% ~ 50%	5억원	2.5억원	67%	
30% 이하	6억원	1.5억원	80%	

○ 지원시설

- 지역 특성, 선호도 등을 감안하여 지원모델 3가지("A", "B", "C" 형) 중 지자체가 자율 선택하여 건립 추진

【지원모델】

"A"형	⇒	레크레이션센터, 커뮤니티센터, 자기운동센터, 아쿠아센터, 다목적구장(노인 건강체육시설) 등 (연면적 1,297㎡- 본건물 350㎡, 다목적구장 947㎡)
"B"형	⇒	커뮤니티센터, 자기운동센터, 아쿠아센터, 다목적구장(노인 건강체육시설) 등 (연면적 1,228㎡ 본건물 280㎡ 다목적구장 948㎡)
"C"형	⇒	레크레이션센터, 실내체육관, 소그룹실, 다목적구장(노인 건강체육시설) 등 (연면적 1,482㎡ 본건물 564㎡ 다목적구장 918㎡)

【시설내용】

- 레크레이션센터 : 소공연 및 모임 가능 소규모 다목적 체육활동 공간
- 커뮤니티센터 : 온돌형 거실, 소파, 휴식 및 오락 가능
- 자기운동센터 : 지역여건에 맞는 소규모 운동 프로그램 공간
- 아쿠아센터 : 소도시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찜질 사우나 시설
- 체육시설 : 게이트볼장 등 노인계층 선호시설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지원 갯수)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국민체육진흥기금			
합계	28				15,000	5,700		20,700
'05	-	-	-	-		-	-	-
'06	7	-	-	-	3,750	1,200	-	4,950
'07	7	-	-	-	3,750	1,500		5,250
'08	7	-	-	-	3,750	1,500		5,250
'09	7	-	-	-	3,750	1,500	-	5,250

* 세부 지원사업 별첨 참조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8				15,000	5,700		20,700
'05	-	-	-	-		-	-	-
'06	7	-	-	-	3,750	1,200	-	4,950
'07	7	-	-	-	3,750	1,500		5,250
'08	7	-	-	-	3,750	1,500		5,250
'09	7	-	-	-	3,750	1,500	-	5,250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

- 커뮤니티센터, 자기운동센터, 아쿠아센터, 다목적구장 등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선호하는 각종 생활체육시설 및 건강관련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민체육기금 보조금이 확정된 이후 공모사업의 형태로 사업시행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당초 목표치(7개소 3,750백만원) 대로 100% 지원 하였음
- 또한, 지원된 사업들은 건립공사이므로 현재 설계이후 공사를 착공 하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조성 지원	지원 개소수	지원 실적	개	7	7	100
	지원액	기금집행액 실적	억원	37.5	37.5	100

II. 평가결과

1. 총 평

- 공공체육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읍, 면지역에 농어촌 체육 복합시설을 설치하여 체육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도·농간 격차 완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지역적 특수성과 수요자 선택권을 반영하여 체육시설을 지원한다는 사업 목적은 바람직함.
- 하지만 동 사업은 지자체의 부지확보, 예산부족 및 집행의 문제로 사업지연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지자체,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농어촌복합체육시설지원지침에 따라 지역에 맞는 시설이 설치되도록 하고 설치 후는 운영주체를 주민자치위원회에 맡기는 것은 바람직함.
- 농어촌의 현실을 고려하여 사업규모의 확대를 방지하고 소규모의 체육시설을 지원하도록 한 것은 타당함.
- 고령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와 차별화된 소규모 체육 시설들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중간점검을 위한 설문조사나 의견수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의 부지확보, 예산부족 및 집행의 문제로 인한 지연에 대해 지속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함.

3. 개선방안 등

- 중간 모니터링과 의견수렴은 사업진행상의 문제점 등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는 데 의의가 있음. 현장조사 및 워크숍 등을 통해 발굴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은 지자체의 부지확보, 예산부족 및 집행의 문제로 사업 지연이 반복되고 있음. 지자체,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고령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와 차별화된 소규모 체육 시설들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담당부서	정보문화과	담당자	이동호 사무관 안재현 주무관
전화번호	02-2100-2994	이메일	koreahn@korea.kr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산어촌 정보이용환경 조성 및 주민교육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 정보화를 통한 상거래 지원으로 주민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1년 ~ 계속
- 사업규모 : 기 조성된 358개 마을 운영 활성화 및 연차별 신규 조성
- 시행방법 : 직접수행, 자치단체 보조(Matching Fund, 50%)
- 사업 내용
 - 마을정보센터, 인터넷 이용환경 구축 등 정보이용환경 조성
 - 마을별 홈페이지 및 전자상거래 등 정보콘텐츠 구축·운영
 - 지역 특산물 판매, 체험상품 운영을 통한 주민 소득증대
 - 정보화마을 운영성과 평가를 통한 수준진단 및 차등 관리
 - 마을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지원
 - 정보화마을 지도자·운영전문가 육성 및 주민 정보화 교육
 - 정보화마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등
 - 방송, 일간지, 잡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정보화마을 브랜드 구축 등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마을)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운영	조성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 계				6	339		350		695
'05	259	19	-	-	35	-	56	-	91
'06	278	18	-	-	62	-	54	-	116
'07	304	32	-	1.5	84	-	105	-	190.5
'08	338	30	-	4.5	88	-	92	-	184.5
'09	358	10	-	-	70	-	43	-	113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마을)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운영	조성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 계				6	341.1		355.5		702.6
'05	259	19	-	-	35.3	-	55.7	-	91
'06	278	26	-	-	62.3	-	54.3	-	116.6
'07	304	34	-	1.5	85.4	-	105.6	-	192.5
'08	338	30	-	4.5	88.1	-	92.9	-	185.5
'09	358	12	-	-	70	-	47	-	117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정보화 마을조성	마을당 평균 전자 상거래 판매금액(백만원)	온라인 총 판매액/마을수 ※온라인 판매금액 500만원 이상 발생한 마을만 집계	백만원	50	51	102
	일반국민·주민 참여도	마을홈페이지 총 게시글수/마을수	건수	6,500	7,119	109

II. 평가결과

1. 총 평

- 농산어촌 정보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주민교육을 통하여 도농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를 통한 상거래지원으로 주민의 소득을 증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사업임.
- 그동안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립운영체계 수립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한 점이 높게 평가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화마을의 제반 운영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운영에 대한 추가비용이 계속 발생하는 등, 지속가능한 정보화 마을 운영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중앙, 광역·기초 자치단체 및 정보화마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한 효과적인 사업추진 체계를 확립한 것은 적절함.
- 중앙정부 중심의 지원·협조체계로부터 점진적으로 자치단체와 마을의 역할을 강화해가고 있음.
- 지금까지의 사업이 마을의 정보화에 비중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정보의 수준과 질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정보화 사업의 주된목표와 내용을 소득증대와 연계했다면 향후에는 의료, 문화, 교육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정보화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다양한 방법과 노력을 시도한 것은 매우 긍정적임.
- 주민의 정보 활용 능력 강화 및 정보이용생활화 향상을 위해 상근자를 배치한 점은 바람직하나 장기적으로 위탁자가 아닌 주민이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우수 마을과 부진 마을에 대한 차별적인 대응책과 실천이 필요함.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정보화마을에 대한 이용 만족도와 주민·공무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정보화 조성 위주의 사업에서 운영 내실화에 중점을 둔 것은 고무적임.
- 정보화 자체에 대한 성과보다는 정보의 수준과 질에 대한 성과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3. 개선방안

- 우수마을과 부진마을에 대한 평가기준을 분명히 하여 그에 따른 상벌 체도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함
- 운영전문가 육성 및 자립역량 강화는 마을 주민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담당부서	정보화담당관실	담당자	서봉열 사무관
전화번호	02-500-1687	이메일	bysuh@mifaff.go.kr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어업경영체가 농어업 현장에서 손쉽게 적용·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IT솔루션 개발·보급으로 농어업경영체 경영 효율화와 생산성 제고
- 생산, 유통 등의 경영 자동화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등으로 농어가 소득을 향상시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9년 ~ 계속
- 사업규모 : 농어업경영체 정보화 사업 강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 농어업경영체 정보시스템 표준 모듈 설계, IT솔루션 2종 기능개선 실시
- 사업비 : 1,157백만원
- 사업시행주체 : (재)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 지원형태 및 조건 : 민간경상보조, 국고100%
- 추진내용
 - 농어업 경영체 정보화 지원강화를 위한 ISP 연구용역 실시
 - 농어업경영체 정보시스템 표준 모듈 아키텍처 상세설계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
 - 농어업인들이 스스로 경영진단이 용이한 품목별자가진단시스템 구축

- 농업인 홈페이지 1,706개 구축 지원('99~'04)
- 농업법인 31개소 컨설팅 및 23개소 정보시스템 구축('05~'07)
- 농업인이 직접 홈페이지에서 회원관리, 상품·콘텐츠 등록·수정 등이 가능하고 전자상거래 등을 자유롭게 신청·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기존 1,706개 농업인 홈페이지 지원 포함)
- 사용자의 수준에 맞게 초급부터 고급까지 선택가능한 고객 맞춤형 생산경영정보시스템으로의 기능개선

3. 연차별 추진계획

<'09년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	3,919	-	-	-	400	-	4,319
'05	홈페이지운영활성화, 4개 정보시스템	459	-	-	-	-	-	459
'06	홈페이지운영활성화, 3개 정보시스템	260	-	-	-	220	-	480
'07	홈페이지운영활성화, 16개 정보시스템	315	-	-	-	180	-	495
'08	홈페이지운영활성화, IT솔루션 2종 개발	514	-	-	-	-	-	514
'09	6개 APC 생산유통정보시 스템 구축, APC 표준모델 개발	1,157	-	-	-	-	-	1,157

<'09년도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	1,489	-	-	-	342	-	1,831
'05	홈페이지운영활성화, 4개 정보시스템	413	-	-	-	-	-	413
'06	홈페이지운영활성화, 3개 정보시스템	260	-	-	-	172	-	432
'07	홈페이지운영활성화, 16개 정보시스템	314	-	-	-	170	-	484
'08	홈페이지운영활성화, IT솔루션 2종 개발	502	-	-	-	-	-	502
'09	ISP연구용역 및 APC표 준모델 상세설계 IT솔루션 2종 기능개선	1,157	-	-	-	-	-	1,157

- '08년 기능 개선된 통합정보시스템의 9개 표준모듈을 통해 유통 경영체 업무형태 및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통합정보시스템 추가 구축(6개소) 및 기능개선(대상 10개소) 실시계획 이였으나, 사업의 효율성 및 지속성을 고려하여 사용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모든 경영체가 손쉽게 접속하여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농어업경영체정보화지원사업의 고객만족도는 시스템 활용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의 생산·경영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신규시스템에 대한 고객지원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고객만족도가 목표치보다 높게 나타남
 - 하지만, '09년 시스템을 오픈하고 추가 기능개선을 함에 따라 시스템 활용에 미흡한 사용자가 많아 전체적인 업무효율성에는 목표치에 달성하지 못함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업경영체 정보화지원사업	고객만족도(점)	7등급 척도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점	70	76.3	109
	생산경영정보시스템 사용에 따른 업무효 율성 향상도(%)	업무처리시간(도입전 - 도입후) / 업무 처리시간(도입전) × 100	%	29.5	29.6	100

II. 평가결과

1. 총 평

- 세계적인 IT기술을 농어업에 접목하여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농어업인들의 생산·경영·유통 업무에 필요한 IT 솔루션을 보급·지원함으로써 생산성 및 업무 효율성을 개선하여 농어업경영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음
- 농어업경영체정보화사업의 고객 만족도 결과로 볼 때 109%달성으로 농어업인들이 본 사업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 IT 솔루션 활용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더욱이 본 사업에 의해 제공되는 IT 솔루션을 활용할 경우에 발생하는 문의 및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대응하고 해결함으로써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있다고 판단됨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현재의 농어업 여건은 내외부적인 급속한 환경변화로 상당한 시련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적인 IT기술을 농어업에 접목하는 것은 농어업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비록 농어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가 농어업경영체의 경쟁력 제고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생산·가공·유통을 통합하는 농어업 경영체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 볼 때 농어업경영체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화의 접목은 대단히 유익한 사업임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농어업경영체들이 경영 측면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생산대비 투자 비용에 대한 분석을 위해 제공된 IT솔루션으로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비교 분석하여 경영효율화 지표로 삼을 수 있는 손쉬운 품목별 자가진단 시스템 구축은 농어업경영체의 자립적인 토대를 유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임
- IT기술의 빠른 변화에 맞춰 기구축된 시스템의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유지 보수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생산경영정보 시스템의 현장 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많은 농어업경영체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생산경영정보시스템의 확산 및 현장 적용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 보급하여 자체 교육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홍보 및 확산은 다소 미흡한 실정임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농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한 IT솔루션 보급을 통해 농어가경영장부 기장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업무 효율화에도 기여하고 있는바, 생산성 증대 및 비용절감 등의 효과를 발생시켜 농어업경영체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 농어업경영체 정보화 지원사업 추진 결과 농어업경영체의 생산경영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규 시스템에 대한 고객지원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고객만족도(109%)가 목표치 70점을 넘어 76.3점에 달했다는 것은 사업목표에 적합하게 추진된 결과라고 판단됨

3. 개선방안 등

- 전자 매체의 다양화 및 소통 수단의 편리성이 날로 향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 구축된 경영정보시스템을 기존 방식과 더불어 PDA 및 모바일 환경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농어업경영체의 자발적인 투자를 통한 맞춤형 업무 프로세스 개발에 따른 인센티브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08년도와는 달리 '09년도 사업이 농어업경영체정보화 지원사업으로 확대된 취지를 살려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임
- 2만 불 시대에 접어들면서 소비자들의 안전 농산물에 대한 욕구와 기대가 큰 만큼 소비자들이 손쉽게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 보급하는데도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

담당부서	수산개발과	담당자	김병욱 사무관
전화번호	02-500-2333	이메일	- @ mifaff.go.kr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어촌지역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화 인프라 구축과 정보화 교육 실시(목표 : '11년까지 어촌지역 정보화수준 : 65%, '08년 57.9%)
- 추진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2조(농어업 및 농어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제2항(농산어촌의 정보화 촉진)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5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등)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0년 ~ 계속
- 총사업비 : '09년까지 기 투자액 71억원
- 사업주체 : 농림수산식품부
- 추진체계

기관명	역할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 총괄 - 원격영상시스템 운영 - 전국 어업인 정보화능력경진대회 개최
수산인력개발원	- 원격영상교육 계획수립 및 추진
지자체 (지방수산사무소)	- 어업인 정보화 집합교육 실시 - 지역내 어업인 정보화능력경진대회 개최

○ 사업내용

- 어업인 정보활용능력 배양을 위한 정보화교육 실시
 - 원격영상교육, 집합교육, 현장방문교육 등
- 어업인 정보 활용기회 확대를 위한 정보화인프라 구축
 - 원격영상시스템 구축·운영, 어업인 정보화능력경진대회 개최, 어업인 활용 웹사이트 및 콘텐츠 개발

3.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명, 개소)

구 분	'08까지	'09	'10	'11	'12
원격영상시스템 운영	31개소	33	33	33	33
어업인 정보화교육(누적)	98,000	103,000	108,000	113,000	118,000
어촌정보사랑방 운영	493개소	493	493	493	493
어업인 정보화경진대회	5회	6회	7회	8회	9회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일반회계)	기금등			
합계		28.2		14.3			42.5	
'05	7,000명(31개소)	6.9					6.9	
'06	//	7.0					7.0	
'07	//			7.1			7.1	
'08	//			7.2			7.2	
'09	5,000명(33개소)	7.3					7.3	
'10	//	7.0					7.0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9		2			35.5	
'05	14,155명(31개소)	6.9					6.9	
'06	9,966명(31개소)	7.0					7.0	
'07	10,323명(31개소)			7.1			7.1	
'08	8,316명(31개소)			7.2			7.2	
'09	5,929명(31개소)			7.3			7.3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성과지표 : 어업인 정보화교육, 정보화사업 활성화 정도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디지털어촌 구축사업	어업인정보화교육	교육인원	명	5,000	6,087	121.7
	정보화활성화정도	활성화정도	%	81.1	84.1	103.7

* 디지털어촌구축 연도별 성과지표¹⁾

(기존)

지표 구분	가중치소계	지표명	가중치	연도별 목표값				
				'07	'08	'09	'10	'11
계	100%	정보화활성화정도	100%	64.6%	72.8%	81.1%	89.6%	100%
효율성 제고	30%	정보화교육 인원수(누계)	30%	16,996	23,966	28,966	33,966	39,000
이용 활성화	40%	SW보급 건수	12%	200	300	500	700	1,000
		홈페이지방문자수	16%	39,000	40,000	42,000	45,000	50,000
		어촌사랑방활성화	12%	493	493	493	493	493
고객 만족도	30%	수강생 강의만족도	30%	3.7	3.9	4.1	4.3	4.5

※ 성과지표변경

○ 사유 : 시스템 활성화 차원에서 “바다로 21”을 폐지하고 “행복해”(’09.5) 사이트로 변경 오픈

“바다로21”은 SW 다운로드 방식이었으나, “행복해”는 웹페이지 사용자방식이므로 SW보급건 수측정불가. 성과지표 SW보급건수를 삭제하고 가중치를 홈페이지 방문자수 16%→22%, 어촌 사랑방활성화를 12%→18% 상향조정

(개선)

지표 구분	가중치소계	지표명	가중치	연도별 목표값				
				'07	'08	'09	'10	'11
계	100%	정보화활성화정도	100%	64.6%	72.8%	81.1%	89.6%	100%
효율성 제고	30%	정보화교육 인원수(누계)	30%	16,996	23,966	28,966	33,966	39,000
이용 활성화	40%	홈페이지방문자수	22%	39,000	40,000	42,000	45,000	50,000
		어촌사랑방활성화	18%	493	493	493	493	493
고객 만족도	30%	수강생 강의만족도	30%	3.7	3.9	4.1	4.3	4.5

1) '06년도에 정부업무평가 대비하여 객관적인 성과지표 도출을 위한 정보화사업 성과지표 연구용역 결과 내용임

II. 평가결과

1. 총 평

- 상대적으로 낙후된 어촌지역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본 사업으로 어업인들의 정보화 마인드 습득 및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됨
- 본 사업을 통해서 어업인 및 어촌의 정보활용 기회가 확대되고 정보화 활용능력이 배양되어 수산업 경쟁력 향상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돋움을 위한 초석이 되고 있음
- 다만 지리적 환경 및 어업 형태를 고려해 볼 때, 집합교육 및 영상교육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예외 없이 어촌 정보화의 접목은 어업인들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함
- 농어촌지역의 정보화 기반 및 수준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업경영에 정보활용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도시와 어촌간 정보격차 해소 및 상호 소통을 위해서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어업 관련 기관 및 시설 외에도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정보화 교육콘텐츠 교재를 활용하고, 농촌진흥청의 원경영상시스템과 연계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력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교육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임

-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09년도 어업인 정보화 교육은 5,000명 목표를 넘어 6,087에 달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원격영상시스템을 IP기반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어업인 교육정보 포털(“바다로21”에서 “행복해”)을 정비하는 등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어업인들의 정보화 욕구 충족과 도시민들과의 격차 해소를 위한 어업인정보화교육 등을 통한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어업 및 일상 생활에 필요한 정보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활용 능력 역시 크게 신장되고 있음을 확인
- '09년도 어업인정보화 교육은 실적 대비 121.7%를 달성하였으며, 어촌정보화사업 활성화 정도도 103.7%를 달성하는 등 사업 전반에서 성과를 달성하고 있음
-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66.4점을 받았다는 것은 교육의 시기 방법 및 내용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모색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됨

3. 개선방안 등

- 어촌이라는 특수성과 선상 생활의 장기화를 고려해 볼 때 교육생들에 적합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서 시기 및 방법론 측면에서 교육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어업인정보화능력경진대회의 경쟁 부문의 다양화를 통해서 정보화 확산 및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매력을 적극적으로 제공

담당부서	정보화담당관실	담당자	서봉열 사무관
전화번호	02-500-1687	이메일	bysuh@mifaff.go.kr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정보화 취약계층인 농업인에 대하여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지속 실시하여 도·농간, 산업간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
- 영농과 실생활에 농업정보활용 및 농업 정보화 능력 향상을 통한 경영 효율화를 유도하여 농가소득 창출 및 농업경쟁력 제고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8년 ~ 계속
- 사업규모 : '08년까지 농업인 69만명 정보화교육 실시
- 사업비 : '09년 2,646백만원
- 사업시행주체 : 농림수산정보센터, 기술센터, 농협, 농업계대학 등 교육전문기관 및 지자체
- 지원형태 및 조건 : 민간경상보조, 국고100%(단, 지자체, 농협은 50%)
- 추진내용 : 집합·방문·온라인교육 등 실시
 - 집합교육 : 컴퓨터·인터넷활용(생활밀착형), 영농정보, 홈페이지제작, 전자상거래 등(영농밀착형), 농업경영정보화(전문)
 - 방문교육 : 농업정보119서비스, 정보화선도자 선정활용
 - 온라인 교육(애그리에듀) : 농업인 교육 이수자에게 재택·반복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58개 과정의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 운영

3. 연차별 추진계획

- '98년부터 '09년까지 69만명 농업인 정보화교육 실시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05,300	17,185	-	-	-	2,668	767	20,620
'05	66,000	2,553	-	-	-	300	261	3,114
'06	61,000	2,766	-	-	-	400	222	3,388
'07	62,000	3,085	-	-	-	450	111	3,646
'08	62,000	2,940	-	-	-	450	73	3,463
'09	54,300	2,646	-	-	-	534	50	3,230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57,580	10,682	-	-	-	1,486	455	12,623
'05	67,112	2,217	-	-	-	271	185	2,673
'06	63,724	2,583	-	-	-	354	124	3,061
'07	63,511	3,002	-	-	-	411	87	3,500
'08	63,233	2,880	-	-	-	450	59	3,389
'09	48,858	2,646	-	-	-	534	50	3,230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업인 정보화교육	교육만족도	조사결과의 평균치 (5등급 척도)	점	4.15	4.25	102.3
	정보화역량점수	조사결과의 평균치	점	55	60.7	110.4

II. 평가결과

1. 총 평

- 농어업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인 스스로의 변화에 있으며, 현실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식 및 정보 습득은 갈수록 중요해 지고 있는 실정임
- 영농과 실생활에 적합한 정보 활용 및 능력 향상을 통한 경영 효율화가 이루어질 때 농어가 소득이 증대되고 농어업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음
- 자립적인 정보화농업인 육성을 위해 집합, 방문,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음
- 농업인홈페이지 전자상거래, 블로그 마케팅기법을 활용하여 농가 소득이 증가하고 있으며, 농어업의 소중한 가치 확산에도 유익한 사업이라고 판단됨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통계청의 「2007 정보격차 지수 및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정보 소외계층의 평균 인터넷 이용률은 '07년 12월 현재 40.1%로 계층 별로는 저소득 52.8%, 장애인 49.9%, 장노년 34.1%, 농어민 33.4% 순임
- 정보소외계층 중에서도 농어민의 인터넷 이용률이 가장 낮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교육(온라인, 방문교육, 집합교육 등등) 등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함.
-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 및 농업인의 정보화 마인드 고취를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격차가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타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이며 과감한 투자가 필요함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오프라인 교육의 경우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시군농업기술센터, 농협, 농업계대학 등 지자체 및 교육전문기관과 맞춤형 현장중심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온라인 교육 콘텐츠는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에 의해서 58개 과정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농어민들이 재택 및 반복 학습을 통해서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교육 수요자 스스로 정보화 수준 및 강의 프로그램 적합도를 측정할 수 있는 정보화역량 진단시스템을 갖추으로써 맞춤형 정보화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수강을 위한 온라인 동영상 프로그램의 구축은 시대적 환경을 잘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아 다양한 매체에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단순 캐릭터를 응용한 동영상에 머물지 말고 현장 중심의 동영상 콘텐츠 확보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결과 '09년도 49백 명이 교육을 이수했으며, 교육만족도는 4.25점(목표치 4.15점)을 얻어 102.3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기관 평가를 통해서 책임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형성한 점 등은 우수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본 사업은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써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는 물론이고, 영농과 실생활에

농어업정보 활용, 농업정보화 능력 향상을 통한 경영효율화를 유도하여 농가소득 창출 및 농업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유익함

3. 개선방안 등

-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귀농·귀촌에 대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구축 및 운영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며, 귀농 귀촌자들의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온라인 상담코너 운영
- 영농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담은 동영상 강의 콘텐츠 확대 및 IPTV, 모바일 등 미래의 핵심 소통매체에 적합한 교육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요구됨

3-3-7-3(계속)	농어업관련 정보제공 확대(농림수산식품부)
-------------	------------------------

담당부서	정보화담당관실	담당자	서봉열 사무관
전화번호	02-500-1687	이메일	bysuh@mifaff.go.kr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어업인 정보활용 활성화를 통해 농어업·농어촌 정보화 촉진 및 도·농어촌간 정보 격차 해소
- 농어가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여 농어업경영 효율화 및 생산성 제고에 기여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9년 ~ 계속
- 사업규모 : 농림수산정보망 이용자수 269천명, 일평균 이용자수 17천명, 아피스넷 연계기관 78개, 농림지식검색 연계기관 72개, 멀티미디어 콘텐츠 2,400여편 확보, 동호회 수 244개
- 사업시행주체 : (재)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 지원형태 및 조건 : 민간경상보조, 국고 100%
- 추진내용
 - 농림수산정보망(www.affis.net)을 통해 다양한 농어업·농어촌 콘텐츠를 제공하고 도·농어촌간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제공
 - 소속·유관기관의 정보를 수집·가공하여 농림수산지식검색서비스를 통해 one-stop 검색서비스 제공

3. 연차별 추진계획

- 농림수산정보망 운영 및 농어업·농어촌 콘텐츠 개발('99~)
- 농림지식검색시스템 구축 및 운영('07~)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63	-	-	-	-	-	163
'05	AFFIS.NET운영	42	-	-	-	-	-	42
'06	AFFIS.NET운영	29	-	-	-	-	-	29
'07	AFFIS.NET운영	31	-	-	-	-	-	31
'08	AFFIS.NET운영	33	-	-	-	-	-	33
'09	AFFIS.NET운영	28	-	-	-	-	-	28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61	-	-	-	-	-	161
'05	AFFIS.NET운영	41	-	-	-	-	-	41
'06	AFFIS.NET운영	29	-	-	-	-	-	29
'07	AFFIS.NET운영	31	-	-	-	-	-	31
'08	AFFIS.NET운영	32	-	-	-	-	-	32
'09	AFFIS.NET운영	28	-	-	-	-	-	28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 대비 109.5% 달성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정보서비스 활용 증가율	전년대비 콘텐츠 활용도 증가율	%	10.3	12.66	123
이용자 만족도	이용자 대상의 5점척도 만족도 조사	점	82	78.95	96
평균					109.5

II. 평가결과

1. 총 평

- 농어업의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시기 적절한 정보 습득 및 응용에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농어업 관련 정보제공 확대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음
- 더욱이 단순 농어업 시대를 벗어나 생산, 가공, 유통 및 식품 산업화에 도전하는 농어업인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여건을 고려할 때 농림지식검색시스템을 통해 72개의 유관기관의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농어업인들의 정보격차 해소는 물론이고 소득향상으로 이어져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다만 정보의 양 및 사업규모에 비해서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과 직결되는 경영 전문 지식 제공이 부족한 실정임

2.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농림지식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농림수산 정보망은 온오프라인상에 산재해 있는 농어업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정보격차 해소 및 소득증대에 기여해 오고 있음
- 본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용역 실시 및 농업경영체, 내외부 전문가, 관계기관 등과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시로 이용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현행 농림지식정보검색시스템은 27만명의 고객과 160여개의 연계 기관, 244개 이상의 동호회 등 방대한 사업규모로 볼 때 다년간 정보서비스의 구축 및 운영, 회원 관리의 노하우를 갖춘 보조 사업자를 통한 사업추진은 바람직함
- 농어업정보서비스 측면에 있어서 단순 포털 기능에서 벗어나 농업 경영 및 농식품산업화, 도농교류 및 소비자 연계 프로그램 등 시대에 적합한 콘텐츠 제작 및 운영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함
- '10년 본 사업이 농어촌정보이용활성화 사업으로 통합되어 운영 되는 계기를 삼아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방향에서 탈피하여 살아 있는 정보를 실시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성 설정이 필요함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농어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한 결과 정보격차 지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06년도 50.2점에서 '08년도 4.1점), '09년 아피스넷 및 그린넷 만족도 조사 결과 78.95점을 획득함으로써 목표치 대비 96.3% 달성
- 반면, 정보서비스 활용률 126.6% 달성으로 볼 때 농림수산지식 정보검색에 대한 욕구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수요자가 원하는 콘텐츠 제공에 소홀해서는 안될 것임

3. 개선방안 등

-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과 전문적인 경영, 농식품 산업화의 진입과 관련되는 경영 전문 지식 제공이 확충되어야 함
- 무엇보다도 살아있고 찾고 싶은 사이트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참여형 커뮤니티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우리 농어업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전달할 수 있는 소통의 창으로 발전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 마련이 필요함

제4절 농산어촌 복합산업활성화



(복합산업)부문 점검·평가 보고서

(복합산업 팀)

평 송	가 미	팀 령 (인)	장 원	평 임	가 정	위 수 (인)	원
평 최	가 수	위 명 (인)	원	평 오	가 순	위 환 (인)	원
평 조	가 상	위 훈 (인)	원	평 가	위 원	(인)	원

I. 총 평

- 복합산업 활성화 분야 2009년도 평가 대상 사업 수는 총 25개임.
각각 일반사업 11개, 소규모사업 9개, 연구사업 3개, 비투융자
사업 2개임.
- 전반적으로 2009년도에 시행된 복합산업 분야 25개 사업은 사업
목표 설정, 집행 과정 및 성과 관리 측면에서 무난하게 추진되
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복합산업 분야 사업들의 경우 대체로
사업 목표 측면에서 농산어촌의 자원을 활용하여 도시의 사람과
자본을 유치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추구한다는 차원에서 공무원,
주민, 전문가 등이 협력하여 소프트한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가
전반적으로 강화되었음.
 -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는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H/W사업을
벗어나지 못하였고 정책 성과 관리라는 측면에서 실적 위주의
집계에 그치고 있는 점 등이 과제로 나타났음.
 -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사업이 기여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성과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관리를

해 나가는 노력이 요청됨.

- 편의상 상대적으로 계량화된 평가 점수에 근거하면 **농촌전통테마 마을 조성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등이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큰 성과를 도모하였고 **경관보전 직불제, 농촌활력 증진 사업, 향토문화 관광축제 육성사업** 등도 합리적인 사업 추진 절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 성과도 높아 우수하다고 평가되었음.
 - 특히, 이들 사업 대부분은 해마다 평가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되어 온 사업들이었음.
- 2008년도에 실행한 사업의 '09년도 점검·평가 결과에 대하여 상응하는 조치 내지는 의견이 정확히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러한 자체 평가보고서를 충실하고 성의 있게 제출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을 제시하거나 아예 반영하지 않는 무성의한 경우도 있었음.
 - 모든 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보고서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거나 반영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근본적으로는 평가결과가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
 - 특히 중앙정부 부처들은 예산 배분만을 하고 사업의 실질적 집행은 별도의 주체가 하는 경우, 해당 사업 시행 주체나 지방 자치단체를 평가할 필요성이 높은 사업들이 있었음.
- '09년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 새롭게 평가 대상으로 포함된 사업들의 발생 사유에 대해서 그 과정이나 취지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II. 평가결과

1. 부문별 평가결과표

코드번호	사업명	평가점수	순위	등급 (안)	비고
4-1-1-2	농촌활력증진사업	88.2	4/20	상위	
4-1-1-3	향토음식자원화사업	87.2	6	중위	
4-1-2-0	농공단지조성사업	80.6	16	중위	
4-1-3-0	농어업인지역실업자직업훈련	81.8	14	중위	
4-2-1-1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90.2	2	상위	
4-2-1-2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사업	93.5	1	상위	
4-2-1-3	문화역사마을조성사업	84.4	9	중위	
4-2-1-4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82.2	13	중위	
4-2-1-5	어촌관광활성화사업	81.4	15	중위	
4-2-1-6	산림휴양공간조성및수목원조성	76.6	18	하위	
4-2-1-8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84	10	중위	
4-2-1-11	해양관광자원개발사업	73	20	하위	
4-2-2-3	농촌체험교육농장	86.2	8	중위	
4-2-4-0	향토문화관광축제	87.4	5	상위	
4-3-1-0	경관보전직불제	89.8	3	상위	
4-3-3-0	농산어촌경관주택발굴보급	82.6	12	중위	
4-3-6-1	조건불리지역직불제	86.8	7	중위	
4-4-2-1	도시민농산어촌주택갯기	84	10	중위	
4-4-3-1	도농교류활성화	80.6	16	중위	
4-3-4-0	자생식물식재및생태숲조성	73.4	19	하위	
평 균		83.69			

2. 평가 상위사업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경관보전 직불제, 농촌활력증진사업, 향토문화 관광축제 육성사업 등이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큰 성과를 도모하였고 사업 절차도 체계적으로 진행되었기에 우수하게 나타남.

- 농촌전통테마마을 및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저비용 고효율의 대표적인 사업 모델이라고 평가되었음. 적은 예산이지만 주민들 스스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학습 등의 S/W사업을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 공무원이나 전문가들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조화함으로써 계획한 바의 성과를 충분히 달성하였음.
- 경관보전 직불제는 사업 준비과정, 대상지 선정, 시행과정 등에서 의견 수렴, 전문가의 자문·현지조사 및 점검·모니터링, 관계자 워크숍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의 문제점을 즉시적, 일관적으로 보완 및 개선하려는 체계화 노력이 높이 평가되었음. 특히 2009년도에는 마을 경관보전 활동비를 신설하는 등 사업이 점차 발전적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평가됨.
- 농촌활력증진사업은 사업 목표와 성격이 유사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등의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음. 특히 사업 관리에 있어 지역별로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하게 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한 점이 우수하다고 보았음.
- 향토문화 관광축제 육성사업 역시 크지 않은 사업비를 가지고 지자체 간 긍정적 경쟁을 도모하고 전문가 등이 사업 추진 과정에 개입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역 축제의 성공적 모델을 창출하고 지역 발전 성과를 제고하는데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음. 더불어 주민에게 평소 접할 수 없는 여가문화를 향유하게 하였으며 자긍심을 드높이는 계기로 작용하였다는 평가임.

3. 평가 하위사업

- 해양관광자원개발, 자생식물원 및 생태숲 조성, 산림휴양공간조성 사업 등은 상대적으로 사업 추진 목표와 절차, 성과 등의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았음. 각 사업들의 특성에 비추어볼 때 성과를 거둔 측면도 있으나 상대적인 평가 결과, 공통적으로 사업 목표와 사업 내용의 정합성이 다소 부족하고, 사업 추진체계가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참여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미흡하며, 사업 성과지표 설정 등이 적절치 않은 편임. 이는 전년도 점검·평가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나 별다른 조치나 개선 노력이 없었음.
- 해양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사업 추진과정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만 추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의 계획이 미흡하고 실적 위주 성과지표를 채택하여 사업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되었음.
 - 당초 계획은 '09년 23개소(13,189백만원)였으나 시행계획 추진 실적은 22개소(13,189백만원)로 변경되었음. 사업 추진과정의 모니터링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별다른 과정을 찾기 어려움. 성과 지표는 예산집행률로 되어 있음.
- 자생식물원 및 생태숲 조성사업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괴리, H/W 중심의 실적 위주 성과지표, 대국민 홍보의 미흡 등이 문제라고 지적되었음.
 - 자생식물원이나 생태숲은 특정 지역에 입지하는 만큼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고 사업 디자인에 따라서는 지역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전년도 시행평가에서도 문의하였듯이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기 어려우며, 성과지표는 지역생태숲 조성개수로 되어 있어 사업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산림휴양공간 조성사업은 H/W 중심의 사업, 하달식 사업의 특성을 견지하고 있음. 그에 따라 사업 달성도도 사업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며 사업 추진과정의 모니터링 역시 형식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함.
- 1988년 이후 지속된 사업이라 기여도도 크지만 변화된 시대적 여건에 대응하여 사업의 추진 방식의 변화를 도모할 필요도 있음. 특히 이 사업 역시 특정 지역에 시설이 입지하는 사업이나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 정도나 지역 활성화에의 기여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고, 성과지표 역시 시설 조성 개수로 설정하고 있음.

Ⅲ. 평가소감

- 2009년도 사업을 시행한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한 자체 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서면 평가에 의존하여 평가를 진행하였음. 자체 평가보고서는 전반적으로 작성 요건 준수, 성실성 등의 측면에서 평균적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다만, 보고서만으로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히 파악하기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었음을 미리 밝혀둠.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삶의질향상특별법)」 운영 초기에는 부처별로 작성한 자체 평가보고서의 질적 차이가 심하여 일관된 평가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삶의질향상특별법 운영이 지속되면서 평가 보고서 작성 측면에서는 부처들이 적응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동시에 보고서 작성이 형식적으로 그치는 측면도 갖고 있음.
- 또한 점검·평가를 통한 인센티브와 패널티 등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평가보고서 제출만으로 완결되는 형식적 점검·평가로 그칠 우려를 안고 있음. 그래서인지 지난 해 점검·평가 의견에 대해 성의있는 조치를 하려고 노력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음.

- 사업이 시작된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사업이나 종료되는 사업들의 경우, 사업의 성과 및 추진 방식의 우수성 등을 모델화하여 보급할 수 있는 사후관리 조치가 필요함.
 - 특히 2010년부터 광특회계 재편에 따라 복합산업 활성화 분야에 속하는 사업들 중 일부가 통폐합되는 상황에서 마을 사업 등은 정책 성과가 중단될 가능성도 없지 않음. 따라서 기존 사업 대상 지간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나 농촌관광의 국가적 브랜드를 육성하는 사업 등으로 발전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
- 중복된 성격의 사업이 분절되어 있어서 평가 자체가 어려운 몇 가지 경우도 발견되었음.
 - 가령, 주택 시책, 도농교류 시책 등 중분류의 내용별 시책에 따라 사업을 통폐합하여 운영하거나 적어도 평가자료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그렇지 않으면 한 가지 실적을 여러 사업에서 공동 활용하는 등의 비효율 문제가 방지되기 어려움.
 - 복합산업 분과 전체로서 그리고 지역개발 분과와 통합해 사업 재분류 및 평가의 체계화가 필요함.
- 평가 결과가 사업의 내실화를 촉구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평가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 이를 위해서는 목표에 따라 합리적인 자체 성과지표 설정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서면 평가뿐 아니라 몇 개 중점 사업에 대해서는 1년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도입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광특회계 개편 및 삶의 질 향상 제2기 5개년 계획 수립 등을 고려하여 삶의 질 위원회 및 사무국의 기능 재편, 포괄 사업 영역의 재편, 평가 방식의 개선 등을 새롭게 기획해야 함.
 - 신규로 개발될 혹은 향후 강화가 필요한 사업 발굴도 필요함.

담당부서	농촌환경자원과	담당자	김미희
전화번호	031-290-0280	이메일	kimmih8312@korea.kr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지역성과 전통성이 강하고 사업성이 있는 유·무형의 향토자원을 조사 발굴 및 DB화하여 지역별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원천자원으로 활용
- 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31조(향토산업의 진흥) 및 시행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제51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2009년(4년간)
- 사업규모 및 사업비 : 28개 지역(시군), 7.70억원 ('09년 1.4억원)
- 시행방법 : 시험연구비에 의한 자체 연구사업 수행
- 추진내용
 - 농어촌 지역별 향토자원 조사 : 매년 3~6개 지역(시군)
 - 지역 향토자원 중 산업화 유망자원 발굴 및 DB화
 - 향토자원 사업화 가치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를 통한 유망자원 발굴
 - 향토자원 산업화 모델 및 지원전략 개발을 통한 지자체 향토산업 지원 체계 구축
 - 조사대상 지자체의 관련 부처와의 유기적 연계 및 협조

향토산업육성 기본방향 수립
(농식품부)

- 향토산업육성 사업계획 및 시행지침 수립
- 사업대상 선정, 예산지원 등 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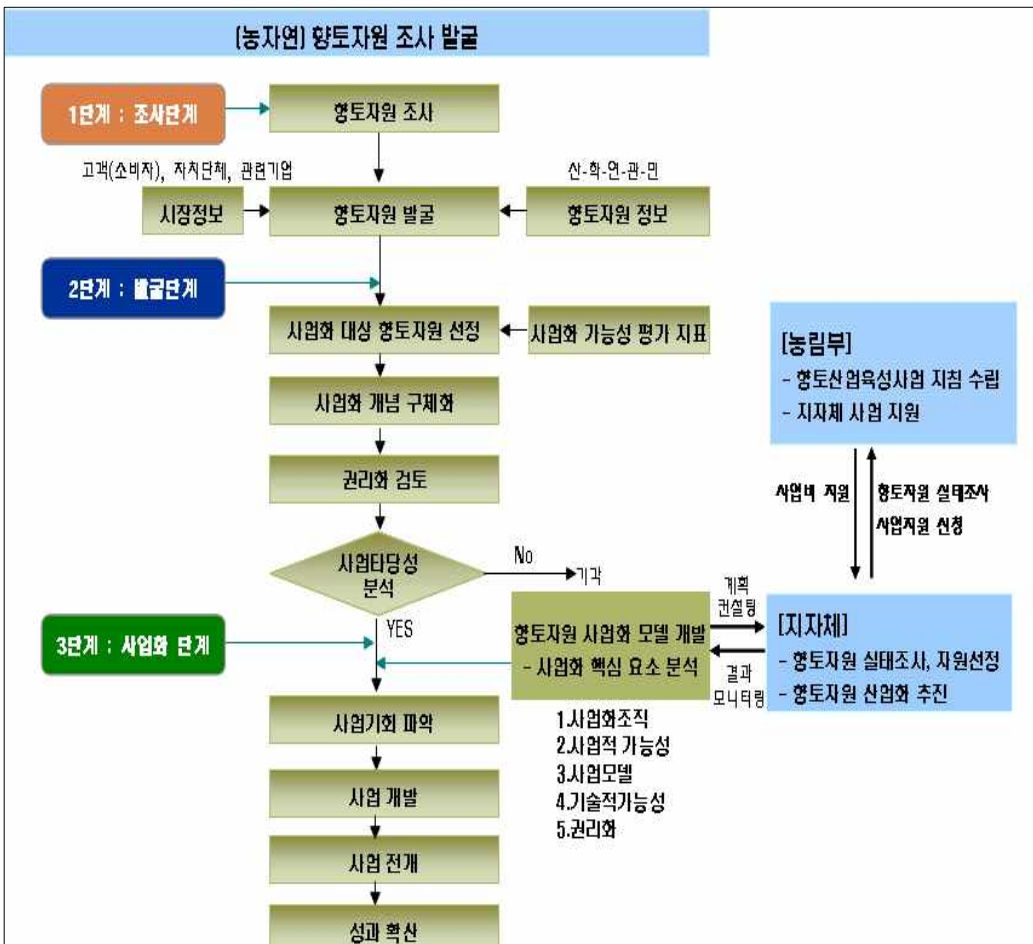
향토자원 조사·발굴 및
산업화 모델 개발 연구
(농촌진흥청)

- 향토자원을 조사, 산업화 유망자원 선발
- 향토자원 산업화 모델 또는 지원전략 개발
- 지자체 향토산업육성 지원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
(지자체)

- 향토산업육성사업 대상 선정
- 향토산업육성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 추진체계



※ 향토자원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향토적 전통성과 고유성을 가진 자원으로 시·군·구 지역 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잠재력이 있는 모든 자원을 의미

3. 연차별 추진계획

- 매년 5개 시군을 대상으로 향토자원 조사·발굴 및 DB화('06~'09)
 - 지역성 및 전통성이 강하고 부가가치성이 높은 자원 조사·발굴
- 지역별 향토자원 우수사례 산업화·마케팅 전략 분석 ('06)
- 지역별 산업화 유망자원을 대상으로 산업화 지원모델 개발('07~'09)
 - 특성 있는 향토자원을 활용한 테마 발굴 및 상품 개발, 마케팅, 홍보 등 산업화 지원 모델 개발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8	0	0	8.3	0	0	0	8.3
'06	5			3.0				3.0
'07	5			2.3				2.3
'08	5			2.0				2.0
'09	3			1.0				1.0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8	0	0	7.7	0	0	0	7.7
'06	6			3.0				3.0
'07	6			2.3				2.3
'08	3			1.0				1.0
'09	13			1.4				1.4

- 당초 매년 3억원의 연구비를 계획하였으나 시험연구비에 의한 기본경상 연구사업비는 과제의 수, 규모 등에 따라 예산이 배정되는데, 시대적 요구에 의해 전체 과제수가 늘어남에 따라 배정액이 감소됨
- 2009년도 당초계획은 3개소이었으나 추진실적이 13개소인 사유는 4대강 유역 개발 대비, 2009년도 하반기에 추가계획을 수립하여 한강 유역 주변 등 10개 지역을 발굴 조사하였음(25백만원 소요)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향토자원 조사발굴 및 DB구축	향토자원 산업화 유망자원 발굴	산업화 유망향토자원 DB 건수	건	130	528	406
	향토자원 산업화 유망자원 DB구축	농촌공익기능정보시스템상 자료 게시여부	건	130	133	102

- 농촌지역 향토 자원 조사·발굴 및 DB화 : 13지역 / 계획 3지역
 - 조사대상 지역 : 13지역
 - 당초계획 조사지역 : 3지역(경기도 김포/파주, 전남 무안)
 - 추가계획 조사지역 : 10지역(경기도 가평/양평/구리, 강원도 춘천/홍천/원주, 충북 여주/이천/충주/단양)
 - DB 구축 건수 : 향토자원 산업화 유망자원 528건 / 계획 130건

향토자원 목록정리	⇒	주요 향토자원 기본조사	⇒	비교우위 유망자원 선발 및 심층조사
4,689건		2,423건		528건

- 향토자원 산업화 모델 개발 : 6지역 6개 자원
 - 지역별 산업화 모델 대상자원 : 영월 동강, 예산 은행, 의령 입산문화역사마을, 김포 툄레기, 파주 장단콩, 무안 양파 등 6종
 - 향토자원 산업화 프로세스(3단계: 조사, 발굴, 사업화) 및 사업화 핵심요소 도출(조직, 사업적가능성, 사업전략, 기술적가능성, 권리화)
 - 산업화 유형별, 추진프로세스별 핵심요소 분석 및 발전방향 제시

구 분	영 월	예 산	의 령	김 포	파 주	무 안
자 원 명	동강	은행	입산문화역사마을	툄레기	장단콩	양파
자원유형	수변 및 해양자원	농특산물	마을	전통식품	농특산물	농특산물
연계자원	동강할미꽃, 어름치, 황쏘가리, 어라연, 동강축제, 고씨굴	총의사, 대흥향교, 수덕사	망우당 생가, 백산 안희제, 백산 안희제 생가, 탐진 안씨 종가, 설미마을 앞 소나무에 얽힌 전설, 호암 이병철 생가	김포금쌀, 김포인삼, 김포막걸리, 기타 김포 순무 등 농특산물	파주장단콩축제, 파주장단콩전시관	양파한우, 황토

구분	영월	예산	의령	김포	파주	무안
자원명	동강	은행	입산문화역사마을	털레기	장단콩	양파
자원유형	수변 및 해양자원	농특산물	마을	전통식품	농특산물	농특산물
산업화 방향	프로젝트형 -상설이벤트형	제조중심형 -기능성활용형	프로젝트형 -상설이벤트형	서비스중심형 -노하우형	원자재중심형 -농산물	원자재중심형 -농산물
추진주체	영월군청	예산은행연구회	의령군청	김포농협	파주시청	무안농협
클러스터 구성	환경부, 정선군청, 강릉원주대, 레프팅업체 등 관광업체	예산군청, 공주시청, 국립산림과학원, 공주대학교, 예산농협, 두성은행 등 은행관련업체	의령문화원, 경상대학교, 입산문화역사마을, 관광업체	김포군청, 김포대학, 김포수협, 김포털레기 판매업체, 농업인단체	통일부, 경기부, 농촌진흥청, 경기도농업기술원, 통일관련민간단체	무안군청, 목포대학교, 농촌진흥청, 양파생산자단체, 양파가공업체, 농기계업체



산업화 추진 전략(요약)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동강' 및 연계자원을 활용한 웰빙 트렌드에 부응한 생태관광 활성화	은행 명품화를 위한 생산기반조성 및 가공시설 확충, 기능성을 활용한 신상품 개발	의령지역의 자연환경, 역사, 과제우·안회제·이병철 등 인물을 활용한 역사·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금쌈, 순무, 인삼 등 지역 농특산물 활용 털레기 명품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민물고기 외 어류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개발	도시화, 산업단지 개발 등 지역개발에 따른 장단콩 생산지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북한 지역 농업개발	지역의 황토·해수를 활용한 고품질 기능성 양파 생산 및 양파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생력화 대형 급식업체 납품을 위한 전처리시설 확보 및 상품 개발
---------------	---	--	--	--	--	---

II. 평가결과

I. 총 평

-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노력은 내생적 농촌발전정책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음
- 현재 비교적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농촌활력증진 사업’의 경우 향토자원의 잠재력과 경쟁력에 기본적으로 바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업의 시의성과 필요성은 재론할 여지가 없음
- 이 사업이 향토자원을 조사·발굴하고 가치있는 자원의 DB를 구축하는 연구사업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 사업을 바탕에서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는 이전의 점검평가에서 지적하였던 이용자(지자체 또는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연구사업 설계에서부터 지자체 또는 농업인의 직접 참여, 또는 지역대학 또는 전문가와의 공동연구 추진 등의 보완책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향토자원의 조사·발굴 및 DB 구축을 선행단계로 하여 사업화 모델 및 지원전략 개발(2단계), 향토산업 육성과 연계사업화 지원(3단계) 등을 후속 단계로 계획한 것은 논리적임
- 그러나 연구사업의 목표를 ‘향토자원을 조사하고 평가하여 유망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DB화 하는 것’(자체 점검평가보고서 760쪽 참조)이라고 한정된 것은 앞의 기술 내용과 맞지 않아 이 사업의 실제적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음

- 지역별로 협의회를 갖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지역의 사활이 걸린 판단이므로 지역이 연구에 실질적 기여 또는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강구되어야 함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연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사전 연구협의회, 연구과제 설계심의회, 중간지도관리, 결과평가회 등의 공식적 심의·평가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구조임
- 지자체와 협력하여 유망 향토자원을 조사·발굴하고 사업화모델을 개발한 후, 이를 바탕으로 농림수산물부 농촌활력증진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되면 시범사업으로 연결·지원하는 체계는 바람직한 연결 구조임
- 그러나 2010년부터는 포괄보조금제도로 전환되고 있으므로 현재와 같은 지자체의 보조적 역할은 개선되어야 하는데 시군 ‘농업기술 센터’의 향토자원 또는 향토산업에 대한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의 실질적 파트너로서 참여하는 대안도 검토 가능함
- 전년도 점검평가단의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 내용이 매우 추상적으로 기술되어 있어서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파악이 불가능함
-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내용이 ‘전통지식자원의 가치인식 제고’이어서 향토자원과 산업화에 대한 홍보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보다 관련성이 높은 직접적 홍보내용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자체평가보고서에서 제시된 향토자원 이용사례는 이 연구에서 발굴한 향토자원과 산업화 모델에 기반하였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사례분석 결과는 명확하게 이 연구의 성과가 아님

- 자원발굴과 DB 구축건수 측면에서 각각 406%, 102%로 초과 달성하였고 산업화모델 개발은 100% 달성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이 지표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개선방안 등

- 연구대상지역 선정에 있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 정책방향, 계획기준, 모델링 등 기초연구는 진흥청 본청에서 수행하더라도 현장적용 및 활용연구는 지역대학 또는 지역의 전문가,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포괄보조금제도 도입에 따른 중앙부처(농림수산식품부)의 역할 변화와 지자체의 기획기능 강화에 대비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수립하여야 함

4-1-1-2(계속)	농촌활력증진사업(농림수산식품부)
-------------	--------------------------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이수열(사무관)
전화번호	02-500-1808	이메일	leesy@korea.kr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유·무형의 향토자원을 발굴, 다양한 1·2·3차 융복합화의 시너지 효과를 확산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어촌 주민 소득 증대 도모
- 지역이 주체가 되어 혁신역량을 키우고 내생적 발전역량을 강화하여 『도·농상생』의 균형발전사회 실현
- 사업추진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1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향토산업의 진흥)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

2.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지원조건	사업시행주체
· 농촌활력증진사업	'08~'10	10,678억원 ('09까지 7,236억원)		지자체 보조(100%)	시·도지사, 시장·군수

- 추진체계
 - 신활력사업과 향토산업육성사업, 특화품목육성사업을 '08년부터 “농촌활력증진사업”으로 통합·체계화

- 사업목표를 명확히 하고 목표관리 방식의 사업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3년단위 「시·군 농촌활력증진계획」 제도 도입·시행
- 시·군은 유사한 관사업을 연계한 3년단위('08~'10) 시·군농촌활력증진계획을 수립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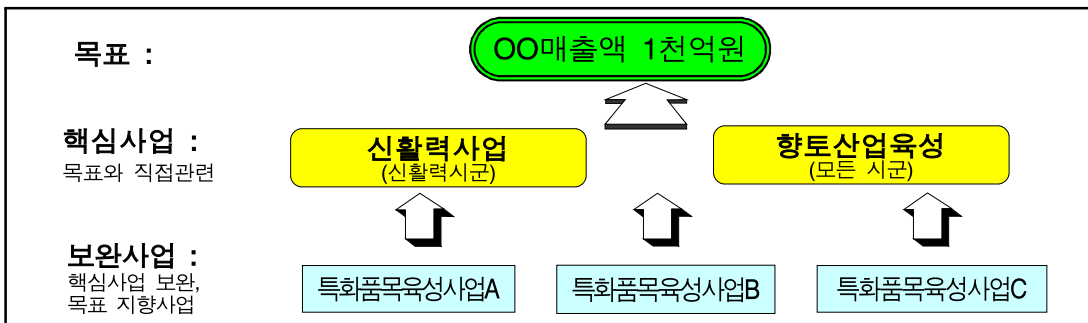


< 농촌활력증진사업 추진절차 >

추진절차	추진주체	내용
① 계획 수립	시·군	· 시·도를 경유, 농식품부에 승인신청
② 계획 심사 및 승인	농식품부, 균형위	· 자문위원회 심사 후 사업계획 승인 · 부적정한 계획은 지자체에 수정 요청
③ 사업추진	시·군, 시·도	· 시·도는 사업추진상황 점검·관리
④ 평가 및 인센티브	농식품부 시·도	· 농식품부 사업추진성과 등을 평가 ·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실시
⑤ 모니터링, 컨설팅 지원	농식품부	· 시·군 사업진단, 컨설팅 지원 · 시·군 사업상황 모니터링 등 측면지원

* 향토산업육성사업은 공모방식으로 지원대상 시·군 선정, 그외 사항 동일

< 농촌활력증진계획 체계 >



○ 추진내용

- 지원분야 : 농어촌산업육성을 위한 S/W, H/W분야 포괄지원
 - 지역내 사업추진 주체에 대한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네트워크 활동, 홍보·마케팅, 제품·브랜드 개발 등 S/W분야 지원
 - 향토자원 산업화에 필요한 가공·유통·체험 시설·장비 등 H/W 분야 지원
- 추진내용
 - 신활력사업 : 70개 시·군, 1,882억원 지원
 - 본사업비 : 1,680억원 (낙후도에 따라 19~29억원 차등지원)
 - 인센티브 사업비 : 202억원(사업실적 평가 우수 30개 시·군)
 - 향토산업육성사업 : 76개 사업, 286억원 지원
 - 특화품목육성사업 : 404개 사업 1,273억원 지원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4,145			2,859	114	17,118
'05	70개 시군		2,000					2,000
'06	70개 시군		1,900					1,900
'07	70개 시군 19개 향토자원		1,925			37	52	2,014
'08	70개 시군 49개 향토자원		1,971			54	62	2,087
'09	70개 시군 79개 향토자원		3,441			1,558		4,999
'10	70개 시군 109개 향토자원		2,908			1,210		4,118

※ '08년까지는 확정된 계획, '09년 이후는 향후 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4,145			2,859	114	17,118
'05	70개 시군		2,000					2,000
'06	70개 시군		1,900					1,900
'07	70개 시군 19개 향토자원		1,925			37	52	2,014
'08	70개 시군 49개 향토자원		1,971			54	62	2,087
'09	70개 시군 79개 향토자원		3,441			1,558		4,999
'10	70개 시군 109개 향토자원		2,908			1,210		4,118

4. 성과목표 달성도

○ '08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당초 제시한 성과지표상 목표치 이상을 달성하였음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촌활력증진사업 (신활력, 향토산업육성사업)	일자리창출	실태조사	명	2,000	2,546	127.3
	향토자원 산업화 실적	"	건수	49	49	100.0

II. 평가결과

1. 총 평

- 유사·중복성 때문에 비판받았던 신활력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및 특화품목육성사업을 농촌활력증진사업으로 통합하고 3년단위 '시·군 농촌활력증진계획수립' 제도를 도입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진전임
- 또한 성과목표 및 추진시스템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함으로써 지자체의 관심도를 제고한 것은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판단됨
- 사업계획의 수립과 사업추진에 있어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등 지역의견 반영과 컨설팅이 다른 사업에 비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농촌진흥청의 '향토자원의 조사·발굴 및 DB구축'등과 같은 사업과의 구체적 연계 또는 활용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음
- 특히 포괄보조금 제도의 도입에 의해 중앙부처의 기능과 역할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컨설팅과 시스템적 또는 인프라적 지원으로 전환되는 점을 감안하면 지자체가 다양하게 요구하는 지원항목을 발굴하고 이에 바탕하여 다양한 지원시스템 메뉴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유무형의 향토자원을 발굴·활용하여 지역마케팅이 갖는 잠재력과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합산업화 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소득기반을 확충하려는 시도는 시의 적절함

-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신활력, 향토산업·특화품목 육성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고 계획체계도 ‘농촌활력증진계획’제도로 통합·도입한 것은 의미있는 진전임
- 지자체, 지역발전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기관간 협의를 거쳐 사업추진지침을 마련하고 8개 중앙부처가 참여하는 공동추진단의 최종 협의·심의를 거쳐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하는 시스템은 적절함
- 그러나 어떠한 제도하에서도 계획의 적실성과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은 지역(현장)을 바탕으로 하여야 함으로 지역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보다 내실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특히 사업참여 지역주민들의 기획 또는 계획능력을 제고하여 이 사업 종료 후에도 자체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는 지역역량을 확보하여야 함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중앙정부가 정책 메뉴와 계획의 틀,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시군이 관계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며, 최종적으로 중앙정부가 이를 승인하여 예산지원하고, 과정과 결과에 대해 평가한 후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하여 피드백하는 제도는 비교적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됨
- 농어촌산업박람회 개최, 매스콤을 통한 공동홍보, 시도 네트워크 경비지원 등은 사업홍보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삶의 질 향상 점검평가단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개선조치가 이루어졌음
-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실질적 성과는 주기적, 단발적 평가나 점검에 의하기 보다는 일상적 관리·점검에 의해 지속적

으로 축적될 때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하겠음

- 따라서 해당 지자체나 이해당사자, 관련 수행조직의 일상적 관리·점검시스템 모델을 개발해 주고 지역 스스로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며 주기적 평가·점검은 이러한 일상적 관리·점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감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일자리 창출과 향토자원 산업화 건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한 것은 이 사업의 지향방향과 부합되는 적절한 지표로 판단됨
- 이 사업에 의해 일자리가 2,546개 창출된 것은 농촌지역의 경우 상당한 성과로 평가되는데 창출된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자료가 보완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3. 개선방안 등

- 지역 또는 이해당사자 조직이 이 사업을 일상적으로 관리·점검할 수 있는 모델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 시스템의 운영인력을 교육훈련하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
- 3개 사업의 통합적 효과를 고양하고 특히 '10년부터 도입예정인 사업 균화 및 포괄보조금 제도 등에 대비하여 지역의 자주적 기획 및 관리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급선무이므로 '지역협력단' 등의 지원·협력 조직이 진정으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여 사업 전반을 주도할 수 있는 정교한 활동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절실함('08년 점검평가 의견)
- 이 사업 종료후에도 지역 스스로 새로운 향토산업을 발굴하고 기획·계획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사업기획·능력을 개발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함

담당부서	농촌자원과	담당자	장면주
전화번호	031.299.2673	이메일	farmkorea@korea.kr

I. 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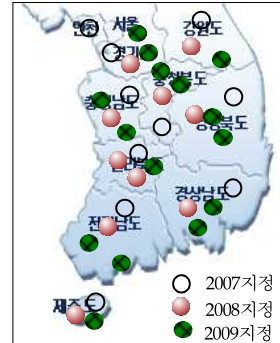
1. 사업목표

- 향토음식자원화로 농가의 경영다각화 및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안전 먹을거리 공급
- 농가의 생산, 가공, 서비스의 유통일원화로 농가소득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식자재, 가공식품, 향토음식, 지역문화를 연계한 향토음식세계화로 한식 세계화 기여
- 추진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8조(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 농촌진흥법 제2조2항(농촌지도사업은 시험연구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의 보급)
 - 농촌진흥법 제13조1항(농촌지도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에 사업비 보조)
 -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며 국민의 건강을 증진)
 -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31조 (향토산업의 진흥 : 지역에 고유하거나 문화, 기술, 특산품등의 조사, 발굴, 상품화 및 계승에 대한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7년 ~ 2012년
- 사업주체 : 시군농업기술센터
- 추진체계 : 농촌진흥청 - 도농업기술원 -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대상자

- 사업량 및 사업비 : 120개소 56억원 (국비 50%)
- 시행방법 : 자치단체 자본보조 (보조율 100%)
- 추진내용
 - 사업대상 : 시군 농업기술센터, 향토음식 연구회, 향토음식에 경험과 기술을 가진 농촌 주민, 농촌여성이 주축



- 사업내용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기반조성 및 활성화 지원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대상자 교육지원 : 향토음식사업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사업대상자 역량개발 및 교육
- 지역 농림수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향토음식 개발 및 상품화 지원
 - 솜씨보유자 발굴, 향토음식 조리법의 표준화, 스토리텔링 개발
- 발굴된 대표 향토음식의 향토지적재산 등록, 특허출원, 홍보·전시
- 지역농산물(1차), 가공(2차), 농가민박, 농촌체험(3차)과 연계 네트워크 구축지원

향토음식사업장 (농가맛집 운영자)

- 향토음식사업장 : 농가맛집 조성 및 운영
- 농가맛집 운영을 위한 기자재 설치지원 등
- 지역 고유성이 있는 향토음식의 지속적인 식단개발
- 사업운영자의 지속적인 전문능력 함양 : 세무, 회계, 위생규정 및 안전관리, 서비스, 경영, 법률 등
- 지역문화를 스토리텔링화하여 대표음식 메뉴개발
- 자가농산물, 지역농산물, 가공식품, 민박, 체험활동과 연계운영

3. 연차별 추진계획

- '07년부터 2012년까지 120개소를 목표로 추진
- '07~'08년 : 20개소 14억원(국비·지방비 각 50%)
- '09년 : 15개소 15억원(국비·지방비 각 50%) 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5	22				22		44
'05								
'06								
'07	10	3.5				3.5		7
'08	10	3.5				3.5		7
'09	15	7.5				7.5		15
'10	15	7.5				7.5		15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5	14.5				14.5		29
'05								
'06								
'07	10	3.5				3.5		7
'08	10	3.5				3.5		7
'09	15	7.5				7.5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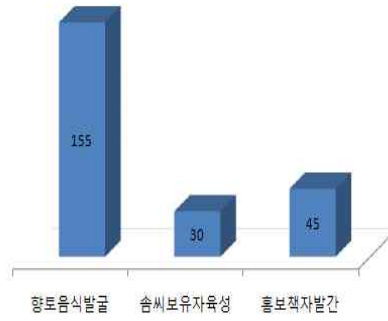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183%
 - '09년 목표치 : 향토음식 상품화 증가율 10%
 - '09년 실적치 : 향토음식 상품화 증가율 18.3% (개소당 9종)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A)	실적(B)	B/A(%)
향토음식 자원화사업	향토음식 상품화 증가율	지원후 2년차 이상되는 사업장의 상품화 증가율 조사	%	10	18.3	183

< '09년 추진 결과 >

- 향토음식자원화 사업장 개설건수는 목표(15개소) 대비 150%(15개소) 달성
- 전년도 대비 향토음식상품화 증가율 : 18.3% (평균 향토음식 상품화는 9종임)
- 향토음식 상품화 아이템 개발 155건
- 향토음식 숨씨보유자 발굴 실적 : 30명
- 향토음식 교육프로그램 참여인원 : 2,766명
- 향토음식 홍보책자 발간실적 : 45종



II. 평가결과

1. 총 평

- 농가의 경영다각화 또는 융복합산업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현장프로그램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실효성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됨
- 사업의 추진주체가 현장과 직결체제를 갖고 있는 시·군 농업기술 센터이어서 사업의 성공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됨
- 현실적으로 자본과 기술, 경영능력이 취약한 농업인이 요식업을 운영하는데는 제도적 규제의 적절한 완화와 유연한 적용 등의 적극적 지원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임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웰빙 풍조의 확산으로 농산물에 대한 관심은 줄었으나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 맛, 위생에 대한 관심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여건에서 이를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활용하려는 시도는 시의성이 큼
-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 정책목표로 향토음식 상품화, 경영 및 마케팅 지원, 영농활동 강화 등을 설정한 것은 적절한 조치임
- 현대사회에서 식품은 점차 거대산업화하고 있고 일부는 명품화 또는 복합산업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틈새산업으로서 어떠한 위상을 확보하고 차별화할 것인가에 대해 농업인의 입장이 아닌 소비자의 입장에서 체계적으로 재정립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주체로 하여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농가 등 각각의 위계에서 역할이 적절히 분담, 조정되어 있음
- 전문가 연계 현장지원과 초청세미나와 함께 담당공무원 및 사업대상자 교육을 실시한 것은 사업추진에 사활적 관건을 갖고 있는 휴먼인프라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의미있는 노력인데 이와 함께 전문가, 관계공무원, 사업대상자가 함께 토의하고 교류하는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추가적으로 필요함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사업 참여자들의 사업자체에 대한 만족도(9.2/10점 만점), 사업의 중요도 판단(9.0), 교육·컨설팅 만족도(9.2) 등 모든 측면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은 수준임
- 성과지표인 사업장 향토음식 상품화 증가율이 초과 달성되었음
- 차후 소비자의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개발되어야 사업의 진정한 성과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임

3. 개선방안 등

-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사업의 발전전략을 지속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워크숍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의 하나로서 소비자 평가지표 개발 및 성과 판단이 필요함
- 간이 음식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제도적 지원책의 지속적 개발이 요구됨
- 정규 및 대형 요식업체와의 차별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4-1-2-9(계속)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한 농공단지조성 (농림수산식품부)
-------------	---------------------------------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김일환(사무관)
전화번호	02-500-1797	이메일	@mifaff.go.kr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어촌 재촌 및 취업기회 확충을 목적으로 농어촌지역에 저렴한 공장부지를 조성, 기업(공장)을 유치하여 농어촌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84년 ~
- 총사업비 : 598억원('08년까지 기투자액 : 4,704억원)
- 사업규모 : 53개소(신규18, 계속35)
- 지원형태 : 국비보조
- 지원조건 : 정액지원(1.5~7만원/3.3058㎡)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시장·군수)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05	32		420			524		944
'06	28		260			298		558
'07	28		314			187		501
'08	47		428			563		991
'09	53		598			690		1,288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05	32		420			524		944
'06	28		260			298		558
'07	28		314			187		501
'08	47		428			563		991
'09	53		598			690		1,288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09년까지 농공단지 354개 조성(최종)을 목표로 '08년 330개 조성
 - 농공단지 활성화방안 마련 등으로 사업목표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공단지조성	농공단지 조성율	농공단지조성 개수	단지	354	332	93.8

* '09년 09월현재 396개소 지정하여 현재 조성중에 있음

II. 평가결과

1. 총 평

- 지식기반사회화의 과정에서 저부가가치 제조업의 도시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어 농공단지에 의한 제조업 공장 등의 적극적 수용이 국가적 과제로 등장하였음
- 이러한 측면에서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국가적 산업재배치 수요와 농촌의 복합산업화를 상생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대안이 되고 있으므로 그 의미와 목표를 적극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
- 1984년 착수한 이래 30년 가까이 추진되어 온 최장수 사업의 하나로 이제는 나름대로 정착되어 상당한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됨
- 그러나 착수 당시와는 글로벌, 국가, 지역 경제여건과 사회적 수요 또한 근본적 변화를 겪고 있으므로 2020년 또는 2030년을 지향하는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음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농촌산업의 다각화 또는 복합산업화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려는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함(사반세기에 걸친 사업의 지속적 추진이 이를 입증)
- 2014년까지 400개소 조성을 목표로 매년 10개소씩 조성하면 목표 달성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보임(2009년 현재 354개소 조성)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 사이에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을 제정하여 업무분장이 명쾌하게 되어 있음
- 그러나 최근 기초생활권 정책 등의 도입에 의해 지역의 유형 구분에 따라 주요 담당 부처가 분화되는 점을 감안하면(일반 농산어촌 지역 120개 시·군 주관부처: 농식품부), 특성지역별 주관부처 단위로 전체업무를 통합하는 대안도 검토 가능함
- 삶의 질 향상 점검평가단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비교적 성실하게 보완하고 있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농공단지가 그간의 부진을 벗어나 최근 90%가 넘는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임
- 당해년도 농공단지 조성율 93.8%로 정상 추진되고 있음
- 차후 농공단지의 조성 목적은 기존 주민의 취업활성화 뿐만 아니라 귀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 이주민의 취업처로서의 역할 강화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이에 따라 성과지표의 하나로서 이주 도시민의 취업률을 추가할 필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 실적이 좋은 단지나 기업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3. 개선방안 등

- 변화된 경제사회적 환경에 따라 농공단지가 국가산업정책상 또는 농촌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갖는 위상과 역할을 재검토하고 2020년 또는 2030년을 목표년도로 하는 장기 비전과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현지 주민뿐만 아니라 핵심 종사인력으로 도시이주민(귀촌자는 물론이고 조기은퇴 전문직 종사자)을 적극적 유치·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농공단지가 산업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도 농촌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함
- 도시근교지역의 제조업 유치여건은 급격히 좋아져 이제 굳이 공공의 개입이 없이도 발전할 수 있으므로 정책적 초점을 원격낙후지역의 농공단지 조성에 집중하는 정책적 전환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시점임

담당부서	인적자원개발과	담당자	박준용 사무관
전화번호	01-2110-7266	이메일	pjy0713@molab.go.kr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향후 한미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개방화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에게 전업지원을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취업능력제고 및 생활안정 도모
- 지원근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 고용정책기본법 제20조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9.1.1 ~ 12.31 (계속사업)
- 사업비 : 881백만원
- 사업규모 : 386명
-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보조(국고보조율 80%)
- 지원조건 : 훈련실시 과정에 대하여 훈련기관에는 훈련비 전액을, 소정훈련 일수의 80%이상을 출석한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을 지원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제외)
- 추진경위
 - '94년 농어민 직업훈련과 고용촉진훈련을 통합하여 노동부에서 실시
 - '95년 이후 UR 타결과 관련 농업정책심의위원회에서 농어민 후생복지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키로 결정,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로 실시
- ※ '06년 회계정비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변경

○ 사업집행절차

사업계획서 및 실적 평가, 지자체별 지원금 결정('10.1월~, 노동부) →
 훈련과정 승인 및 훈련생 모집('10.2월~, 지자체) → 사업실시('10.3월~, 지자체)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296	59.6	1.5			2.2		63.3
'05	1,000	13						13
'06	864	13						13
'07	515	12	1					13
'08	515	13	0.2					13.2
'09	402	8.6	0.3			2.2		11.1

〈연도별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05	716	13						13
'06	426	13						13
'07	380	12	1					13
'08	482	13	0.2					13.2
'09	365	8.6	0.3			2.2		11.1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민지역실업자직 업훈련	취업률	$(\text{조기취업} + \text{수료후취업}) / (\text{수료인원} + \text{조기취업}) \times 100$	%	43.7	47.0	107.6

※ 실적 : '09년 12월말기준(잠정)

II. 평가결과

1. 총 평

- 취약계층인 농어업인 실업자에 대한 전업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취업능력을 제고하는 이 사업은 재촌탈농을 유도함으로써 인구의 도시집중을 막고 농촌지역에는 인구유출을 막는다는 지역균형발전 목적에 타당함
- 지방 노동관서의 훈련과정 승인권을 지자체에 이관하는 등 지역적 수요를 반영하려는 보완책은 진일보한 면이 있음
- 그러나 아직도 지역의 취업여건(수요)과 취업가능 인적자원의 특성(공급)이 효과·효율적으로 매치된 직업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추가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함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한미 FTA 체결 등 단발성 이벤트보다는 농촌지역의 고용구조상 취약성을 바탕으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취업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방향 정립이 필요함
- 기존 농어업인들의 고령화가 심각하므로 고령 농어업인들의 취업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상대적으로 기술수준이 낮은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과정의 운영도 검토하여야 함
- 이와 함께 도시이주민과 부인을 비롯한 가족들은 취업능력이 귀촌 지역의 취업여건과 부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들에게 지역이 공급 가능한 취업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추가 검토함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대상자를 선발하는 것은 바람직한 진전이고 지자체와 한국고용정보원 및 노동부 사이의 업무협조가 원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음.
- 그러나 점검평가단의 지적사항에 대해 보완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훈련생들의 만족도가 78.4로서 높다고 볼 수 있고 취업률도 47.0%로 비교적 높음
- 교육훈련의 성과는 전반적인 만족도도 중요하지만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파악하여 이를 보완함으로써 교육훈련의 질을 높이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므로 세분화된 만족도 또는 의견조사가 필요함

3. 개선방안 등

- 농촌지역경제의 활성화는 근본적으로 인적자원 개발에 달려 있다고 하여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농촌인적자원의 특성을 반영한 취업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시기임
- 고령 농어업인들의 전업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일본의 경우 많은 노령농업인들이 재취업하는 사례를 참고), 기존의 직업훈련 대상에 도시이주민 또는 이주하여 농촌지역에 일자리를 갖기 원하는 이주예정자들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직업훈련을 전문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고 있는데 지역 고유의 일자리 영역에 대해서는 지역 자체적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자체로부터 승인받으면 지역의 이해당사자 조직 또는 대행기관이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유연한 시책 도입을 검토함

4-2-1-1(계속)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농림수산식품부)
-------------	---------------------------

담당부서	농촌사회과	담당자	김홍철(사무관)
전화번호	02-500-1822	이메일	hc8282@korea.kr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주40시간 근무제 등으로 증대되고 있는 도시민의 여가수요를 농촌으로 유치하여 농외소득증대 등 농촌지역 활력 증진 도모
- 친환경 농업, 자연경관 등을 활용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 농업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농촌지역의 공동체 형성·복원
-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휴양·체험공간으로 녹색농촌체험 마을을 조성하여 농촌체험관광 및 도농교류 거점으로 활용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2년 ~ 2017년
- 총사업비 : 1,276억원('08년까지 기 투자액 : 364억원) *국고기준
- 사업규모 : 850개
- 지원근거 : 도시와농어촌간의교류촉진에관한법률 제6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5조(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 지원조건 : 마을당2억원(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지원내용 : 도시민 유치를 위해 필요한 마을 공동의 농촌체험기반시설, 마을경관 조성, 생활편의시설, 기타 S/W관련사업 등 조성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66	-	366		-	366	-	732
'05	47		47			47		94
'06	67		67			67		134
'07	84	-	84		-	84	-	168
'08	90	-	90		-	90	-	180
'09	78	-	78		-	78	-	156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66	-	366		-	366	-	732
'05	47		47			47		94
'06	67		67			67		134
'07	84	-	84		-	84	-	168
'08	90	-	90		-	90	-	180
'09	78	-	78		-	78	-	156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녹색농촌체험마을 방문객 수 : (목표) 3,232천명, (실적) 3,626천명으로 목표치 대비 12.2% 증가
-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관광매출액 : (목표) 430억원, (실적) 445억원으로 목표치 대비 3.5% 증가

☞ '2009 농어촌 여름휴가페스티벌' 개최('09. 7), 1사1촌운동 전개 등으로 농촌체험마을을 방문하는 도시민이 증가하여 목표치를 달성함

☞ 또한, 분기별 원활한 자금배정, 사업 시행계획의 원활한 추진으로 녹색농촌 체험마을 신규 90개소 조성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A)	실적(B)	B/A(%)
녹색농촌 체험마을조성	마을 방문객 수	총 방문객 수	천명	3,232	3,626	12.2
	농촌관광 매출액	총 매출액	억원	460	445	3.5

II. 평가결과

1. 총 평

- 2002년에 처음 시작된 당 사업은 저예산고효율의 대명사로 불릴 만큼 도농교류촉진 및 농특산물의 부가가치 증진이라는 대단히 훌륭한 사업성과를 냈음.
- 그러나 '09년까지 442개소가 지정되어 당초 목표량(850개소)의 절반을 넘어서면서부터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함. 사업초기에 비하여 내적, 외적 성장동력이 다소 둔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보다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향을 보임.
- 최근의 녹색농촌체험마을의 개발과정을 살펴보면 상당수 마을에서 종합체험동을 짓고 여기서 체험, 식사, 숙박, 회의 등의 모든 사업을 일괄처리하려는 공급자 중심의 사업방식에 빠져 있음.
- 그보다는 도시방문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농촌다움'을 토대로 도농교류사업을 전개해야 할 것임. 주민들의 의식 개혁과 사업역량배양을 우선하면서 실천적 마을발전계획수립, 전문가의 컨설팅과 현장지도, 시범운영을 통한 자신감 고취 등 사업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당 사업을 전개하여야 할 것임.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날로 점증하는 도시민의 여가욕구를 농촌관광수요로 유도함으로써 농촌의 활력을 되살리고자 농업농촌체험, 생활문화체험, 휴양, 학습이 가능한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
- 삶과 휴양, 산업이 조화된 복합정주공간으로 농촌을 새롭게 탄생시키는

수단으로서 도농교류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시민의 소비 지출이 농촌에서 발생하고 도농간 균형발전이라는 파급효과도 기대하고 있음.

- 이러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수립단계부터 주민이 직접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상향식 사업으로서 주민들의 자율적 의견을 반영하려 하고 있었음.
- 특히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도록 장려하였으며, 관계공무원이 배석하는 연찬회에서 나타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과정에 반영하고 있음.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상향식 공모방식으로 추진되는 당 사업은 사전교육이나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사업역량을 갖춘 마을 중에서 전체가구수의 과반수 이상이 참여해야만 사업대상지로 선정해 주고 있음.
- 일단 사업이 개시되면 사업시행인가기관인 시도지사가 분기별로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식품부에서는 3월과 11월 등 반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음. 일부 마을에서 주민간 협력이 부족하여 집행이 다소 지연된 경우가 나타나기도 하였는바, 지속적인 교육과 전문가의 컨설팅으로 갈등을 최소화시키고자 노력하였음.
- 당 사업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마을당 2억원으로 국비 50%, 지방비 50%로 구성되었으며, 매년 책정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였음.
- 한편 ‘마을가꾸기 경진대회’를 매년 개최함으로써 도시민들의 농촌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농업인들에게는 선의의 경쟁의식을 불러넣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당 사업은 농촌 고유의 자연, 생업, 문화자원 등을 토대로 다양한 체험 마을을 조성함으로써 농산어촌형 복합산업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일조를 다하고 있음.
-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대한 도시민의 방문객 증가는 목표(15%)대비 12.2% 초과한 27.2%로서 당 사업의 목표가 무리 없이 달성된 것으로 판단됨.

3. 개선방안 등

- 경쟁이 없는 사업은 자칫 잘못하면 퇴보할 수도 있음. 그간 선의의 경쟁을 벌였던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이 올해로 종료되고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역시 포괄보조금 사업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이러한 마을 단위 관광사업 모형은 사실상 지역별 단독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함.
- 따라서 보다 훌륭한 사업성공을 보장받으려면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파악한 후 각각의 해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특히 인사이동이 잦은 해당 시군의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업방향과 추진방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강화한다면 당사업의 지속적 성공이 예상됨.
- 더불어 체험장과 같은 시설 일변도의 사업추진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깊이 있는 컨설팅, 주민 대상의 사업능력배양교육 실시, 도농교류 활성화 등의 소프트웨어 사업도 강화해야 하겠음.
- 나아가 기존 마을의 고객관리와 회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영지원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며 체험마을간의 네트워크 강화 또는 유사사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이 필요함.

4-2-1-2(계속)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사업(농촌진흥청)
-------------	-----------------------

담당부서	농촌자원과	담당자	김보균
전화번호	031)299-2678	이메일	dreamkbg@korea.kr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사업목표 : 농촌전통자원의 발굴 활용으로 도농간 상생적 교류를 촉진하여 농촌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추진근거
 - 농업·농촌 기본법 제8조(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및 38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도시와 농산어촌 교류 확대)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2년 - 2009년 (마을단위 2년)
- 사업주체 : 시군농업기술센터
- 추진체계 : 농촌진흥청 - 도농업기술원 - 시군농업기술센터 - 마을
 - 『②-1.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의 적절성』 설명 참조
- 시행방법 : 민간자본보조 (보조율 100%)
- 추진내용
 - 마을 고유의 테마 및 마을별 7거리 자원의 체계적 발굴
 - 하드웨어 측면 : 체험·학습시설, 편의시설, 마을환경 정비 등
 - 소프트웨어 측면 : 마을 고유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매뉴얼, 주민교육, 소득자원 개발, 홍보 및 마케팅 등

3. 연차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사업비 지원('02 ~ '09) 170마을, 170억원(국비)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5(기존 제외)		133.75			134.45		268.2
'05	21		20			20		40
'06	31		25.2			24.8		50
'07	34		32.7			32.3		65
'08	39		37.4			38.8		76.2
'09	37(기존)		18.45			18.55		37
'10	-		-			-		-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4		114.8			115.4		230.2
'05	20		19.5			19.5		39
'06	31		25.2			24.8		50
'07	34		32.7			32.3		65
'08	39		37.4			38.8		76.2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마을당 방문객 수(조성기간 마을 제외)를 조사한 결과 15.7천명으로 '09년도 목표(14천명)대비 112% 초과달성함
 - 마을당 매출액(조성기간 마을 제외)를 조사한 결과 103백만원으로 '09년도 목표(97백만원)대비 106.2% 초과달성함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마을당 방문객수	농촌전통테마마을 전체 방문객 수를 마을 수로 나누어 산출 (조성기간 마을은 분석에서 제외)	천명	14	15.7	112
	마을당 매출액	농촌전통테마마을 전체 도농교류 매출을 마을 수로 나누어 산출 (조성기간 마을은 분석에서 제외)	백만원	97	103	106.2

II. 평가결과

1. 총 평

- 마을별로 고유테마를 발굴하고 이와 관계된 7거리 자원을 개발하였던 당 사업은 '02년부터 지금까지 전국에 170개 마을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내년까지는 기존마을에 대한 유지관리 중심으로 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다.
- 당 사업의 사업목표는 농촌전통자원의 발굴 및 활용을 통해 도농상생의 교류촉진, 농특산물 직거래와 숙식과 체험 등의 소득사업으로 지역활성화 등이었으며, 이미 사업목표는 성공적으로 달성하였다고 판단됨.
- 특히 농업기술센터 소속의 지도직 공무원들이 현장을 누비며 농업인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는 등의 적극적 자세로 인해 대성공을 거둘 수 있었음.
- 비록 2010년에 모든 사업이 종료되지만, 향후 당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획득한 성공비결을 전국 체험마을에 보급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 지도를 해줄 필요가 있겠음.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농업소득 감소에 따른 새로운 농외소득원을 발굴함과 동시에 농어촌의 기능을 기존의 생산중심에서 정주중심으로 전환시키고자 추진된 사업이었음.
-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방문욕구 자극을 위한 전통문화의 재발견 및 체험프로그램화 등의 사업추진과정에서 농촌사회의 공동체의식을 복원하려는

계획도 포함되었음.

- 농촌관광기반조성, 사업간 연계지원체계 구축, 사후관리를 위한 학습 지원, 홍보마케팅 지원 등이 하위과제로 추진되었음.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농진청-도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로 구성된 일사불란한 조직을 활용하여 현장의견수렴부터 그에 대한 대안수립까지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나아가 관계부처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였으며,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얻기 위한 네트워크를 긴밀하게 구축하였고 지도인력과 마을지도자의 정보교류를 위한 연찬회를 정례화하는 등의 실적이 돋보였음.
- 매년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사업평가, 모니터링, 세미나 등을 실시하였으며, 자체 개발한 농촌관광마을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마을 운영, 시설수준, 서비스수준, 이용자만족도 등을 측정하여 체험사업에 피드백하였음.
- 한편 선도마을에 대해서는 세시풍속 프로그램화, 주거환경개선, 농가 맛집사업, 농촌교육농장, 농촌체험네트워크 등의 후속사업지원을 통해 명품마을로 만들고 있었음.
- 그밖에 농촌마을가꾸기, 예쁜마을 경진대회, 체험학습박람회, 여름휴가 페스티벌, 농촌전통테마마을 향토문화축제 등과 연계하여 대내외적인 홍보활동을 펼쳤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당 사업을 통해 농산어촌관광기반구축 및 도농교류가 크게 활성화 되었는바, 일례로써 경남 산청군 남사예담촌의 경우 '03년 대비 '09년의 실적을 보면 방문객 증가는 약40배, 소득은 액46배 증가되었음.

- 또한 '09년에 실시된 농촌마을가꾸기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비롯하여 우수상 2마을, 장려상 3마을 등 전체 13개 수상마을 중에서 테마마을이 46%를 차지하였음.
- 도시민의 농촌체험관광 만족도 역시 '07년 74.9%, '08년 76.2%, '09년 77.1%로 매년 조금씩 향상되고 있었음.

3. 개선방안 등

- 2009년부터 더 이상의 신규조성을 하지 않는 사업이기에 사후관리 차원의 후속지원만 필요함. 예컨대 기 조성된 테마마을에 대한 고객관리 및 회계관리 프로그램의 지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담당부서	지역문화과	담당자	김효진
전화번호	02-3704-9553	이메일	hyojin21@korea.kr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사업목적

- 5천년 민족문화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우리 삶의 터전인 마을의 문화를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지속가능한 마을로 가꾸고,
- 마을의 문화·역사적 소재를 발굴·육성, 관광자원화하여 문화와 환경이 아름답게 조화된 자생력 있는 마을을 조성함으로써 주민 소득 증대 등 정주민족도 제고

○ 사업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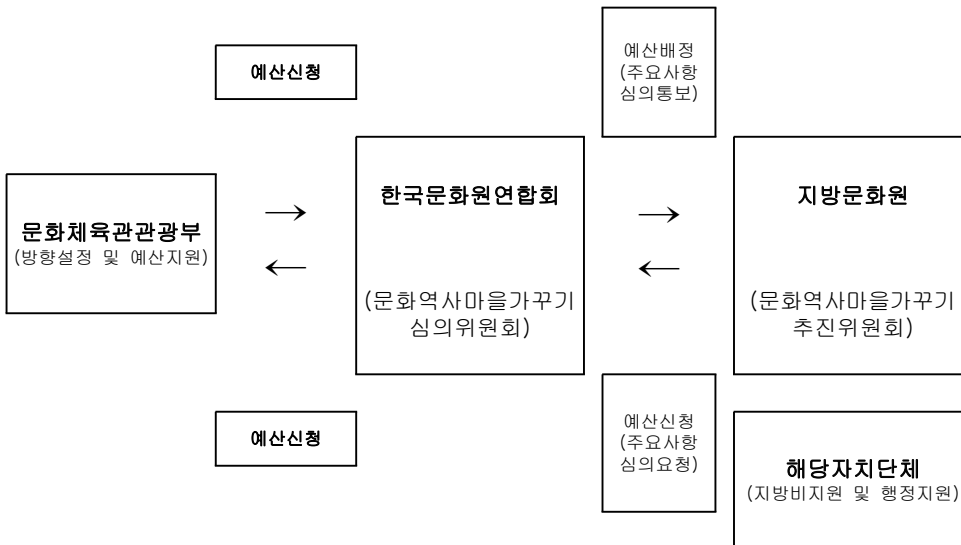
- 물량위주의 건축, 마을정비 사업보다는 문화·역사·환경·소득이 조화된 장기적 마을발전 전략 수립 운영
- 지역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객 증대를 위한 마을별 특화된 사업 전개로 경관개선, 관광상품 개발, 역사마을 체험프로그램 및 마을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
- 일률적인 개발방식을 지양하고 마을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마을 조성

○ 사업추진근거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지방문화원의 육성 등)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5년(2004~2009년) / 1개 마을당 약 3년
- 총사업비 : 239억원(기금 154.5억원, 지방비 84.5억원 / '08년까지 기투자액 : 198억원)
- 사업규모 : 9개도 13개 마을 조성
- 지원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 보조사업자 : 한국문화원연합회
- 간접보조사업자 : 지방문화원
- 추진내용 : 13개 마을 조성 완료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추진체계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개 마을				155	85		240
'04	1개 마을				10	5		15
'05	6개 마을				30	15		45
'06	4개 마을				35	18		53
'07	8개 마을				23	14		37
'08	8개 마을				30	15		45
'09	6개 마을				27	18		45

※총 13개 마을을 지원하나, 계속사업으로 인해 예산은 연도별로 1~4회 분할하여 교부함

연 도	추진계획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선정(3개) - 안동 군자마을, 영광 효동마을, 서귀포 법환마을 ○ 사업착수(1개) - 안동 군자마을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선정(7개) - 원주 회촌마을, 강릉 학산마을, 서천 동자북마을, 통영 문어포마을 - 정읍 원촌마을, 고창 사등마을, 의령 입산마을 ○ 사업착수(6개) - 영광 효동마을, 서귀포 법환마을 - 원주 회촌마을, 강릉 학산마을, 서천 동자북마을, 통영 문어포마을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선정(2개) - 충주 목계마을, 진천 보련마을 ○ 사업착수(3개) - 정읍 원촌마을, 고창 사등마을, 의령 입산마을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선정(1개) - 안성 덕봉마을 ○ 사업착수(3개) - 안성 덕봉마을, 충주 목계마을, 진천 보련마을 ○ 사업완료(1개) - 안동 군자마을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12개) - 영광 효동마을, 서귀포 법환마을, 원주 회촌마을, 강릉 학산마을, 서천 동자북마을, 통영 문어포마을, 정읍 원촌마을, 고창 사등마을, 의령 입산마을, 안성 덕봉마을, 충주 목계마을, 진천 보련마을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완료(12개) - 영광 효동마을, 서귀포 법환마을, 원주 회촌마을, 강릉 학산마을, 서천 동자북마을, 통영 문어포마을, 정읍 원촌마을, 고창 사등마을, 의령 입산마을, 안성 덕봉마을, 충주 목계마을, 진천 보련마을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개 마을				155	85		240
'04	1개 마을				10	5		15
'05	6개 마을				30	15		45
'06	4개 마을				35	18		53
'07	8개 마을				23	14		37
'08	8개 마을				30	15		45
'09	6개 마을				27	18		45

※총 13개 마을을 지원하나, 계속사업으로 인해 예산은 연도별로 1~4회 분할하여 교부함

연 도	추진실적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선정(3개도 3개마을) - 안동 군자마을, 영광 효동마을, 서귀포 법환마을(10월) ○ 사업착수(1개마을) - 안동 군자마을(12월)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선정(4개도 7개마을) - 원주 회춘마을, 강릉 학산마을, 서천 동자북마을, 통영 문어포마을(9월) - 정읍 원촌마을, 고창 사등마을, 의령 입산마을(9월) ○ 사업착수(6개마을) - 영광 효동마을, 서귀포 법환마을(3월) - 원주 회춘마을, 강릉 학산마을, 서천 동자북마을, 통영 문어포마을(12월)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선정(1개도 2개마을) - 충주 목계마을, 진천 보련마을(11월) ○ 사업착수(3개마을) - 정읍 원촌마을, 고창 사등마을, 의령 입산마을(6월) ○ 기공식(1개마을) - 안동 군자마을(11월)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선정(1개도 1개마을) - 안성 덕봉마을 ○ 사업착수(3개마을) - 안성 덕봉마을(6월), 충주 목계마을, 진천 보련마을(3월) ○ 사업완료(1개마을) - 안동 군자마을(9월) ○ 기공식 및 준공식(2개마을) - 기공식 : 서귀포 법환마을(11월) / 준공식 : 안동 군자마을(8월)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12개마을) - 영광 효동마을, 서귀포 법환마을, 원주 회춘마을, 강릉 학산마을, 서천 동자북마을, 통영 문어포마을, 정읍 원촌마을, 고창 사등마을, 의령 입산마을, 안성 덕봉마을, 충주 목계마을, 진천 보련마을 ○ 기공식(5개마을) - 영광 효동마을(2월), 원주 회춘마을(5월), 충주 목계마을(9월), 정읍 원촌마을(9월), 서천 동자북마을(11월)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식 및 사업완료(12개마을) - 영광 효동마을(완료4월, 준공식6월), 서귀포 법환마을(완료4월, 준공식4월), 원주 회춘마을(완료6월, 준공식6월), 강릉 학산마을(완료6월, 준공식8월), 서천 동자북마을(완료10월, 준공식10월), 통영 문어포마을(완료4월, 준공식5월), 정읍 원촌마을(완료6월, 준공식6월), 고창 사등마을(완료11월, 준공식12월), 의령 입산마을(완료6월, 준공식8월), 안성 덕봉마을(완료12월, 준공식12월), 충주 목계마을(완료12월, 준공식 11월), 진천 보련마을(완료12월, 준공식11월)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동 사업은 '09년 최종 사업완료('07년 1개, '09년 12개 조성완료)되었으며, 주민 정주만족도 평가는 '08년 목표 70%에서 상향조정된 80%의 목표치를 계획했으며, 주민대상 등 '09년 모니터링 평가 설문조사 결과 지속적인 시범프로그램운영 등을 통한 사업이해도 및 자생적 능력향상으로 주민만족도는 목표치보다 높음을 알 수 있었음. 또한 사업 완료되어 가시적인 결과물(건축물, 운영프로그램, 경관개선 등)이 도출되어 만족도는 상회되었음.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문화역사마을 조성	주민만족도	리커트 5점 척도 설문조사	%	80	85	106%

II. 평가결과

1. 총 평

- 우리 민족문화의 우수성과 다양성이 잘 보존된 농어촌마을의 문화역사자원을 발굴, 육성, 관광자원화함과 동시에 문화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자생력 있는 마을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소득증대 등 정주민족도를 제고하는 사업.
-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전국 9개도에 13개 마을을 지정하여 조성 완료하였음.
- 총사업비는 239억원으로 지방문화원이 주도하는 민간보조사업방식으로 추진되었음. 특히 중앙과 지방, 행정과 전문가, 그리고 주민과의 상호협력에 바탕을 둔 사업추진체계가 돋보인 사업이었음.
- 다만 일부 마을의 경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다소 미흡하기도 하였고 또한 다수의 주민보다는 소수 주민대표들에 의한 사업추진이 목격되기도 하였으나 점차 개선될 것으로 판단됨.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도시화 및 고령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방기되는 농촌지역의 문화역사자원을 보존하고 활용함으로써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당 사업을 추진하였음.
- 3년의 사업기간 중에서 1~2년차에는 주민교육, 계획수립 등에 치중하였으며, 2~3년차에는 시설 및 환경조성, 프로그램개발, 운영 및 관리방안 강구 등에 주력하였음.
-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의 심의위원회, 마을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지침>을 제정하였고, 중앙의 심의위원회에 마을별 주요 사안에 대한 승인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도 하였음.

- 무엇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 문화원연합회, 부문별 전문가집단, 그리고 마을주민 등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들이 꾸준한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역사, 문화,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협력적 시스템이 특징적이었음.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전술하였듯이 당 사업은 중앙과 지방, 행정과 전문가, 그리고 주민 등 상호협력에 바탕을 둔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각각의 장점을 공유 하였음.
- 결과적으로 특정인에 의한 독단적 결정과 추진을 예방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마을주민은 물론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음.
- 계획수립 뿐만 아니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점검 워크숍과 포럼개최, 마을주민 모니터링 실시 등을 통해 사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을 파악하여 당초 사업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등의 대처도 돋보였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13개 마을에 대한 조성사업이 완료되면서 방문객 및 관광소득이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음. 이처럼 소득증대와 함께 주민들의 애향심과 정주만족도도 높아지고 있으며, 외지인에 대한 마을인지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음.
- 이미 '07년에 사업을 완료한 안동 군자마을의 경우 사업시작 이전인 2004년 대비 2009년의 실적을 비교해보면 방문객수는 4.3배, 관광

소득은 110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음.

- 한편 문화역사마을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정주만족도는 리커트 5점 척도로 설문조사한 결과 목표(80%) 대비 106% 높은 85%을 기록하였는바 대체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보여짐.

3. 개선방안 등

- 2009년을 끝으로 문화역사마을 조성사업은 완결되었으나 향후 본격적으로 마을단위의 공동소득사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에 속함.
- 비록 시설물 설치나 주민교육 등 사업에 필요한 기초적인 준비는 잘 마무리되었으나 이제부터 문화역사마을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후속대책마련 및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우선 지역주민들의 참여의식과 사업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교육훈련이 요구됨. 특히 13개 문화원과 문화역사마을의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비롯하여 공동홍보와 마케팅 등 실천적 대안마련이 필요함.
- 비록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주체를 맡으면서 관광자원화 및 홍보 등의 부문에서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농어촌지역주민들의 근본적인 소득증대를 꾀하려면 반드시 농수특산물의 가공사업과 연계하여야 할 것임. 예컨대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농촌진흥청 등으로 하여금 농수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가공 및 포장 등 후속사업을 지원하도록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4-2-1-4(계속)	어촌체험마을 조성(농림수산식품부)
-------------	--------------------

담당부서	수산물개발과	담당자	송경석(주무관)
전화번호	02-500-2330	이메일	kssong@mifaff.go.kr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어업체험을 중심으로 어촌의 자연환경, 생활문화등과 연계한 관광 기반시설을 조성, 어업인의 어업의 소득증대 및 어촌경제활성화 도모
- 사업추진 근거 : 어촌어항법 제49조2(어촌관광 활성화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1~'13년(13년간)
- 총사업비 : 731억원('09년까지 681백만원)
- 사업규모 : 112개 어촌체험마을('09년까지 102개)조성
- 사업주체 : 시장·군수
- 지원규모 : 개소당 500백만원을 기준으로 증·감하되, 기본계획에 의한 투자금액 이내
- 지원방식 : 지자체 보조(국비50%+지방비45%+자담5%)
- 추진체계 : 사업신청(마을) → 마을선정(시·군, 시·도) → 개발계획 수립(시·군) → 기본계획 협의(시·도→농림수산식품부) → 예산지원(농림수산식품부→시·도→시·군) → 사업시행 및 어촌체험마을 운영(시·군 및 마을)
- 추진내용 : 관광안내소, 진입로, 주차장, 샤워장, 화장실 등의 관광 기반시설 및 소프트웨어사업 등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62개소		205			184	20	409
'05	18개소		55			50	5	110
'06	18개소		69			62	7	138
'07	11개소		41			36	4	81
'08	8개소		30			27	3	60
'09	7개소		22			19	2	43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62개소		165			148	16	329
'05	18개소		55			50	5	110
'06	18개소		69			62	7	138
'07	11개소		41			36	4	81
'08	8개소		30			27	3	60
'09	7개소		22			19	2	43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성과지표 : 체험객수, 체험소득

* '09사업계획 : 7개 마을 조성 22억원 지원(국비기준)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어촌체험마을 조성	체험객수	체험마을 체험객수	천명	640	744	116
	체험소득	체험마을 체험소득	백만원	12,920	16,759	130

II. 평가결과

1. 총 평

- 어업체험을 중심으로 어촌의 자연환경, 생활문화 등과 연계한 관광 기반 시설을 조성하여 어업인의 어업의 소득증대 및 어촌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마을별로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체험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도시와 어촌 교류를 통한 어촌사회 활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임
- 사업계획이 적정한 편이고 사업의 집행과 점검·평가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이 정착단계에 이른 것으로 평가됨
- 갯벌체험 이외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갯벌은 수산물을 생산하는 천혜의 조건을 가졌다는 것 이외에 육상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을 정화하고 오염물질 정화로 생물 다양성 증진과 수산자원 회복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에 따른 재해예방 등의 기능과 생태탐방지로 각광받고 있어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기에 미래녹색가치 창출과 연계한 생태환경 체험 프로그램 등의 개발이 더욱 필요하며, 아울러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실습학점, 봉사활동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조가 요구됨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지리적, 자연적 특성을 어촌의 소득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체험중심의 어촌관광 기반조성으로 어가소득 향상과 삶의 질 향상 계획 비전에 적절함

- 사업시행 주체인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체험마을 선정과 예산요구 이전에 개발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예비 선정제의 도입과 주민교육 및 마을운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 사무장 및 마을리더에 대하여 어촌관광 역량강화 교육을 의무 이수토록 조치하고 마을별로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법 등 컨설팅을 추진하여 체험마을 혁신역량을 강화하였음
- 그러나 아직은 어촌사회의 오랜 관습으로 마을주민의 서비스 의식 부족과 마을에 지원된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와 운영능력이 미흡함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중앙정부에서 사업지침을 정하고 추진주체인 지자체에서 수혜계층인 마을의 신청을 받아 대상마을 선정하고 있으며 마을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업추진체계가 적절하게 추진되었음
- 농산어촌 종합개발사업과 연계하고 농산어촌체험마을 보험가입을 지원하는 등 관련기관 연계와 협조를 통해 사업효과 극대화와 전문 교육을 이수한 마을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사업계획이 완료된 마을에 한하여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였음
- 전년도 지적사항인 어촌체험마을사업의 운영내실화를 위해 어촌 체험마을 컨설팅 및 사무장의 정책지원을 통해 마을별·지역별 프로그램 차별화와 운영역량 강화에 기여하도록 추진하였음
- 관광형태의 어촌체험이 소득증대와 더욱 연계되도록 계절별 먹거리와 특산물에 대한 지리적 표시 등 철저한 품질관리와 차별화에 대한 교육병행이 필요함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어촌체험마을 기초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자연환경, 생활문화 등과 연계한 어촌체험관광으로 일자리 창출 및 어촌주민들의 어업외 소득 증대를 도모하였음
- 어촌체험마을 당 평균 8만 2천명이 방문하고 그 중 10%인 8천명이 어촌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마을당 평균 5억 1천 9백 만원의 관광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의 궁극적 목표인 체험객 유치를 통한 어업인의 어업외 소득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체험마을에서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있는 체험마을 운영실적 대장에 실질적으로 사업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체험객 수 및 체험소득이 적절한 과정을 거쳐 측정되었는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근거자료 보완 필요함

3. 개선방안 등

- 어촌체험의 주류를 이루는 생태체험형 프로그램과 차별화하여 어촌의 전통문화, 역사, 인물 등을 활용한 서비스 산업으로의 육성과 특화 체험프로그램개발 보급이 필요함
- 청소년학생들을 위한 어촌체험안내서의 제작·발간을 통해 초등학교 학생들의 어촌 현장체험 유도가 필요함
- 사업의 성과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어촌체험마을 추가 시행여부와 기존 어촌체험마을에 대한 운영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단계별 차등 관리 운영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함
- 마을별 차별화된 사업모델 등을 위해 투자사업비 한도의 상향 설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2-1-5(계속)	어촌관광활성화 사업(농림수산식품부)
-------------	---------------------

담당부서	수산물개발과	담당자	송경석(주무관)
전화번호	02-500-2330	이메일	kssong@mifaff.go.kr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주5일 근무제 실시 등으로 증가하는 어촌관광 수요에 대비하여 어촌에 대한 지원을 소득·관광기반 중심으로 전환, 지원함으로써 어업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도모
- 사업추진 근거 : 어촌·어항법 제49조2(어촌관광 활성화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4년 ~ '09년
- 총사업비 : 1,040억원('09년까지 기 투자액 636억원)
- 사업규모 : 개소당 50억원(7개소), 60억원(11개소)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Matching Fund)
-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사업추진주체 : 시·도지사(시·군·구)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계	16(11)		307			307	0	614
'05	1(1)		1			1		2
'06	4(4)		35			35		70
'07	10(8)		120			120		240
'08	12(11)		80			80		160
'09	10(10)		71			71		142

* ()내는 계속사업 권역수임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계	16(11)		307			307	0	614
'05	1(1)		1			1		2
'06	4(4)		35			35		70
'07	10(8)		120			120		240
'08	12(11)		80			80		160
'09	10(10)		71			71		142

* ()내는 계속사업 권역수입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성과지표 : 어업인만족도

* '09사업계획 : 10개소(계속사업 10개소) 71억원 지원(국비기준)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어촌어항관광개발	어업인만족도	기준년도 대비	%	67	67.5	100.7

II. 평가결과

1. 총 평

- 날로 증가하고 있는 어촌관광 수요에 맞춰 어촌을 수산물생산 위주의 단순산업공간에서 벗어나 바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웰빙·관광·문화의 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어촌과 바다에 대한 상쾌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제고시켜 도시민이 편안하게 어촌과 바다를 접할 수 있는 관광어촌 조성으로 어업외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평가됨
- 어촌관광개발사업의 적기추진으로 국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해 어촌만이 가지고 있는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살거리’ 등을 제공함으로써 도시민에게는 생활의 활력을 어업인에게는 소득증대 기회를 제공하였음
- 어촌관광활성화가 어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와 연계되도록 가공·유통 등 소득시설사업 지원 병행 확대가 필요함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특색있는 어촌의 어메니티와 연계하여 직접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과 체험학습장, 지역특성을 가미한 테마가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시민과 어업인들이 함께하는 비즈니스 공간으로 재 창출하여 지역경제발전 기여는 물론, 어업인들에게는 소득증대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적절한 사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
- 소규모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고품격의 어촌관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하여 관광객 편의시설과 어업외 소득증대의

일환으로 자연경관 등 관광여건이 구비된 어촌의 환경 재정비를 통해 다시 찾고 싶은 어촌으로 탈바꿈시키는 등 어촌관광 대중화를 추진하고 사업추진 단계에서 대다수 이용자들이 시설에 대한 변경 요구가 있을 시 재검토를 통하여 최대한 수용하는 등 주민설명회, 중간 및 최종보고회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먹거리 위주의 단순 경유형 어촌관광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 해양레포츠, 바다생태계 탐방 등의 다양한 관광자원의 체험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지역 여건과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내용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 검토과정을 거쳐 현지 실정에 맞게 추진하며 타당성 및 사업효과 분석 등 종합적인 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사업별 모니터링 실시와 현지점검으로 애로와 건의사항 등을 파악하여 사업추진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음
- 전년도 지적사항 중 어촌관광활성화 사업 성공을 위한 어업인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대상지역 어업인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지 해설가와 지역리더와 홍보자 양성 등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
- 소득사업 위주의 시설 선호 등 지역민과 사업주체 간 큰 견해차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지방재정 부담률이 높아 지자체 분담금 적기 확보 곤란 등으로 년차별 투자계획에 의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균특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이 필요함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수산물 생산공간 역할 중점이던 어촌이 생태체험장, 관광안내센터, 해안산책로, 공원, 공동판매장 등과 같은 생산·주거·관광이 어우러진 종합복합공간으로 구성되어 관광어촌을 통한 어가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임
- 사업기간이 통상 3~5년 정도 소요되고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상태에서 직접적인 사업효과 도출에 어려움이 있으나 어촌관광활성화 사업의 목적이 지역별·해역별 특성에 맞는 어촌관광 수요 창출을 통한 어촌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확충임을 고려하여 성장잠재력이 높은 어촌에 해양친수공간, 체험시설, 소득시설 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향후 지역주민들의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임
- 사업 완공 후 도시와 어촌 교류촉진으로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에 따라 국고보조금 확보 이전에 지자체 분담금도 동시에 확보가 필요함

3. 개선방안 등

- 시설계획 수립시 지역민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도시민을 유인할 수 있는 시설계획 마련이 필요
-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단계별 관계기관 협의 철저 이행이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예산의 적기지원 및 국가균형발전유도를 위해 일반회계 사업비로의 전환 검토 필요

담당부서	산림휴양등산과	담당자	조병철(사무관)
전화번호	042-481-4211	이메일	cho0411@foresr.go.kr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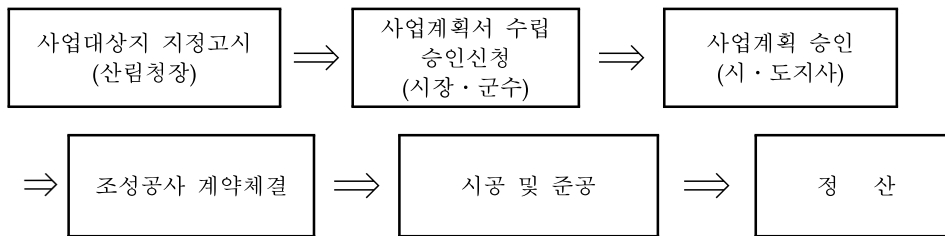
- 도시화, 산업화로 환경 건강에 대한 관심이 무한히 커져감에 따라 국민들이 산림내에서 단기 체류를 하면서 산림이 가지고 있는 정화 기능과 치유능력 등 여러 가지 공익적 기능을 향유하고 산림의 중요성 이해 및 다양한 산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88~계속
- 사업주체 : 산림청, 시·도 및 시·군·구
- 사업추진 내용
 - 지원대상 : 국가 및 지자체
 - 사업규모
 - 설계 : 3개소(지자체 3)
 - 조성 : 14개소(지자체 14)
 - 보완 : 64개소(국가 37, 지자체 27)
 - 산림욕장 : 16개소(지자체 16)
 - 지원조건
 - 국유자연휴양림 조성(30억) : 국가 100%
 - 국유자연휴양림 보완(4억) : 국가 100%
 - 지자체자연휴양림 조성(30억) : 국가 50%, 지자체 50%

- 지자체자연휴양림 보완(4억) : 국가 50%, 지자체 50%
- 지자체 산림욕장 조성(4억) : 국가 50%, 지자체 50%
- 사업 주요내용 : 자연휴양림 조성 및 보완, 산림욕장, 숲속수련장 등

○ 사업추진 체계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11		1,247	1,496		921	51	3,715
'05	31		103	209		94	7	413
'06	45		176	214		127	7	524
'07	71		281	211		197	7	696
'08	76		240	222		184	10	656
'09	97		214	323		156	10	703
'10	94		273	330		273	5	881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23		560	634		418	21	1,633
'05	31		103	209		94	7	413
'06	45		176	214		127	7	524
'07	71		281	211		197	7	696
'08	76		240	222		184	10	656
'09	94		214	323		156	10	703

- '09년도 사업물량 목표치 대비 실적은 모두 달성하였으며, 향후 자연휴양림 조성시 사전환경성검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 단축을 추진하여 조기집행 및 조기완공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적극 기여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산림휴양시설 조 성	국유림	보완	개소	37	37	100
	공유림	설계·조성·보완	개소	48	48	100
	산림욕장	설계 및 조성	개소	16	16	100

II. 평가결과

1. 총 평

- 이 사업은 도시화, 산업화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는 환경 속에서 국민들이 산림내에서 단기 체류를 하면서 산림이 가지고 있는 정화 기능과 치유능력 등 여러 공익적 기능을 향유하고 산림의 중요성 이해 및 다양한 산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함을 목표로 함.
- 국민에게 건전하고 저렴한 산림휴양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농·산촌의 관광개발과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 됨.
 - 다만, 전년도에 비해 자연친화적 휴양시설 보완을 위하여 환경·토목·건축 등 분야별 자문가 그룹의 심의 및 타당성 평가를 통한 목재와 황토 등 친환경 소재를 최대한 사용하여 친환경적 산림휴양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산촌주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산림휴양 잠재수요를 보다 현실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 됨.
- 전년도 평가결과에 대한 미흡한 사항이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성과지표 개선이 필요함.
 - 자연휴양림이 위치한 지역주민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 관광 자원 개발 및 지역 활성화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연계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 제고 등이 필요함.
 - 체험 위주의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전문성 강화 등 질적 향상도 요구됨.
 - 더불어 성과지표를 조성한 시설 개소수로 삼고 있는 바, 이는 실적이지

성과지표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응답 내용의 주관성이 작동할 수 있는 이용 및 만족도 조사 결과 수치를 사용하는 바 이는 사업의 특성을 잘 대변하고 과학적인 성과지표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야영, 체험활동 등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휴양수요를 충족하고 자연휴양림 개선, 보완을 통한 대국민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기획되었음. 다만, 자원을 관리하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임.
- 제1차 삶의질 기본계획(2005-2009)뿐만 아니라 제2차 삶의질 기본계획(2010-2014)에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이며 ‘산림문화휴양 10개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상위 정책 목표에도 부합함.
- 특정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는 사업인 만큼 해당 지역의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호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 디자인이 필요함.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사업추진방식에 있어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한 모임을 시도하기는 하였으나 산림휴양학회장 등 회원 9명이 참석한 산림휴양정책 발전 방안 토론회는 매우 형식적으로 보임.
-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연휴양림의 체계적인 조성 및 이용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자연휴양림의 지역자원과의 연계성 강화, 노후화된 휴양시설의 특색있는

개선, 조성과 휴양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함.

- 삶의질향상점검평가단의 점검평가결과에 대해서 ‘해당없음’이라고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국민의 산림휴양서비스 이용수요에 부응하는 시설 조성 및 숲해설, 숲체험 등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됨.
- 다만, 이 사업은 자연휴양림 등이 조성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고려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함.
- 성과지표의 경우, 사업의 개요 부분에서는 조성된 시설의 개소수를 사용하고 자체평가보고서에서는 전년도 대비 자연휴양림 이용자 만족도, 자연휴양림 이용자 증가율을 들고 있음. 그러나 조성된 시설의 개소수는 성과지표가 아니고 실적이며, 자연휴양림 이용자 만족도 및 자연휴양림 이용자 증가율 역시 사업의 한쪽 측면만을 바라본 성과지표이자 조사의 시기, 주체, 대상 등에 따라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자료임으로 보다 사업의 특성을 잘 살리면서도 과학적인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봄.

3. 개선방안 등

- 여가시간 및 소득증가로 인한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산림휴양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나, 지역별로 특성화된 시설 조성 및 개선과 지역특산물을 활용하거나 지역의 잠재적 휴양자원을 주민들과 공동 개발하는 등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운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다 높일 수 있는 방안 확충이
필요함.

-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공동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디자인되고 실행될 필요
- 이는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자연휴양림이 아니라 지역별로 특색을
갖는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자연휴양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방안이기도 함
- 시설 조성 이외에 시설의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모니터링과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성을
보임.
- 사업의 특성을 잘 반영하면서 보다 과학적인 사업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함.

4-2-1-8(계속)	농어촌테마공원조성(농림수산식품부)
-------------	--------------------

담당부서	농촌사회과	담당자	이명남(사무관)
전화번호	02-500-1817	이메일	mnlee@mifaff.go.kr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도시와 구별되는 농어촌의 독특한 자연·문화·사회자원을 토대로 다양한 유형의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 농어민과 도시민에게 친환경적인 휴식·레저·체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농교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7년 ~
- 총사업비 : 2,125억원('09년까지 기투자액 : 167억원)
- 사업규모 : 총85개 조성('09년까지 완료 0개소, 추진중 22개소)
- 지원형태 : 지자체보조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3. 연차별 추진계획

- 2018년까지 총 85지구 추진
 - 지자체 수요 및 여건을 고려, 각 도별로 10~11개소 추진 예정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2	-	-	167	-	167	-	334
'05								
'06								
'07	4	-	-	16	-	16	-	32
'08	8	-	-	56	-	56	-	112
'09	10	-	-	95	-	95	-	190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2	-	-	167	-	167	-	334
'05								
'06								
'07	4	-	-	16	-	16	-	32
'08	8	-	-	56	-	56	-	112
'09	10	-	-	95	-	95	-	190

4. 성과목표 달성도

- 테마공원조성사업 대상주민 만족도 조사결과가 88%로 목표 75% 대비 17% 초과달성
- 대상지구 선정, 지자체장의 사업추진의지 및 주민참여 등 사업주체의 적극적 참여와 추진으로 사업 활성화에 기여
- ⇒ 농촌주민과 도시민에게 친환경적 휴식 및 체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농교류 및 농촌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마련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촌 테마공원조성	테마공원조성사업 대상주민 만족도	만족도	%	75	88	117.3

II. 평가결과

1. 총 평

- 농어촌의 지역적 특성을 살리고 독특한 자연·문화자원을 토대로 다양한 유형의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도시민에게 친환경적인 휴식·레저·체험을 제공함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를 통해 농어촌지역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평가됨.
- 2018년까지 85개소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문화와 역사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테마설정의 컨셉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특히 기존에 사업을 추진하는 대상지역과 민간 전문가 그룹의 지속적 워크숍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사업내용 보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사업의 성과목표를 테마공원이 조성된 지역의 주민 만족도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의 특성과 목적 등을 고려할 때 대단히 부적절한 지표라고 판단됨.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농어촌체험관광 수요증가에 맞춰 침체되고 있는 농어촌의 지역경제 활력을 되살릴 수 있는 농어촌 체험·휴양 등 도시와 농어촌 교류 기반을 확충한다는 사업의 취지와 목표는 타당성이 있음.
- 당초 2018년까지 85개소를 조성한다는 계획은 광특회계 재편에 따라 재검토가 필요함. 특히 지구당 사업기간을 4년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 역시 타 사업과의 형평성 등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함.
- 농어촌 지역의 주민과 자치단체가 지역의 독특한 테마를 설정하여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등 단계별로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테마공원 대상지 결정 이후에 추진 경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반영조치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절차가 없는 것으로 보임.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전년도 삶의질향상 점검평가결과에 대한 답변이 무성의함.
- 사업수요자인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물론 현재도 의견 수렴 절차는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즉, 사업시행인 가기관인 시도지사가 분기별로 현지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반기별로 농식품부 담당자가 추진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후 조치에 대해서 별다른 강제가 없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호를 가능성이 높아 보임.
- 사전환경성 검토 등 협의절차 완료 이전에 예산 배정이 이루어져 사업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함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농어촌 특유의 독특한 자연·문화·사회자원을 토대로 다양한 형태의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볼거리·쉼거리·먹거리와 즐길거리 등 도시민의 여가 수요에 부응하고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를 통해 농어촌지역 활성화 및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됨.
- 그러나 사업 진행이 느린 편이라 구체적인 성과를 측정하기는 조금 이른 편임.
- 더불어 이 사업의 성과지표인 사업 대상지역 주민 만족도는 사업의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한 지표인만큼 새로운 성과지표 발굴 노력이 필요함.

3. 개선방안 등

- 특색 있고 차별화된 농어촌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업 대상지 선정뿐만 아니라 집행 과정에 있어서 지역의 문화와 역사 발굴을 위한 학술행사 및 고증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가 제도적으로 마련되도록 보완이 필요함.
- 사업 추진과정의 실질적인 모니터링과 그 구속력 제고를 통해 테마공원의 테마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 조치가 요구됨.
- 사업의 특성을 잘 살린 성과지표 발굴과 측정이 필요함.
- 광특회계로의 재편에 따른 사업 목표 및 사업 추진 기간 등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함.

4-2-1-11(계속)	해양관광자원개발(국토해양부)
--------------	-----------------

담당부서	해양정책과	담당자	송화용(주무관)
전화번호	02-2110-6330	이메일	shy0311@korea.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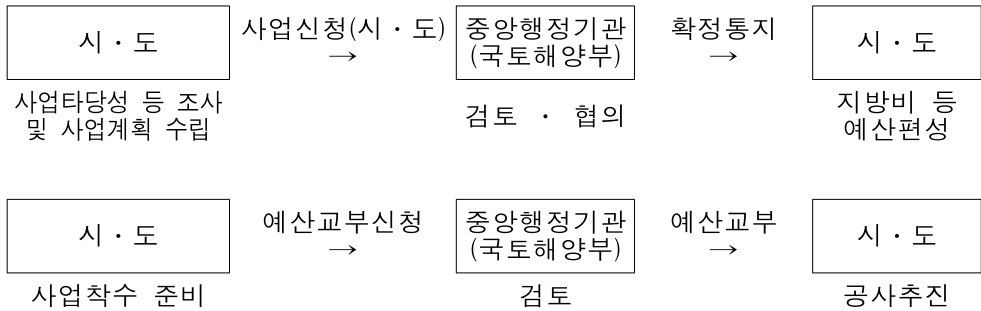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우수한 해양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국민들의 해양관광 수요충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5년부터 계속
- 총사업비 : 계속사업('09년까지 국고 330억원 투자)
- 지원조건 : 지자체 보조(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내용 : 백사장항 해양관광자원개발(태안군) 등 22개 사업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지자체(시장, 군수)
 - 사업추진절차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광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08개소		65,872			75,949	6,000	147,821
'05	4개소		3,070			3,345	-	6,415
'06	9개소		7,900			8,500	-	16,400
'07	6개소		4,650			5,275	6,000	15,925
'08	14개소		4,175			7,325		11,500
'09	23개소		13,189			16,016		29,205
'10	22개소		16,217			18,817		35,034
'11	30개소		16,671			16,671		33,342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백만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광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53개소		19,795			40,461	6,000	79,445
'05	4개소		3,070			3,345	-	6,415
'06	9개소		7,900			8,500	-	16,400
'07	6개소		4,650			5,275	6,000	15,925
'08	12개소		4,175			7,325		11,500
'09	22개소		13,189			16,016		29,205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22개소 13,189백만원 교부하여 목표치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해양관광 자원개발	계획대비 추진실적	계획대비 집행실적	%	13,189	13,189	100

* 당초 23개소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지자체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22개소 추진

II. 평가결과

1. 총 평

- 이 사업은 지자체가 보유한 우수한 해양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국민들의 해양관광 수요를 충족시키고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임.
- 2005년부터 계속되어 온 사업으로서 사업초기에는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실 집행 실적이 미미하였으나, 본격적인 시공단계로 접어들어 전반적으로 실 집행율이 개선되고 있음.
- 바다와 해양관광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해양관광 기반시설 조성으로 해양관광 수요에 능동적인 대처를 통하여 해양관광 및 레저스포츠 활성화로 관광객 유치로 통한 어업인의 소득 증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되나, 해양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광역시·도 차원의 종합적인 장기계획이 미흡하고 모니터링 등을 통한 개선 노력도 다소 미흡함
- H/W 위주의 사업이며, 별다른 성과관리 지표 없이 실적 지표가 곧 성과관리 지표로 되어 있음.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지역경제 및 해양관광·레저스포츠 활성화 여건 조성을 위해 지자체의 해양관광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기반시설 지원이 필요한 사업임
- 지자체가 보유한 우수한 해양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선정된 사업지는 소규모 마리나시설, 해양친수시설, 해양종합공원 등 관광객을 유치

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지 선정에 있어 기본계획 및 사업타당성 조사가 완료되고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음

-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주민과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지를 선정하므로 해당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이 지원된다고 하지만 지역설명회 개최 등의 자료도 없으며, 마리나 시설, 낚시공원 등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이 지역민의 생산기반 시설이나 소득증대와 직결되는 횃집과 향토수산물 판매장 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지역민과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가 필요함.
- 무엇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토 전체 혹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원칙과 방향성에 기반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사업신청과 집행은 지자체에서 지원여부 검토 및 예산교부는 중앙정부로 구분되어 사업관리체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음. 다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보다 나은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가들의 자문을 듣거나 하는 절차가 다소 미흡한 편임.
-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협의사항에 대하여 환경부의 사전환경성 평가 및 공원계획 변경 등 각 부처 등과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사업별 실질집행 파악 및 추진실태 현장점검을 통하여 부진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독려 및 예산조정 중간점검과 평가결과를 반영하고 있음.
- 사업추진 시 나타나는 문제점 해결이나 개선 등 해당자료와 세부 설명은 불충분함.
- 사업에 대한 대 국민 홍보 역시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임.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지자체의 해양관광기반시설 조성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민의 관광수요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사업시행자인 지자체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하고 해양관광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므로 사업목표 달성에도 적합하다고 판단됨.
- 그러나 해양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자료가 전반적으로 미흡함.
- 성과지표 역시 교부금 집행 실적으로만 되어 있어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한 성과지표로 삼기는 문제가 있음.

3. 개선방안 등

- 국토 전체에서 그리고 보다 장기적인 전망 하에서 당해 사업의 추진 원칙과 방향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지자체 요구에 따라서 사업량이 결정되는 현재 방식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임.
- 지원대상 사업의 부실이나 원활한 사업 추진이 곤란한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 추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 강화가 필요함.
- 지역 주민 및 전문가, 관련 조직의 사업 과정에의 참여 활성화가 요구됨.
- 사업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고 사업의 효과를 쉽게 가늠할 수 있는 성과 달성도 측정 지표 개발이 필요함.

담당부서	농촌자원과	담당자	임은성
전화번호	031)299-2679	이메일	lim77@korea.kr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목 표
 - 농촌·자연에서 발굴한 소재를 초·중·고교의 체험활동 교과과정과 연계 운영할 수 있는 농촌교육농장 육성
 - 농업·농촌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부가가치 증진
- 사업추진 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50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 농촌진흥법 제13조1항(농촌지도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에 사업비 보조)
 - 농어촌정비법 제67조 (농어촌관광휴양의 지원·육성)
 - 초·중등교육법 제48조 5항(수업운영방법 중 교외체험학습 허가)
 -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확대)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년~2015년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
- 지원조건 : 국비, 지방비 각 50%
- 사업시행주체 : 시군농업기술센터
- 시행방법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대상 보조사업 추진

- 기술지도 및 현장교육, 농업인교사양성과정 병행 추진

○ 추진내용

- 교과과정과 연계한 농촌체험 학습활동 기반조성
 - 주제중심통합접근 프로그램 및 워크북 개발
 - 교육시설·장비 설치, 교구·교재 제작 및 구입 등
- S/W 관련사업 : 전문 컨설팅, 보험, 홍보 등
- 농업인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사양성과정 운영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 (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40	30				30		60
'05								
'06	8	1				1		2
'07	48	6				6		12
'08	60	7.5				7.5		15
'09	60	7.5				7.5		15
'10	64	8				8		16

* 산출근거 : 1개소 100백만원<25백만원×4분야(1개소)×50%=국비50백만원>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56	22				22		44
'05								
'06	8	1				1		2
'07	48	6				6		12
'08	60	7.5				7.5		15
'09	60	7.5				7.5		15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09년도에 지원한 농촌교육농장 체험 참가자수는 2,138명으로 목표인 1,880명에 비해 114% 초과달성하였음
 - '09년도에 지원한 농촌교육농장의 농장당 매출액을 조사한 결과 농장당 35,616천원으로 목표인 21,845천원으로 163% 초과달성하였음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촌 교육농장	농장당 체험프로그램 참가자수	교육농장 시범사업 시행 후 체험학생 수	명	1,880	2,138	114
	농장당 매출액	농외소득을 제외하고 교육농장 운영을 통한 농장당 매출액	천원	21,845	35,616	163

II. 평가결과

1. 총 평

- 청소년에게 학교에서 체험할 수 없는 농업과 농촌생활에 대한 체험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농업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와 건전한 정서 함양은 물론 농촌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소득원 개발로 농촌사회 활력 증진과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및 농림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임
- 교육농장 운영을 통해 농촌체험으로 인한 농가소득과 농산물 홍보 효과 증대 등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도 높음
- 농촌체험교육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실습학점, 봉사활동 등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와 도 교육청간 MOU체결, 1교 1농장 정기적 방문 추진 등 사업추진에 관련기관 연계 및 협조 강화로 효과를 높이고 있음
- 농업과 교육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현장교육이므로 운영하는 농가의 교육 마인드와 파트너십을 위한 심층 준비가 필요하며 다양한 연령 층이 방문하므로 방문시 안전대책과 방문객의 체계적인 사후 관리 등이 요구됨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농촌과 자연에서 발굴한 소재를 학생들의 체험활동과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농촌교육농장 육성과 농업·농촌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부가가치 증진에 부합하는 사업임

- 농촌교육농장 체험 참가자수와 매출 초과달성으로 농업인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소득증대에 기여하므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 전년도 사업추진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도록 하여 사업추진 효과를 높이고 있음
- 사업 확대에 따른 지속적인 지원의 일환으로 농장주의 역량증진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컨설팅이 지원되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임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관계기관과 농장간의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 농장 선정절차와 운영 농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실시 등 사업추진체계와 추진방식이 적절함
- 교육 프로그램 개발, 홍보 등 S/W에 사용토록 시설비 지출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현장에서 농업인과 직접 만나는 지도사업추진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는 등 점검·평가결과 반영을 통한 사업개선 노력 우수함
- '10년도에 교육농장 교사양성의 전문가과정 도입 추진과 교육농장 인증제 시행 예정으로 교육내용에 대한 평가 강화와 교육의 질적 향상 등 사업효과 극대화가 기대됨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체험운영비, 숙박비, 농산물판매, 향토음식판매 등 농촌체험 관련 매출액 증가로 농가소득증대와 함께 교육농장 운영을 통해 농장주가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보람을 느끼는 등 긍정적 의식변화 제고 및 마을단위 사업과 병행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였음

- 방문객수와 소득액 증가 등 외형적 수치도 중요하지만 방문객 1인당 체험관련 매출이 늘어나도록 아이템 개발이 되면 더욱 좋을 것임

3. 개선방안 등

- 농장주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 등 정보의 공유로 전국단위의 농촌교육 농장 교사양성과정 질적 향상 도모와 전문가 과정으로 확대가 필요
- 체험교육 활동시 체험활동비와 교통수단에 대한 지원 및 교육농장별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추가 지원이 필요
- 교사양성과정 교육에서 전체 교육과정의 90% 이상 이수하여야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내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

담당부서	관광진흥과	담당자	박성필
전화번호	02-3704-9760	이메일	psp1024@korea.kr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지역축제 중 관광상품성이 있는 축제를 국제적인 문화관광자원으로 육성하여 외래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친환경, 향토특산물 등을 활용한 관광축제 활성화를 통해 농어민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8~ 계속
- 사업비 : 7,800백만원(2008년도)
- 사업규모 : 문화관광축제 56개 선정·지원
- 시행방법
 - 지원형태 : 자치단체 경상보조
 - 지원조건 : 정율지원(관광진흥개발기금 50%, 지방비 50%)
 - 사업절차 : 문화관광축제 추진계획 수립 시달(문화부→시·도) → 사업계획수립(축제 추진주체) → 사업신청(시·군·구) → 문화관광축제 추천(시·도 → 문화관광부) → 문화관광축제 선정 및 등급결정(문화부) → 예산지원(문화부 → 시·도 → 시·군·구) → 사업시행 및 문화관광축제 개최(시·군·구) → 사업평가(문화부 등) → 평가결과 다음해 선정시 피드백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62				258	258		516
'05	45				25	25		50
'06	52				40	40		80
'07	52				40	40		80
'08	56				78	78		156
'09	57				75	75		150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05	45				25	137		162
'06	52				40	132		172
'07	52				39	169		208
'08	56				78	180		258
'09	57				75	150		225

- 제주도 3개 축제는 특별자치도 승격으로 관광진흥기금 미지원(기금 1.7억원)

〈연도별 축제지원 세부내역〉

○ 2005년도

- 문화관광축제 선정, 지원 : 총 45개 축제, 2,500백만원
 - 최우수 축제 : 3개 축제, 각 250백만원
 - 우수축제 : 7개 축제, 각 130백만원
 - 지역육성 : 8개 축제, 각 60백만원
 - 유망축제 : 9개 축제, 각 40백만원
 - 예비축제 : 18개 축제, 예산 지원없이 행정지원

○ 2006년도

- 문화관광축제 선정, 지원 : 총 52개 축제, 3,500백만원
 - 최우수 축제 : 5개 축제, 각 300백만원
 - 우수축제 : 9개 축제, 각 150백만원
 - 유망축제 : 13개 축제, 각 50백만원
 - 예비축제 : 25개 축제, 예산 지원없이 행정지원
- 축제 테마 박람회 개최 지원 : 300백만원

○ 2007년도

- 문화관광축제 선정, 지원 : 총 52개 축제, 3,500백만원
 - 최우수 축제 : 7개 축제, 각 250백만원
 - 우수축제 : 9개 축제, 각 100백만원
 - 유망축제 : 17개 축제, 각 50백만원
 - 예비축제 : 19개 축제, 예산 지원없이 행정지원
- 문화관광축제박람회 개최 지원 : 500백만원

○ 2008년도

- 문화관광축제 선정, 지원 : 총 56개 축제, 7,300백만원
 - 대표축제 : 2개 축제, 각 800백만원
 - 최우수 축제 : 7개 축제, 각 250백만원
 - 우수축제 : 10개 축제, 각 100백만원
 - 유망축제 : 17개 축제, 각 50백만원
 - 예비축제 : 20개 축제, 각 30백만원
- 문화관광축제박람회 개최 지원 : 500백만원

○ 2009년도

- 문화관광축제 선정, 지원 : 총 57개 축제, 7,500백만원
 - 대표축제 : 2개 축제, 각 800백만원
 - 최우수 축제 : 8개 축제, 각 300백만원

- 우수축제 : 9개 축제, 각 150백만원
- 유망축제 : 17개 축제, 각 70백만원
- 예비축제 : 21개 축제, 각 30백만원
- 문화관광축제박람회 개최 지원 : 500백만원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축제 관광객수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지표로 목표치를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신종플루 발생으로 대표축제 1건을 포함 총 10개의 문화관광축제가 취소되어 목표치 미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향토문화관광 축제육성	문화관광축제 총 관광객수	2008년 문화관광축제 참여 관광객	백만명	38	30	78.9
	문화관광축제 총 경제파급 효과	2008년 문화관광축제 경제 파급효과	억원	17,000	13,000	76.4

II. 평가결과

1. 총 평

- 전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지역축제 중에서 외지관광객이나 외국인 관광객 유인 가능성이 큰 축제를 집중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사업으로서 특히 지역의 향토특산물이나 환경자원을 활용하여 농어민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 비교적 소규모 예산을 지원하여 지역의 문화와 자원을 관광상품화 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발군의 실적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지역이미지 개선에도 뛰어난 실적을 올렸음.
- 무엇보다 기존의 시설(하드웨어) 중심의 개발관행에서 탈피하여 문화와 특산물 등을 활용한 소프트웨어개발방식을 적용하여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신기원을 이룩하였음. 예컨대 2009년의 경우 총사업비 225억원(국고 75억원)으로 1조 3천억원의 지역경제파급효과를 거두었음.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지역안배 혹은 일률적인 지원방식 대신에 예비축제 신청, 전문가들의 현장평가 및 판정, 선정회의, 본축제 편입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축제간 선의의 경쟁의식 및 도전의식을 고취시켰고 결과적으로 정책의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계획하였음.
- 전문가로 구성된 3인의 평가위원들에게 축제별 평가의 범위와 방법을 설명하고, 그들이 제출한 평가점수를 합산한 후 실제 외래관광객 모객 및 홍보실적 등을 포함시켜 차기년도 축제선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시스템을 구비하였음.

- 또한 현장평가를 수행한 전문가들로 하여금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이를 해당 축제관계자에게 송부하여 이듬해 축제개선을 위한 근거로 활용하도록 조치.
- 특히 세계적 축제를 육성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대한민국대표 축제를 선정하였으며, 이들 축제에 대해서는 맞춤형컨설팅을 실시하도록 지도하였고, 여타 축제의 경우 축제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참석한 축제워크숍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평가 및 선정에 반영하는 등 매우 합리적인 절차를 갖췄음.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각 시도에서 추천한 후보축제를 대상으로 전년도 개최실적 및 지역 경제효과 등을 감안하여 연말축제선정회의에서 5개 등급으로 나누어 문화관광축제를 선정하였음.
-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해당 지자체와 1:1 매칭사업으로 사업을 추진 하되 지자체의 보조금교부요청에 따라 반기별로 보조금을 지급하였음.
- 일단 선정된 축제에 대해서는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축제 워크숍과 아카데미 등을 개최하여 축제운영능력을 극대화시키고자 하였으며,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전국 또는 해외로 홍보 지원하도록 하였음. 또한 4개 국어로 구성된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온라인홍보에도 발군의 실적을 거두었음.
- 한편 각 축제현장에서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및 지출비용에 관한 설문조사가 수행되었으며, 전문가집단이 축제별로 참관평가를 한 후 여기서 제기된 문제점을 다시 축제측에 환류시키는 등의 모니터링도 실시하였음.
- 또한 축제의 차별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평가지표의 배점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였음. 즉, 축제콘텐츠의 특성과 차별성에 대한 배점을

중전의 35점에서 70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축제의 차별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음.

- 그러나 2009년도에 불어 닥친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인해 일부 축제가 취소되었으며 결과적으로 70백만원의 예산이 미집행되기도 하였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당 사업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두 가지 큰 정책목표를 달성하였음.
- 먼저 삶의 질 향상부분의 경우, ①축제개최로 인해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가 크게 증대되었으며, ②축제의 성공적 개최로 인해 지역인지도가 급속히 향상되면서 애향심도 높아졌음.
-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의 경우 225억원을 투자하여 1조3천억원의 경제파급효과를 거두었는바 투입대비 58배에 이르는 산출효과를 기록하였음.
-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일반관광객의 만족도 역시 매년 꾸준히 향상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방문객의 만족도가 축제의 경제성 구현에 영향을 끼치는 상품, 음식, 연계관광, 편의시설에서 더욱 두드러졌다는 사실이었음.
- 한편 2009년도 문화관광축제의 성과는 당초목표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는 대표축제인 안동탈춤축제 등 인기 있는 10개의 하반기 축제가 신종플루 때문에 불가피하게 취소된 결과였음.

3. 개선방안 등

- 당 사업은 소프트웨어정책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보아도 무방함. 하드웨어사업과 달리 소프트웨어사업은 인적의존도가 매우 높은 사업 이므로 축제의 기획, 실행, 평가 등 분야별 전문가 양성 및 동기 부여가 반드시 필요함.
- 그러나 일선에서 축제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과중한 업무와 지나친 감사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이직이 빈번한바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 마련이 요구됨
- 또한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정부내 인식도 개선되어야 할 것임. 축제라는 여가문화상품을 여전히 향락산업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하는 한 예산지원 축소 또는 관계자의 사기를 꺾는 감사 등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임.

4-3-1-0(계속)	경관보전직불제(농림수산식품부)
-------------	------------------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유영수
전화번호	500-1808	이메일	yooys@korea.kr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유휴농경지를 활용한 경관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농촌 경관을 유지함으로써 도시민의 여가수요 증대에 부응
-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을 통한 농촌지역사회의 활성화 도모

2. 사업내용

- 농지를 활용한 경관작물의 재배관리 및 마을주민 참여를 통한 마을경관 가꾸기 등 마을경관보전활동을 지원
-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을 통한 적극적인 도농교류 프로그램 발굴로 농촌 지역사회 활성화 유도
- 경관작물 재배관리실태, 지역활성화 프로그램 연계 정도, 주변환경관리 등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지원조건	사업시행주체
경관보전직접지불	'05~'17	-억원 ('09까지 145억원)	연차적으로 경 관보전지역 확 대(17:30천ha)	보조(70%)	시장·군수

3. 연차별 추진계획

- 지자체와 마을간 협약을 체결하고, 농지에 일반작물 대신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당해 농업인에게 경관보전 직접지불 보조금을 지급
- '09사업규모 : 16,169ha, 137억원(국고 96, 지방비 41)
- ※ 동계작물 100만원/ha, 하계작물 170만원/1ha, 마을경관보전활동비 30만원/ha(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 가능)
- ※ 경관작물 : 경관형성이 주목적이고 효과가 우수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초화류(목본류는 제외)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ha)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44				62		206
'05	470	6				3		9
'06	470	6				3		9
'07	800	10				4		14
'08	3,252	26				11		37
'09	10,000	96				41		137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ha)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21,163	144				62		206
'05	470	6				3		9
'06	470	6				3		9
'07	800	10				4		14
'08	5,813	26				11		37
'09	16,171	96				41		137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성과지표 : 지역활성화 프로그램 연계정도(%)

* 전체시행 마을수 / 지역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마을 수×100

- 경관작물 재배를 도농교류 축제와 연계하여야 하나, AI 확대 등으로 지역축제가 축소되어 당초 계획에 비해 실적이 다소 미흡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경관보전직불제	지역활성화 프로그램 연계도	시행 마을/연계마을 × 100	%	84	80	95.2

II. 평가결과

1. 총 평

- 유희농경지를 활용한 경관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농촌경관을 유지하여 도시민 여가수요에 부응하는 한편 농촌공간의 매력도를 높여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를 촉진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사업의 추진 취지는 매우 적정함.
- 사업 준비과정은 물론이고 대상지 선정, 시행과정에서도 다양한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현지조사 및 점검·모니터링, 관계자 워크숍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의 문제점을 즉시적, 일관적으로 보완 및 개선하려는 노력이 높이 평가됨.
- 특히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2009년에는 마을 경관보전 활동비를 신설하는 등 사업 시행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음.
- 그러나 여전히 경관보전직불제의 당초 도입취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대상작물 및 지급단가 등을 개선할 필요가 남아 있으며 단지 경관보전직불제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경관보전 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농촌경관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희 농경지를 활용한 경관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농촌경관을 형성함으로써 농촌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의미있는 사업임.
- 경관보전 정책과 직불제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경관보전과 형성에 나서도록 유도하여 농촌의 휴양, 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계획 비전 구현에 적합함. 특히 마을단위로 집단적으로 경관 작물을 재배하여 자원화 하도록 한 점은 매우 바람직함.

- '08년부터 지역 특성에 따라 경관형성 효과가 우수한 작물을 시장 군수가 판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작물 선정에 융통성을 부여한 것도 바람직하며 '09년에는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사업 시행예산이 전년에 비해 대폭 증액되었음.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사업추진체계는 대체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만, 주민 또는 지자체가 점차 자율적, 주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별 협의체 구성·운영, 중앙정부·지자체·유관기관·전문가 등과의 협력체계 구성·운영, 전문가의 지속적 모니터링과 피드백 등 사업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함.
- 현재의 모니터링에 다양한 전문가들이 장기간동안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고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점 등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다만, 모니터링은 경관자원을 활용하는 과정과 제도개선 필요성을 발굴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음. 전문가 모니터링 이외에도 지역주민과 도시민 방문객들의 평가의견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역경제 활성화로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발표하거나 브로슈어를 배포하는 등과 같이 다양한 홍보 노하우를 공유하는 연찬회 등을 개최할 필요가 있음.
-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참여 농업인과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정책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국민 홍보를 보다 강화하여 마을단위로 축제, 농촌체험, 도농교류 등 소득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정기적 모니터링 이외에 경관 향상, 방문객 증가, 주민 만족도 등 사업성과에 대한 종합적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성과 지표는 비교적 적절하게 선정되었다고 판단함.

3. 개선방안 등

-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사업이 계획되었고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일부 성공지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식이 부족한 마을이나 주민, 지자체 공무원이 있으므로 다양한 방식의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우수 실천사례를 발굴, 홍보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지역활성화 등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야 함.
- 일부이지만 재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패하거나 마을 소득창출로 연계되지 못한 사례가 여전히 있는 바 모니터링, 평가를 지역단위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함.

4-3-2-2(완료)	농촌어메니티 계획모델 개발 및 보급 (농촌진흥청)
-------------	--------------------------------

담당부서	농촌환경자원과	담당자	강방훈(농업연구사)
전화번호	031-290-0274	이메일	ipmkbh@korea.kr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촌개발 정책사업 지원을 위해 지역의 생활권역 및 자원권역을 고려하여 농촌어메니티 자원을 농가소득과 연계하기 위한 자원화 기술 개발
 - 농촌어메니티 계획모델 개발(9유형) 및 보급을 위한 기반기술 개발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년 ~ 2009년
- 총사업비 : 8.4억원 ('09년 0.3억원)
- 사업규모 : 농촌어메니티 계획모델 개발(9유형) 및 현장보급에 필요한 기반기술 개발
 - '09년 : 농촌어메니티 자원 활용을 위한 기반기술 개발 연구 1건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농촌진흥청

3. 연차별 추진계획

- 농촌어메니티자원을 활용한 농촌어메니티 계획 모델 9유형 개발 및 현장 적용을 목표로 추진하였음
 - '06~'08년 : 매년 3개 유형의 모델을 개발하여 현장 적용을 실시하였음
 - '09년 : 농촌어메니티 계획모델의 현장보급에 필요한 기반기술 개발 연구로서 자원활용 라이브러리 체계 구축 및 자원 수준평가 지표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음

※ '09년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농촌어메니티자원도 기반 자원활용 권역설정 방법 개발은 녹색기술 자문위원회 및 중간진도관리를 통해 현장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자원활용 라이브러리 구축으로 변경하여 추진함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9	-	-	8.4	-	-	-	8.4
'06	3	-	-	4	-	-	-	4
'07	3	-	-	3.1	-	-	-	3.1
'08	3	-	-	1.0	-	-	-	1.0
'09	-	-	-	0.3	-	-	-	0.3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9	-	-	8.4	-	-	-	8.4
'06	3	-	-	4	-	-	-	4
'07	3	-	-	3.1	-	-	-	3.1
'08	3	-	-	1.0	-	-	-	1.0
'09	-	-	-	0.3	-	-	-	0.3

- 농촌진흥청 조직개편 및 연구사업 추진 시스템의 개편(어젠다 중심)에 의거 삶의질 기본계획의 세부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추진계획의 일부가 조기 종결되었음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농촌어메니티자원 계획 모델 현장적용을 위한 지원기술 개발 1건을 목표치로 선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였음
 - ⇒ 영농활용 1건 : 농촌어메니티 자원활용 라이브러리 체계 개발
 - 지자체의 어메니티를 활용한 정책사업 추진에 필요한 현장적용 지원 기술로서 '농촌어메니티 자원별 수준평가지표 개발' 연구를 통해 4개 대분류-34항목의 평가지표를 개발하였음

II. 평가결과

1. 총 평

- 농어촌지역의 생활 및 자원권역을 고려한 농촌어메니티자원을 농가 소득과 연계하기 위하여 '06년부터 매년 3개씩 총9개 유형의 모델을 개발하였고 2009년에는 그 현장보급에 필요한 기반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로서 자원활용 라이브러리 체계구축 및 자원수준평가지표 개발연구를 수행하였음.
- 그러나 '09년 농진청 조직개편 및 연구사업 체계변화로 인해 과제 구성이 축소되어 수행되었음.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농촌의 경관, 전통, 자연자원 등의 어메니티자원을 활용한 어메니티 계획모델 개발 및 현장적용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며, 향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면소재지 거점마을육성사업에 적용하기 위해 연구 사업을 추진함.
- 이미 완료된 농촌마을단위 어메니티자원 활용모델사업, 농촌어메니티자원도 구축사업 등의 선행연구사업결과를 활용하여 당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밖에 농촌어메니티 자원정보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AHP 기법을 적용하는 등 연구방법이 대단히 체계적임.
- 또한 세부추진계획의 적합성과 문제해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원 활용 라이브러리 체계를 개발함과 동시에 농촌개발사업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결과를 체계화 하려 하였음. 이를 위해 자문 회의, 전문가 조사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방법을 채택하였음.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사업추진 시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예산군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추진단, (사)농산어촌어메니티연구회 등과 유기적, 지속적 정보교류를 실시하였음.
- 중간모니터링의 일환으로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두 차례에 걸쳐 진도관리를 가졌는바, 참석자들의 건의를 수렴하여 ‘자원활용 라이브러리 구축’을 강화하는 쪽으로 연구방향을 조정하기도 하였음.
- '06~08년에 개발된 9개 유형의 계획모델의 홍보를 위해 농촌어메니티 환경설계공모전 등에 출전하거나 해당 지역신문을 통한 연구성과 현장설명회 등의 홍보도 병행하였음.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농촌의 자원별, 권역별 어메니티자원화를 위한 계획모델을 개발하여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관련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하려고 하였음.
- 다만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라이브러리 체계개발이 다소 미흡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음.
- 한편 연구과정에서 도출된 각종 결과물을 종합하여 연천군 농촌관광마을 공간설계안으로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학술적 활동의 일환으로 10건의 발표와 2건의 논문게재를 이루었음.

3. 개선방안 등

- 당 연구는 농촌어메니티 수요증대에 대비한 수용여건을 마련하고, 생활권역 및 자원권역을 고려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에 적용하고자 수행되었음.
- 비록 '06~08년 3년에 걸쳐 농촌지역의 자원별, 권역별 어메니티자원 콘텐츠를 활용한 체계적 개발을 위해 9개 유형의 모델을 개발하였으나 연구성과의 활용도제고를 위한 라이브러리구축, 자원별 수준평가지표 개발 등의 마무리작업이 예산의 제약 등으로 인해 충분하게 수행되지 못하였음.
- 향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위시한 각종 농촌관광마을 조성사업에 당 연구결과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지역개발과 또는 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임.

4-3-3-0(계속)	농산어촌형 경관주택 발굴·보급(농림수산식품부)
-------------	---------------------------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김학조(사무관)
전화번호	02-500-1811	이메일	h0225@mifaff.go.kr

I. 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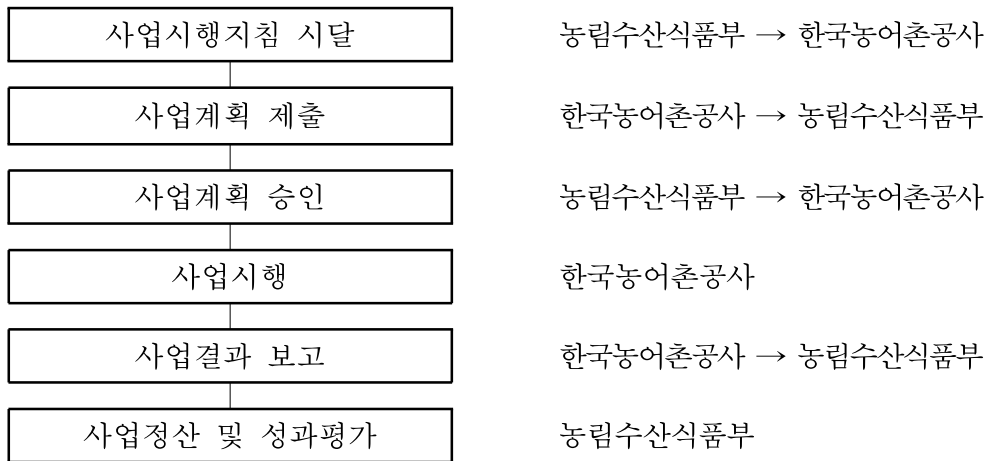
1. 사업목표

- 농산어촌 지역에 적합한 경관주택을 발굴·보급함으로써 아름다운 농산어촌 경관 형성을 도모하고, 농산어촌 주민의 주거수준 향상
 - 농어촌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변화된 주거생활을 반영한 다양한 농어촌주택 모델과 건축양식을 발굴 보급
 - 농어촌 뉴타운, 농어촌주거환경개선, 농촌마을종합개발, 전원마을 조성 등 지역개발사업에 활용하여 농어촌마을 경관형성 도모
- 사업추진 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제55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제67조(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 제108조(자금지원)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30조(농산어촌 경관의 보전)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8년~2016년
- 총사업비 : 45억원('09년까지 기투자액 : 10억)
- 사업규모 : 55종('09년까지 12종)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 지원조건 : 국고 100%
-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 대상 : 농산어촌 지역에서 노후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어민, 귀농·귀촌 예정자
- 추진내용
 - 농산어촌형 경관주택 모델을 개발·보급함으로써 농산어촌 주민의 경관주택 건축을 지원
 - 농어촌 경관주택 표준설계도서 개발·보급(12종 24유형)
 - 농어촌 저에너지 친환경주택 개발(10종)
 - 농어촌 경관이미지 형성을 위한 환경색채 적용 모델 개발
 - 웰촌 포털사이트, 농어촌공사 본사 및 지역본부 등을 통하여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보급, 건축상담 등 정보제공
 - 2009년 농어촌건축대전을 통해 농산어촌 주택모델과 건축양식을 발굴·전시하고, 농어촌 주민과 귀농·귀촌 희망자 등 농어촌 건축수요자의 관심 제고
 - 농어촌건축대전 작품 공모 및 전시회 개최
 -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과 건축문화 발전방안 심포지엄 개최
- 추진체계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종)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종	10	-	-	-	-	-	10
'05	-	-	-	-	-	-	-	-
'06	-	-	-	-	-	-	-	-
'07	-	-	-	-	-	-	-	-
'08	주택모델개발	4	-	-	-	-	-	4
'09	12종	6	-	-	-	-	-	6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종)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종	10	-	-	-	-	-	10
'05	-	-	-	-	-	-	-	-
'06	-	-	-	-	-	-	-	-
'07	-	-	-	-	-	-	-	-
'08	주택모델개발	4	-	-	-	-	-	4
'09	12종(24유형)	6	-	-	-	-	-	6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성과지표 : 농어촌주택모델 개발 실적(목표 12종, 실적 12종)
전시 및 홍보(목표 4만명, 실적 4만9천명)
 - 분야별 전문가 자문위원회 심의 및 표준설계도서 인정(국토부)
등의 과정을 통하여 목표대비 실적이 100% 달성
 - 건축대전 홈페이지 운영,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2009 한국농어촌
건축대전에 49,621명이 관람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산어촌형 경관주택 발굴·보급	농어촌주택모델개발 실적	계획대비 실적	종	12종	12종 24유형	100
	전시 및 홍보	관람객수	명	40,000	49,621	120

II. 평가결과

1. 총 평

- 농어촌 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변화된 주거활동을 반영한 ‘농어촌 저에너지 친환경주택 표준도’를 개발, 보급하여 농어민 및 도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의 주택을 신축할 수 있게 지원함. 주택 전시관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에게 홍보효과를 높이고 경관주택의 보급 추진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공모전과 초청건축가전을 통하여 양질의 농산어촌형 경관주택을 발굴하는 것과 설계자를 선정하는 것은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임.
- 공모전에 보다 많은 건축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건축사(가) 단체들에 적극 홍보함.
- 농촌 건축대전에 학생들뿐만 아니라 기성건축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작품들이 공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상대적으로 노후불량주택이 많은 농산어촌지역에 최소한의 건축비용으로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주거환경을 만들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민 유치를 통한 농어촌 활력증진에 필요한 사업임.
- 구체적인 방안으로 농어촌 주택 표준 설계도를 개발하여 건축주의 건축비 예산을 줄여줌으로써 농산어촌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농산어촌 정주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전원주택 전시관, 건축대전 및 건축설계 공모전을 통한 전문가의 참여로 경관주택의 표준도 개발과 보급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실제 건축물을 통해 홍보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임.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농어촌 공사, 농어촌 건축 및 주택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친환경적 기술을 반영한 표준도 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심포지엄,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함.
- 홍보를 극대화하기위하여 전원주택 전시관을 운영하고 ,건축사(가)의 관심을 유도하기위하여 농촌 건축 대전 개최하며, 건축 전문기관과 연계를 하여 기성 건축사(가)의 참여를 제고함.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지속적인 농어촌 주택 모델 개발과 농촌건축대전, 전원주택전시관, 전원생활 박람회 등을 통하여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농촌유치를 장려하여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성과를 가져오도록 함.
- 표준도를 개발 보급하고 농어민 및 도시민에게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종류의 주택과 여러 종류의 평면도를 개발하여 경관 주택의 보급 추진이 활성화되도록 함.

3. 개선방안 등

- 변화된 주거생활을 반영한 농산어촌 거주자 표본조사와 귀농예정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다양한 농산어촌의 경관주택 발굴을 위한 한국 농촌 건축대전의 운영을 개선하여 건축 관련자들에게 관심을 유도하고 국민들에게 농촌 건축 분야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방안으로 web상의 홍보가 필요함.

- 농촌주택 표준도의 보급을 위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지고, 이를 위한 지자체 담당자의 교육이 필요함.
- 농촌 건축대전이 기성건축가의 참여를 유도하여 학생 공모전화가 됨을 방지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설계안이 공모되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공모전을 거쳐서 발굴된 건축사(가)들에게 보다 나은 공간 환경이 이루어지도록 농어촌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사업에 참여 기회를 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국민을 위한 보다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주택 표준도를 개발하려면 표준도 개발 용역비에 대한 충분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4-3-4-0(계속)	자생식물원 및 생태숲 조성(산림청)
-------------	---------------------

담당부서	산림환경보호과	담당자	김관중(주무관)
전화번호	042-481-4249	이메일	pj6736@forest.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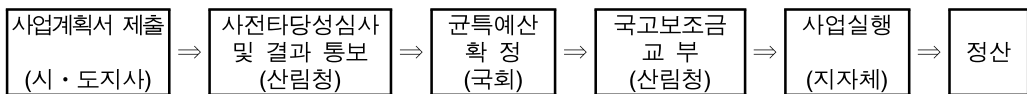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사업 목적
 - 산림식물자원의 서식지내 보전기능을 강화하여 산림생태계의 안정과 산림생물의 다양성을 유지·증진하고 지역적으로 특색있는 숲을 조성
 - 산림생태계 연구와 함께 국민의 자연체험 및 환경교육의 장 제공
- 추진 근거
 - 「산림기본법」 제19조(수목원의 보호 및 육성)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산림생물 다양성의 보전)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사업비 등의 보조)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2년 ~ 계속
-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 추진체계



- 지원형태 및 조건 : 지자체보조, 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비 및 조성기간
 - 자생식물원 : 15억원, 3년(1년 설계, 2년 시공)
 - 지역생태숲 : 50억원, 6년(1년 설계, 5년 시공)

○ 추진내용

- 자생식물의 현지내 보전기능을 강화하여 산림생태계의 안정과 산림생물의 다양성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생태숲을 확대 조성
- 기후변화에 취약한 고산성·생육한계성 자생식물의 조사·증식·보존 및 서식지내 복원·적용사업 추진

3. 연차별 추진계획

○ 총사업비 : 1,426억원('09년까지 투자액 : 697억원)

○ '09년 사업규모

- 자생식물원 조성 : 4개소, 10억원
- 지역생태숲 조성 : 30개소, 120억원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9		562	52		614		1,228
'05	16	-	74	20	-	94	-	188
'06	23	-	123	5	-	128	-	256
'07	26	-	138	9	-	147	-	294
'08	30	-	107	8	-	115	-	230
'09	34	-	120	10	-	130	-	260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29		562	52		614		1,228
'05	16	-	74	20	-	94	-	188
'06	23	-	123	5	-	128	-	256
'07	26	-	138	9	-	147	-	294
'08	30	-	107	8	-	115	-	230
'09	34	-	120	10	-	130	-	260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자생식물원 및 생태숲 조성	지역생태숲 조성개수	지역생태숲 누적 조성개수	개소	38	38	100

II. 평가결과

1. 총 평

- 식물원, 생태숲의 조성은 자생식물의 서식지내 보전기능을 강화시키고 산림 생태계에 대한 연구와 국민의 자연학습, 휴양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함. 또한 이를 농산어촌에 조성함으로써 농림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정서함양, 휴양문화 증진과 자생식물 서식기반 확충을 도모할 수 있음.
- 최근 녹색성장 등의 패러다임이 보편화되고 있어서 자생식물원 및 생태숲 조성사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설계와 집행이 요구됨.
- 생태숲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목적과 취지에 적합한 사업내용인가, 사업집행시에 적절한 법적 기반과 전문가, 학계, 지역주민, 환경단체들의 의견 수렴구조가 마련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가, 사업성과는 목표한 바를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가 등을 점검해야 함.
- 자생식물을 식재하고 생태학적으로 건강한 숲을 가꾸는 목적은 1차적으로 자연체험과 같은 이용이 아니라 식물종의 보전에 두어야 할 것임. 그러므로 자연체험과 환경교육 등에 사업목적을 둘 경우 본 사업은 ‘산림휴양공간조성’ 사업에 편입시키는 것이 훨씬 타당하리라 판단함.
- 다양한 의견수렴과 참여를 촉진 하도록 하고, H/W 중심적 위주 보다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사업추진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부문별 평가결과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자생식물원 및 생태숲 조성’사업은 국가 식물자원의 서식지내 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적으로 특색있는 생태숲을 조성하고 자연학습 및 산림문화를 학습, 체험하기 위한 휴양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임.

- 생태숲 및 자생식물 단지의 신규, 확대 조성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생식물의 지속적이며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통해 농림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계획으로 평가됨.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생태숲, 자생식물원 조성사업 시행의 추진체계는 산림청-시도-시군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2009년 농림사업 시행 지침서’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도모함.
- 본 사업 계획단계에서는 전문가, 환경단체, 지역주민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통보하고 생태숲 조성지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통해서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개선하며 재정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개선을 시도함.
- 수목원, 생태숲 네트워크 협의회를 개최, 생태숲 조성 및 운영 활성화와 발전 방안을 찾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하지만 협의회 운영 자체가 관 중심이어서 형식적으로 그칠 우려가 높아 보임.
- 상당기간 큰 사업비를 책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인식이 낮은 것은 정책에 대한 홍보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됨.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전체 자생 식물원 생태숲 46개소 중에서 대부분을 농산어촌에 집중 조성함으로써 자생식물 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개발을 촉진함.

- 또한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의 자연학습 및 산림문화, 휴식공간의 기능을 하게 함으로써 생태숲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획된 사업임.
- 생태숲 조성실적 및 이용자 만족도를 성과 지표로 선정하여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이것은 실적일 뿐이지 사업을 통한 성과지표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 판단됨

3. 개선방안 등

- 산림 생물자원의 체계적인 보전 강화를 위해 꾸준히 생태숲을 조성하고 지역별 특성과 다양성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 생태숲 조성을 위한 사업에서 관계자간의 인적, 기술적 정보 교류를 강화해야 함.
- 공급자 중심의 실적평가 지표, 예를 들어 지역생태숲 조성개수를 대체할 만한 자생식물원 및 지역생태숲 조성의 성과를 판단할 자체 성과 지표가 필요함.
- 생태숲이 공원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태숲의 지정 조성에 대한 법적 기반 확립과 생태숲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국민과 지자체의 이해를 보다 높여야 함.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유영수
전화번호	500-1808	이메일	yooys@korea.kr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농촌경관이 체계적으로 보전·형성·관리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지역별 특성에 맞는 농어촌경관계획수립 시행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창출

2. 사업내용

- 농어촌경관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경관자원의 조사·분석, 경관계획 및 실행계획의 내용, 방법 및 작성수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농어촌경관계획 수립지침(요령) 배포
- 농촌지역의 개발사업 시행시 농촌경관을 고려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추진체계 마련
 - 농어촌지역의 특성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농어촌 경관계획수립지침(요령) 현장적용 및 모니터링 실시
 - 농산어촌 경관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강화로 국민적 공감대 확산

3. 연차별 추진계획

- 농어촌경관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경관자원의 조사·분석, 경관계획 및 실행계획의 내용, 방법 및 작성수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농어촌 경관계획 수립지침(요령) 배포
 - 농촌경관 구성요소를 정립하고 현장에 적용하여 농촌경관의 수준을 평가 하는 종합적 농촌경관지표의 제정 추진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농어촌 경관계획 수립지침 보급 첫 해로서 지자체의 활용도가 낮아 만족도조사 미실시
- 다만, 지침 보급 자체로도 농어촌경관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경관 담당자에게 인지시켜 당초 목표를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농어촌경관계획수립 지침	농어촌경관계획수립 지침(요령) 만족도	설문조사	점	3.5점	3.5점	100

II. 평가결과

1. 총 평

- 국민의 농촌경관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농촌 경관 개선 종합대책’을 추진하였고 농어촌정비법 개정 반영, 농어촌 경관계획 수립지침 보완 등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를 하고 농어촌 경관의 보전, 형성, 관리를 위해서 관련기관들이 서로 업무를 분담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공간의 특성에 따른 경관 계획 수립 및 경관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추진함.
- 제도 기반 구축과 정책 사업 추진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므로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함.
- 농어촌 경관개선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예산확보, 민간 전문가의 적극적 참여 등이 필요함.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농촌경관이 체계적으로 보존·형성·관리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서 농촌경관 계획 수립, 경관사업 시행, 경관 협정의 체결에 관한 지원들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대응해야 함.
- 농어촌의 자산인 농어촌 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해서 경관 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할 때 학계, 연구계, 농업인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전문가의 의견 수렴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지역 주민의 참여와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음.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농촌 경관 정책 추진 기관들 간에 유기적인 업무 공조 체제를 만들어서 제도 개선 방안과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또한 농어촌 경관 관련 전문과 T/F 및 포럼을 구성하여 가이드라인을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현장 적용성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함.
- 각기 다른 사업별로 책임기관을 정해서 책임기관의 주도하에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성하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 마련함. 또한 경관관리 실태조사 분석을 통해서 가이드라인 시안을 마련함.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농어촌 경관 관리에 대한 기본틀을 만들어서 농어촌 지역 경관자원을 조사하고 분석하여서 경관 계획 및 실행계획 등을 제시함.
-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휴양 산업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경관계획 지원체계 구축 및 방향을 제시함.

3. 개선방안 등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농촌 경관의 형성을 위해 농촌 경관 개선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그에 따른 예산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함.
- 경관계획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농어촌 경관계획 수립 지침을 현장적용해 보고 모니터링을 하여 이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평가하고 보완함.
- 농촌지역의 자연과 생활경관 그리고 역사·문화경관을 유지하고 보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고 우수 경관을 선정하거나 홍보를 통해서 농촌 경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담당부서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담당자	박종완(사무관)
전화번호	02-500-1765	이메일	parkjw1@korea.kr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목적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 소득보조 및 지역 활성화 도모
 - 육지지역은 읍·면지역 중 경지율 22% 이하, 경지경사도 14%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
 - 도서지역(제주도 포함)은 읍·면내 모든 법정리(경지율 및 경사도와 관계 없음)
- 근거 법률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0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 WTO 농업협정문 부속서 2의 13
 -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24조~제33조
- 사업목표 :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이탈농 지지율을 98.5%로 유지하여 동 지역의 공동화 예방 및 활성화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4년~계속
- 총사업비 : 3,349억원('09까지 1,505억원)
- 사업규모 : 118천ha
- 지원형태 : 자치단체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
- 지원조건 : 자치단체경상보조(국고 70%), 민간경상보조(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시·군, 한국농어촌공사

- 지원내용 : 일반지역과 조건불리지역의 농업생산성 차이의 일부를 지급 요건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보조금으로 지원
- 추진절차
 - 사업시행지침 시달(농식품부 → 지자체(시·도 → 시·군 → 읍·면), 한국농어촌공사) → 시행지침 홍보 및 사업안내(농림부·시·도, 시·군, 읍·면)
 - 조건불리지역(법정리) 선정 통보(농식품부 → 지자체 → 대상 법정리)
 - 사업신청(마을 → 읍·면 → 시·군) → 사업대상 마을 선정 통지(시·군 → 읍·면 → 대상 마을)
 - 직불금 지급 신청(농업인 → 마을대표 → 읍·면 → 시·군) →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직불금액(보조금) 확정(시·군) → 보조금교부(농식품부 → 시·도 → 시·군) → 보조금 지급(시·군 → 농업인)

3. 연차별 추진계획

□ 기본방향 마련 및 사업 준비

- 직불제 기본방향 마련을 위한 실무대책반 운영('01.6~12월)
- 399개 오지면 경지경사도 측정 조사('02년)
- 횡성, 무주, 봉화 지역의 1개 면을 대상으로 도상연습 실시('02.4~5월)
- 강원도 3개 면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03년, 도비 3억원)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도입관련 연구용역 실시('03.4~'04.1월)
 - 조건불리지역 발전전략 및 활성화 방안 등 3건
- 시범사업 지역 모니터링 및 효과분석 연구용역 실시('04.8~'05.4월)
- 전국 1,420개 읍·면 경지경사도 측정('02년 399개, '04년 200, '05년 821)

□ 시범사업 및 본 사업 실시

- 399개 오지면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04~'05년)
 - '04계획 : 31천ha, 100억원, - '05계획 : 31천ha, 123억원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 본 사업 추진('06년 부터)
- 조건불리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 개정('07.4월)

- 도서지역 지원확대, 임대차/사용대차 불가능 농지에 대한 직불금 지급제한 등
- 조건불리직접지불사업 이행점검시스템 개발 보급('07.10월)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천ha)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799	2,354	0	0	0	983	0	3,337
'05	31	123				37		160
'06	187	523				220		743
'07	187	523				222		745
'08	158	432				181		613
'09	118	336				144		480
'10	118	417				179		596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천 ha)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478	1,363				571		1,934
'05	31	104				37		141
'06	118	331				139		470
'07	109	311				131		442
'08	110	311				133		444
'09	110	306				131		437

- 영농규모가 영세한 농가의 직불금 미신청, 직불금 지급 부적격 농지에 대한 미지급금 발생 등으로 계획 대비 지원실적은 다소 감소

4. 성과목표 달성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 이탈농 지지율 - 지원대상 법정리의 최근 5 년간 평균 정주농 비율 대 비 당해년 정주농 비율 - 정주농 비율=급년 농가수/ 작년 농가수×100	시·군에서 농림사업통 합정보시스템(Agrix) 으로 제출한 연도별 농가수로 산출	%	98.5%	100%	

II. 평가결과

1. 총 평

-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지역을 활성화 시키려는 목적으로 실시됨.
- 조건불리지역에 지원되는 금액은 일반지역과의 농업생산성의 차이에서 오는 금액의 일부로서 마을의 공동기금으로 조성되어 마을활성화,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농지 보전활동 등에 사용됨.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이행점검시스템을 보완하여 일선에 보급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였음.
- 워크샵, 현지점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2010사업 예산에 지급단가 25% 인상 반영 등 사업 내실화를 도모하였음.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이나 산간, 오지, 도서지역 등 낮은 농업생산성을 가진 지역의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지역사회 활성화의 도모를 통해서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에 적합한 사업임.
- 농업생산성이 낮은 지역의 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활성화 실천활동,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농용지 보전활동, 지역 마케팅 활동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이행할 것을 요구함.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사업추진체계는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가 관련 업무를 분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하여 지방비 3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지원방식도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접지불 방식을 채택함.
- 지자체 담당공무원,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등이 워크숍을 실시하여 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토의하며 농업인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직불제 추진 실태를 점검하며 모니터링 결과와 수립된 의견을 반영하여 조건 불리 직접 지불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하여 효율성을 높임.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중산간지역등 농업생산성과 정주여건이 평야 지역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조건불리지역을 대상하여 중산간 및 도서 지역의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 이런 지역은 공동화가 되어 있으며 교육, 의료, 문화 등의 여건이 좋지 않으므로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보조금의 일정비율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마을 활성화를 실천시키기 위해 사용함.

3. 개선방안 등

- 열악한 지역의 기준에 대한 지표를 설정하여 보다 폭 넓은 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함.

4-4-1-0(계속)	1사1촌 운동(농림수산식품부)
-------------	------------------

담당부서	농촌사회과	담당자	이태용(사무관)
전화번호	02-500-1813	이메일	@korea.kr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1사1촌 운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범국민적 운동으로 정착유도
- 1사1촌 자매결연이 기업체를 중심으로 사회 각계로 확대되어 농업·농촌에 대한 범국민적 이해 증진 및 도농간 교류 활성화 유도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4~계속
- 추진내용 : 민간의 적극적인 추진 및 참여를 독려하여 범국민 운동으로 정착을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도농교류 활성화 기반 구축
 - 1사1촌 자매결연 내실화
 - 도농교류촉진법(안)에 체험·휴양마을의 음식제공·공동숙박 특례, 초·중등학생들의 농촌체험교육 근거,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 및 세제·금융지원 등 마련, 기업체, 학교 등의 동참 여건 조성
 - 6개월 이상 미 교류건 구분관리 및 실적이 미흡한 사례는 자매결연 사례에서 제외
 - 자매결연 마을(농가) 소득증대 추진(정부 미지원사업)
 - 기업과의 협력사업 실시 : 20건 / 351백만원
 - 녹색자전거가 달리는 농촌체험마을 육성 : 9곳 / 58백만원
 - 108산사 직거래장터 및 다문화 가정 인연맺기 사업

· 108산사 직거래 장터

구 분	횟 수	인 원	직거래금액	비 고
내 용	12	58,600	267 백만원	

- 다문화 가정 인연 맺기 : 36 명(몽골 1, 중국 5, 베트남 18, 캄보디아 3, 필리핀 9)
- 농촌사랑지도자연수원 교육 지원
 - 우리부 국장(주무과장)이 마을개발지도자과정(7회)에 직접 출강하여 FTA, 쇠고기 수입문제 등 생생한 농정현안을 설명
- 수준별 맞춤연수로 교육과정을 세분화
- 마을지도자, 기업·단체, 개인 등 도농교류 유공자에 대한 정부 포상 실시
- 다양한 교류사례 홍보로 저변확대 및 내실화 벤치마킹화
 - 농촌사랑소식지(계간지, 매분기 3만부) 배포
 - TV, 일간지를 통한 특집 기획기사 시리즈를 통해 대국민 홍보

3. 연차별 추진계획

- 1단계 : 교류성과 창출단계(2006~2008)
 - 마을인프라구축, 교육 인적자원 육성, 농촌자원개발
- 2단계 : 교류성과 확산단계(2008~2010)
 - 성공사례확산 및 농촌자생력 강화, 기업체 투자 유도
- 3단계 : 국민운동 정착단계(2010년 이후)
 - 한국형 농촌발전모델정착, 운동혁신을 통한 범국민 지지와 참여 지속화

4. 성과목표 달성도

○ '08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1사1촌 마을당 교류횟수(회) : 6.5회로 목표치 대비 16.1% 초과 달성

· '09년 목표치 : 5.6회

· '09년 실적치 : 6.5회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1사1촌 운동	1사1촌 마을당 교류횟수	당해연도 교류횟수 / 누계자매 결연 마을수	회	5.6	6.5	116.1

* '09년 마을당 교류횟수 : 6.5건 = 교류건수(38,300건) / 교류마을(5,898개소, 중복배제)

II. 평가결과

1. 총 평

- FTA, WTO, DDA 등으로 농촌은 농업시장개방 확대 요구로 개방이 가속화되고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농가소득의 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도시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민간주도의 도농상생을 위한 1사1촌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농촌마을의 소득 증대와 활력 증진을 가져오도록 함.
- 1사 1촌 운동은 농촌과 농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갖게 하고 도 농 간의 자매결연을 통해 농촌 소득증대에 기여한 사업으로 평가됨.
- 보다 나은 성과를 위해 철저한 사후관리와 교류모델을 다양화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도농균형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함.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농어촌의 경제가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기업체, 단체와 농촌마을 사이에 교류를 가져오는 1사1촌운동은 민간 주도의 도농상생 모델임. 그러므로 도시와 농어촌이 함께 잘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농산물 직거래, 일손돕기 체험활동 등 서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할 것임.
- 기업체나 도시민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활용하여 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대안들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1촌 1명품 개발지원, 직거래 장터운영, 자매결연의 내실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사례별 교류실태 조사, 농촌사랑지도자 연수원 교육 지원 등을 활성화 하여야 함.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사업추진체계는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농협중앙회, 전경련 등 민간을 주축으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짐.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는 1사1촌운동이 활성화되기 위한 실무 중심적 역할을 하며 기업체, 단체 등에게 자매결연 체결 마을 소개와 교류활동 방법을 제시함.
- 전경련은 1사1촌운동을 지지함으로써 기업체 참여에 대한 상징성이 큼. 이외에도 농촌마을은 지역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노력과 참여를 위한 교육·훈련에 참여하고 정부는 교육, 홍보, 법적기반 구축을 지원함.
-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류 실태 조사를 실시함. 그리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의 참여를 유도함.
- 직거래 장터, 다문화 가정과 인연맺기, 무료의료지원 등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킴.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기업체, 사회, 종교, 소비자단체, 학교, 정부부처 등 도시의 기관들이 농촌과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써 범국민적 이해의 토대를 마련하고 농촌의 소득증대 및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함.
- 농업인의 입장에서 기업 이해할 수 있고 기업의 경우는 사회적 책임을 수행함으로써 바람직한 기업상을 구축하고 판로 및 사업영역을 확장할 수 있음. 또한 기업 임직원들은 농촌 체험을 즐길 수 있고, 직거래를 통한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농어민은 고정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 농촌의 전통문화와 환경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게 됨.
- 농촌은 기업체의 새로운 경영비법이나 판매기법 또는 IT를 배워서 접목하여 농업경쟁력을 증대시킴.

3. 개선방안 등

- 마을 지도자에게 주제별, 결연 단계별에 따른 심화교육을 실시하여 다양한 형태의 결연 추진이 필요함.
-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여 지역사회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협력사업 전개가 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사회공헌활동과 연계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도록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여야 함.
- 기업체, 마을, 농협 공동으로 자매결연 마을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협력사업 전개가 필요함.

4-4-2-1(계속)	도시민 농산어촌주택 갖기 활성화(농식품부) -전원마을 조성-
-------------	--------------------------------------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담당자	김동권(서기관)
전화번호	02-500-1804	이메일	@korea.kr

I. 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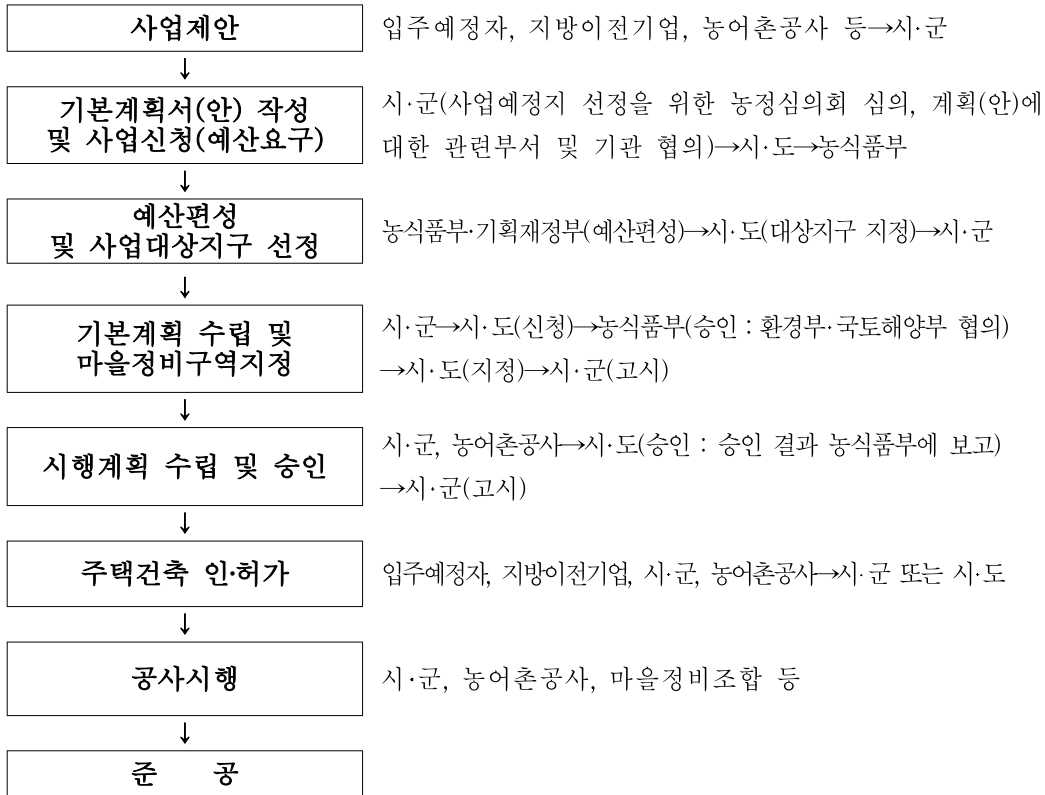
1. 사업목표

- 사업추진 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 「농어촌정비법」 제24조 내지 제39조
- 사업목적
 - 도시민이 농산어촌에 주택을 가지고 노후·여가를 농산어촌에서 보내도록 함으로써 농산어촌 지역 활성화 도모
 - ⇒ 농촌에서 도시민이 쾌적한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 마련(전원마을조성사업)
 - * '13년까지 전원마을 300개소 조성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4 ~ 계속
- 지원대상 지역 :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면지역(신활력사업 대상 시·군의 경우 읍지역도 포함)
- 지원내용 :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장 등 기반시설 지원
- 지원규모 : 20~29호 10억원, 30~49호 15억원, 50~74호 20억원, 75~99호 25억원, 100호이상 30억원
- 재 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국고 70%, 지방비 30%)

- 사업주체 : 시장·군수,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마을정비조합
- 추진체계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균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31		1,306			405		1,711
'05	27		277			69		346
'06	22		260			65		325
'07	13		231			58		289
'08	35		103			26		129
'09	17		212			91		303
'10	17		223			96		319

※ 사업규모(개소)는 신규 착수지구 수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114		794			251		1,045
'05	27		171			43		214
'06	22		260			65		325
'07	13		72			18		90
'08	35		79			34		113
'09	17		212			91		303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성과지표 목표/실적 : 30%/30%
 - 성과목표치 100% 달성 :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관심증가로 '09전원마을조성 성과지표 목표치 30%(도시민 2,520가구)를 계획대로 달성(30%, 도시민 2,505가구)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A)	실적(B)	B/A(%)
전원마을조성	도시민 유치비율(% , 누계)	도시민 유치가구수 / 도시민유치목표 ×100	%	30	30	100

* 성과목표치는 '13년까지 도시민 8,400가구 유치목표 대비 도시민 모집실적임

II. 평가결과

1. 총 평

- 도시민이 농산어촌에 주택을 가지고 노후, 여가를 농산어촌에서 보내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산어촌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사업임. 농산어촌 지역특성에 맞는 품격 있고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전원마을을 조성하여 도시민을 농촌으로의 유입을 촉진하고자 함.
- 최소한 20호 이상, 최대 100호 이상까지의 규모로 농산어촌 지역에 조성되는 신 마을로는 비교적 규모가 큰 주거단지로서 농촌 지역사회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업인 만큼 사업 대상지 선정 시 전원마을 조성 사업의 시책 및 추진 방향에 부합하는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즉각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지침을 개정하거나 법 개정을 추진하였고 삶의질향상 점검평가단의 의견에 대해서도 일부 반영하려고 함. 다만, 사업목표, 성과지표 등의 측면에서 전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대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 없이 사업을 둘러싼 여건이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두고 있는 상태임.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지역사회 및 사회 인프라의 유지 측면에서 최대의 현안이라고 할 수 있음. 여기에 더해 도시민의 농촌 정주에 대한 욕구가 상존하는 만큼 농촌과 도시 양편의 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농촌 지역사회 및 사회 인프라 유지, 도시민의 농촌 정주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사업 계획으로서의 적절성이 있음. 특히 농촌 지역의 다양하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도시민 유입의 촉진 매체로 활용함은 직접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합하다고 판단함.
- 다만, 2013년까지 300지구를 조성하겠다는 목표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증거는 명확치 않아 보임. 사회경제적 여건의 급 변화, 단위 사업 통합 등과 같은 정책적 환경 변화 등과 맞물려 본 사업의 목표도 수정이 필요할 것임.
- 전원마을 조성의 사례조사, 회의, 설문조사,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을 위한 부처 협의를 통하여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사업 신청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까지 단계가 체계적으로 보이고, 추진 방식도 사업 규모별·추진 주체별 다양성을 확보하여 합리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시 각 부처 관련기관의 협조를 긴밀히 유지하고 있으나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추진 방향과 시책에 걸 맞는 경관이 조성되려면 건축, 경관 등 민간전문가의 적극적인 활용도 필요함.
- 사업 추진 상황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개선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나 보다 상시적인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방안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추진 주체들간의 상시적인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사업 성과는 전원마을 입주 후 도시민의 정주 활동에서 나타나는 도시민 및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효과를 평가하여야 하므로 아직까지 달성도(성과)를 기대하기 이르다고 판단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원마을 입주 예정자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노력하는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다른 전원마을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함.
 -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의 일부로 포함된 지자체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과의 연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사업의 성과가 아닌 실적 목표를 “전원마을 지구 입주예정자에 대한 도시민 비율”로 들고 있는데 도시민 비율이 몇 %이면 실적이 높은 것이고 몇 %이면 실적이 낮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모호하다고 봄.

3. 개선방안 등

- 전원마을 조성사업 시책 및 추진 방향을 전반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지침 등의 개선을 지속하여야 함. 다만, 광특회계 재편에 따라 시행지침의 내용을 부처의 가이드라인에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사업의 전반적 목표치 등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사업 추진 주체간의 상시적 의사소통 구조를 마련하고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사업 추진 과정에 참여하여 지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그 활동 모습들을 수집하여 다른 지역에서 참고로 삼을 수 있도록 자료화함.

- 성과지표는 사업의 목적과 취지, 달성도 등을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인 지표를 발굴할 수 있도록 검토함.
- 사업이 추진중인 대상지 사업관리를 강화해 부실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함. 특히 사업추진이 불가능해 보이는 지자체의 경우는 자금배정 등을 유보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상대적으로 우수한 마을은 적극 홍보를 통해 도도시민의 농어촌 이주 수요 구체화에 사업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무엇보다 사업 추진의 목표 설정, 실적 및 성과 지표에 대해서는 변화된 사회경제적, 정책적 여건을 반영하여 일괄 조정이 필요함.

(농림수산식품부 / 농촌사회과, 이태용, 김춘기, 이명남, 하지은
500-1813, 500-1822, 500-1817, 500-1821)

I. 추진실적

1. 사업목표

-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한 농촌마을의 소득증대 및 활력증진 계기 마련과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지원으로 도시민의 여가수요를 농촌으로 흡수하는 등 도·농간 상생 구현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2~계속
- 사업추진주체 :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민간단체, 농어촌마을
- 사업추진절차 : 기본계획수립(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시행계획 승인 신청(한국농어촌공사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시행계획 승인 (농림수산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시행 및 사후보고 (한국농어촌공사 → 농림수산식품부)→사업비 검정(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내용
 - 농촌체험관광 수요창출과 국민적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홍보·공모전, 도농교류 정부포상 실시
 - 농촌체험마을 보험가입 및 마을사무장 채용지원과 전문가 그룹의 컨설팅 연계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상향식 농촌지역개발을 주도할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 시행과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
 - 도농교류 업무를 전담지원하고 다양한 도농교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도농교류센터 운영

- 소비자단체·농어업관련 단체 등이 청소년·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어촌체험 및 문화사업 등을 통해 도농교류 촉진 도모
- 농어촌체험 및 이주·정착 희망 도시민들이 불편 없이 교류할 수 있도록 농어촌관련 종합적인 정보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공
- 농촌체험마을의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무장 채용비용의 일부 지원
- 문화·관광축제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어촌 경관·농촌체험·어메니티 등을 소재로 한 농어촌축제 지원
- 인구감소로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는 시·군의 도시민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사업 지원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541				105	14	660
'05		19				-	-	19
'06		39				5	1	45
'07		50				7	2	59
'08		84				7	2	93
'09		166				34	4	204
'10		183				52	5	240

- '08년부터 농소정사업이 이관됨에 따라 예산액 증가
- '09년부터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이 통합됨에 따라 예산액 증가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사업규모 (명, 개소)	국비(억원)				지방비	자부담	합계
		농특세	군특세	기타회계	기금등			
합계		350				53	9	412
'05		19				-	-	19
'06		39				5	1	45
'07		50				7	2	59
'08		83				7	2	92
'09		159				34	4	197

4. 성과목표 달성도

○ '09년도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도농교류활성화에 대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대표 지표로 농촌 체험마을방문객수 증가율 15%와 포털이용자 만족도 82%를 성과지표로 설정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목표치 (A)	실적 (B)	B/A (%)
도농교류활성화	체험마을방문객수 증가율	(당해년도 실적-전년도 실적)/전년도 실적*100	%	15	29.1	193.3
	포털이용자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기관을 통한 설문	%	82	84	102.4

II. 평가결과

1. 총 평

-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한 농촌마을의 소득증대 및 활력증진 계기 마련 등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도시민의 여가수요를 농촌으로 흡수하는 것은 현재의 농업·농촌이 처한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2002년부터 한국어농촌공사를 매개 기관으로 벌이고 있는 크고 작은 사업은 도농교류 활성화라는 목표에 기여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그간 지속적으로 사업비가 증가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08년부터는 농·소·정협력사업의 예산, 2009년부터는 도시민농촌유치 지원사업이 동사업에 이관되어 사업비의 추가 증액이 이루어졌음.
- 2009년도에는 체험마을 방문객수가 전년대비 193.3% 증가한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음.
- 그러나 이 사업의 근본적 문제는 체험마을사업, 농어촌테마공원사업, 농산어촌에서 휴가보내기 캠페인, 도농교류촉진법 제정,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 1인1촌전문가자문 지원, 농산어촌체험마을보험가입 지원 등 세부적으로 다양한 관련 사업의 사후관리 및 발전을 위한 소프트 기반 정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업성과를 무엇으로 보아야 할지 사업의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점에 있음.
 - 유사한 목적의 세부 사업을 묶기는 하였으나 매년 세부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등이 생략되어 있어서 그러한 사업들이 도농교류 활성화에 어떤 기여를 하는 것인지 상호간에는 어떤 상보관계가 있는 것인지 혼란스럽게 되어 있음.
 - 그렇다면,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의 체계화와 역할 분담 체계에 대한 큰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필요

하다면 세부 사업들을 별도로 평가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

- 또한 이 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의 도농교류 관련 여러 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가 대행하고 있는 것인 만큼 사업실적지표 중 하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얼마나 사업을 잘 대행하고 있는지에도 놓여야 함.

2. 부문별 평가결과

□ 사업계획의 적절성(계획)

- 도시민의 수요를 농촌에서 유인, 활용함으로써 도농상생의 기반을 만들기 위한 사업계획은 타당성이 있음.
- 그러나 도시민 수요 창출, 농촌 측의 공급기반 강화라는 차원에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배치하고 누가 추진할 것인지 등에 관한 근본적 계획이라기보다는 그간 추진되어오던 많은 사업들을 나열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됨.
- 통폐합해야 할 사업, 효용가치가 없어진 사업, 새로 만들어야 할 사업 등을 매년 기획하고, 그것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등에 대한 정밀한 설계가 요구됨.

□ 사업추진의 효율성(집행)

- 이 사업의 추진 체계를 살펴보면 농림수산식품부가 기본 방안을 수립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정부 사업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집행, 점검하는 형태로 되어 있음.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업의 종류가 워낙 방대한 만큼 정부 사업의 대행 추진 체계의 필요성은 인정됨.
- 그러나 대행 추진 체계에서 간과되어서 안 되는 점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파트너십임. 중앙정부 스스로가 이러한 파트너십에 깊숙이 개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행 추진이 불가피한 만큼 중앙정부의 사업 관리는 대행 기관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러한 역할을 잘 수행하는지를

점검, 지도할 책임이 있음.

- 즉, 한국농어촌공사가 대행한 사업 성과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 추진단의 역할과 역량 강화에 대한 점검, 지도가 필요함.
- 자체평가보고서에서는 사업 추진 내용의 대부분을 세부사업들의 실적에 대한 것으로 할애하고 있는 데, 이는 각각의 사업에 대한 별도의 평가를 따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 사업 평가를 위한 실질적인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됨.

□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성과)

- 다양한 종류의 사업을 통해서 도농교류 활성화에 일정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됨.
- 그러나 자체평가보고서의 대부분은 도농교류와 관련되는 타 개별사업의 성과 관리 및 달성도에 대한 내용을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착 이 사업의 성과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는 판단하기 어렵게 되어 있음.

3. 개선방안 등

-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의 정체성에 대한 설명과 세부사업 간의 관계 등에 대하여 큰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유사사업 통폐합, 실효성이 없는 사업 폐지, 신규사업 발굴 등 포함
 - 도농교류 5개년계획과 같은 중장기계획 이외에 매년 이 사업을 보다 효율화하기 위한 세부 사업 추진계획을 중장기계획과 연동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사업 목적 및 내용에 적합하고 그 인과관계가 명확한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이 사업의 본질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림수산식품부 관련 사업 대행 인만큼 사업 추진 효율성, 효과성을 판단할 수 있는 다른 잣대가 필요